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Annual Report 2024

경제적 자율성 확대로 활력 넘치는 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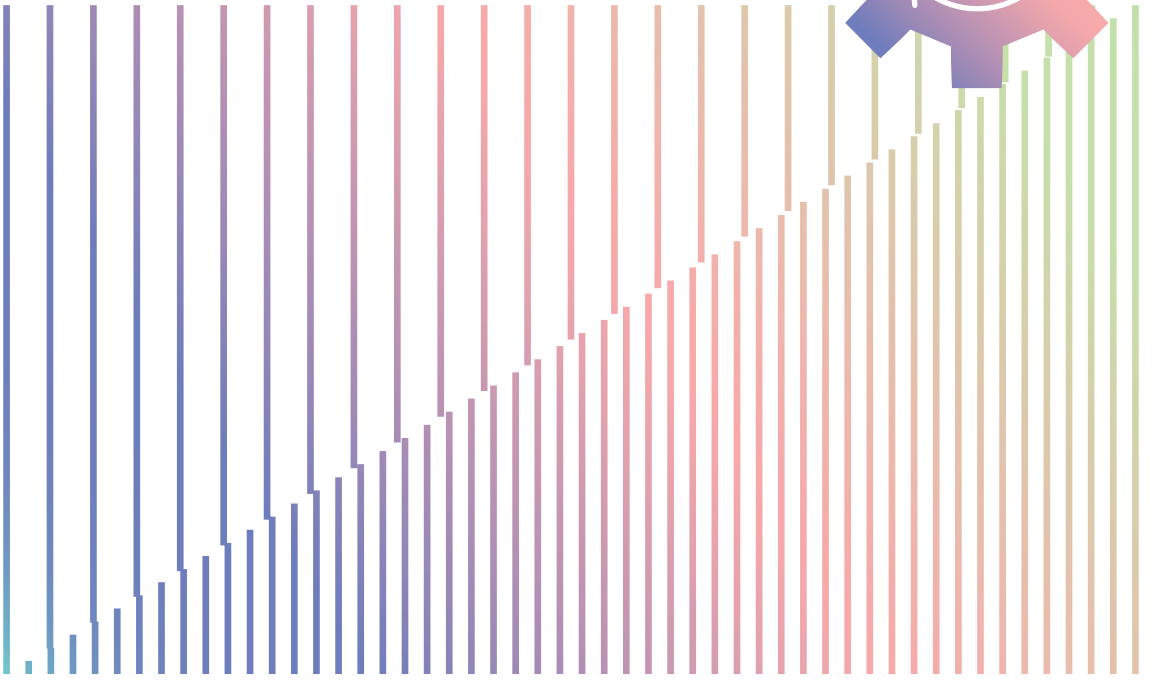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발간사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혁신이 국가 발전과 경제활력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4년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토지이용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환경변화에 맞게 환경 등급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졌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에도 음식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고 법령이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인증규제 개선 등 총 13개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 했습니다. 또한, 경제 6단체 규제개선간담회,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신산업 분야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군 작전성 제한 문제로 지연될 뻔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의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정부는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었고,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세서점에서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으로 시어머니는 되지만 친정어머니는 안되는 황당한 사례를 개선하였고, 3자녀 이상 가정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 되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안 주는 것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는 쟁점 규제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장터 판매를 허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연장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확대·발전시켰습니다. 2019년 도입 당시 4개 신산업 분야에서 시작하여 작년에는 순환경제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현재 총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승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545건을 승인하였으며,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등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법령정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84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그 중 95건에 대해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개선권고 사례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분야 및 전송자 범위 축소,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범위 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기존규제 740건을 검토하여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거나, 기술발전·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191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 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규제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규제혁신은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은 규제혁신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의 성공은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서 비롯됩니다. 본 백서가 규제 역사를 집대성할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있어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규제개혁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유일호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4



비상경제민생회의('24.3.27)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4



해상풍력단지 현장방문('24.11.18)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4



해상풍력단지 현장방문('24.11.18)





청암중·고 졸업식 현장 방문('24.2.1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4







규제혁신전략회의('24.11.28)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1.22) "생활규제 개혁"



경제6단체 규제혁신 간담회('24.12.11) "경제단체와 긴밀한 소통"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2.21)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활력제고”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
('24.3, '24.6, '24.11)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청년의 삶 현장점검('24.3.29)



전통시장 민생현장점검('24.5.20)

“사진으로 말하다”

Regulatory Reform Book 2024



규제개혁 유공포상 수여식('24.2.15)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여식('24.7.18)

숫자로 보는
규제개혁 2024

2024 규제혁신 성과

2022년 5월 이후

2,900

여건의 규제개선

약 **148** 조 원

경제효과 발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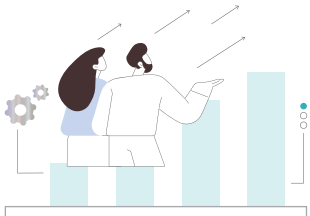

투자창출 **91** 조



매출증대 **19** 조



국민·기업 부담경감 **37** 조

'20~'24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접수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접수 현황('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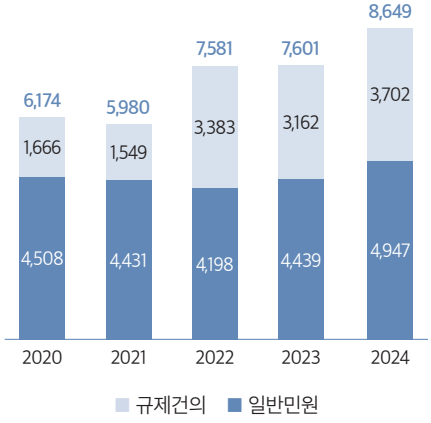

규제건의 유형('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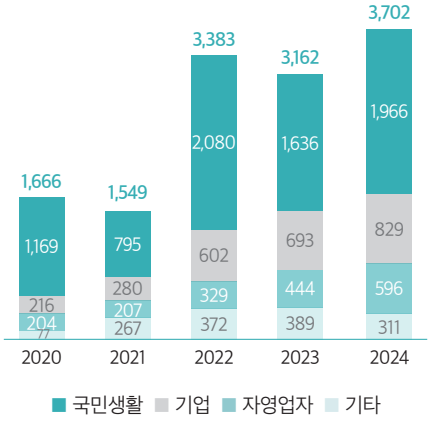

'20~'24 샌드박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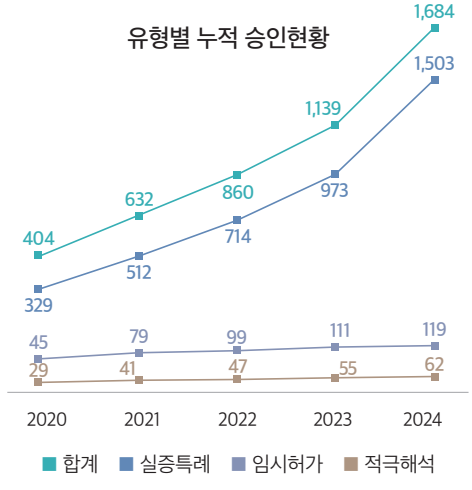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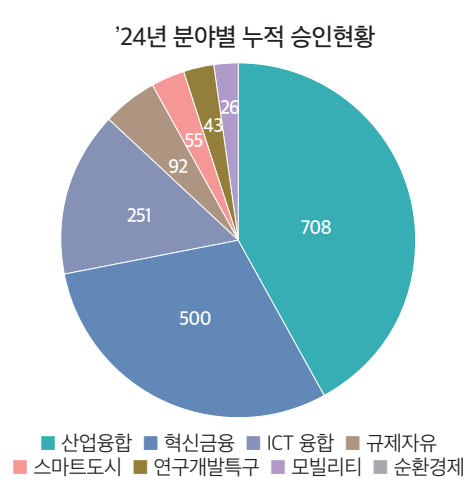

'20~'24 규제 신설·강화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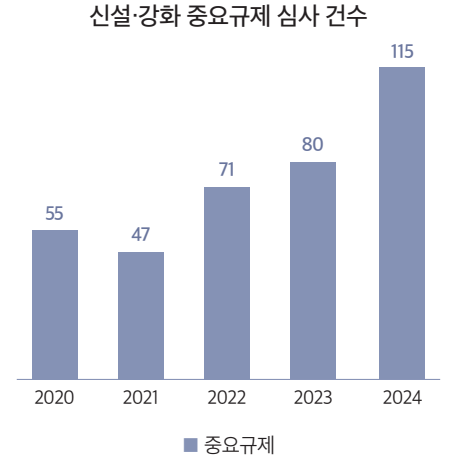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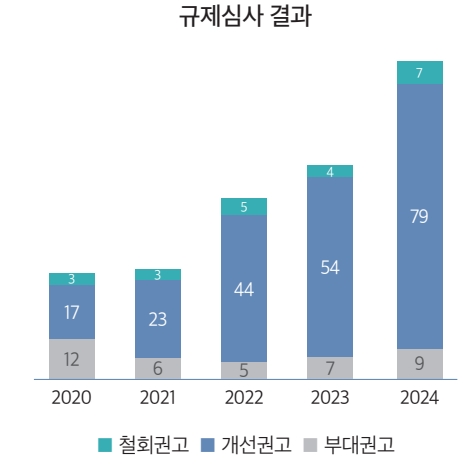

OECD 규제정책평가
우리나라 순위

OECD

• OECD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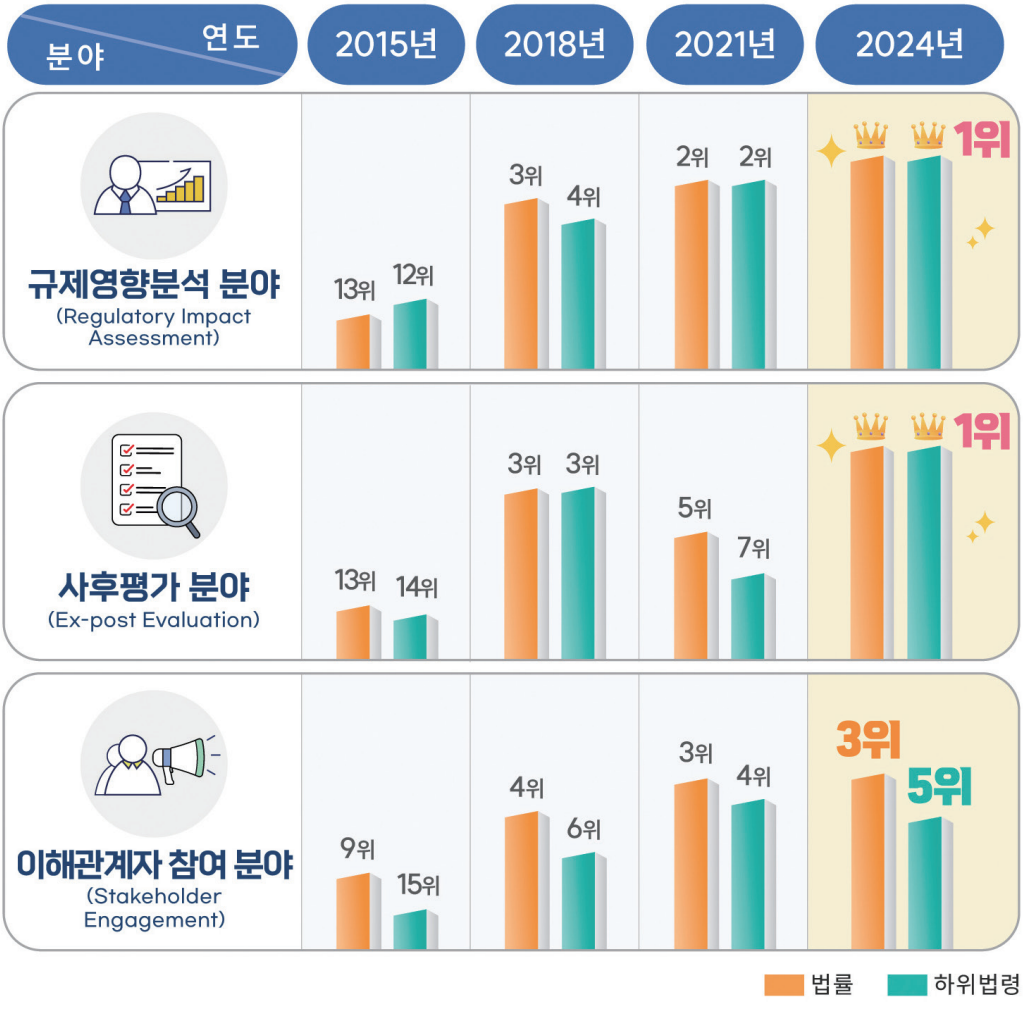

• OECD는 2024년에 투명성(Transparency) 지표를 처음 제정·공개

➜ 법률·하위법령 모두 1위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Annual Report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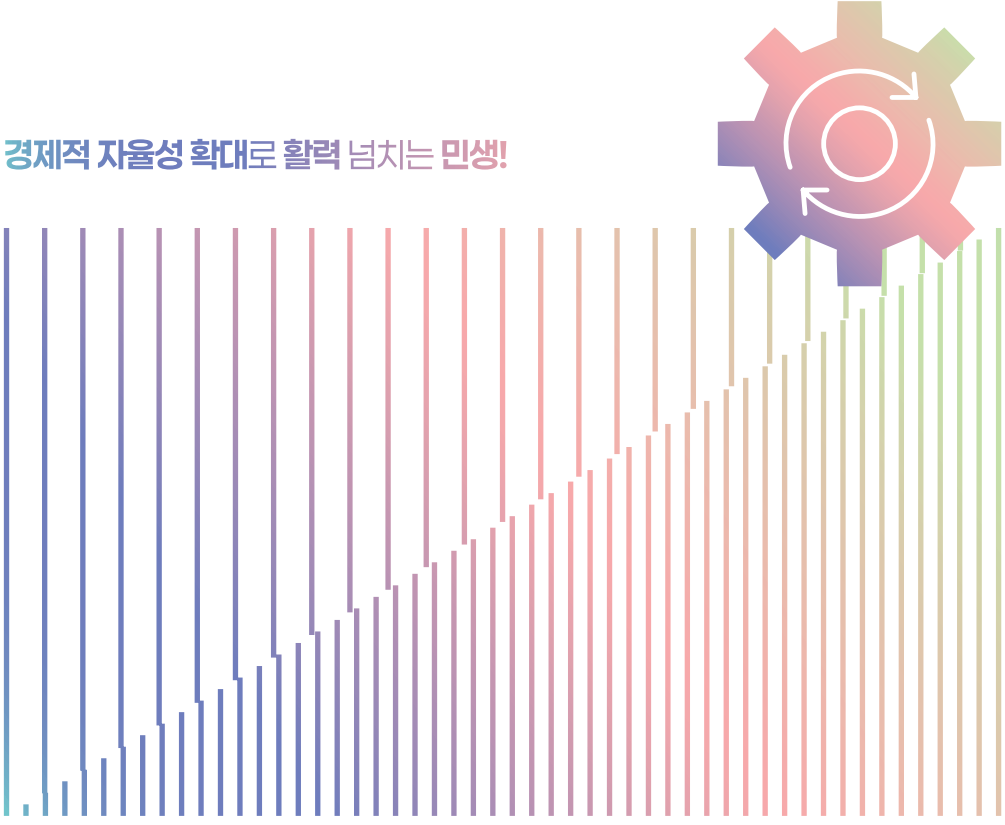

경제적 자율성 확대로 **활력** 넘치는 **민생!**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CONTENTS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발간사 02
화보 04

PART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1절 개요 30

제2절 규제혁신전략회의 32

제3절 규제개혁위원회 34
1.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
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3.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39
4. 규제개혁신문고 40

제4절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41
1. 규제총괄정책관 41
2. 규제혁신기획관 41
3. 규제심사관리관 42

제5절 규제혁신추진단 43

제6절 규제심판부 45

제7절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47
1. 부처별 자체규제개혁위원회 47
2. 부처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47
3. 부처별 규제혁신 T/F 48
4. 부처별 옴부즈만 제도 50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51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51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51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51

제9절 민간 규제소통 창구 52
1.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52
2.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 연계 운영 52
3. 규제연구센터 53

PART 02 기존규제 개선성과

제1절 2024 규제개혁 추진성과(총평) 56

제2절 핵심규제 혁파 58
1. 킬러규제 혁파 58
2.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61
3. 토지이용규제 개선 66
4. 경제단체 건의 규제개선 70
5.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72

제3절 민생규제개선 77
1.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77
2.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80
3.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실시 85

제4절 신산업 규제혁신 88
1.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 88
2. 기업현장 불편 해소 97
3. 신의료기기 제도개선 106

제5절 덩어리 규제개선 108
1. 개요 108
2. 운영체계 109
3. 주요 성과 111
4. 향후 계획 204

제6절 규제심판제도 218
1. 개요 218
2. 주요 심판 결과 219
3. 제1기 규제심판부 성과집 발간 237
4. 향후 계획 237

제7절 규제개혁신문고 238
1. 개요 238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238
3.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239
4. 2024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240
5. 주요 개선사례 240
6. 향후 계획 243

CONTENTS

제8절 규제혁신 소통 244
1. 현장방문 *세계 최대 규모의 전남지역 해상풍력단지 규제애로 해소 244
2. 적극행정 252
3.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260
4. 웹툰(Webtoon)을 활용한 규제혁신 홍보 263

제9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267
1. 개요 267
2. 2024 OECD 규제정책평가(iREG) 267
3. OECD와의 협력 270
4. 미주개발은행(IDB)와의 협력 271
5. 양자 간 협력 272

PART 03 신설·강화 규제 심사

제1절 2024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주요 결과 278
1. 요약 278
2. 경제분과위 심사 결과 280
3. 행정사회분과위 심사 결과 330

제2절 규제영향분석 375
1. 제도 개요 375
2. 작성항목 및 요소 376
3. 작성대상 및 절차 377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380

PART 04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390
1. 입법연혁 390
2. 2024년 시행령 개정사항 391

제2절 규제등록제도 396
1. 개요 396
2. 등록대상 및 단위 396

제3절 일몰규제 정비 398
1. 규제의 재검토 개요 398
2. 2024년 심사 결과 399
3. 주요 정비사례 400
4. 사후규제영향분석 403
5. 향후 계획 403

제4절 규제비용감축제 404
1. 개요 404
2.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407

PART 05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제1절 2024년 규제혁신 평가 414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414
2. 규제혁신 평가 결과 415
3. 부처별 평가 결과 416

제2절 202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419
1. 기본방향 419
2. 세부 추진방향 419

CONTENTS

PART 06 부록

제1절 각 부처 규제혁신 성과사례 424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562

1. 본 위원회 개최 일지 562
2. 경제위원회 개최 일지 564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566

제3절 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및 언론보도 570

1.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전문위원 명단 570
2. 언론 속에 비친 규제혁신 사례(13개 과제) 574
3. 규제혁신추진단 주요 활동 587

제4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590

1. 행정규제기본법 590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604
3.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619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621
5.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28
6.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30
7.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632
8.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634

2024
규제개혁백서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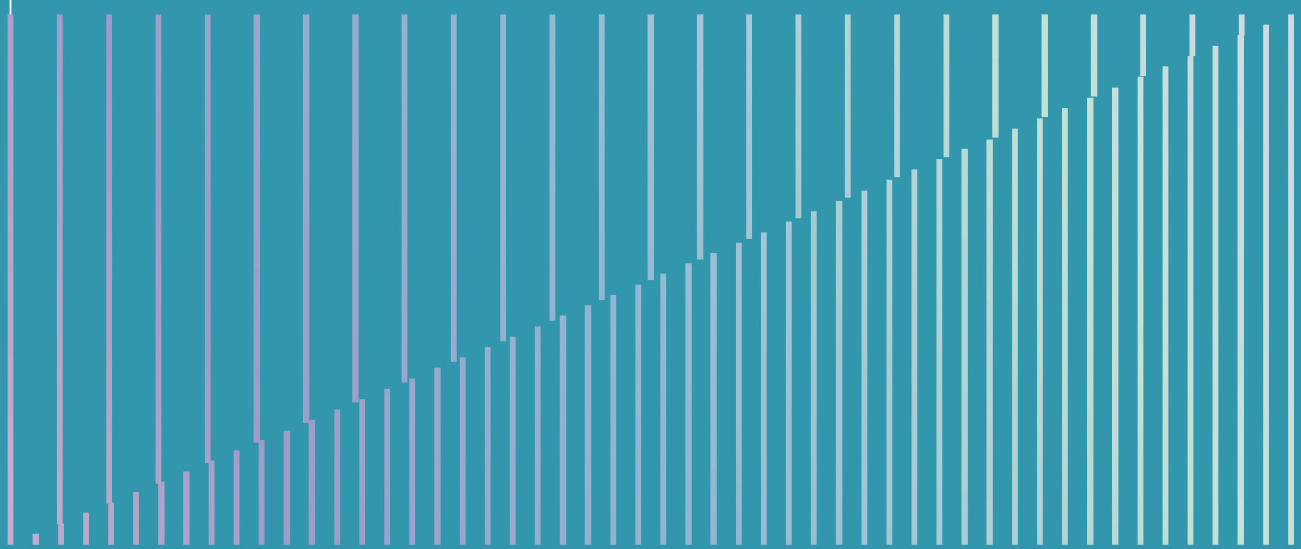

1. 개요
2. 규제혁신전략회의
3. 규제개혁위원회
4.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5. 규제혁신추진단
6. 규제심판부
7.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9. 민간 규제소통 창구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 강주연 사무관 | Tel. 044-200-2452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2024년은 정부 3년차로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개혁 역량을 결집하여 핵심규제 개선 및 갈등과제를 신속히 개선·점검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였다.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하여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전문가 주도의 '규제심판제도' 등 이번 정부 신설기구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제도적 기반을 더욱 안정화시켰으며, 기존에 운영 중이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은 현장성, 전문성, 조정력 등을 한층 향상시켰다.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고질적 덩어리 규제들을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불편·부담을 야기하는 민생규제 등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3년도에 발족된 킬러규제 혁파 TF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에 활력을 더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찾아내고, 혁신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체계에 기반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참고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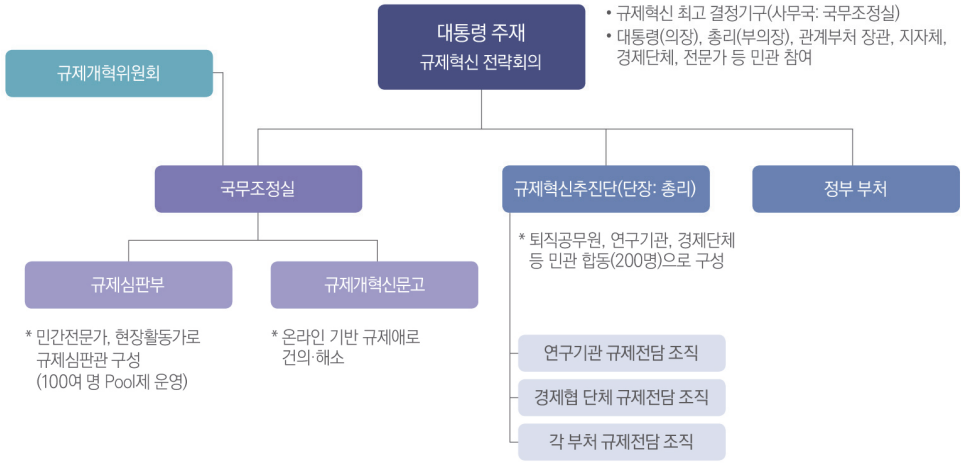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자문기구 구성·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 기술규제위, 비용분석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자문기구 구성·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규제심판회의 • 킬러규제 혁파 TF
• 규제개혁기획단 – 덩어리 규제 개혁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 규제애로 개선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 규제혁신추진단 – 덩어리 규제 해소
• 규제신고센터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2 규제혁신전략회의

| 신우철 사무관 | Tel. 044-200-2397

1.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요

현장의 강한 규제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지, 환경, 그린벨트 등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규제'에 대한 규제개선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기반으로 상징적 규제들을 혁파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다('22년).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규제혁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비상설 회의체로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기업·경제단체 및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기반하여 사회갈등, 장기 미해소 규제 등 상징적이고 중요한 규제혁신과제를 검토·개선하고 있다.

2.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실적

새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두 차례(8.26., 11.9.), 2023년 두 차례(3.2., 8.24.), 2024년 세 차례(1.22., 2.21., 11.28.) 등 총 7차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겸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단말기유통법은 폐지 후 보조금 경쟁을 허용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웹툰·웹소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겸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허브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GB)을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탄력적으로 해제하고, 환경평가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이 마련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지이용 개선으로 수직농장 설치와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 허용 방안,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활용방안과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촌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방안도 발표하였다.

11월 2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낡은 토지이용규제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관·연 TF를 구성하여 336개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부담금 면제,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촌특화지구 등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여의도 면적의 12배), 상수원보호구역 공공건축물 내 음식점 허용 등 147건의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마련, 발표하였다.

매 전략회의는 현장 중심 규제 해결이라는 전략회의의 의의에 맞게 안건과 연관된 규제현장(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진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민생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핵심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규제개혁위원회

| **박도연** 사무관 | Tel. 044-200-2416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1.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24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1인, 정부위원 7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24.12.25. 현재) **|**

구분	성명	현직
위 원 장 (2)	한 덕 수 유 일 호(민간위원장)	• 국무총리 •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정부위원 (7)	최 상 목 고 기 동(대행) 안 덕 근 오 영 주 방 기 선 한 기 정 이 완 규	•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법제처장
민간위원 (11)	강 영 철 고 동 수 박 선 규 박 익 수 오 균 우 윤 석 이 민 창 이 인 호 이 혁 우 조 원 동 정 진 경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 일정실업 부회장 • (사)더불어꿈 대표이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연구원 원장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ST거래 대표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회의 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입법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 운영실적

2024년에 규제개혁위원회는 본회의는 총 20회(555회~574회) 개최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총 66회 개최(경제분과위 36회, 544회~572회, 경제2분과위 7회 포함 / 행정사회분과위 30회, 583~612회)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총 42개 안건을 논의(의결 11건, 보고 31건)하였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총 87개 안건(의결 85건, 심의 2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총 84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그 중 중요규제 115건('23년 80건)에 대한 심사 결과 95건('23년 65건)을 개선·철회 권고하였으며, 82.6%의 개선권고율(개선·철회권고수/중요규제수)을 달성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송경준** 사무관 | Tel. 044-200-2398
| **노수빈** 사무관 | Tel. 044-200-2443

1 구성 및 기능

(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4.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5~6인, 정부위원 4~5인 등 9~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과위원회 구성 |

(2024년 12월 기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분 과 위 원</th><th>소 관 부 처</th></tr>
<tr><td rowspan="2">경제</td><td>민간위원</td><td>조 원 동(분과위원장)
강 영 철
고 동 수
박 익 수
우 윤 석
이 혁 우</td><td rowspan="2">•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 조달청
• 우주항공청
• 산림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금융감독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위원회
• 관세청
• 통계청
• 농촌진흥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td></tr>
<tr><td>정부위원</td><td>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td></tr>
<tr><td rowspan="2">행정사회</td><td>민간위원</td><td>오 균(분과위원장)
박 선 규
이 인 호
이 민 창
정 진 경</td><td rowspan="2">• 교육부
• 통일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국가보훈부
• 재외동포청
• 병무청
• 경찰청
• 기상청
• 질병관리청
• 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무조정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원회
• 검찰청
• 방위사업청
• 국가유산청
• 소방청
• 국가인권위원회
• 대통령경호처</td></tr>
<tr><td>정부위원</td><td>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제처장</td></tr>
</table>

2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 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 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실적

경제분과위는 총 36회(544회~572회, 경제2분과위 7회 포함) 개최되었으며, 12개 부처의 총 46개 안건(의결 45건, 심의 1건)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69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3건, 개선권고 48건, 철회권고 3건, 부대권고 5건(기존 규제 개선 1건 포함)이었다. 한편 행정사회분과위는 총 30회(583회~612회) 개최되었으며, 5개 부처의 총 41개 안건(의결 40건, 심의 1건)을 처리하였다. 그 중 40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47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7건, 개선권고 31건, 철회권고 4건, 부대권고 5건이었다.

3.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 박도연 사무관 | Tel. 044-200-241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①비용분석위원회('14.8월), ②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16.3월), ③기술규제위원회('17.9월) ④지방규제혁신위원회('23.4월) 등 4개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용분석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감축제 적용여부, 비용검증의 적정성 판단, 비용·편익분석 결과 파급효과 큰 규제의 검증 및 비용감축제의 전문적 연구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위원장) 및 4명의 민간 전문가(KDI·KIPA 센터장 2명 당연직)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산업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자문기구이다. 산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건별로 위원장 및 위원(4~10인)을 선임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를 청취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 확대 등 산업 전반의 복잡·다양화되는 기술규제를 검토·조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20여명 이내로 구성(공동위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민간전문가 1인)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인증제도 정비·개선방안 마련 등의 전문적인 자문·검토를 실시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한 지방규제 자문기구로 민간전문가 및 주요 중앙부처를 포함하여 약 15명 내외로 구성(공동위원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민간전문가 1인)하여 지자체에서 건의한 정부규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자체 규제 등의 심의·조정 및 자치법규 규제정비방안 등을 검토한다.

4. 규제개혁신문고

| **고명수** 사무관 | Tel. 044-200-2634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에 규제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14.3월 신설)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민생·경제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범정부 규제혁신 대표창구로써 2024년 한 해 동안 총 3,702건의 규제 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23년 3,169건 대비 약 14% 증가).

4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강주연 사무관 | Tel. 044-200-2452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제3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2024년 12월말 현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1국 3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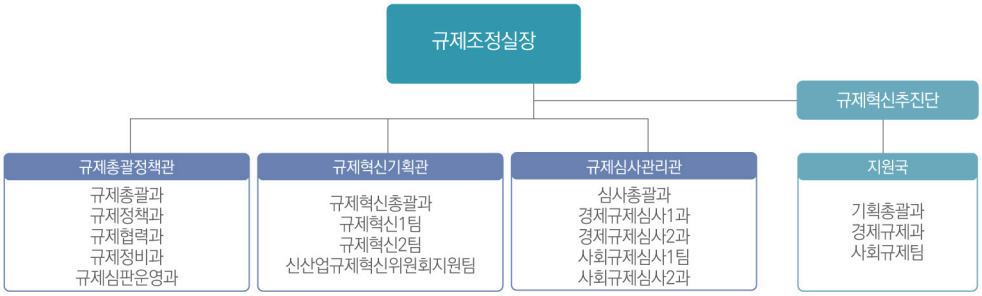

1.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제조정실 업무와 규제혁신 정책의 기획·추진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 신설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심판제도를 운영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관리한다.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와 함께 규제혁신 홍보 및 교육,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조정·협의, 규제개혁 국제협력, 규제혁신 평가 및 포상 등을 주관하고 있다.

2. 규제혁신기획관

규제혁신기획관은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규제심사관리관

규제심사관리관은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신설·강화 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중소기업·경쟁제한·기술규제 영향평가, 규제비용감축제, 사후규제영향분석,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규제혁신추진단

| 정인희 사무관 | Tel. 02-3778-3411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여 '22.8월 출범하였다.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단위의 접근으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전문가, 전직 공무원, 국책 연구기관 등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하여 지난 2년반 동안 운영되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출범 이래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 공무원, 경제단체, 연구기관)과 지원국(부처, 지자체 파견 인력 등)으로 구성(총 140여 명)되어 운영되었다. 공개모집절차(1차 '22년 6~7월, 2차 '23.7월, 3차 '24.7월)를 거쳐 선발된 90여 명의 전직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온 20여 명의 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도 전문위원으로서 추진단을 함께 구성하였다. 그 외에는 현역 공무원 20여 명이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국의 일원으로 파견되었다. 전문위원들은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간담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하였고, 지원국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였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 개선과제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각 구성원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의 매트릭스 조직으로서 유연하게 운영되어 왔다. 한편, 추진단은 장·차관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30여 명을 자문단(비상근)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각 과제별 자문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전문성 및 정책경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문위원들은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있어 다양한 조언을 제시하였고, 규제혁신추진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다.

'24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3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인증규제 재검토 등)을 마련하였다. 각 덩어리 규제는 적게는 2~3개, 많게는 100여 개의 세부 개별 규제로 구성되어 있어 금년 중 발표한 개별 규제 개선안은 총 265개에 달했다.

참고 규제혁신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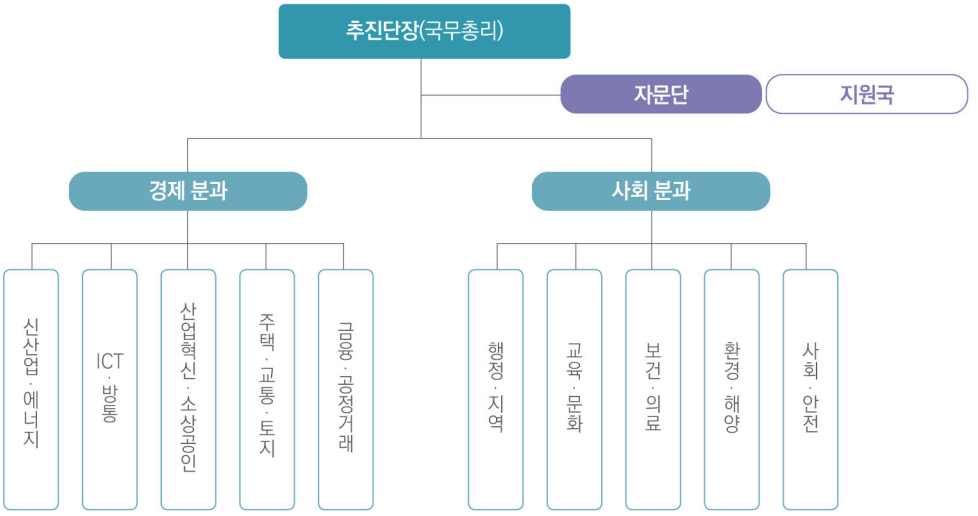

6 규제심판부

| 이아람 사무관 | Tel. 044-200-2557

1. 규제심판제도 개요

민간주도 규제개선심의회 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 플랫폼으로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규제심판제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와 소관부처의 의견청취, 국민여론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토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규제심판제도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공론화하여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등 개선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처에서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하기로 한 규제를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규제개선을 권고하고, 때로는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합리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이 온라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2. 규제심판부 구성

규제심판부는 경제·사회·문화·행정·보건·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전문성과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근거 규정인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2.8.3. 시행)'에 따르면 규제심판위원은 15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1기 규제심판부는 100명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였다. 관련 분야에서 학식을 쌓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인,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표,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규제심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제한 없음)이며 1기 규제심판부 위원의 경우 2022년 8월 3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활동하였다. 현재 2기 규제심판부 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2일까지이며, 총 116명을 위촉하였다.

규제심판회의 개최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심판부 위원 명단(Pool제)에서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이 회의에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지정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제심판부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이 담당한다. 규제총괄정책관 소속 규제심판운영과에서 규제심판과제 선정, 규제심판부 구성, 규제심판회의 개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 규제심판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규제심판 실적

규제심판부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24.1.1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규제 합리화('24.4.9.), △즉석판매 농산가공품의 농산물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24.4.26.),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24.5.31.),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승선대상 확대('24.7.5.), △렌터카 차령 등 규제완화 ('24.8.27.) 등 총 6건의 규제를 개선·권고하였으며, 이중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과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등 2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였다. 이 밖에도 '22년 8월에 출범한 규제심판부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규제개선 관련 각 분야별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위원 116명을 위촉하여 제2기 규제심판위원을 구성('24.8.3.)하여 운영했다.

7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부처별 자체규제개혁위원회

| 윤현정 사무관 | Tel. 044-200-2431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관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규제개선위원회 등 자유롭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민간위원장 원칙, 필요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처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강주연 사무관 | Tel. 044-200-2452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관의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과장급이며, 주요 업무는 주요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및 이행·점검, 규제 심사 및 규제영향평가 실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으로 소관부처의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별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라는 명칭 이외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규제혁신 관련 정책과 성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정책·홍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운영중이다.

3. 부처별 규제혁신 TF

| **강주연** 사무관 | Tel. 044-200-2452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는 자율적인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별 규제혁신 TF가 구성되었다(국무총리 지시사항, '22.5.24 규제혁신장관회의).

이에 따라 38개 부·처·청에서는 차관 또는 실·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를 설치하여 부처별 규제혁신과제 및 타부처와 연관된 덩어리 규제의 발굴·개선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처내 규제법무담당관실과 실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지원하는 등 부처 내 규제혁신 업무의 조율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부처별 규제혁신 TF |

연번	부처명	TF 팀장	구성원
1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혁신팀장 등
2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유관기관, 전문가 등
3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각 실 총괄과장 등
4	외교부	조정기획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여권과장 등
5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등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 검찰국 등 각 주무과장
7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각 국실 총괄 부서장 등
8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
9	문체부	1차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0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1	산업부	산업부 1·2차관	산업정책관, 에너지정책관, 정책기획관 등
12	복지부	제1차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13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4	고용부	차관	실·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5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법무감사담당관, 청소년정책과장 등

연번	부처명	TF 팀장	구성원
16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정책과장 등
17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8	중기부	차관	실·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9	보훈부	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상정책과장 등
20	방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장 등
21	공정위	부위원장	혁신행정규제법무담당관, 시장구조개선과장 등
22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23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장 등
24	개보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장 등
25	인사처	차장	기획조정관, 인사제도 담당 국장 등
26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법령정비과장 등
27	식약처	차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28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소비세과장 등
29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통관국장 등
30	조달청	차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31	경찰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무 부서장 등
32	농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농자재산업과장 등
33	산림청	청장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등
34	특허청	차장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35	해경청	차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경비과장 등
36	질병청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감염병정책과장 등
37	원안위	기획조정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 등
38	새만금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킬러규제 TF팀장 등

4. 부처별 옴부즈만 제도

| 윤현정 사무관 | Tel. 044-200-2431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위촉하며,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며, 경영상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을 해결·지원하는 창구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애로사항 조사 및 처리,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자유특구옴부즈만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실증계획에 따른 운영상황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특구별로 옴부즈만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별로 옴부즈만을 위촉, 현재 34개 규제자유특구에 총 22명이 지정되어 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6조) 규제자유특구옴부즈만은 규제자유특구 정책제도 개선사항 의견수렴,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 제안, 특구별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향 제안 등의 역할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정책과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부처-지역-현장 간 정책·사업·안전대책 등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은 융합기술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 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다.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은 특히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고충 상담·처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규제·애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폭넓은 산업융합 규제 및 애로 발굴의 선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 최원진 서기관 | Tel. 044-200-2456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규제혁신과를 두었다.

지방규제혁신과는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자문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운영(매월)하고 있다.

* 총 15명: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등)

- 지방규제혁신과 주요 업무: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관리, 그림자규제 정비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9 민간 규제소통 창구

| 고명수 사무관 | Tel. 044-200-2634

1.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는 소관 행정기관에 규제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개혁신문고('14.3월 신설)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민생·경제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범정부 규제혁신 대표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규제개혁신문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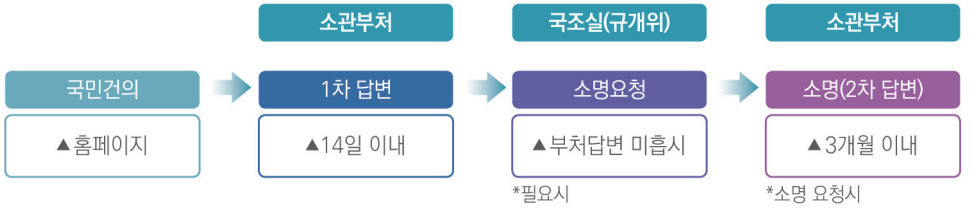

2.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 연계 운영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22.11월 신설)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民)과 관(官)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전국 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로 접수된 기업·현장의 규제애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소관부처와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의를 통해 건의 기업에 회신한다. 한편, 투자애로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 대한상의 현장건의 접수·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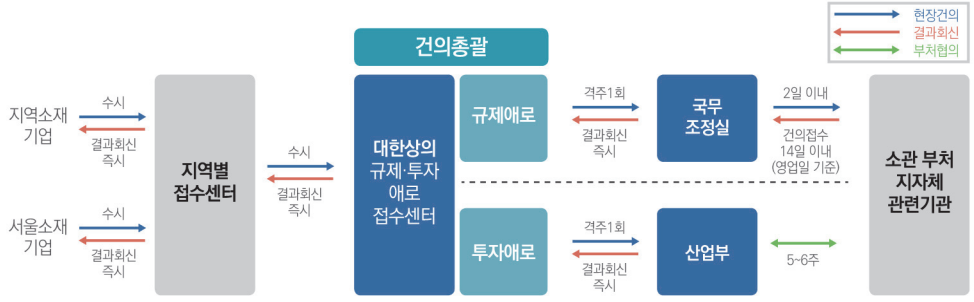

3. 규제연구센터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2014년 6월, 규제비용감축제(구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 분석 검증을 수행해 왔다. 2023년 5월에는 각 연구센터에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팀(KDI 재검토정책팀, 한국행정연구원 사후영향평가팀)을 구성하였고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조하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향후 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 규제연구센터 현황 |

	KDI 규제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기 능	•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사후규제영향분석	•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사후규제영향분석
인 력	• 총 25명(소장: 양용현)	• 총 24명(소장: 홍승헌)
조 직	• 3팀(제도연구, 분석평가, 재검토정책)	• 3팀(제도연구, 비용분석, 사후평가)

2024
규제개혁백서

02 기존규제 개선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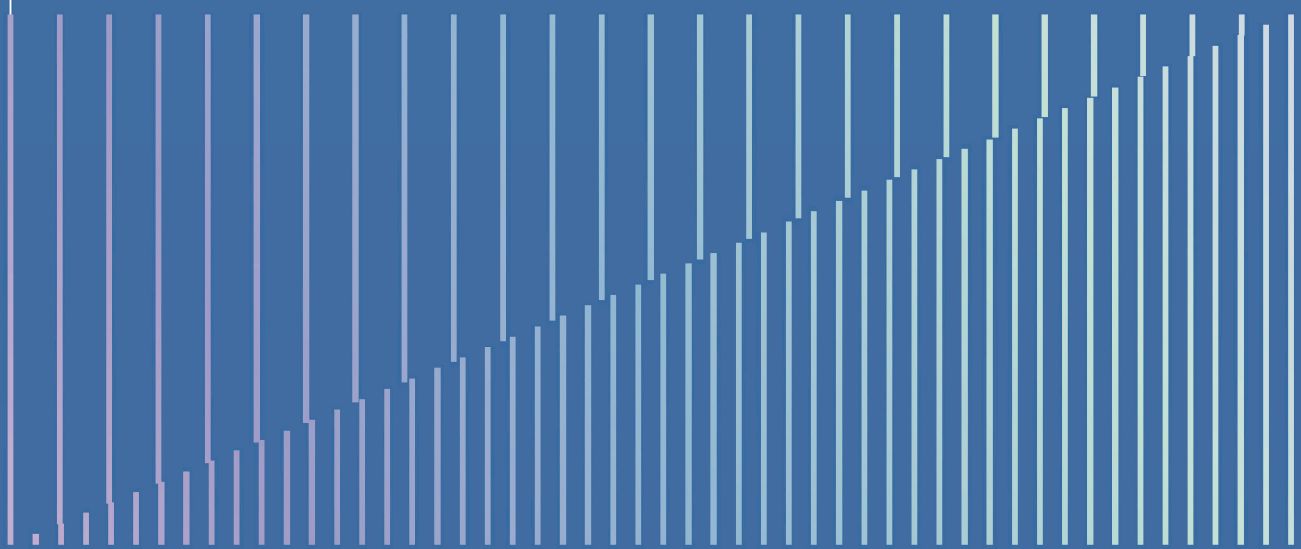

1. 2024 규제개혁 추진성과(총평)
2. 핵심규제 혁파
3. 민생규제 개선
4. 신산업 규제혁신
5. 덩어리 규제개선
6. 규제심판제도
7. 규제개혁신문고
8. 규제혁신 소통
9. 규제개혁 국제협력

02
기존규제 개선성과

1 2024 규제개혁 추진성과(총평)

| 강주연 사무관 | Tel. 044-200-2452

정부는 2024년에도 '규제개혁이 곧 성장'이라는 인식 하에 경제활력의 핵심동력인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였다. 금년은 정부 3년차로 대통령 또는 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38개 '부처별 규제혁신TF', 민관 협력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제' 등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핵심·갈등과제를 신속히 개선·점검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불편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범정부적 규제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핵심규제를 혁파한 결과,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4,300여 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중 2,900여 건의 과제는 개선을 완료하였다. 또한 규제혁신 완료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 과제중 경제효과를 산출 가능한 일부 과제를 분석한 결과, 향후 3년후까지 148조 원 규모의 투자창출, 매출증대, 부담경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대통령·총리의 강한 리더십 바탕의 규제혁신전략회의(1.22., 2.21., 11.28.)와 현안관계장관회의(2.27., 7.18., 8.1., 9.26., 11.21.)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절실히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규제에 대해 신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단통법 폐지 등 생활규제 개선방안, 민관 협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국민 생활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등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삶의 질과 기업의 경제활력을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처 자율적 규제혁신을 위한 부처별 규제혁신TF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국민생활, 투자·일자리, 중소기업 등 분야별 다양한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민관 협력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제'도 적극 운영하여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법정 인증규제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동안 영업신고 없이는 일체 금지되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 관련 이견조정 및 의견제출 및 권고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업무처리절차(훈령)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확대하였다. 2024년에는 37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주유소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등 신산업 기업·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술발전 변동이 큰 신산업 발전 양상에 대응하여 3년 단위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산업 혁신생태계 달성을 가속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폭넓게 적용하여 중요규제 대상을 2023년에 비해 확대(80건→115건)하였으며, 개선·철회권고 건수도 상향(65건→95건)하여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규제비용 감축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여 약 8,800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효과를 달성하는 등 범정부 규제품질의 합리적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추진 노력을 단순히 총량적인 규제개선에서만 그치지 않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함께 이어갔다.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경제단체·연구원 등과 릴레이 회의를 실시하고,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60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정책의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하고자 하는 소통 기반의 규제혁신 노력도 경주하여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에도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다.

2 핵심규제 혁파

| 박도연 사무관 | Tel. 044-200-2416

1. 킬러규제 혁파

1 추진배경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킬 핵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자 했다.

2 개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킬러규제 혁파 TF*'(23.7)는 같은 해 7월에 15개, 12월에 10개의 킬러규제 분야를 선정하여 총 25개를 킬러규제로 지정했다. 정부는 각 소관 부처별로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2년간 규제혁신 전략회의, 현안장관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 참석: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前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참고 25개 킬러규제 목록

분류	킬러규제명
입지규제 (5)	①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②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③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④접경지역 입지규제 ⑤해양·섬지역 규제
진입규제 (7)	①금융분야 진입규제 ②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③인증규제 ④조달규제 ⑤불합리한 시장구조 규제 ⑥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⑦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신산업규제 (5)	①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②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③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④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규제 ⑤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환경규제 (5)	①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②민간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③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④폐자원 등 재활용 규제 ⑤환경배출 규제
노동규제 (3)	①외국인고용 규제 ②산업안전 규제 ③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규제

3 주요 성과

킬러규제 정비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지난 1년 반 간 추진되었다. 2023년에는 1차로 선정된 15개 킬러규제 중 산단 입지규제, 금융분야 진입규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고, 2024년에는 2차로 선정된 분야를 포함해 전체 25개 분야의 킬러규제 정비를 완료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접경지역 입지규제 완화

국방부는 2024년 2월 26일 민생토론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군 비행장 주변 287㎢, 접경지역 38㎢, 민원지역 14㎢)를 해제했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이며, 이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나) 인증 관련 킬러규제 혁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024년 2월 27일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 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총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189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실효성이 낮은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8개를 통합했다. 또한 인증 비용·절차 간소화 등 66개 인증을 개선하고, 명칭만 인증이거나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 인증 91개를 지정제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연간 1,527억 원의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조달 관련 킬러규제 혁파

조달청은 연간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본격적으로 혁파했다. 특히 다수 부처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 미해결 상태였던 17건의 핵심규제를 개선했다.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신인도 제도를 대폭 정비해 연간 1.6만 건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했다.

(라) 토양 관련 환경배출규제 혁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2024년 12월,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기준(1지역: 400mg/kg,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을 각각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었던 토양불소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이 외에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내국인 도시민박 등 관광 분야 신산업 규제 등의 킬러규제도 적극 개선하였다.

참고 **주요 킬러규제 혁파방안**

접경지역 입지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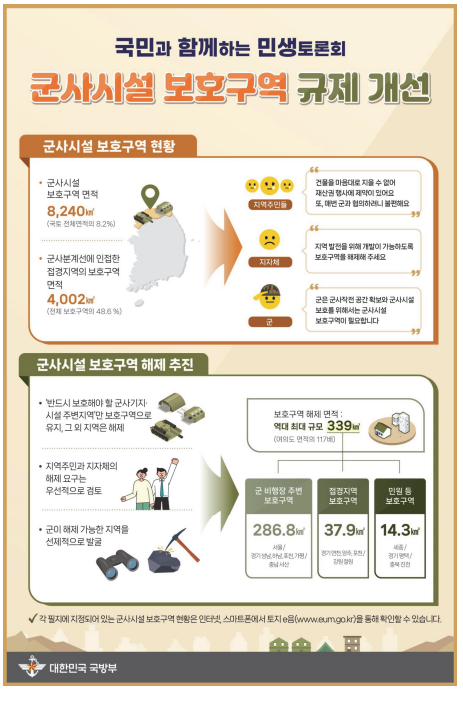

인증규제 개선



공공조달 킬러규제 개선



2.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정재영** 사무관 | Tel. 044-200-2407

1 추진배경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따라, 8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방안을 재추진하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4.3.27.)에서 발표했다.

참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4.3.27.)



2 추진경과

정부는 경제단체·지자체 등에서 건의받은 과제와 각 부처가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추진했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했다.

특히, 규제혁신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고,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지원 및 완료('24.5.~'24.7.)했다.

3 분야별 주요내용

첫 번째로, '투자·창업 촉진'과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단지내 공장의 경우, 2023년 용적율을 대폭 완화(350→490%) 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산단의 고도제한을 120미터에서 150미터로 개선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 참여에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시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를 우선 허용했다.

두 번째로, '생활규제 혁신'을 위해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여, 국민들의 검사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가족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돌보는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직접 돌봄 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복주택 내 청년·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을 6년→10년으로 연장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했다.

세 번째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관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통행하기 위해 농어촌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소상공인의 하천구역 토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25%를 감면했다. 또한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미이수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과중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췄다.

마지막으로,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신설일을 기준으로 이미 선임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신설된 요건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탈자 수 만큼 고용인원에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고하면 고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참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4.3.27.)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 주요 내용

- **대내외 경제 상황 + 국민·기업 현장 목소리 ➡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기존 정책 근간 유지 하에 일정 기간 규제 완화·중단·특례 등 조치(2009년, 2016년 기추진)
- **4대 분야, 총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확정** — 현 정부 내 '약 4조 원+α'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투자·창업 촉진 + 생활규제 혁신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경영 부담 경감

※ 한시적 규제유예와 별도로 현장 건의과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병행 (83건)

☑ 주요 사례

1 투자·창업 촉진 : 77건 (한시 : 47건, 선제 : 30건)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선제)

용적률 완화 조치(350%->490%)
실효성 확보 위해 120m
➡ 150m로 완화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규제' 완화 (2년)

❶ 산단 內 센터의 공공입찰 참여
공공입찰 참여에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시
➡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 면제

❷ 대학·연구기관 內 센터의 생산품 판매
입주기업의 생산품(식품, 의료기기)
➡ 전자상거래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수출유망기업 우선 입주 기준 완화 (2년)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50%
(제조업, 유턴기업)
➡ 40%로 완화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 49건, 선제 : 16건)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선제)

4년 ➡ 5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2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급 원칙
➡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동거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급



농어촌 군지역에 대형 승합택시 운행 허용 (2년)

10인승 미만 택시만 가능
➡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허용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구제 (3년)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기간 2년
➡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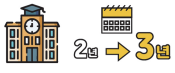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최대 거주기간 6년(유자녀 10년)
➡ 10년(유자녀 14년)



국무조정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 주요 사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 56건, 선제 : 10건)

✓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❶ 농어촌 도로점용료 10%
➡ 50% 감면 (2년)

❷ 하천 점용료
➡ 25% 감면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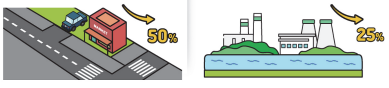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골목상점가 지정기준 자율화 (선제)

'소상공인 점포 밀집기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중기부 협의)
➡ 지자체 상황에 맞게 '자율시행 원칙'으로 전환



✓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위생교육(매년 3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60만 원
➡ 20만 원으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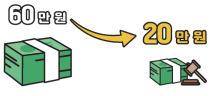

✓ 여행업 등록기준 및 휴업기간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❶ 국내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1.5천만 원)
➡ 50% 감면



❷ 여행업 휴업
숙기간 보증보험 유지
➡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유지



4 경영 부담 경감 : 138건 (한시 : 111건, 선제 : 27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적용 유예 (2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력 자격요건
신설 (24년 3월)
➡ 기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적용 유예



✓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❶ 외국인 고용 허용
전년도 사업장 이탈 인원만큼
비자발급 제한
➡ 외국인력 소재 불명 신고 시, 면제 (1년)



❷ 호텔접수 사무원 고용
전년도에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시, 가능
➡ 실태조사 후 기준 완화 (2년)



✓ 부담금, 사용료 등 납부 부담 경감

❶ 농지보전부담금
5년 내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면제받았던 부담금 소급
➡ 폐지 (선제)



❷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 120일 이내로 연장 (2년)



국민의 뜻을 받드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

규제혁신으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3. 토지이용규제 개선

| **신우철** 사무관 | Tel. 044-200-2397

1 추진배경

도입·운영중인 토지이용규제가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투자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낡은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폭적인 토지규제 혁신에 집중하여 효율적 국토 활용과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2 개요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면적인 토지이용 규제 혁신을 추진하였다.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는 농지와 산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농촌활력 증진과 산업화를 논의했다. 이어 11월 28일 대전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지역·지구 통합 및 효율적 국토 활용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두 차례의 회의 모두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과 기업 투자 장애를 제거하여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3 주요 성과

(가) 개발제한구역(GB), 농지이용규제 혁신

2월 21일 열린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겸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는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이 집중 논의되었다. 그린벨트는 본래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으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GB 해제총량에서 제외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신규 GB)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회의가 열린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가 GB로 묶여 있으며, 그중 81.2%가 개발이 어려운 환경평가 1·2등급지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울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해지고, 기업투자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지규제 역시 과학기술 발전과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편되었다. 농업진흥지역 내 약 3ha 미만의 자투리농지 약 2.1만ha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 체육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팜 설치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업 고부가가치화와 농촌 생활 인구 증가를 도모했다. 특히, 수직농장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소멸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 주요 GB·농지 이용규제 완화방안





(나)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11월 28일 대전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전국의 336개 지역·지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 (대통령 지시사항, 2.21, 민생토론회) 336개의 토지이용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철폐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였고,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업 투자 촉진, 지역 발전, 국민 생활불편 해소, 부담경감에 기여하는 147건의 토지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게 하였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일정 요건 하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연간 8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공공시설로서, 음식점 허용을 통한 방문객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89년 지정한 이후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는데도 여전히 전용·이용제한 규제를 받고있는 사유산지의 규제를 해제해서 여의도 12배 면적인 3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산지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중복지정을 해제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의 폐업 시설에 대해 영업재개를 허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시행령 개정과 법률 발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해소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전반을 포함한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속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장려하고,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부담·불편 경감을 지속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 주요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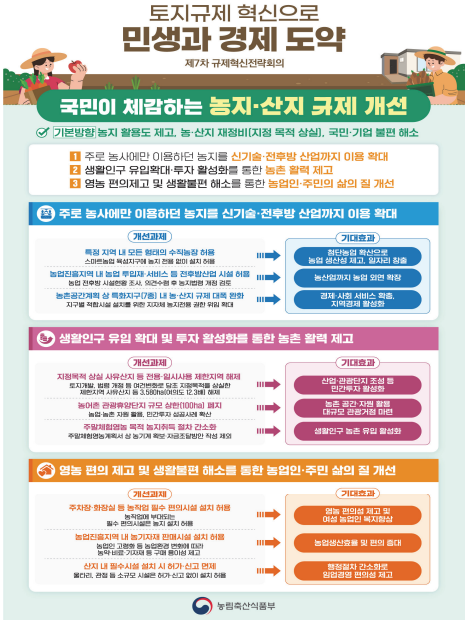



4. 경제단체 건의 규제개선

| **박소정** 사무관 | Tel. 044-200-2666

지금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여전히 높고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에는 체감도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경제단체를 통해 접수된 과제 등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9월부터 국조실과 기재부 등 경제규제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단체 건의과제를 공동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현안관계장관회의(2024.11.21.)와 경제관계장관회의(2024.12.5.)를 통해 발표했다.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선 사례 |

❶ 한시적 화물운송 총량규제 완화 (화물차 신규 증차 허용)[국토부]

현황 ▸ '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가 엄격하게 통제(등록→허가제)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가구배송 등 편법·불법 사례 지속 발생

개선 ▸ 운송사업자 직영조건으로 1년 한시로 화물자동차 공급 확대 → 가구배송 등 다양한 배송 수요에 맞춰 화물자동차 공급 확대

❷ 중소기업의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개선[환경부]

현황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 시에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함

개선 ▸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화장지 제조업체의 불필요한 검사 이행으로 인한 부담 완화

❸ 중소기업의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개선[환경부]

현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운영 시, 불합리한 비용 분담, 공동 제출자료 선택 등 분쟁 발생

*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등록하여야 함(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선 ▸ 비용 부담 원칙 고도화, 분쟁 조정 신청 주체·사유 확대, 제출유예제도 도입 등 협의체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❹ 영세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환경부]

현황 ▸ 통합허가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나, 인력난으로 자격기준에 맞는 구인이 곤란

*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의 대기·수질 배출규모가 2종 이상인 사업장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

개선 ▸ 일정 배출규모 이하 영세기업의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의 공동방지시설의 인력의 선임을 허용하여 기업 부담 완화 → 영세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부담 완화

❺ 수소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등 인정요건 완화[산업부]

현황 ▸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사업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는데,

- 총매출액이 큰 1,000억 이상의 경우 수소매출액 비중 10% 이상이 일률적용되어 수소전문기업 인정이 어렵고,
- 총매출액이 작은 일부 구간에서 오히려 더 엄격한 매출액 비중 요건이 적용되는 역진현상 발생

개선 ▸ 성장성 등 혁신 역량 및 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 고려하여 기준 설정, 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 추가 → 수소관련기업 지원 강화로 수소 분야 경쟁력 확보

❻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축소[산업부]

현황 ▸ 항공 기업 K社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계획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업황 둔화로 종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자금액 달성에 실패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이 제한*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받은 후 투자금액 달성률(70%) 미달 시 3년간 재신청 제한

개선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완화(3년 → 2년)하여 지방투자기업의 신규 시설투자 적극 지원 →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촉진

❼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산업부]

현황 ▸ 미음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내 물류 관련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풍력발전부품의 원활한 수출에 차질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서 국내 유일의 풍력발전부품단지 위치

개선 ▸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등 물류 관련 업종* 입주 허용 → 미음산업단지 내 전담 물류업체 입주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정재영** 사무관 | Tel. 044-200-2407

1 개요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영업활동 제한, 서비스 가격 결정 개입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유도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에 대한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언론·국회·사건 처리 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발굴·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여부 및 개선범위 등을 확정, 그 결과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계기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참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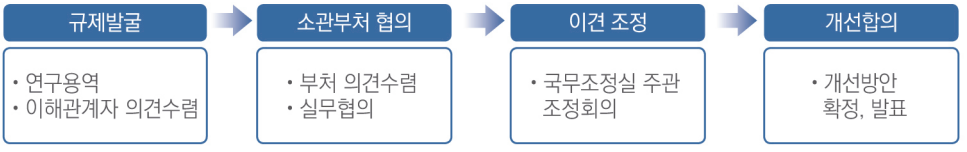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주요내용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은 ▲국민후생 증대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공공입찰 기준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의 4개 분야, 총 22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12.5.)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먼저,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했다. 친환경 고급형 택시로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을 개선하여 최근에 출시되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관리양곡의 도정은 정부가 지정한 120개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만 가능했으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정부관리 양곡 도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개선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성능·상태점검부에는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 외 수리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 주행거리 조작 등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①'사고이력'이 아닌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 ②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 및 계기판 사진도 추가하도록 하여 중고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세 번째로,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규·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및 판로를 확대하였다. ▲우수조달물품 제조 협업기업 확대(1개→복수)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대표자 신용정보 관련 자료제출의무 삭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제한 완화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했다. 화면 대각선 길이 17cm 이상의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보다 강화된 인증(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태블릿 PC의 화면크기 기준을 변경(17→20cm)하고, 향후 태블릿 PC의 위해도 평가를 통한 안전 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정부24 연계)하여, 출판사의 개설 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전체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1	■ **고급형택시 하이브리드 차량 진입 허용**(국토부) 현행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 또는 출력(160kw) 이상 차량만 가능 → 최근 출시중인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그랜져, 스타렉스 등) **고급택시 운행 불가** 개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 **신설**
2	■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제한 완화**(농식품부) 현행 정부양곡의 도정은 정부가 지정한 도정공장(120개)에서만 가능 개선 정부관리양곡 도정시장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도정시장 경쟁 촉진
3	■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농식품부) 현행 **사료기준**은 양축용 동물 중심의 **원료 기준***으로 정립되어 **40여년**간 동일 체계 유지 * 현재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로 구분 개선 원료 기준의 사료체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료 분류체계 마련**
4	■ **의료기기 수리 허용범위 확대**(식약처) 현행 **의료기기 수리** 시,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 개선 의료기기 수리 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대상 및 관리방안 등 마련**

(나)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1, 2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소비자 신뢰성 제고**(국토부) 현행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 표시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 주행거리 조작 문제 등 발생 개선 ❶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 대신 **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 표시 ❷현재 주행거리와 **'자동차365' 상 주행거리도 함께 표시**(계기판 촬영사진 추가)
3	■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수단 허용**(복지부) 현행 모바일 신용카드 등 모바일 성인인증수단 허용 여부 불분명 개선 **모바일 성인인증수단 허용 명확화**로 불확실성 해소, 관련 사업제약 완화
4	■ **전기 중고차 판매승인 절차 개선**(지자체) 현행 전기차 의무 보유기간 내 중고차 판매 시, 지자체 승인신청, 결과 확인 방법 등 불편 개선 **지자체 누리집 내 별도 페이지 개설**로 승인절차 안내·신청, 결과 확인 온라인 처리, 요구서류 간소화
5	■ **위생용품 리필판매 규제 완화**(식약처) 현행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위생용품을 리필**해 가는 판매점(제로웨이스트숍)의 경우에도 **기존 제조업 규제 적용** 개선 리필매장을 위한 **별도의 영업을 신설**하는 등 규제개선

(다) 공공입찰 기준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1	■ **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산업부)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입찰에서 **사업 수행실적**을 **'상대평가'** 방식으로만 평가하여 기존 대형업체에 유리 개선 발주청이 사업특성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
2	■ **우수 조달물품 협업기업 복수 참여 허용**(조달청) 현행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제품 제조 시, **협업기업을 1개로 한정**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보 곤란 개선 우수 조달물품 **협업기업 수를 복수로 확대**
3, 4	■ **철도차량 제작감독 용역입찰 평가기준 개선**(코레일, SR) 현행 고속철도차량 제작감독 용역입찰에서, 수행실적을 고속철도차량 용역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존 실적이 있는 업체(사실상 1개)가 유리, 신규기업 진입제한 개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간격을 축소**하여, 실적이 부족한 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5	■ **에어컨 세척서비스 다수공급자 계약 자격요건 완화**(조달청) 현행 나라장터 에어컨 세척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에서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 관리사'자격**을 요구하여 다수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 개선 에어컨 세척서비스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민간자격증 보유자 또는 제조사의 에어컨 세척 교육 이수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6, 7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중기부) 현행 생산시설·인력 등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과도**하거나, 신기술(공법)로 생산된 제품은 **기존 현장실사** 등으로 확인이 곤란 개선 ❶일부 제품(지주식천막, 폴리에스테르직물)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 ❷공인기관의 신기술·신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은 **'제조공정표' 등으로 갈음**

(라)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

연번	과제 및 개선내용
1	■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개선**(국가기술표준원) 현행 화면 대각선 길이 **17cm이상 스마트폰**은 태블릿 PC로 분류되어 수입업자는 당초 스마트폰 공급 업자가 받은 공급자 적합성확인 외에도 **별도의 안전인증 필요** 개선 **태블릿 PC**의 **화면크기 기준을 조정(17cm→20cm)**하고, 태블릿 PC 위해도 평가를 거쳐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재조정 검토
2	■ **수소충전소에서 충전가능한 용기 제한 완화**(산업부) 현행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서는 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며 자동차에 탑재되지 않은 수소저장시스템 단위 용기에는 충전 불가 개선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는 **연구개발 전용 충전소**에 대하여 **충전대상 제한 완화**
3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제출서류 완화**(중기부) 현행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은 법인 신용정보 관련 서류 외,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 등에 관한 **서류도 제출** →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대기업 등 기업 참여가 주저되고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 개선 법인의 경우, **법인 신용정보 관련 서류만 제출**
4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기준 완화**(국토부) 현행 일정 공사기준 이상(**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인력배치, 실험실 설치가 의무화되나, 공사기준이 그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업자 부담 가중 개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준 공사금액 **현실화 검토**
5	■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문체부) 현행 출판사의 변경신고 시 방문 접수만 가능 개선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정부24 연계)
6	■ **가설건축물(천막) 설치면적 제한 완화**(지자체) 현행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서 가설건축물 중 천막 설치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규제 편차 발생 개선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 등에 한해 조례상의 천막 설치 면적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

3 민생규제 개선

| 신우철 사무관 | Tel. 044-200-2397

1.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규제 개선을 통한 생활규제 혁신

1 추진 배경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규제는 오랜 기간 현실과 괴리된 채 유지되어,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2 개요

1월 22일, 정부는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전문가를 초청해 제5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겸 제5차 "생활규제 개혁"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 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며, 두 번째 논의 안건은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와 영세 서점 할인율 유연화, 세 번째 논의 안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삭제와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에 관한 것이다.

3 주요 성과

(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경감과 시장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14년에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 감소와 스마트폰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보조금 지급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도 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10년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도서정가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콘텐츠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산업 콘텐츠는 기존 도서와는 다른 유통 구조와 소비 패턴을 지녔음에도 도서정가제의 일괄적 적용으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웹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 제한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촉진되고, 소비자 부담이 완화되며, 영세서점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작자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 보장에도 힘쓸 예정이다. 12월 현재 출판법 개정안은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국민의 쇼핑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 배송 제한이 적용되었으나, 국민 생활의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을 추진하며,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여 지역 간 배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국민 쇼핑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의 쇼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개선방안들은 국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규제를 통해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고 국민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12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 산중위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한 법안 통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고 국민생활 밀접 규제 혁파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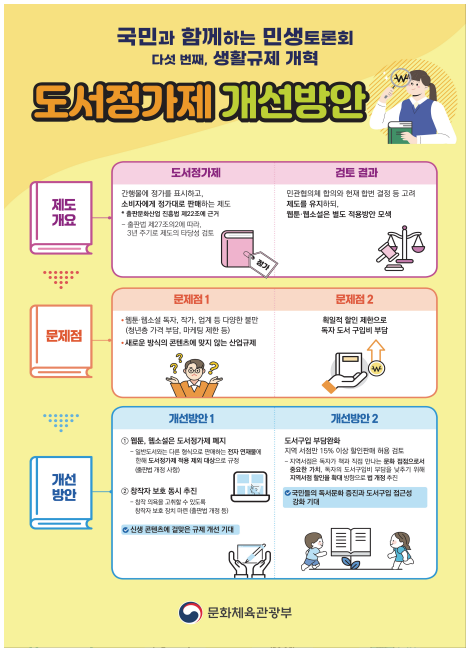



2.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 **정재영** 사무관 | Tel. 044-200-2407

1 추진 배경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24.3)의 분야별 규제특례 마련에 이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특례를 추가적으로 마련, 제4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24.7.18)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 추진경과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했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여전히 적용되어 특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 협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총 26건의 규제 특례를 신설했다.

3 주요내용

먼저 '정주여건 개선' 관련,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빈집 철거 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로 가능하게 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했다.

* (예시)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이하 건축물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했다. 또한 학생의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매출액 등 3천억 원 미만)까지 감면을 확대했다.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과제 목록 |

분야	과제명
정주여건 개선 (12건)	①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②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③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⑥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⑦ 지자체 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⑧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 근거 마련 (행안부·해수부)
	⑨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여가부)
	⑩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확대 (문체부)
	⑪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농식품부)
	⑫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환경부)

분야	과제명
생활인구 확대 (7건)	①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교육부)
	②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산림청)
	③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문체부)
	④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농식품부)
	⑤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농식품부·국토부)
	⑥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 (고용부)
	⑦ E-9(비전문직 취업 비자)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고용부)
지역경제 활성화 (7건)	①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해수부)
	②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산업부·국토부·중기부)
	③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행안부)
	④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을 대학·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농진청)
	⑤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식약처)
	⑥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인턴 지원기준 완화 (여가부)
	⑦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운영기준 완화 (여가부)

참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 과정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주요사례

② 생활인구 확대 : 7건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

거주 목적으로 임업용 산지 지역으로 이주시 주택 설치 불가
»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권한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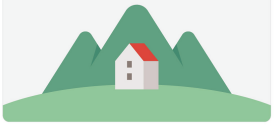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최소 30실 이상
» 20실 이상으로 완화



③ 지역경제 활성화 : 7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공유재산·물품 일부 경우에만 공유재산·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재산·물품 사용료·대부료 감면

산단 임대료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 감면
»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초기 중견기업* 추가
*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출연연, 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로 농업 연구 및 창업 활성화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포장육 이동판매 제한
» 식품소매 점포 운영자가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



행정안전부

3.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실시

| **신부섭** 사무관 | Tel. 044-200-2559

1 공모전 의의 및 경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최했던 '23년 제1차 황당규제 공모전('23.3.21~7.4)은 총 932건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등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발굴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적극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4년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추진하였다.

'24년에는 국민제안 접수를 3월에 시작했던 '23년과 달리 8월부터 추석 명절전까지 40일('24.8.4~9.12)에 걸쳐 총 510건의 국민제안을 접수하였다. 이 중 기존 조치가 완료된 건, 다른 제안과 중복된 건, 단순 사적 민원 등 검토가 불필요한 과제를 제외한 후 250건에 대하여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별개로 국무조정실은 접수한 국민제안을 단순히 '관(官)'이 아닌 민간의 관점을 통해 개선하는데 의의를 두고 기존 운영 중인 규제심판부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 국민제안 과제들에 대한 자문과 검토 등의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공모전 취지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공모전 결과

이러한 검토절차와 조정과정 등을 거쳐 총 60건의 제안에 대해 부처가 수용(일부수용, 대안제시 포함)하여 개선하기로 협의되었고, 그 중 우수제안 후보과제 20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24.11.22)에 보고하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과 규제심판위원을 포함한 '우수과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총 8일간('25.12.4~12.11)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일반 국민 3,473명의 참여를 통해 우수과제 10건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투표 결과,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된다는 황당함으로 검토 과정부터 계속 관심을 받았던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과제가 1위인 대상에 선정되었고, 이어서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가 2위인 최우수상에,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가 3위인 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로 봉투구입 허용',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에 따른 불합리한 출전금지 규정 개선' 등 7건의 과제가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투표 결과 등 공모전 전반에 대한 결과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 장관회의('24.12.19)에 보고하는 등 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이행 협조와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향후에는 황당규제 공모전이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자주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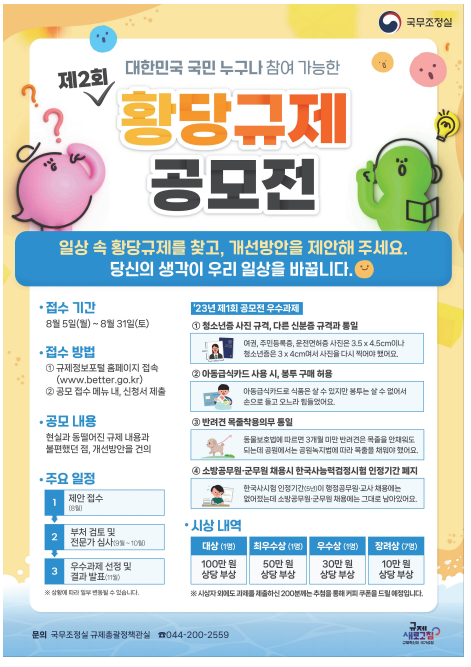





|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국민제안 투표결과 |

순위	제안과제(부처명)	시상내역
1위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복지부)** * (현행)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 관계인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지원 가능 vs 친정어머니는 불가능 ('24.12월 개선 완료)	대상
2위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교육부)** * (현행) 다자녀 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배정 시 만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3자녀 가정의 경우 1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함('24.10월 개선 완료)	최우수상
3위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중기부)** * (현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 시,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	우수상
4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필요 (여가부)** * (현행)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 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 구입 불가	장려상
5위	**중·고교 농구선수의 불가피한 전학으로 인한 1년간 출전금지 개선 (문체부)** * (현행) 농구부 정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1년간 출전금지 →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규정' 개정 필요	
6위	**먹는 물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 추진 (환경부)** * (현행)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23년) 되었으나, 먹는 물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	
7위	**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불공평 개선 (보훈부)** * (현행) 각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공평 (1년 단위 vs 1개월 단위 등)	
8위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의무 개최 법률규정 폐지 (문체부)**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자체별 1년에 1회 이상 체육대회 의무 개최 규정 존재	
9위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의 어업허가 규정 삭제 (해수부)** *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실제 어업면허가 이루어지나, 법률적으로는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 어업허가까지 받지 않고 불법조업중인 상황	
10위	**글램핑 및 카라반 야영장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 (문체부)** * (현행) 글램핑, 카라반 야영장까지 텐트 설치공간(15㎡, 최소1곳) 마련이 의무 사항	

4 신산업 규제혁신

1.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

| 김혜원 사무관 | Tel. 044-200-2437

1 승인현황

(가) 총괄

2024년에 545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승인과제 누계는 총 1,684건이 되었다.

(나) 유형별 승인현황

유형별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실증특례')가 1,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가 119건, 적극해석 등이 62건이었다.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실증특례가 89%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승인현황 |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등
1,684건	195건	209건	228건	228건	279건	**545건**	**1,503건(89%)**	119건(7%)	62건(4%)

(다) 분야별 승인현황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ICT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순이었다.

| 규제샌드박스 분야별 승인현황 |

합계	산업융합	혁신금융	ICT융합	규제자유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1,684건	708건(42%)	500건(30%)	251건(15%)	92건(5%)	55건(3%)	43건(3%)	26건(2%)	9건(-)

(라)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산업부,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기 부처들이 전체 승인과제 규제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샌드박스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

합계	금융위	산업부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개인정보위	행안부
2,012개	495개(25%)	353개(17%)	290개(14%)	246개(12%)	125개(6%)	73개(4%)	66개(5%)
	농림부	환경부	경찰청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기타
	65개(4%)	62개(3%)	51개(3%)	34개(2%)	33개(2%)	27개(1%)	92개(5%)

※ 총 40개 부처(지자체 8개 포함,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포함), 총 2,012개 규제(중복계산)

(마)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규제샌드박스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

합계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등)
1,684건	1,023건(61%)	567건(34%)	94건(6%)

2 규제개선 현황

2024년까지 승인된 과제 총 1,684건 중 22%에 해당하는 369건*의 과제가 규제 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된 후 규제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다. * 법령개정 280건, 유권해석 등 89건

2024년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전기사업법」개정('24.5월 시행)을 통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이용 전기차 충전 서비스', 「도로교통법」 개정('24.7월 시행)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전자금융거래법」개정('24.9월 시행)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제정('24.11월 시행)을 통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서비스' 등이 있다.

ㅣ규제개선 완료과제 현황ㅣ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1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적극해석	'24.12월
2	(대전)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상용화	실증특례(1건)	'24.12월
3	(충남) 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실증특례(1건)	'24.12월
4~8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5건)	'24.12월
9~11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	실증특례(3건)	'24.12월
12	新첨단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특례(1건)	'24.11월
13	(대구) 제조·생산 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특례	'24.11월
14	(대구) 생활공간 공유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특례	'24.11월
15~17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3건)	'24.9월
18~25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화	실증특례(8건)	'24.8월
26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임시허가(8건)	'24.7월
27	유인 자율주행 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실증특례	'24.7월
28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	'24.7월
29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	적극해석	'24.7월
30~40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11건)	'24.7월
41	(울산)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실증	실증특례(1건)	'24.6월
42	친환경 비가교 폴리프로필렌 절연 전력케이블	실증특례	'24.6월
43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24.6월
44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한 시승서비스	적극해석	'24.6월
45	(충남)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실증특례	'24.6월
46~50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실증특례(5건)	'24.6월
51~53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3건)	'24.5월
54~57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특례(4건)	'24.5월
58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실증특례	'24.5월
59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실증특례	'24.5월
60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실증특례	'24.4월
61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	'24.4월
62	생체신호 연동 실시간 핸드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적극해석	'24.4월
63	드론을 활용한 교량의 통합 안전점검 자동화 시스템	적극해석	'24.4월
64~65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2건)	'24.4월
66~73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특례(8건)	'24.4월
74~81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특례(8건)	'24.3월
82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적극해석	'24.3월
83~94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증특례(12건)	'24.2월
95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실증특례	'24.2월
96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	실증특례	'24.1월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97	지능형(AI) 배리어 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	실증특례	'24.1월
98	영상/음성 기반 인공지능 인적자원 분석 인재채용 시스템 실증	적극해석	'23.12월
99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적극해석	'23.11월
100~109	실내외 자율주행 무인순찰로봇	실증특례(10건)	'23.11월
110~120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11건)	'23.10월
121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실증특례	'23.10월
122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실증특례	'23.10월
123	(경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임시허가	'23.10월
124	(강원)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 개발실증	실증특례	'23.10월
125	(대전)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23.10월
126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실증특례	'23.10월
127~14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서비스	실증특례(15건)	'23.10월
142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실증특례	'23.9월
143	화재감시 및 학생범죄 예방용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	실증특례	'23.9월
144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적극해석	'23.9월
145	실내 자율주행 방역로봇	실증특례	'23.9월
146	군(軍) 실내·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특례	'23.9월
147	(광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실증특례	'23.9월
148	(세종)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실증특례	'23.9월
149~152	AI 안면인식 기술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4건)	'23.9월
153	고흡수성 연질왕겨 상토(비료)개발 및 비즈니스모델 실증	적극해석	'23.8월
154	능동형 EMI 필터의 안전인증 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증	적극해석	'23.8월
155	(대구)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실증특례	'23.8월
156	(충남)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특례	'23.7월
157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23.7월
158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집하처리 시스템	적극해석	'23.7월
159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23.7월
160~166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실증특례(7건)	'23.7월
167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실증특례	'23.6월
168	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 거치대 실증	실증특례	'23.6월
169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적극해석	'23.6월
170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실증특례	'23.6월
171~172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2건)	'23.6월
173~176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실증특례(4건)	'23.6월
177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	'23.5월
178	(전북)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특례	'23.4월
179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실증특례	'23.4월
180	VIB ESS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실증특례	'23.4월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181	(전북) 탄소복합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임시허가	'23.3월
182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적극해석	'23.3월
183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 보조시스템 기술 실증사업	실증특례	'23.2월
184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실증특례	'23.1월
185	(대구)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실증특례	'22.12월
186	집적 광에너지 근접 조사기기를 통한 바이러스 질환 치료 기술	적극해석	'22.12월
187	유전자 재조합 임시발현 식물을 활용한 그린백신 제조 상부공정 실증	적극해석	'22.12월
188	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인공어초 개발	적극해석	'22.12월
189	자동차의 제동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포집을 위한 세라믹 필터 장치 개발	적극해석	'22.12월
190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실증특례	'22.12월
191	드론기반 3D 지형자료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및 상황전파 시스템 실증	실증특례	'22.12월
192	(전남)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실증특례	'22.12월
193~196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4건)	'22.12월
197~199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3건)	'22.12월
200~204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활용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임시허가(5건)	'22.10월
205	대기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조류 기반 AI 공기정화장치	실증특례	'22.9월
206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특례	'22.9월
207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적극해석	'22.9월
208	보행자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스마트교통안전 차량과속 경보시스템	실증특례	'22.8월
209	(부산) 블록체인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22.7월
210	(부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	'22.7월
211	(부산)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영상제보 서비스	임시허가	'22.7월
212~219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8건)	'22.7월
220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22.6월
221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22.5월
222	(충북)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실증특례	'22.5월
223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실증특례	'22.5월
224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실증특례	'22.4월
225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실증특례	'22.3월
226	중온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	적극해석	'22.2월
227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	임시허가	'22.2월
228~235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8건)	'22.2월
236	(대전)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특례	'22.1월
237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	'22.1월
238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22.1월
239	(경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실증특례	'22.1월
240	(경북)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실증특례	'22.1월
241~242	스마트폰 NFC 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2건)	'22.1월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243~245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사업	실증특례(3건)	'22.1월
246~247	DTC 유전자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2건)	'21.12월
248	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21.12월
249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적극해석	'21.12월
250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적극해석	'21.12월
251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적극해석	'21.12월
252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적극해석	'21.12월
253~261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9건)	'21.12월
262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	'21.11월
263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21.11월
264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적극해석	'21.11월
265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	'21.9월
266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적극해석	'21.9월
267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적극해석	'21.9월
268~282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15건)	'21.9월
283~284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실증특례(2건)	'21.9월
285~286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실증특례(2건)	'21.8월
287	섬유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 정수기술	적극해석	'21.7월
288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21.6월
289~292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플랫폼	실증특례(4건)	'21.4월
293~295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서비스	실증특례(3건)	'21.4월
296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해석	'21.4월
297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21.4월
298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적극해석	'21.3월
299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해석	'21.1월
300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해석	'20.12월
301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적극해석	'20.12월
302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20.12월
303~310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8건)	'20.12월
311~314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4건)	'20.12월
315~316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실증특례(2건)	'20.10월
317~318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2건)	'20.10월
319~320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2건)	'20.10월
321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20.10월
322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323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324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325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적극해석	'20.9월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 수)	개선시점
326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 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적극해석	'20.9월
327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328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329~336	통신 및 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실증특례(8건)	'20.8월
337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20.8월
338~339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실증특례(2건)	'20.8월
340~341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실증특례(2건)	'20.8월
34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20.7월
34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실증특례	'20.6월
344	소수력발전 시스템	적극해석	'20.4월
345	온라인 주류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서비스	적극해석	'20.4월
346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20.3월
347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해석	'20.3월
348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해석	'20.3월
349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	'20.2월
350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실증특례	'20.2월
351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해석	'20.2월
352	태양광 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해석	'20.1월
353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20.1월
354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해석	'19.11월
355~356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2건)	'19.11월
357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적극해석	'19.10월
358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적극해석	'19.10월
359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적극해석	'19.9월
360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19.7월
361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적극해석	'19.7월
362	융복합 냉온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적극해석	'19.7월
363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해석	'19.4월
364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해석	'19.4월
365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19.3월
366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해석	'19.2월
367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해석	'19.2월
368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해석	'19.2월
369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해석	'19.2월

3 신속확인

신사업 관련 규제 유무를 1개월 내 확인해주는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총 222건의 신청과제를 '규제없음'으로 기업에 통보하였다.

분야	2024년 '규제없음' 회신 주요 사례
산업융합	•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생유)** 경유 중 일부를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생유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공정안전관리보고서의 변경 제출이 필요한지 문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안전관리보고서 재제출 불필요
스마트도시	• **(자동차 블랙박스를 활용한 스마트 모바일 방범·방재 CCTV 서비스)**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경찰 등의 협조요청에 따라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문의 →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규율 준수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허가 등은 불필요
모빌리티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기반의 AI 버스정보서비스)**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 주체 외 민간이 버스정보시스템 사업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지 문의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참여를 통한 사업 수행 가능

4 경제적 효과

(가) 투자유치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증가하였다. 규제자유특구 15조 8,601억 원, 혁신금융 분야 6조 1,704억 원 등 현재까지 6년간 총 23조 7,399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4.12월말,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투자 합계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2,753억 원
산업융합	1조 4,097억 원
혁신금융	6조 1,704억 원
규제자유특구	15조 8,601억 원
스마트도시	224억 원
모빌리티	20억 원
합계	**23조 7,399억 원**

②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 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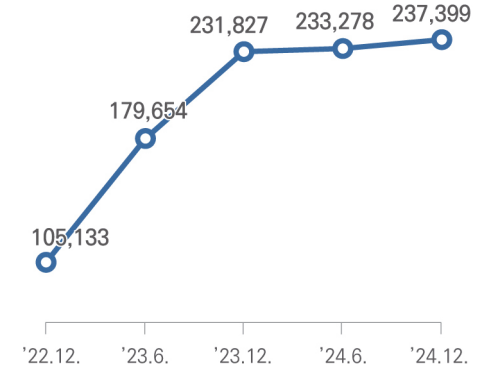

분야	2024년 투자유치 주요 사례
ICT융합	•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279억 원)**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레이더 등의 센서와 카메라로 취득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산업융합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71억 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에게 화상·전화를 통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제공
혁신금융	• **(비대면 카드사 가맹점 가입 대행 서비스, 153억 원)** 소상공인의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모집인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규제자유특구	•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1,370억 원)**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기반의 그린 수소 생산·활용 실증을 위한 공장설비 증설 및 고용증대

(나) 매출증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산업융합 분야 1조 110억 원, 규제자유특구 2,579억 원을 비롯하여 매출액이 총 1조 4,936억 원 증가하였다.

① 분야별 매출증가 현황('24.12월말, 누계)

분야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1,787억 원
산업융합	10,110억 원
혁신금융*	-
규제자유특구	2,579억 원
스마트도시	452억 원
모빌리티	8억 원
합계	**1조 4,936억 원**

*원가-수익간 매칭이 어렵고, 서비스별 산출방법도 상이하여 집계가 어려움

② 기간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 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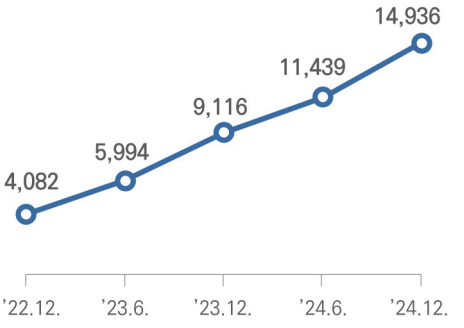

분야	2024년 매출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97억 원)** 정부 주관 소비촉진 행사기간에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권역 내 생산한 상품을 홍보·판매
규제자유특구	• **(경남 5G활용 스마트공장 특구, 192억 원)** 자동차 제조생산라인 등 스마트공장용 5G+Wi-Fi 6E 복합망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단지 선진화 및 제조서비스 산업 활성화
스마트도시	• **(인천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85억 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다) 고용창출

규제샌드박스를 계기로 승인기업에서 2만 2,387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한다.

① **분야별 고용창출 현황**('24.12월말, 누계)

분야	고용창출 인원
ICT융합	10,227명
산업융합	1,936명
혁신금융	2,418명
규제자유특구	7,217명
스마트도시	522명
모빌리티	67명
합계	**2만 2,387명**

② **기간별 고용창출 현황**(단위: 명,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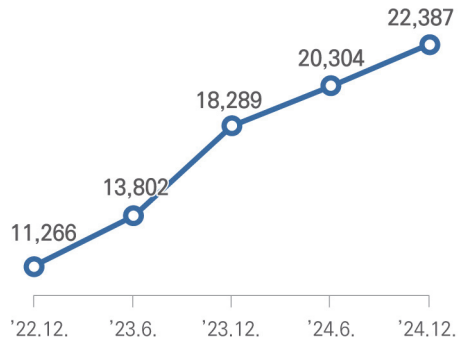

분야	2024년 고용증가 사례
ICT융합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2,275명)**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 구직자에게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고 택시가맹본부가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
혁신금융	•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40명)**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규제자유특구	• **(경남 암모니아 추진선박 특구, 1,278명)**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및 암모니아 엔진 등을 탑재한 선박을 건조하고, 해상 운항실증

2. 기업 현장 불편해소

| **유연석** 사무관 | Tel. 044-200-2912

1 개요

정부는 기업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작은 규모 기업의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규제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 벤처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들어왔으며, 다양한 의견 중에서 작지만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기업활동·환경·안전 분야별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조속히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굴한 과제 중 법률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하거나, 법률 개정 사항이지만 비교적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과제를 중심으로 13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국정현안장관회의('24.11.21.)를 통해 발표하였다.

2 주요성과

(가) 기업활동 분야

기업활동 분야에서는 레저 산업, 저울 제조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규제 애로를 호소하였다. "야영장 텐트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객 수요 충족이 곤란하다", "가정용 저울 규제로 다른 나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판매가 곤란하다" 등의 업계 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7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 기업활동 분야 추진과제 리스트 |

과제명	소관 부처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식약처·복지부·고용부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교육부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범위 확대	문체부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가능	산업부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행안부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문체부·산업부·경찰청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특허청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그간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야 법정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지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료품 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취업 교육 기간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병행하도록 하여 절차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려 하더라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5년 미활용 조건을 폐지하고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수 있게 하였고,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367개에 달하는 미활용 폐교들이 무상대부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범위 확대

각국에서 소비자의 욕구와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소재를 결합한 다양한 글램핑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등록야영장 개수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여서 이러한 신종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규정상 야영텐트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간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

이에 플라스틱·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텐트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고, 향후 국민의 다양한 레저수요에 대응하고, 야영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반영구적 재질 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없이 사용가능

주요 선진국은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최대 용량에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대용량 1kg 초과 저울 판매 시 형식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한편, 출시 제품이 적어 소비자의 선택 폭도 적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계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최대용량 3kg 이하의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유도하고자 한다.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허용 추진

미국·유럽 등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개인 자가용 차량을 통한 상업광고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가용 자동차에 타사 광고 표시가 불가능하여 일반 개인의 광고 수익 창출 기회가 차단되어 있고,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도 제약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실증특례에 대한 성과분석을 마치고, 소상공인·렌터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소상공인 등이 본인 소유 자동차를 활용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기준(0.2J)은 일본(0.989J), 이탈리아(1.0J), 독일(7.5J)등 주요 국가보다 현저히 낮아, 서바이벌산업 및 에어소프트건 제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서는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예: 일본)으로 탄속 규제를 완화하여 서바이벌 게임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해내고자 하였다.

단, 국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기준은 현행(0.2J)대로 유지하고, 게임시설 내 사용만 예외로 할 계획이며, 시설 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특허권 연장출원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연장기간이 일부 불인정 되어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이의가 기각되는 경우 특허법상 출원일체 원칙에 의해 전체 기간이 불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장출원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사 청구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특허법을 개정 추진하도록 하였고, 개선이 완료되면 특허권의 합리적 보장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환경 분야

환경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배터리 재활용업 등의 업계에서 규제 애로를 호소하였다. 반도체 사업의 경우 "반도체 사업장 확장, 온실가스 추가 지정 등을 고려 시 측정 부담 확대" 등의 업계 관계자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는 업계 관계자 의견 외에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주요국은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관한 관심 증가" 등 연구기관의 제언을 들을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4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 환경 분야 추진 과제 리스트 |

과제명	소관부터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환경부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 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감설비 중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미국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이 매년 7.5%의 설비만 측정하거나, 제조사가 보증한 저감효율에 저감계수 기본값(0.9)을 적용하는 등 우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었다.

구분	한국	미국(주별 상이)	일본
온실가스 저감효율 적용방식	매년 설비의 10%를 의무 측정한 값	의무측정 없이 기본값 적용(0.9) 또는 매년 설비의 7.5%를 측정한 값	의무측정 없이 기본값(0.9) 적용 (배출권 거래제 미시행)

이에 현장의 건의와 규제당국의 입장을 조정하여 신규 설비에 대해서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용인 등 신규 반도체 시설의 생산 차질이 최소화되고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리튬·코발트·니켈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하고 유기용매를 제거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반 제조업체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블랙파우더를 운송·보관·가공하여 희소금속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복잡한 절차가 완화되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 확보가 용이해지는 한편, EU 등의 재생원료 활용 의무화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우리나라로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해당 물질을 등록할 수 있는데,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을 전부 취하하고, 동일한 물질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개정하여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등록 취하 및 재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검토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대체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퇴비화 방식, 토양생분해 방식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비화 방식의 경우 생분해에 58℃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설비가 필요한 등의 한계가 있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24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증을 종료할 시 생분해시장이 위축되어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었고, 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여전히 퇴비화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에 타격이 예상되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퇴비화 방식의 환경표지 인증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활용 특성에 맞추어 해양 생분해 조건의 인증기준을 신설하여 3개 생분해 조건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일회용품 규제의 대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상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 안전 분야

안전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정안전관리 등 과도한 규제로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설비 가동과 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건의 중 최종적으로 2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 안전 분야 추진 과제 리스트 |

과제명	소관부터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고용부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반도체 생산공정 중 비교적 소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도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로 간주되어 가동 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는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신규 반도체 생산 설비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고충 의견이 있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소량이라 해도 산업사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하여 신규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전 미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설비가동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가 해외 경쟁사 대비 생산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제품을 적기에 생산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선이 있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조업·건설업계 본사 직원을 건설·제조근로자로 보아야 할지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지 혼동하는 등 여전히 교육실시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개정하여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에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관련 혼선을 방지하고, 근로자 업무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 등의 신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미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의 결과 도출 시 추가 협의·조정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협·단체 및 기업,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 주요 사례

기업활동

❶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근무를 빠르게 할 수 있게 개선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여권만으로 건강진단 가능 등)



❷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
(폐교 후 5년 미활용 조건 폐지 등)



❸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플라스틱 등 타 기능성 소재도 사용 허용



❹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필수 검사였던 '형식승인' 없이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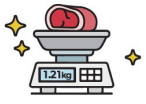

❺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에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❻ 서바이벌 게임장의 장비(에어소프트건) 규제, 해외 수준으로 완화



❼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환경

❶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중단 최소화
(매년 10% 설비 측정 -> 처음 2년만 10%, 이후에는 5% 설비 측정으로 완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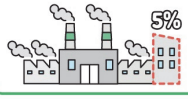

❷ 폐배터리 분쇄물의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블랙파우더에 리튬 등 고가의 희소금속 포함)



❸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화학물질 등록 국내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❹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기간 연장 (24년->28년)



안전

❶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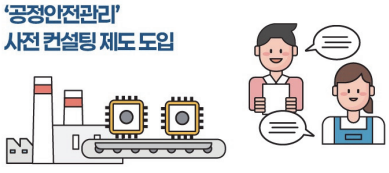

❷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 등)



국무조정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3. 신의료기기 제도개선

| **박승훈** 사무관 | Tel. 044-200-2450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허가받은 신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속도를 제도개선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선진입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였다. 이에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현안관계장관회의('24.11.21.)를 통해 발표하였다.

2 개선방안 마련 과정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조실·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합동 회의(총 8차)를 실시하였고, 의료계·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대상 간담회·공청회 개최 등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3 개선방안 세부내용

이번 개선방안은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비급여 확대에 따른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되어 해당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 희망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설계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기술 여부 판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의료기기 허가 이후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라도 의료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현장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며,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하여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로 사용되는 즉시진입 기술의 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모니터링 결과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으로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3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개선방안 시행을 목표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사전컨설팅·즉시진입기술 관리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세부 역할 조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의 차질없는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5 덩어리 규제개선

| 정인희 사무관 | Tel. 02-3778-3411

1. 개요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덩어리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및 조정 후 확정된 개선안을 발표하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우선 민간 협단체, 지자체, 학계 및 경제단체 건의과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규제 건의 사항들을 정리하고, 추진단 전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덩어리 과제들을 발굴하였다. 추진단 지원국과 전문위원들은 과제 추진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파급력이 크고 추진 필요성이 높은 덩어리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과제로 확정되면, 해당 분야에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위원들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추진토록 하였다.

그 후 과제와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진 방향 및 개선방안(안)을 마련하였다. 동 과정에서 규제편익·비용을 분석하고 이행 실태 및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이해관계자 토론,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사전 조정을 거쳤으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장·차관 주재 조정회의 등에 상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규제혁신안은 과제 성격 및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발표되었다. 국무총리 현장행보, 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상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되었으며, 카드뉴스 및 홍보 동영상 제작 후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참고 업무 프로세스(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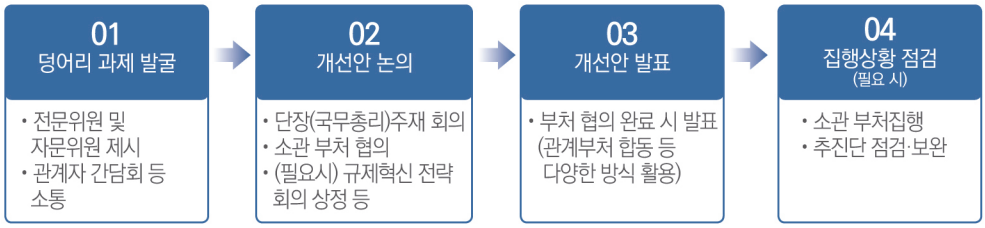

규제혁신추진단은 '24년 한 해 동안 총 13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 규제로는 총 265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단장인 국무총리가 덩어리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 한편 규제의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민간 협단체 방문, 현장 간담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현장 중심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운영 체계

다수 부처와 법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을 포함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단위의 접근으로는 혁신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여 민간전문가, 전직 공무원, 국책 연구기관 등 민·관·연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이 지난 '22.8월 출범하였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출범 이래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과 지원국(부처, 지자체 파견 인력 등)으로 구성(총 140여 명)되어 운영되었다.

전문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분야의 규제에 정통한 90여 명의 전직 공무원이 있다. 이들은 현직에 있을 때 해당 규제를 직접 설계하거나 집행해온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규제개선안을 제시함은 물론 해당 부처와의 협의에서 명확한 논리와 근거제시로 해당 부처를 차분하게 설득해 나가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전직 공무원은 3번의 모집절차(1차 '22년 6~7월, 2차 '23.7월, 3차 '24.7월)를 거쳐 선발되었는데 금년도 3차 모집에서는 7명 모집에 41명이 몰려 약 6대 1의 경쟁력을 보였다.

전문위원의 또 다른 축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온 20여 명의 연구원들이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실적을 쌓아 온 전문가들로 기존 규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관련 통계 및 해외 사례 수집·분석 등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규제개선안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전직 공무원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규제개선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도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각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 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라 통계 등 각종 현황 조사, 전문가 섭외, 자료 작성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단은 장·차관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37명을 자문단(비상근)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다양한 과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전문성 및 정책경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문위원 외에도 추진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국 조직이 있다. 고위공무원 지원국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경제규제과 및 사회규제팀 등 2과 1팀을 두고 있다. 지원국은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법제처, 국토부, 공정위 및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 파견된 현역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총괄과는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 진행, 홈페이지 운영·홍보 등을 담당하고 추진단의 운영 총괄을 담당한다. 경제규제과는 개선과제 중 주로 경제분과에 해당하는 과제의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며 사회규제과는 주로 사회분과에 해당하는 과제의 관리와 지원을 담당한다. 경제분과는 주로 신산업·에너지, ICT·방송통신, 산업혁신·소상공인, 주택·교통·토지, 금융·공정거래에 속하는 분야를 말하며 사회분과는 주로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환경·해양, 사회·안전에 속하는 분야를 말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 개선과제별 전문위원 중심인 전담 팀을 구성하였고, 각 구성원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메트릭스 조직으로서 유연하게 운영되어 왔다.

참고 규제혁신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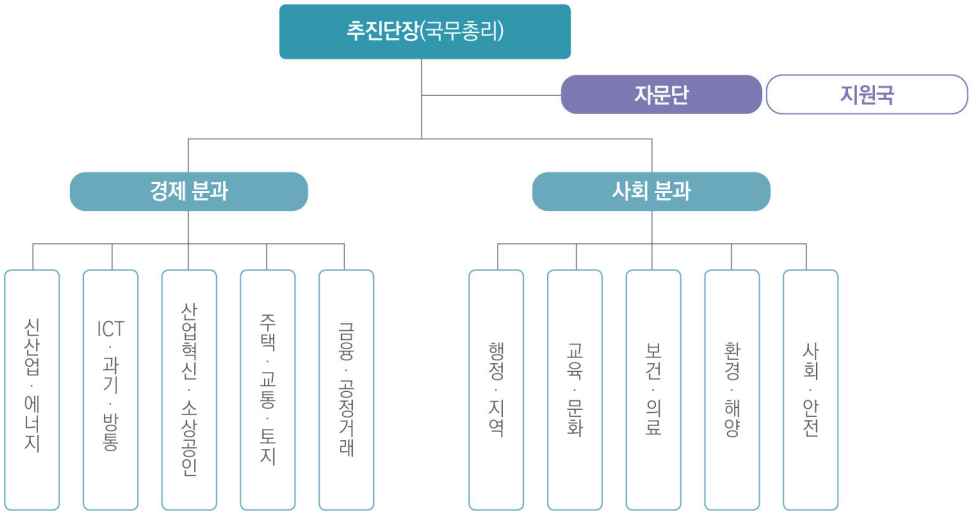

3. 주요 성과

가. 총 13개 덩어리 규제 개선안 마련

규제혁신추진단은 교육·문화, ICT·과기·방통, 보건·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옴으로써 국민 생활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4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3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 인증규제 재검토, △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전자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게임산업 활성화, △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 은퇴자(베이비부머) 지원 규제개선,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기술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신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공유숙박 규제개선)을 마련하였다. 각 덩어리 규제는 적게는 2~3개, 많게는 100여 개의 세부 개별 규제로 구성되어 있어 금년 중 발표한 개별 규제 개선안은 총 265개에 달했다.

1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2013년 이후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금지 하여(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대기업이 대부분 수주하던 공공SW 사업에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였으나, 상출제 집단 소속기업의 참여 규제로 공공SW사업 발주 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약됨에 따라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22.10월부터 '23.1월까지 이해관계자 및 기업 등과 적극 간담회를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형 공공 SW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24.1.31일 과기정통부와 공동 발표하였다.

(나) 추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발표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공SW사업 참여 금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공공SW 품질 저하로 귀결되어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공공SW사업 중 7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개선 하였다.

둘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공공SW 사업 추진 시 대기업들은 중소 SW업자들과의 컨소시엄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소SW기업 역량 대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1,0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컨소시엄 구성원수(5인→10인 이하) 및 최소지분율(10%이상)을 5% 이상으로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설계·기획 사업(정보화전략계획 등)에 있어서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다. 현행 SW진흥법은 SW 개발·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화전략계획(ISP) 등과 같은 설계·기획 사업도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설계·기획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상한선인 20억 원은 10년 이상 변동이 없어, 중소 업계는 공공시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반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을 현행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공SW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안 마련으로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공공 SW시장 활성화와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설계·기획 사업

As-Is	To-Be
•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의 설계·기획 관행 답습 →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적용 한계	• 계·기획 사업(ISP 등)은 역량있는 모든 기업에 전면 개방 (SW진흥법 개정)

▶ 설계·기획 단계부터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 → 기존 SI 위주 공공SW시장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검증된 상용SW 활용, 모듈화 설계 등 민간 신기술 도입으로 공공시장 선진화 및 체질 개선 계기 마련

(상출제) 대기업 사업 참여

As-Is	To-Be
• 全사업에 원칙적 참여 금지 ※ 참여 필요 시, 예외심의 또는 민투사업으로 참여	• 7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은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 (SW진흥법 개정)

▶ 대형사업에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사업자를 선정토록 참여제한 완화 → 대·중견기업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품질제고 노력 유도

▶ 발주기관·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충실한 사업준비 가능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As-Is	To-Be
•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은 20억 원 미만 (사업비중 감소 추세) ※ '12.5월 이후 변동없음	• 중소기업간 경쟁 사업을 3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 ※ 초기 중견기업 참여하한: 20→30억

▶ 공공시장의 중소기업 참여기반 및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보완

컨소시엄 구성

As-Is	To-Be
•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지분율 배분이 선정평가에서 지배적 영향 • 컨소시엄 구성 시 최대 참여업체수, 최소참여율 제한	• 상생협력 평가 기준 완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700억 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 최고등급 50% → 40% 이상, 상생협력 배점 : 5 → 3점 이상 • 1,0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제한기준 완화 ※ 최대참여업체 수: 5 → 10인

▶최적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성(기업 수·참여율 등) 강화 → 상생협력과 함께 기술력 위주 경쟁 활성화, 주사업자 역할·책임 강화 및 기업별 역량에 맞는 역할분담 촉진

하도급

As-Is	To-Be
• 대형사업에서 하도급을 50% (법상 제한기준)까지 채우는 관행으로 품질 저하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 및 7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기술성평가시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과도한 하도급 관행 방지 유도 →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저하 개선

| 간담회·부처협의 등 추진 실적 (총20회) |

- 2022.10.31.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간담회
- 2022.11.03.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간담회
- 2022.11.15. 한국PMO협회 간담회
- 2022.11.2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간담회
- 2022.11.28. LG-CNS 간담회
- 2022.12.06. 상호출자집단소속 대기업SI사 간담회 (LG, SK, 삼성, CJ 등 4개사)
- 2022.12.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 간담회
- 2022.12.19. 중견SI기업 간담회 (대신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 아이티센 등 6개사)
- 2023. 1.03. SW정책전문가 의견청취
- 2023. 1.10. 중소SI기업 간담회 (대원씨앤씨, 낙스넷, 지케스, 유엔파인 등 7개사)
- 2023. 2.10. 발주기관 간담회 (국세청, 복지부, 관세청 등 10개 부처)
- 2023. 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1차)
- 2023. 3.22. 자문위원 간담회
- 2023. 4.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2차)
- 2023. 4.20. 규제혁신추진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3차)
- 2023. 6.30.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 (과기정통부 주관)
- 2023. 7.12. 공공SW사업 발주기관 간담회 (과기정통부 주관)
- 2023. 9.06. 제29차 리스크 대응회의
- 2023. 9.20.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진행사항 보고
- 2023.11.06.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개선 중소·중견기업 의견반영 검토 보고

참고2 관련 회의 사진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간담회





• 한국 PMO(Project Management Office)협회 간담회





•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간담회





참고3 카드뉴스


SW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규제혁신추진단


"SW강국도약"은
공공소프트웨어 분야에 대기업 참여 등을 통해
경쟁 활성화 및 품질 제고로 국민 편익 증진 도모와
국가의 글로벌 경제적·기술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 목표입니다


공공 SW사업에 상출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면 참여 금지 규제 개선
→ 7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SW 사업 참여 허용
(SW진흥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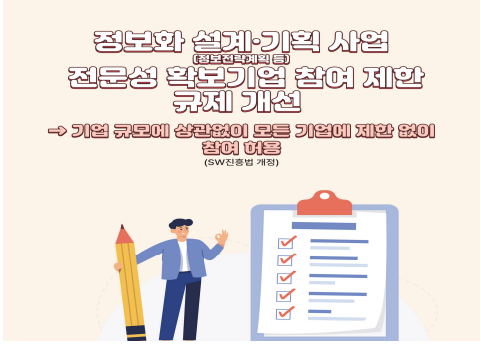
정보화 설계·기획 사업
(정보전략계획 등)
전문성 확보기업 참여 제한
규제 개선
→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제한 없이
참여 허용
(SW진흥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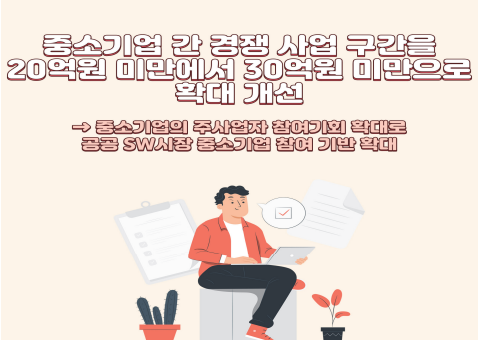
중소기업 간 경쟁 사업 구간을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개선
→ 중소기업의 주사업자 참여기회 확대로
공공 SW시장 중소기업 참여 기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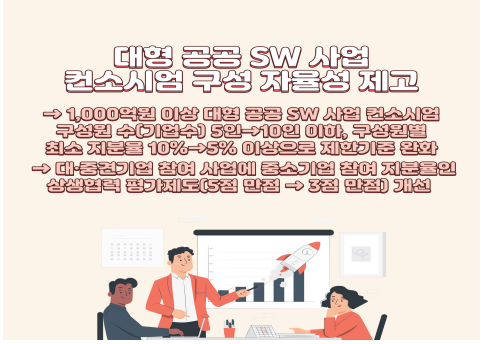
대형 공공 SW 사업
컨소시엄 구성 자율성 제고
→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 컨소시엄
구성원 수(기업수) 5인→10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
→ 대·중견기업 참여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의
상생협력 평가제도(5점 만점 → 3점 만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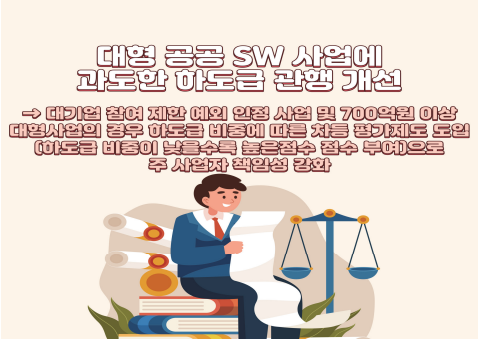
대형 공공 SW 사업에
과도한 하도급 관행 개선
→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 및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공구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제도 도입
(하도급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점수 점수 부여)으로
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심의 절차 간소화
→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의 기간을
단축(45일→30일) 하여 과도한 사업 지연 방지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초중등교육을 완성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약자*의 학력 보완 수단이자 차상위 학습세계로의 통로로서 교육적·사회적 가치가 큰 제도임에도, 일반 학교에 비하여 재정 등 지원은 부족하여 교육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 문해수준 3 이하 성인 890만 명('20년), 중졸 이하 경제인구 400만 명('23년) 학교 밖 청소년의 수(6~17세) 439천~298천 명('13년~'21년)

** 일반 학교 대비 인건비 50~80%, 운영비 50% 이하('23년, “학평”연합회) “학평” 및 문해교육 수료 및 검정고시 등 연 평균 60천 명 내외('20~'22년)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하여,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4.2.16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설립자 추상욱, 노원구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명을 격려하는 등 그동안 정규 학교 대비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28회), 관계부처 협의(8회) 및 국무총리 주재 회의 등을 거쳐 ’24.10.29.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나) 추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마련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안’이 도출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다. ’23년부터 추진단은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하였다. 교육부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추진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23년 12월 말 완료하였다. 추진단은 ’24.2월 국무총리 현장행보를 실시하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및 이후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부처협의 등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마련된 규제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평”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일반 학교와의 불합리한 차이가 없도록 재정지원 근거로서 조례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평”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국무회의(’24. 10. 29)).

둘째, “학평”에 부과하던(50% 감면)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를 일반학교 수준으로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이송하였다. 이에 필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국무회의(’24. 10. 29)).

금번의 개선 사항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사기 저하 또는 안전위협 요소를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 높은 교육성과로 이어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보도자료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0. 29.(화) 11:00(국무회의 종료시) **배포** 2024. 10. 29.(화) 08:00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을 강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정지원, 지방세 면제 등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늘(10.29.)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되어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나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청암중·고교**(서울 중계동 소재) **졸업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학평"과 일반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그동안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첫 결과물로서 관련 **법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참고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 (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	…
3…	…	…	…
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보조	가. 인건비	교원 수 및 사무직원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교원 수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사무직원 수
	나. 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

※ 측정항목 13 신설
(비고)23. 측정항목 제13호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 제 31조⑥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구대비표(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3.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참고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개요

□ 개요

- (제도목적)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근로청소년 및 중도 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 1986년 무인가로 야학이나 청소년학교 형태로 운영된 시설을 지정
- (설립주체) 학교법인, 공익재단법인, 개인 등
  ※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립주체는 학교법인 및 공익 재단법인이나, 기존('08년 이전) 설치 시설에 한해 개인 소유 시설 존치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31조

-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가능
- 이 시설의 학습자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

- (수업연한 등) 정규학교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하여 학칙으로 정함
  ※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년 3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초등과정 은 2년, 중·고등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 (수업료) 초등·중학 단계는 무상(시·도교육청 지원), 고등학교 단계는「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지원(시·도교육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24.4월 기준)

- 학교 수 및 학생 수

학교 수(교)					학생수(명)		
초	중	고	통합(초중고2, 중고13)	계	계	학령기	성인
2	4	20	15	41	17,633	4,270	13,363

- 교직원 수(명)

교원	직원	계
836	150	986

3 인증규제 재검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은 2010년 대비 100여 개가 증가한 257개('23.12월 현재)가 운영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법정 인증을 안전·의료·보건 등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품의 위해요소가 없다거나, 규격에 맞게 제조되었다는 안전성 확인보다는 품질보장,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증이 존재하다 보니 기업들은 인증취득과 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애로를 호소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옴부즈만, 관련 민간 협·단체, 시험·인증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2.27. 총리가 주재하는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심의·발표하였다.

(나) 추진 성과

대표적인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257개의 인증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수요가 적은 24개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 16개는 8개로 통합하였다. 또한, 66개의 인증은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편의 제고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하는 한편, 기술기준 미비,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인증 91개는 법정 인증에서 제외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하였다.

둘째,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추진하였다. 기업 스스로 제품의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고 신고 등 최소한의 행정사항만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확대하였고, 늘어나는 기업의 인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시장에 민간기관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인증 제품의 국내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규제위원회'에서 신설 인증의 적절성 심의를 강화하며,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인증을 단지 공공 조달 가점을 얻기 위해 취득해야 한다는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공공 조달시장에서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하여 기업의 인증 부담을 경감하였다.



참고1 인증제도 개선추진 연혁

1 **(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 계획, '06.5.)** 의무인증 대상 제품 통합인증절차 도입, 국가대표인증마크 개발 인증마크 혼란 방지, 유사 임의인증 통일·단순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중복시험 부담 경감

2 **(국가통합인증마크 실시, '08.8.)** 법적 강제인증(KC) 마크 통합, 의무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3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12.7.)**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해소, 심사절차 간소화,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존 제도와 중복성 심의 절차 신설, KS절차 간소화, KC체계 개선

4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 해소방안, '13.8.)** 시험검사 기준 통일,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통합 인증체계 구축, 유사인증 및 마크 통합, 인증 일몰제 도입, 기술규제심사 강화 등

5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14.8.)** 임의인증 139개 중 41개 감축, 인증기준의 일치화, 심사절차 및 인증품목 최소화, 신규 인증 제한 및 관리 강화

6 **(불합리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15.11.)** 국제사례 및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 인증제도 폐지,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험항목 축소 등 77개 인증제도 개선

7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19.12~)** 3년 주기로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폐지, 인증절차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제도 개선

8 **(중소기업 기업인증제도 개선, '20.9.)** 중복인증 폐지, 유효기간 연장, 인증절차 간소화 등 28개 인증제도 개선

참고2 주요국의 인증제도 현황

국명	인증의 수	주요 인증(발췌)	비고
미국	93개 (의무/ 민간임의)	• 의무인증: AAR(철도운송장비), CPSC-CPC(12세이하 장난감), EPA-TSCA(화학물질), FCC(유무선통신), EX-approval(폭발물), NOP(유기농) 등 • 임의인증 : UL(제품의 안전), 3-A(유제품 가공), ASME(압력용기), CAPA(자동차부품), IPEMA(놀이시설), NRFC(창문효율), Woolmark(섬유) 등	의무/임의 인증 모두 안전, 의료, 보건, 환경 등에 한정
EU	40개 (의무· 임의/ 민간임의)	• 의무인증 : CPNP(화장품), *CE 관련 26개(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의료장비, 통신단말기, 승강기, 장난감 등), EMA(의약품), REACH(화학물질), e MARK(자동차 형식승인) 등 * CE(European conformity): EU시장내 유통상품의 건강, 안전, 위생, 환경보호 관련 통합마크(강제인증) • 임의인증: ECO-LABEL(환경친화성), Solar keymark(태양열 제품) 등	
중국	18개 (의무/ 민간임의)	• 의무인증: CCC(건축자재, 농기계, 방범, 소방용품, 전기안전, 코팅제품 등), CCS(선박등급), CEL(에너지 효율), CN_ENERGY LABEL(에너지 효율), CPA(계측기), CSEL(특수장비), GB TEST(전기차 배터리), LA Certification(노동안전인증), NAL(유무선통신), NEPSI(방폭), NIM(계량 검정), NMPA(의료기기, 화장품 등), SRRC(무선전송장비), 수입허가(식품), 화장품 행정허가(화장품) • 임의인증: CGC(태양광), CQC(태양광, 전기차충전기 등), China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일본	14개 (의무/ 민간임의)	• 의무인증: J-Moss(전기전자제품의 특정화합 물질 함유), JATE(네트워크 통신기기), NK(선박의 인명, 재산 안전), PMDA(의약품, 의료기기), PSC(소비생활제품안전), PSE(전기용품 안전), TELEC(무선장비), 급수기구, 일본 자동차 형식인증 등 • 임의인증: JET pvm(태양전지 모듈의 안전성), JIS (JIS 규격 적합성), S-Mark(전자제품 일본 수입시 획득 의무), VCCI(멀티미디어 방해파 자율규제) 등	

참고3 주요국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현황

국명	인증명	인증절차	비고
미국	FCC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무선주파수를 방출하는 제품 中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中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NVLAP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FCC마크를 부착하여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	
EU	CE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제품에 CE마크를 부착 가능	
일본	PSE	• **전기용품(NP : Non-Specified Products)**: 비강제 인증으로 제품인증을 지정승인기관의 승인을 강제로 받을 필요 없이, 제조사에서 자체검사 또는 지정시험기관을 통해서 관련 규격에 맞추어 평가하고 만족하는 경우 해당 인증마크를 부착	
	PSC	• **특정제품(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관련 제품, 승차용 헬멧, 등산용 밧줄, 석유온수기, 석유보일러, 석유난로)**: 소비생활용제품 중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반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별히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자체검사에 의한 기술적합성을 검사하여 인증마크를 부착	
	JIS	2005년부터 산업표준화법의 자기적합성 선언지침(JIS Q1000)에 의거 사업자 스스로 선언하는 제도를 시행 중	

붙임1 인증규제 정비 현황

1 폐지 (24개)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1	과기 정통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임의	9	문체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의무
2	교육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10	문체부	한국관광 품질인증	임의
3	국토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임의	11	산림청	우수 도시숲 등의 인증	임의
4	국토부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임의	12	산업부	지능형전력망 인증제도	임의
5	국토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임의	13	식약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임의
6	농식품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임의	14	식약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임의
7	농식품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임의	15	해수부	해양환경측정·분석능력인증	임의
8	농식품부	차 품질인증	임의	16	환경부	지질공원의 인증	임의

※ 인증제도 통합을 통한 8개 폐지

2 통합 (8개)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 칭	구분
1	고용부	위험기계기구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의무	5	해수부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임의
	고용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안전인증	의무		해수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임의
2	과기 정통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임의	6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의무
	과기 정통부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임의		환경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의무
3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임의	7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의무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임의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의무
4	기상청	기상측기의 검정	의무	8	환경부	제작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사 (배출가스)	의무
	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	의무		환경부	제작차의 소음인증	의무

3 개선 (66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	개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임의	34	산업부	KS표시인증제도	임의
2	고용부	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	임의	35	산업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3	과기정통부	ICT융합품질인증	임의	36	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임의
4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의무	37	산업부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의무
5	과기정통부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임의	38	산업부	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무
6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임의	39	산업부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의무
7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임의	40	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의무
8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의무	41	산업부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임의
9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임의	42	산업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REMAN마크)	임의
10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임의	43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의무
11	교육부	교육시설안전 인증	의무	44	소방청	소방용품 성능인증	임의
12	국토부	건설기계 부품인증	의무	45	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의무
13	국토부	녹색건축인증제도	임의	46	소방청	소방장비 인증	임의
14	국토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임의	47	소방청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의무
15	국토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의무	48	식약처	식품 HACCP	의무
16	국토부	택시미터의 검정	의무	49	식약처	축산물 HACCP	의무
17	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의무	50	여가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임의
18	농식품부	가축의 검정	임의	51	해경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임의
19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임의	52	해수부	무항생제 수산물	임의
20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임의	53	해수부	방류 종자의 인증	의무
21	농식품부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임의	54	해수부	유기 수산물	임의
22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제도	임의	55	해수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임의
23	농식품부	유기가공식품인증	임의	56	행안부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의무
24	농식품부	전통식품품질인증	임의	57	행안부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의무
25	농식품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임의	58	행안부	승강기검사	의무
26	농식품부	토종가축의 인정	임의	59	행안부	유·도선 안전검사	의무
27	문체부	무대시설안전진단	의무	60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임의
28	방사청	국방마크(DQ마크) 인증제도	임의	61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임의
29	방사청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임의	62	환경부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의무
30	산림청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임의	63	환경부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임의
31	산림청	산림인증제도(KFCC)	임의	64	환경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의무
32	산림청	산림탄소흡수량인증	임의	65	환경부	환경성적표지인증	임의
33	산림청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임의	66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임의

4 제외 (91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	고용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의무	47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임의
2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임의	48	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의무
3	고용부	사회적기업	임의	49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임의
4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의무	50	복지부	혁신형의료기기군 지정	임의
5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임의	51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임의
6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임의	52	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임의
7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임의	53	산림청	목재제품신기술지정	임의
8	교육부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임의	54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
9	국토부	건축설비 신기술 인정	임의	55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10	국토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의무	56	산림청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11	국토부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57	산림청	전통 석재제품 인증	임의
12	국토부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의무	58	산업부	녹색인증	임의
13	국토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의무	59	산업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14	국토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임의	60	산업부	신제품인증(NEP마크)	임의
15	국토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임의	61	소방청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무
16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임의	6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	의무
17	국토부	건축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63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의무
18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임의	64	식약처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의 인증	임의
19	국토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임의	65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도	임의
20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임의	66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임의
21	국토부	우수물류 신기술	임의	67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	임의
22	국토부	장수명주택 인증	의무	68	중기부	성능인증	임의
23	국토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임의	69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인증	임의
24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임의	70	해수부	갯벌생태관광 인증	임의
25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임의	71	해수부	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임의
26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의무	72	해수부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임의
27	농식품부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인증	임의	73	해수부	수산물 지리적표시	임의
28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임의	74	해수부	수산식품명인	임의
29	농식품부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임의	75	해수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임의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30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임의	76	해수부	우수천일염 인증	임의
31	농식품부	식품명인	임의	77	해수부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32	농식품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임의	78	해수부	해양수산신기술	임의
33	농식품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임의	79	해수부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임의
34	문체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임의	80	행안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임의
35	문체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임의	81	행안부	방재전문인력 인증	임의
36	문체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임의	82	행안부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제도	임의
37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임의	83	행안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임의
38	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임의	84	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임의
39	문화재청	전승공예품 인증	임의	85	환경부	소음도 검사	의무
40	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임의	86	환경부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임의
41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임의	87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임의
42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제품	임의	88	환경부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등급	의무
43	복지부	신기술인증(NET마크)	임의	89	환경부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
44	복지부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무	90	환경부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임의
45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	임의	91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임의
46	복지부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의무				

5 존속 (68개)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임의	35	산업부	가스용품검사	의무
2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CC 인증)	임의	36	산업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의무
3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임의	37	산업부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의무
4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임의	38	산업부	단체표준인증	임의
5	관세청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임의	39	산업부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의무
6	국토부	감항증명	의무	40	산업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임의
7	국토부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의무	41	산업부	석탄등 품질검사	의무
8	국토부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의무	42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의무
9	국토부	궤도시설 안전검사	의무	43	산업부	열사용기자재검사	의무
10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의무	44	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의무
11	국토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의무	45	식약처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의무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12	국토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임의	46	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의무
13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의무	47	해수부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의무
14	국토부	정비조직인증	의무	48	해수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15	국토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의무	49	해수부	선박의 검사	의무
16	국토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의무	50	해수부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17	국토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의무	51	해수부	소금품질검사	의무
18	국토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의무	52	해수부	수산물품질인증	임의
19	국토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의무	53	해수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임의
20	국토부	항공기 형식증명	의무	54	해수부	유기 가공식품	임의
21	국토부 / 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임의	55	해수부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의무
22	농식품부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임의	56	해수부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의무
23	농식품부	농업기계 검정	의무	57	해수부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의무
24	농식품부	무병화인증	임의	58	해수부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의무
25	농식품부	인삼류 검사	의무	59	해수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의무
26	문체부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의무	60	해수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의무
27	문체부	카지노 기구 검사	의무	61	해수부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의무
28	문체부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의무	62	행안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임의
29	문화재청	전통재료 인증	임의	63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
30	방사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의무	64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임의
31	방사청	군용항공기 형식인증	의무	65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의무
32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의무	66	환경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의무
33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임의	67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	의무
34	산림청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의무	68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의무

4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2.7%(2020년 말 기준)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이고 산림비율은 OECD국가 중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어 4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발전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전할 산지는 보존하되 개발·이용이 가능한 산지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미래 자원 확보, 토지 공급 확대,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민 건강증진(휴양·치유) 자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자 약 1년간 임업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20여 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10여 회) 및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 등을 거쳐 추진단 및 산림청·환경부 등 공동으로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지난 '24.2.28. 확정·발표하였다.

(나) 추진 성과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의 핵심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3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로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 역점 추진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 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네 번째로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 분야 지원에 준하여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였다. 임업직불금제에 있어서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를 완화하였다.('23.10.16. 기 시행)

다섯 번째로 임업 분야에서도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했다.

여섯 번째로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그린벨트(GB) 내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설치 확대, 임업인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으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추진단이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에 따른 대표적인 개선예시는 아래와 같다.

- 지자체 A는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를 거쳐 산림청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해야만 했다. 보전산지 해제 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경우, "주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교육·청년·노유자 등을 위한 시설) 등의 조속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산림법인 A는 임업 현장이 산세도 험준하고 고령 임업종사자들이 풀베기 등 작업하기 어려우며, 작업강도도 높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이를 대신할 청년세대 유입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 외국인력을 통해 산림작업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어 인력 대체 효과가 큰 국내 목재산업 및 임산물 생산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추진단, 3개 분야 9개 산지 이용 개선안 마련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공익용 산지 지정 요건 개선으로 산지관리 합리성 제고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 지사에게 위임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탐방예약제 개선으로 평일 이용 확대
그린벨트(GB) 내 임산물 전시 판매 시설 설치 확대
세제·금융 형평성 제고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별도 합산·분리과세 적용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으로 자금 지원 확대
임업 직불금제 자격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수혜 확대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유아숲 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로 산림교육 활성화 도모
임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으로 인력부족 해소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최초
보전산지 해제권한 위임을 통해 지역별산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산지 이용 가능
임업분야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도입으로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우이령길 탐방로 평일 예약 없이 이용 가능 (성수기 제외)으로 사람(주민 편의)과 환경(자연보호)의 공존을 통한 상생형 모델 제시
그린벨트(GB) 내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설치 확대 개선으로 임산물 유통판매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임산물 구매 편익성 증대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세제·금융 형평성 제고를 통해 임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기여
산림자원 생산·관리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로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경제 활성화 기대

참고1 보도자료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28.(수) 16:00 **배포** 2024. 2. 28.(수) 10:00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 정부,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 6개 부처 연관 산지 복합규제 개선, **국민 편의**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기여**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❶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 아울러, ❷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❸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에 준하여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 ❹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를 완화했다. (’23.10.16. 기 시행)

– 또한, ❺임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했다.

-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❻**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 아울러, ❼수목원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목원 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인가 제도**를 통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 이번 개선안은 추진단이 지난해 2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한 이래 1년여에 걸쳐 산림청·행안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3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2 세부 개선과제 (총 9건)

■ 공익용산지 지정 요건 합리화 (산림청)

현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개선 ▸ **법령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개정 추진

효과 ▸ **과도한 재량권 규제 폐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 지자체 일부 위임 (산림청)

현행 ▸ 산지 면적 6,298천ha 중 보전산지는 4,897천ha(77.7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보전산지 해제

개선 ▸ **3만㎡ 미만** 보전산지 지정·해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개정 추진

효과 ▸ 지역별 산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산지 이용 활성화

■ 국립공원 사전 탐방로 예약제 개선 (환경부)

현행 ▸ 북한산 우이령길(4.46km)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주중·주말 등에 예약제('09부터)를 시행(하루 1,190명만 허용), 이용시간 제한으로 이용객 불편 초래

개선 ▸ 우이령길 탐방로 예약제 탄력적 시범* 운영
* 주중(평일) 예약 없이 이용, 주말과 가을철(9~11월)은 상시 예약제 유지
➡ 국립공원공단, 탐방로 예약제 운영(변경) 공고(2024. 2. 17.)

효과 ▸ 사람(주민 편의)과 환경(자연보호)의 공존을 통한 상생형 모델 제시

■ 임업직불제 자격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산림청)

현행 ▸ 2022년도 대상자는 2만여 명(전체 산주 215만명), 예산은 512억 원에 불과(농업직불금 예산의 2%)

개선 ▸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효과 ▸ 임업직불제 개선으로 고령의 임업인 편의 제고

■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산림청)

현행 ▸ 농·축·어업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임업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가 시행 초기부터 제외되었음

개선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동포취업)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도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1,000명 신규 허용 결정('23.11.27.) 되어 '24년 7월부터 시행

효과 ▸ 임업분야 고용성 향상으로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산림청)

현행 ▸ 공익목적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국·공립 기관 외는 설립이 어려움

개선 ▸ 유아숲체험원은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60% 이하 범위로 완화(지자체 조례)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추진 ('23. 11. 16. 시행)
※ (규모) 1만㎡ 이상 → 6천㎡이상 (유아숲지도사) 유아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현 3명 → 1.8명(2명)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일부개정

효과 ▸ 지역·생활권 유아숲체험원의 확대로 유아 등 접근성 제고

■ **수목원 내 임야의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적용** (산림청)

현행 ▸ 산림공익시설인 수목원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 적용

개선 ▸ 수목원 내 임야(전체 62%)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별도합산·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갖추어 세부담 완화 추진
➡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임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명확화

효과 ▸ 수목원의 고액의 세금부담을 개선하여 수목원 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보전·전시 등 목적활동 수행여건 개선

■ **그린벨트(GB) 내 임산물전시판매시설 설치 확대** (국토부, 산림청)

현행 ▸ 그린벨트(GB) 내 임산물전시판매시설 면적(1,000㎡) 제한
※ 농협의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은 3,300㎡까지 허용

개선 ▸ 농협 공판장·화훼전시판매시설과 같이 3,300㎡까지 확대 추진
➡ 임산물전시판매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산림청) 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검토(국토부)

효과 ▸ 임산물 유통판매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임산물 구매 편익성 증대

■ **농신보* 신용보증서 발급지원 개선**(금융위원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현행 ▸ 산림휴양시설 사업자(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등)로 지정 시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함에도 일부 금융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급 불가 처리 사례 발생

개선 ▸ 금융위(농신보)는 업무방법서(매년 발간)와 해설서(연초) 및 각종 교육·홍보자료에 이를 반영하여 보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용보증업무방법(보증대상자)」 등 개정

효과 ▸ 임업인의 원활한 사업자금 활용으로 산림휴양시설 활성화 및 수익 창출 기대

5 전자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우리나라 종합독서율('23년 기준)은 '15년 대비 36.2%나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자책 독서율은 90.2%나 증가하였다. '전자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한 독서행태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대국민의 전자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 기기 활용이 친숙한 세대와 고령인구가 공존하는 현시점에서 전자책 활성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출판업계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취합하는 한편 공통된 어려움 또는 고유의 어려움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그리고 그 동안 관계부처가 수립해온 도서 관련 법정기본계획(①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②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③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전자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나갔다.

(나) 추진 성과

추진단에서 마련한 세부과제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어 '24.4.18.에 발표되었다. 법정계획에 반영된 주요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구독서비스 비용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문체부는 과거 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전자책도 엄연히 독서율 계상에 포함되는 도서이며, 전자책 구독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비용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될 명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공대출보상제도는 도서관 등에서 공공대출되는 도서에 대해 창작자·출판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서관에 책이 납품되면 홍보효과와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는 곧 독자의 구매필요성 감소로 출판사의 매출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종이책 뿐만 아니라 소장형 전자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전자책 구독서비스 증대로 전자책 초창기 시절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출판사나 작가들은 매출감소에 대한 우려로 전자책 제작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에 유럽 주요국가들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제도 추진을 문체부에 안내하여 법정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셋째, 국민의 전자책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표준DRM(통합뷰어 관련) 사용을 확대하도록 건의하였다. 통합 뷰어에 대한 불편함은 오래 전부터 언급된 문제인 만큼 2020년 문체부에서 표준 DRM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유통사는 보안 취약성 문제로 표준 DRM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모든 유통사가 표준DRM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복호화 키가 유출되면 모든 전자책 유통사들의 보안이 한꺼번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DRM 기술을 보유한 IT 기술업체와의 협의 결과, 표준DRM은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영역인 한편 개인키는 개별유통사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개별 유통사의 보안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유통사의 우려는 온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표준 DRM 사용 확대를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하였다.



참고1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18.(목) 08:00 **배포** 2024. 4. 17.(수) 18:00

비독자를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다

-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 목표로 범부처 독서 민관협력체계 운영,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실행체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8년 이후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국민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되었다.

-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 '18년 96분 → '23년 120분 /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OTT) 이용률: '18년 42.7% → '23년 77.0%
  * 하루 평균 독서 시간 (주중): (성인) '17년 23분 → '23년 19분 / (학생) '17년 49분 → '23년 83분
  (주말·휴일): (성인) '17년 27분 → '23년 25분 / (학생) '17년 68분 → '23년 89분
- (전자책 독서율) (성인) '19년 16.5% → '23년 19.4% / (학생) '19년 37.2% → '23년 51.9%

■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도출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 인식 등 독서 관련 지표 개선 추진

이에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길러주는 독서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고자 했다.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①'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②'독서습관 형성 지원', ③'독서환경 개선', ④'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 지표를 위주로 개선한다. ▲독서율은 '23년 43.0%에서 '28년 50.0%까지, ▲독서량은 '23년 3.9권에서 '28년 7.5권까지,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3년 67.3%에서 '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 **첫 번째,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의 재발견 지원**

먼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학업성취도, 국가경쟁력 등)에 대해 실증할 계획이다.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인다.

■ **두 번째, 책과 함께하는 전 생애를 위한 독서 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년기'를 대상으로는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고자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세 번째,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 기반을 강화한다.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IP)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한다.

■ **네 번째, 다 함께, 새롭게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고자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분과명	참여 기관	주요 논의 주제(안)
문해력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출판독서계	• (단기) 독서기반 문해력 제고 콘텐츠 제작 방송 송출, 캠페인 추진 • (장기) 문해력 제고를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 민·관 공동 개발 및 보급
독서 진흥 인프라 확충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출판독서계	• (단기)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확충 및 다각화 • (장기) 민·관 협력 독서 인프라 확충(지역서점, 유휴시설 등 활용)
독서 소외인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 (단기)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군부대 대상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시범 시행 • (장기) 치유·치료 연계 독서 진흥사업 발굴
독서습관 형성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 (단기) 정규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공동 개발 • (장기) 정규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고도화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화	문체부, 행안부	• (단기) 지자체 독서진흥조례 제정 현황 파악, 실태조사 등 • (장기) 지자체 합동평가 독서부문 개선

* ('24~'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5년~'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독서 정책 실행체계도 개선한다.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다층적 의견수렴으로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는 출판과 도서관, 독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관계자들과 협력해 연구조사와 자문을 통해 4차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5회에 걸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포럼)를 통해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회에 걸친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계획을 내실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했다. '23년 9월에는 국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독서진흥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를 파악했고 '24년 2월에는 교육청 독서담당자 회의, 광역 대표도서관장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3월에는 공청회도 열어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다듬었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안한 국민독서율 제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가칭)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세계 책의 날'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독서문화 정책 본격 추진

아울러 문체부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에,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한다. 관련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가칭)인문정신문화축제, (가칭)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준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라며,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는 그 노력의 시작이며 독서진흥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진흥 정책과 도서관 진흥 정책도 연속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2 세부 개선과제

■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업데이트 강화

현행 ▸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은 개발 및 보급되었으나 기술환경 등에 맞추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필요

개선 ▸ 민간에서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25년 기준 12억원/전년동)에 응모 시, 공모 절차를 거쳐 개발 고도화 지원

효과 ▸ 낙후된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출판업계를 비롯한 전자책 제작자들의 현장 활용성 제고

■ 크라우드 펀딩 출판 플랫폼 양성

현행 ▸ 정부는 전자책 활성화를 위해 「전자책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전자책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제작 지원에 치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은 다소 미흡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 발간과 우수 작가 발굴, 전자책 저변 확대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출판 플랫폼* 양성을 추진
(참고) [크라우드 펀딩]영국 언바운드(Unbound): 개인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출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비 독자들의 펀딩(선주문) 성공시 책 출간

효과 ▸ 양질의 전자책 제작 및 보급 확대로 출판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 독서율 제고에 기여

■ 전자책 구독서비스의 소득공제 허용 검토

현행 ▸ 정부는 국민의 문화활동 촉진 등을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 구입비 등을 반영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독서 매체 중 증가하는 전자책 구독서비스는 제외되어 전자책 확산에 제약

개선 ▸ 전자책 제작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증가하고 있는 도서 구독서비스 비용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효과 ▸ 전자책 구독서비스의 소득공제 추가로 국민의 전자책 이용 활성화

■ 전자책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중장기 검토

현행 ▸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방식(서비스 방식, 비용, 서비스 지역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전자책 활성화에 제약

개선 ▸ 도서관의 전자책 확대를 위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 추진, 전자책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재원 확보 등

효과 ▸ 전자책 이용 확대에 따른 공공과 민간영역 간 갈등 해소 및 필요재원 확보로 전자책 활성화에 기여

■ 표준DRM 보완 및 보급 확대 검토

현행 ▸ 전자책 유통사별 각기 다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사용으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여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공공도서관, 유통사 모두 어려움 발생

개선 ▸ 표준DRM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 업계동향 파악, 의견수렴 연구 등을 추진하여 표준DRM 보완 및 사용 확대

효과 ▸ 독서관련 디지털기술 개발 지원으로 정보보안 대응기반을 마련 및 전자책 이용자 편의 개선

■ 전자책 정가 고시 규제 개선

현행 ▸ 정가변경 공표제도가 대상 특성과는 무관하게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전자책의 원활한 판매에 제약

개선 ▸ 변경가격이 반영된 표지 재인쇄, 스티커 작업 등이 불필요한 전자책 특성을 반영해 종이책과 전자책의 정가변경 공표제도를 분리 운영
➡ 재정가 변경 공표 횟수를 증대(기존 월1회→변경 2회)

효과 ▸ 재정가 변경 최대 소요기간 단축(기존 45일→변경 30일)

■ 전자책 관련 법정계획 연계 강화

현행 ▸ 현재 세 가지 도서정책 관련 법정계획(①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②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③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있으나 독서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자책 진흥을 위한 내용 미흡 및 연계성이 부족
(참고)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개선 ▸ 법정계획 수립시기가 법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세 법정계획 간 주요 정책 방향(예: 독서율 제고, 전차책 활성화등)의 연계성을 고려해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효과 ▸ 법정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예: 계획 수립기간 일치 등)하여 독서정책의 실행력 제고

6 게임산업 활성화

(가) 추진 배경

게임은 신기술과 융합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2022년 게임업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시장규모는 22.2조 원으로 세계 4위의 게임강국이다. 게임 수출액은 약 90억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 11개 중 5개가 게임기업이다. 또한 게임은 대표적인 국민 여가 문화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63%가 게임을 하고 취학 자녀(8~19세)가 있는 게임이용자의 53%가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긴다. 무엇보다도 게임산업은 명실공히 K-컬쳐 산업의 핵심으로서 수출 효자 산업이다. 다만, 엔데믹 이후 세계시장 및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 격화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의 수출 증진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벤처·중소게임사·대형게임사와 지스타 등 게임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현장을 찾아 게임 수출 증진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게임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0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규제는 풀고 행정 서비스는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결과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이 발표되었다.

(나) 추진성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제안한 세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게임업계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 직접 서비스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게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하였다. 주요 지원 방안은 ①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가 큰 중소게임사에 대한 '해외 시장 정보 제공 강화' ②해외 전략시장 및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비즈니스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해외 게임마켓 참가 확대' ③게임 수출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통상 지원 강화' 등으로 게임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게임벤처와 중소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임의 기획·개발·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지원 방안은 ①중소게임사들의 전략 게임 개발 및 피벗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K-콘텐츠 자펀드 조성' ②게임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 양성을 위해 콘텐츠진흥원 인재개발원의 분원 설립 등 '게임 인재 양성 지원' ③게임 기획단계의 우수과제가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게임 제작단계별 연계 지원' 등으로 게임벤처와 중소게임사가 우수 게임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지원 방안은 ①게임사업자의 게임 개발 및 유통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 ②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등급분류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확대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여건 개선 ③국민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한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과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청소년보호법' 개정) ④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이다.

참고1 10개 개선과제 세부 내용

■ 해외 시장 정보 제공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수출 마케팅 플랫폼(Welcon)과 ITS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 시장 권역별 법·제도·문화, 게이머 동향 등 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중소게임사의 해외 진출에 애로

개선 ▸ 해외 권역별 게임 정책·법제 연구 확대, 해외 게임산업 시장정보 조사 및 네트워크 확장, 시장 정보 제공 플랫폼 개선 추진('24년~)

효과 ▸ 해외진출 시장 정보 제공 확대로 중소게임사 및 우수 게임 수출 증대

■ 해외 게임마켓 참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게임전략시장 및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위해 게임스컴, 도쿄게임쇼, 태국게임쇼 등 참가, 집중 수출상담 운영

개선 ▸ 글로벌 게임마켓 참가 및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확대 지원
➡ '23년 1,078백만 원→ '24년 1,828백만 원으로 확대(3개→6개 마켓)

효과 ▸ 해외 게임유저 및 비즈니스 미팅 확대로 해외시장 다변화 및 수출 증대

■ 정부 통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와 해외 시장에서 분쟁 발생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교적 대응중이나, 업계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시스템 강화 및 중국 현지 법인 설립 기대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시장 분쟁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등과 협조하여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문화장관·외교장관·경제 장관회의 등 고위급 회담시 중국 현지 설립 의제 채택 노력

효과 ▸ 게임 수출시장의 안정적 판로 확대 및 활성화로 수출 증대

■ 자금 조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프로젝트 완성에 대한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여 게임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 개발의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속성상 중소게임사들은 개임 개발 및 피벗 소요 자금 조달에 애로

개선 ▸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기업(게임개발기업 포함) 중심으로 '24년 총 3,525억 원(신규 2,825억원+재출자 700억 원)을 출자하여 6,075억 원 규모 K-콘텐츠 자펀드 조성('24년~)

효과 ▸ 게임 개발 및 피벗 소요자금 조달로 우수 개임 개발, 해외시장 다변화 및 수출 증대

■ 게임 인재 양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게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게임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재개발원,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과 같은 인력 양성 기관 확대 필요

개선 ▸ 남부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분원을 설립하고('24년, 게임인재원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수도권에 게임마이스터고 추가 지정은 지정 희망 학교, 교원 확보, 산학협력 방안 등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

효과 ▸ 게임개발 우수인력 공급 확대로 게임 개발 진흥 및 수출 증대

■ **게임 제작단계별 연계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중소 게임기업의 게임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게임 제작기간(1년 이상) 및 인원(20명 이상)을 고려, 제작단계별 다년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전략 게임 분야를 집중 지원할 필요

개선 ▸ 기획 단계의 우수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제작 단계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년도 단계별 지원으로 확대하고, 제작 지원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사업 연계 후속 지원

효과 ▸ 우수 게임 및 전략 게임 분야 개발 촉진 및 수출 증진

■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게임사업자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내용수정신고 및 롤백의 명확한 기준이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애로 및 행정처리 부담 가중

개선 ▸ 게임산업법령에 신고 의무면제 등 내용수정신고 범위를 특정하고, 롤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4년)

효과 ▸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로 사업자의 행정처리 부담경감

■ **등급분류 자율성 확대 및 여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민간의 '등급분류기관'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동일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함에도 지정요건 등의 차이가 있으며, 등급분류기관의 게임물 등급분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제외

개선 ▸ 청소년 유해요소가 있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하 pc방)을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 '청소년보호법' 개정('24년)

효과 ▸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선진국 가족형 여가공간 확대에 기여

■ **게임제공업 운영 여건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1만원(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 기준) 이상의 문구류 등 경품 지급 시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1만 원을 살짝 넘기는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 발생

개선 ▸ 게임제공업자의 경미한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사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기대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4년)

효과 ▸ 게임제공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선택권 및 영업권 보호

참고2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1.(수) 08:00 **배포** 2024. 4. 30.(화) 16:00

“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K-게임 ”레벨 업“

- 2024~2028년 5개년 간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3대 추진 전략, 12개 핵심 과제 수립

정부는 5월 1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조 및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PC게임 및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2조 원을 달성하여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수출에서도 ’22년 기준 약 90억 달러로 전체 K-콘텐츠 수출액인 132억 달러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 효자 산업이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4억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는 국내·외 대표적인 여가 문화이다.

다만, 엔데믹 이후 세계시장 및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PC·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게임산업 성장률 : (’20) 9.5% →(’21) 5.9% →(’22) 0.9%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 : (’20)21.3% →(’21) 11.2%→(’22) 5.8% →(’23 예측치) -10.9%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K-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K-게임 경쟁력 레벨 업: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적인 양성 추진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PC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K-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글로벌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제작 지원, 플랫폼 입점·홍보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플랫폼사 및 국내·외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콘솔게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콘솔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산업 기초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 지원을 위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매칭하여 다년도로 지원한다. 또한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K-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를 구축하여 피드백 제공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 소재 제공을 위해 웹툰·드라마·고전 게임 등 대한민국 주요 IP를 제공할 협력사와 콘솔게임 제작사 간 연계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다양한 장르·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하여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판로를 다각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한다. 판호 발급 등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부처와 장관급, 국장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통상협력을 강화한다.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UAE 등 중동시장에 대한 현지화 지원을 확대하고 북미·유럽 등 선진 게임 권역에 대한 콘솔게임 중심의 진출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개발·제작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게임콘텐츠 R&D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게임에 대한 투·융자 연계를 통해 제작비 조달 경로를 다각화하고, 게임사의 제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 K-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규제 혁신 통한 산업환경 업그레이드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하여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의 의무화로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 미실시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 개선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현재 1만 원 이하의 완구·문구류 등으로 제한되는 경품에 대해 사행성 우려가 큰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오락실 및 PC방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인 행위에 따라 이뤄지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하여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촘촘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며,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문체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TF」를 구성하여 세부 기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신고, 상담, 소송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K-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여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게임 전문인력 육성 관련,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글로벌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컨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행사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인재원 분원 설립을 위한 사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인프라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 콘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현업인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63% 수준의 높은 국내 게임 이용률에 맞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를 조성한다.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한 기능성 게임 제작을 지원하고 국립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기능성 게임을 시범 보급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하여 게임 과몰입을 예방함과 동시에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도 추진하여 게임을 질병 및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온라인 PC게임 및 이스포츠의 종주국으로서 위상도 확립한다. 한국 게임 역사를 집대성하고 미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를 세계적인 게임쇼로 확대하기 위해 게임 관련 전시, 게임 OST 연주회 등의 공연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행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 은퇴자(베이비부머) 지원 규제개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약1,700만 명)로 인한 초고령사회에 막 진입하였고, 향후 20년간 고령인구와 지방소멸 위험 위기는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국토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주거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생활비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절대 인구의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방지대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정(일부특례 부여)과 재정지원 제도(지방소멸 대응기금)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심각성을 볼 때 위기 대응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 규제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조치들의 실질적 효과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였다.

* 초고령사회:'25년(65세 이상 20%),고령사회 '18년(14%)고령화사회 '00년(7%)
** ('20년) 수도권 인구>비수도권 인구, ('22년) 합계출산율(0.78명) 세계 최저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89개('21), 인구감소지역지원법 시행('23.1월)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 국책연구원(국토연구원, LH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경북·전북연구원 등)과 전문가회의(8회), 지방자치단체(철원·서천·고창군 등) 및 유관 기관 방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8회) 등을 통해 은퇴자들이 지자체 이주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이주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귀농귀촌, 농어촌민박, 지방과 농촌의 빈집,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등) 하였다. 또한 여러 관련 부처와 수차례에 걸친 의견 조정회의를 통해 수립된 내용을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고 조율하여 세부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나) 추진성과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에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하였다. 한편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추진하였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교육이수실적(농식품부) 등

셋째, 농어촌민박 관련해서는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230㎡ 미만으로 되어있는 건축 연면적 제한의 완화와 조식만 허용되고 있는 식사제공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지역실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자율 책임하에 하도록 권한위임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농어촌민박 증가) '10년 18,858 → '15년 24,246 개소 → '23년 32,788 개소

넷째,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 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 서명날인 하는 의무규정 신설 ('22.3월)로 자부담 증가 (빈집정비 사업신청자 감소요인)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기초지방자치단체, '24년 말 기준 89개)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과거 사례와 같은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병행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추진단, 이주 활성화 개선방안 마련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
소멸위기지역 활력 높인다
귀농지원 관련 규제완화
귀농자금 지원 신청 시 영농교육시간
현행
100시간 이상 지원 가능
(사이버 교육 50% 인정)
개선
8시간 이상 지원 가능
(사이버 교육 40시간 내 100% 인정)
농한기 농외근로 기간
현행
1년 최대 3개월
4개월
개선
1년 최대 4개월
은퇴예정자 귀농자금지원 신청
현행
퇴직예정자 귀농자금 지원신청 불가
개선
당해연도
퇴직예정자 신청 가능
당해연도
귀농지원 신청서류
현행
제출서류 8종
개선
제출서류 6종으로 축소
농어촌민박
현행
수요자의 안전, 위생 편의 욕구 미충족
(시설 협소 등)
개선
규모기준 개선을 포함한
제도정비('24. 6월)
농어촌 빈집
현행
철거 시 사전검토 비용 부담,
체계적인 빈집정보 부재
개선
사전검토 의무 완화 방안 마련('24. 6월),
지자체 연계 정보제공('24. 11월)
노인복지 주택 분양 허용
현행
분양 불허(개인 재산권, 기업 자금 확보 곤란)
개선
인구소멸지역에 분양형 허용

참고1 은퇴자지원 규제개선 세부과제 (총 8건)

■ 은퇴예정자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이 있는 상시 근로자(1개월간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제외)는 귀농지원 신청 불가

개선 ▸ 퇴직예정자중 당해년도에 귀농 예정인 자도 귀농자금 지원 신청 허용 ('24.1월 기시행)
* 농촌 이주 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자금 신청·사용은 귀농 후 가능함

효과 ▸ 퇴직예정자에게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농촌 인구유입 활성화 기대

■ 귀농 자금 신청을 위한 영농교육시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귀농 희망자가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귀농,영농교육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며,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되고 있어 귀농희망자에게 부담

개선 ▸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에게 사업 신청기회 부여,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 100%(최대40시간) 인정 ('24.1월 기시행)

효과 ▸ 귀농 희망자 교육시간 규제완화로 귀농 준비 부담 완화

■ 농한기 농외근로 기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귀농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지자체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한 후 농한기를 활용, 농외근로 가능

개선 ▸ 영농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농외근로기간을 4개월까지 확대 ('24.1월 기시행)

효과 ▸ 농외근로기간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기대

■ 귀농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귀농희망자가 농업창업자금 등을 신청시 사업신청 제출서류 과다로 귀농희망자에게 부담
* 제출서류(8종): 신청서, 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신용조사서 등

개선 ▸ 행정정보공동망등 시스템을 활용,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제도개선 ('24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교육이수실적(농식품부) 등

효과 ▸ 귀농·귀촌 희망자 신청서류 간소화로 도시민의 지방이주 활성화 유도

■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 민박수요와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Needs)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건축연면적은 230㎡ 미만, 식사는 조식만 허용

개선 ▸ 건축연면적 제한완화와 식사 확대허용 부분을 지자체에 권한 위임하여 조례로 정함

효과 ▸ 민박 이용객 편의증진과 지역민의 농외소득 창출기회 확대

■ **농어촌 빈집철거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 완화** (국토교통부)

현행 ▸ 건축물 해체계획서는「건축사법」및「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 서명날인 하는 의무규정 신설 ('22.3월)로 농어촌 빈집철거시 추가비용(약 100~180만 원) 소요, 철거신청자 감소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6명 사망(21.6월)으로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개정

개선 ▸ 농어촌의 소규모주택 대상,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 완화

효과 ▸ 농어촌 빈집철거 활성화로 생활기반 조성과 농촌 인구유입 유도

■ **이주희망지역 빈집거래정보 제공 활성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실질적인 빈집정보 제공 플랫폼 부재*로 지역간 이동, 귀농·귀촌 이주에 애로
* 부동산원에서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나 빈집 수 등 현황 정보만 제공 중
* '22년 귀농귀촌실태조사(23.3.2., 농림부) : 농지·주택·일자리 제공이 가장 필요한 정책 응답

개선 ▸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빈집 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간플랫폼 연계 빈집은행 운영(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효과 ▸ 농·어촌 및 지방도시로의 이주 희망자에게 실질적 빈집정보 제공으로 인구유입 유도

■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보건복지부)

현행 ▸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은 '15년 이후 분양 불허로 민간 참여가 제한되어 은퇴자(베이비부머) 수요대비 절대적 수량 부족
* (노인복지주택) 40개소, 9,006세대, 60세이상, 독립주거가능자(민간),보건복지부
* (고령자복지주택 등) 46개소, 5,800세대 65세이상,저소득층(지자체, LH),국토부

개선 ▸ 정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 허용
*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 악용사례와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병행

효과 ▸ 노인복지주택 공급부족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등 활성화 기여

8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기술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협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및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등 5개 광역특구와 구미, 군산 등 14개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신기술을 이용한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제도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과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나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토지이용 제한 완화, 특구변경 절차의 간소화 등 특구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추진단은 특구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이 당면한 규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24년 5월 14일 개정 공포되었다.

(나) 추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검토한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개발 포화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활동공간 확보 문제가 대두된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를 각각 30%에서 40%로, 150%에서 200%로 상향하였다.

둘째,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일시적 공간확보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구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특구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 특구 내외부의 기업, 교육·연구기관이 유연한 협력연계로 신산업 창출이 가능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우수한 연구개발 혁신제품 중 일부가 지정요건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 지정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기업 친화적으로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참고1 카드뉴스


연구개발 특구를
지역 기술산업 육성
거점으로 발전
규제혁신추진단
추진단 업업
특구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4.5.14.
2/7
특구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건폐율·용적률 제약 완화
특구 내 연구 및 창업, 기업활동 공간 확보 가능
건폐율 (기존) 30% → (변경) 40%,
용적률 (기존) 150% → (변경) 200%
3/7
특구 변경 절차 간소화
특구 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 변경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생략,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4/7
융합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혁신주체의 기술을 융합·연계하여
지역 특화 산업화를 위한 사전 기획 및 실증 등 지원
특구 기술의 글로벌 확산, 첨단기술 확보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확대, 해외기업 유치 등 추진
5/7
기업 성장에 따른
일시적 공간확보 애로 해소
연구기관 일부가 특구가 아닌 경우
경미한 사항변동으로 간주하여 특구로 인정
6/7
저밀도 개발지역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목적의 신규 공간을 확보
이제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기술산업 육성 거점으로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성장합니다.
규제혁신추진단 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추진단

참고2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기술산업육성 거점으로 발전 – 혁신 생태계 조성, 신기술 사업화 제약요인 해소 –

과제명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특구 공간활용 제약 해소	▷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연계 공간 부족으로 소통과 융합에 제약 – 타 혁신지구 대비, 토지 활용도 낮고 추가 건축수요 대응 곤란 – 전원형 연구단지에서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 필요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건폐율·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건폐율 30% → 40% • 용적률 150% → 200% • 층수 7층 → 제한 폐지 –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 층수제한 완화는 특구법 개정 사항으로 별도 추진
기업의 일시적 공간확보 애로 해소	▷ 연구소기업이 특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등록취소 위험 – 연구기관(대학) 내 입주 건물이 특구범위에 미포함된 경우	▶ 특구범위 밖의 연구기관 일부를 특구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 간소화 제도 도입 – 지역별 변경계획 순차적 수립 추진
융합기술 사업화 지원 확대	▷ 교육·연구기관과 산업체 협업 지원제도 내용·범위가 제한됨 – 특구 내 연구기관과 외부 산업체의 협력 제한 – 특구 개발 신기술의 산업적 이용·확산에 제약	▶ 특구와 인근 산업단지 기업간 융합·연계 사업화 지원 확대 – 융합기술 사업화, 국제 공동연구, 해외기업 유치 등 – 특구육성사업 구조개편, 시행계획 반영 추진
혁신제품 지정시 기업부담 완화	▷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심사 평가기준을 기업이 제시하도록 요구 – 기업의 부담 가중 및 지정에 장시간 소요	▶ 필요한 평가자료를 조사하여 구체적 예시를 준비,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제품 심사기준 관련 다양한 사례조사 및 제공 추진

9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2023년 역대 최저치(0.72명)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하한선(2.1명)을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으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동료 업무부담, 인사상 불이익 우려와 휴직 중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미혼일 때보다 기혼일 때 주택청약, 주택자금 대출 혜택이 감소하거나 자격 기준이 불리하여 신혼부부의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출산율 저하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현장 방문,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간담회(20여 회)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결혼·출산·양육 관련 기존 제도 중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9회),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 등을 거쳐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중 난임치료 휴가제도 개선 등 10개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력하여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를 마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나) 추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제안한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 및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첫째, 부모가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분할사용 횟수 등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까지만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 임시 휴원, 방학 등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2회→3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액을 인상(150만원→최대 250만 원)*하는 한편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하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마음 편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을 신설·지원하기로 하였다.

* 첫 3개월(1~3월): 250만 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 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 원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소 사용단위를 축소(3개월→1개월)하여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 시기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에 중요한 시기에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20일, 근무일 기준)과 청구기한(90일→120일)을 확대하는 한편 휴가를 사용하면서 업무 공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완화(1회→3회)하고 시간 단위(일→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신청하고, 10일의 휴가를 1회 분할하여 최대 두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할 횟수도 1회로 한정되어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퇴소, 출생신고, 신생아 예방접종 등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 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1만 7,471명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다(고용노동부, 2022).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절반 이상(58.5%)을 차지하고 평균 사용 일수는 7.5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에 비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높아 이용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출산 후 90일 이내로 제한된 휴가 청구기간을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넷째, 아이를 원하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실제 치료 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난임 치료 휴가 기간(3일 → 6일)을 확대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간 단위(일 → 시간) 분할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주택자금 대출 지원에 대하여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7.5천만 원→1억 원)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1.3억 원→2억 원)하고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 원, 3년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영유아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영유아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0세반 교사 대 영아 비율 1:3→1:2, 3~5세반 평균 교사 대 유아 비율 1:12→1:8로 개선을 추진하여 교육·돌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1명인 당 아동 수(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기준은 2005년 이후 변화가 없어 영유아 수 감소, 발달 지연 아동 증가 등 보육 환경변화에 맞춘 학급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현행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운영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저출생 심화로 인한 정원 충족률 감소 등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공동어린이집 등의 돌봄시설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홉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8구간→9구간, 약 10만 명 추가 지원)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가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많을수록 고정지출이 증가하여 교육비 지출 부담이 커지지만,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0%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소득 및 자산이 전국 평균 수준인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저출생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단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정책의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애주기별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초등돌봄 빈틈없게

4 지역맞춤 돌봄 확대

- 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 마련

늘봄학교 전면 확대

-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 ('26년까지)
-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양육부담 줄어들게



5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 (첫째아/둘째아/셋째아 : 15/20/30→25/30 /40만원)
-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현금 지급, 사용기한 제한(2년) 폐지
- 수요자 희망 시 각종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가칭 웰컴키즈통장),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지속 확대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3자녀→2자녀)
-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8구간→9구간, +10만명)
- 대학별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자녀와 외출이 부담 없도록 지원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어린이·임산부 Fast Track 도입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6 일·가정양립 가능하게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現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분할사용횟수(1회→3회) 확대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 육아휴직 미사용시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초2→초6)
- 대체인력 미채용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컨설팅+장려금(월30만원) 패키지 지원

수요자 편의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연1회, 2주단위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일정기간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추가 육아휴직), 지원금 증액 (월 80만원→120만원)
-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5일→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참고1 카드뉴스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규제혁신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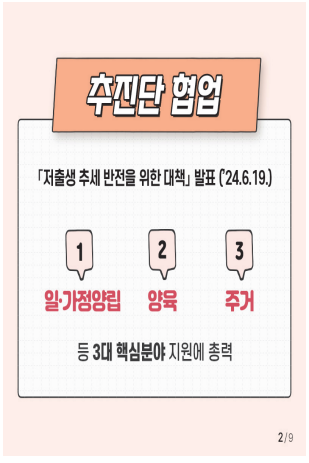
추진단 협업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24.6.19.)
1 일·가정양립
2 양육
3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2/9


난임치료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
난임치료 휴가
- 현행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로 확대
- 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한 산모와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빠 출산휴가 기간 (10→20일), 청구기간(90→120일) 및 분할 횟수(1→3회) 확대
- 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하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 예 :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등
3/9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도입(2주 연 1회,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완화(현행 2 → 3회)
- 육아휴직 첫 급여상한액 인상(현행150만원 →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1~3월) 250만원, (4후 3개월(4~6월) 300만원, (7후 6개월(7~12월)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기간 내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소 사용 단위 축소(3→1개월)
-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 (월 20만원, '24하반기)
4/9


맞벌이 가구의 주택자금
대출 지원 요건 현실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 (현행) 7,500만원 → (개선) 1억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소득요건 완화
* (현행) 1.3억원 → (개선) 2억원
※ '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디폴트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
5/9


영유아 동반가족
주차 불편 개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확산을 위해 적정 설치비율, 적용대상, 지역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병행
가족배려주차장
6/9


다자녀 가정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 완화(8구간 → 9구간)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 약 1만명 추가 지원 예상
다자녀 가정 대입 특별전형* 확산 유도
* '25학년도 대입 시행시범(3지녀, 중앙대·경희대(4지녀) 등 시행지역 10곳 포함 전국 51개교 운영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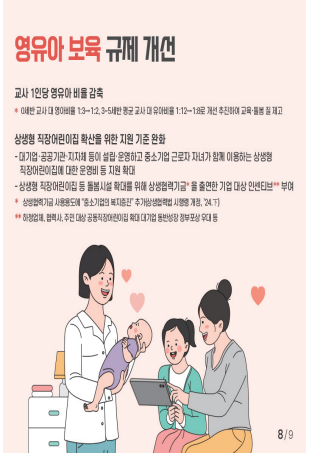
영유아 보육 규제 개선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감축
* 0세반 교사 대 영아비율 1:3→1:2, 3~5세반 평균 교사 대 유아비율 1:12→1:8로 개선 추진하여 교육·돌봄 질 제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지원 기준 완화
- (대기업 · 공공기관 ·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을 출연한 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
* 상생협력기금 사용처에 "중소기업의 복지증진" 추가(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24. 下)
** 하청업체, 협력사, 주민 대상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대기업 동반성장 정부포상 우대 등
8/9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기적점이며,
초개술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개고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 · 관계부처

참고2 세부 개선과제 (총10건)

■ 수요자 편의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고용부)

현 행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제한, 휴직기간 중 소득감소 등으로 제도 사용을 제약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상한) 지급하되,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

개 선 ▸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완화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 사용, 분할횟수 산정 시 미차감)
-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제한 완화 (2회→3회)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月 150만 원→최대 月 250만 원) 및 사후지급금 폐지
  ※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한 적용
- 육아휴직 동료업무분담금 신설 (중소기업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효 과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일·육아 병행 환경조성에 기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건 개선 (고용부)

현 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1회에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제한

개 선 ▸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 연령, 최소 사용단위 제한을 완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소 사용단위를 축소(3개월→1개월)
-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초등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로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제도 활용 가능토록 개선

효 과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일·육아 병행 환경조성에 기여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 (고용부)

현 행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청구 기간 등의 제한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

개 선 ▸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20일, 근무일 기준)과 청구기한(90→120일) 확대, 분할사용 횟수 제한 완화(1회→3회) 및 시간 단위(일→시간) 사용을 허용하여 업무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효 과 ▸ 남성의 맞돌봄 여건 개선 및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에 기여

■ 결혼·출산 가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개선 (국토부)

현 행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지원요건이 미혼 가구 대비 불리함에 따라 청년들의 결혼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

개 선 ▸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국토부)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7.5천만 원→1억 원)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1.3억 원→2억 원)*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2.5억 원, 3년간 시행)
-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 (0.2%p↓→0.4%p↓)

효 과 ▸ 결혼·출산 가구에 불리한 주택자금 대출요건을 개선하여 결혼패널티 해소 및 주거마련 부담완화

■ **난임치료 휴가제도 개선** (고용부)

현행 ▸ 법정 난임치료 휴가기간(3일)이 실제 치료기간(시술별 7~8일 이상)에 비해 부족하여 난임 근로자의 약 40%가 퇴사를 선택하거나 치료를 중단

개선 ▸ 아이를 원하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난임 치료 휴가 기간(3→6일)을 확대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간 단위(일 → 시간) 분할사용을 허용

효과 ▸ 난임 근로자의 치료 부담 해소 및 경력단절 방지

■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부)

현행 ▸ 어린이집 운영 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비율 제한*으로 영유아 수 감소, 발달지연 아동 증가 등 보육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운영에 애로

*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 반 1:3, 1세 반 1:5, 2세 반 1:7, 3세 반 1:15, 4세 반 이상 1:20

개선 ▸ 0세 반 교사 대 영아 비율 1:3→1:2, 3~5세 반 평균 교사 대 유아 비율 1:12→1:8로 개선을 추진하여 교육·돌봄의 질적 수준을 제고

효과 ▸ 영·유아의 교육·돌봄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고용부)

현행 ▸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운영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저출생 심화로 인한 정원충족률 감소 등 운영 애로

개선 ▸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효과 ▸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부담 경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영유아 동반가족 차량 이용 불편 해소** (국토부)

현행 ▸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주차장 이용 시 옆 차와의 간격이 좁아 승하차가 어렵거나 안전사고 위험

개선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

효과 ▸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

■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교육부)

현행 ▸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자녀 가정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 '다자녀 특별전형'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대학과 선발인원이 제한적

* '25학년도 대입 서울시립대(3자녀), 중앙대·경희대(4자녀) 등 51개교

개선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

효과 ▸ 다자녀 가정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 **다자녀 가정 국가장학금 지원요건 완화** (교육부)

현행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한 월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가구로 한정하고 있으나,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0%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소득과 자산이 전국 평균 수준인 가구는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

개선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8→9구간, 약 10만 명 추가 지원)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

효과 ▸ 다자녀 가정의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참고3 보도자료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19.(수) 위원회 종료 후(별도공지) **배포** 2024. 6. 17.(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 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❶일·가정양립, ❷양육, ❸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총력
-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❶**일·가정 양립,** ❷**양육,** ❸**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 또한, 정부는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❶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 年 1회 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現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全 기간
**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現 150→최대 250만 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겠습니다.

* (월 상한액) 첫 3개월(1~3월):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 200만원, 이후 6개월(7~12월): 160만원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의 **인상**(現 月 200만 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 원)**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아빠 출산휴가 기간(現 10→20일,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現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횟수**도 **3회로 확대(現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하겠습니다.

– 또한,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 한편,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더 인상(現 80→120만 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全 기간**으로 **확대**(現 5→**20일**)하겠습니다.

-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❷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하는 한편,

-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 운영시간(8시간)** +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0세반) 1:3 → 1:2, (3~5세반 평균) 1:12→ 1:8

-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하겠습니다.

-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全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 ('24년 2학기) 1학년 → ('25년) 1~2학년 → ('26년) 全학년
  ** ('25년) 초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全학년) → ('26년)+초3학년 → ('27년)+초4~6학년

-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하겠습니다.

-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 **시간제 보육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하겠습니다.

•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❸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 호)에서 **23%**(年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 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하겠습니다.

-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겠습니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겠습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약 10만 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現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하겠습니다.

-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現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現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하겠습니다.

□ 3대 핵심 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경제계 일·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종교계 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등 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구성(안):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

•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하겠습니다.

10 신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녹색 신산업 관련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산업분야 개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EU, 미국 등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그간 정부와 업계에서는 투자 및 산업 활성화를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①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재활용 등 환경규제 ②산업의 성격과 공정, 오염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 및 진입 제한 ③수요 창출 등 지원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경제단체, 기업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 '24.6.20.부터 개별과제별 진행상황에 맞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하였다.

(나) 추진 성과

우선, 기술발전을 반영한 환경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 플라스틱 열분해유 같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은 현행법상 재활용 제품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신규 화학물질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어서 법적 지위 및 적용 법률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했다.

또한, 탄소포집·활용(CCU) 사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였다. CCU사업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등으로 분류되어 산단 내 공장시설 용도에 입주여부가 모호(제조업만 입주가능)했다. 이에 CCU사업에 적용되는 산업특수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등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애로를 해소키로 하였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는 바이오가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활용 토사의 순환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他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 생산 안정성이 높은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에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월 최대 1만m3 에서 30만m3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발전사업시 적용되는 소규모 바이오가스화시설(일 150톤 미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현재 1.0)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한편,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토사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령간(폐기물관리법, 농지법) 내용이 상충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현장의 민원 발생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농지 성토용 재활용 토사의 세부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면서도 재활용 토사로 인한 작물의 생육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소량의 연구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개선하여 자료제출 창구를 일원화('25.1월 시행)하고 중복서류도 최소화하였다. 이로써 화학물질 연구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카드뉴스


신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
규제혁신추진단
기술 발전 반영 규제 합리화
◦ '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고, 중복규제 방지방안 마련
◦ 탄소포집 활용(CCU) 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구체화, 산업단지 공장용지 입주 지원
→ 관련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
연구용 화학물질 관리 간소화
소량의 R&D 물질 제조 · 수입시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창구 일원화, 서류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기업부담 경감, 화학물질 연구 여건 개선
탄소중립 · 자원순환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바이오가스 수요처 직접 공급 물량 확대, 발전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이용 시 인센티브 확대
◦ 농지에서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는 토사 기준을 명확화
→ 바이오가스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재활용 토사의 순환이용 확대

참고2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20.(목) 11:00 **배포** 2024. 6. 17.(월)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 2025년부터 공공 발생 유기성 폐자원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
-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집중 지원
-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시설 등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규모 확대
- 수소, 청정메탄올(선박 연료) 등 바이오가스 수요처 다변화
- 2026년까지 연간 5억Nm3 바이오가스 생산 추진으로, 연간 2,300억 원의 화석연료 대체, 100만톤/연 온실가스 감축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한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은 '표준 입방미터'로 읽으며, 온도 0도씨, 1기압 기준, 기체의 부피를 의미함

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작년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공공)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 (민간)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22년 기준 52개소)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

둘째,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통합시설 설치: ('22년) 신규 3개소 → ('23년) 누적 7개소 → ('24년) 누적 15개소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③ 생산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셋째,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수소 생산시설 설치: ('23년) 신규 2개소 → ('24년) 누적 4개소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본보기(모델)도 발굴한다.

* 국제해사기구(IMO)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08년 대비 50% → 100%, '23.7)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메탄올과,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생산한 메탄올을 포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2.(화) 10:00 **배포** 2024. 7. 2.(화) 08:00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 신설로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되었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제조·수입자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유럽연합(EU)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

참고3 주요 개선과제 세부내용

■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록부담 완화 (환경부)

현행 ▸ 재활용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열분해유*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화학물6질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명확**
* 폐플라스틱을 고온 가열하여 가스와 오일로 분해한 뒤 냉각·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원료
** 등록면제 조항에 재활용물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 재활용물질도 등록대상임을 명확히 하되,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제11조)·시행규칙(별표5) 개정 (~'24.6월)

효과 ▸ 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탄소포집·활용(CCU) 사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통계청,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현행 ▸ CCUS 사업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업 등으로 분류 → 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업종 분류가 모호하여 산단 공장용지 입주 애로
* 산단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시설용도에는 제조업만 입주 가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

개선 ▸ 산업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CCU사업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구체화, 입주 지원
➡ 통계청, 특수분류 고시('24년)
* 개발 수요조사('24.1월), 경제분류자문회의 개최(5월)

효과 ▸ CCU사업 기술 발전 및 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

■ 바이오가스 경제성 제고로 생산·이용 확대 (산업부, 환경부)

현행 ▸ 바이오가스법 제정('23.12시행) 등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소규모 바이오가스화 시설(150톤/일 미만)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시설투자 확대에 한계
▸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공급판매가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일정 량(월 최대 1만㎥) 이하 공급 시에는 수요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개선 ▸ 소규모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한 REC 가중치 조정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확대 여건 마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2 개정('24년)
▸ 바이오가스 직접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경제성 확보
➡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개정('24년)

효과 ▸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처리 및 바이오가스산업 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감축

■ **농지성토용 재활용 토사의 기준 마련** (농림부, 환경부)

현행 ▸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흙) 등을 농경지 성토재로 사용 허용(시·도지사 인정 시) → 반면, 농지법령**에서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의 구체적 기준 미비, 일부 내용 상충 → 지자체의 민원발생 등 현장 혼선 초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별표 5의3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선 ▸ 농지성토용 재활용 토사의 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

* 경작에 적합한 흙의 물리·화학적 기준, 주변 피해방지 방안 등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24년)

효과 ▸ 재활용 가능 토사의 순환이용 확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 **연구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절차 간소화** (환경부, 고용부)

현행 ▸ 소량의 연구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에도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등록·신고 면제 확인)」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기관(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환경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 행정부담 과도

개선 ▸ 화학물질확인 업무를 한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자료는 제출을 최소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3항) 개정 ('25.1월 시행)

효과 ▸ 연구용 화학물질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연구개발 여건 개선

11 해양레저관광산업 규제혁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성장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지정학적 조건, 관련 산업 기술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의 최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해와 관심 부족, 각종 규제와 정책 미비로 발전이 저조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양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선진국의 해양산업의 경제규모 내 해양레저관광의 비율이 30~40%로 매우 높으나 우리나라는 2.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23.2월부터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사업자, 현장 종사자 등 자문 및 의견 수렴(9회)을 거쳐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고, 과제별 현장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부처협의(총 29회), 차관주재 회의(4회), 총리주재 회의(4회)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난 '24.8.13.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과제 |

분 야	주요 과제
1 해양레저장비산업	❶ 해양레저**선박 설비·기자재 국제표준(ISO) 기준 인정** -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기자재 재검사 없이 선박 탑재(검사간소화)**
2 요·보트 계류시설 확대	❷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❸ **노후·유휴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3 레저활동 불편해소	❹ 해양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개선 ❺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❻ 레저선박의 선장 재선(在船) 의무 개선
4 법령·기능 정비	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❽ 해양레저관광업무 통합관리기능 강화

(나) 추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검토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트, 보트 등 레저선박 검사기준에 국제표준(ISO) 기준을 인정하고,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해양레저 요·보트는 약 3,000만 척으로 매년 5백만 척 이상('18년 5,610,441척, ICOMIA) 새로 제작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자동차· IT·섬유산업 등 연관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진국 등에 비해 발전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이 까다로운 선박검사 기준과 절차가 요·보트 등 소형선박 제조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국내 선박검사 기준과 국제표준(ISO) 기준이 달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 기준 등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국내법 기준에 따라 재검사를 다시 받아야했다. 재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발생하고 이것이 제조선가에 반영되어 생산 원가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제표준과 다른 국내 기준에 따라 제작한 선박은 수출이 불가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 등으로 요트 제작업체들이 대부분 요트 제작을 포기하고 어선이나 관공선 등 다른 선종으로 전환한 상태이고 요트 수요자들은 국내 제작보다 국제기준이 적용된 값싼 중고선 수입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요·보트를 포함한 소형선박(길이 24m 미만) 시설 및 가자재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국내법에서 인정하고, 주요 국제선급(IACS) 등에서 승인한 선박시설 또는 기자재는 국내에서 재검사 없이 관련 서류 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하도록 개선토록 하였다.

이로써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는 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선박 제작에 문턱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국내 중소선박 기자재 산업도 기술 개방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국제표준 적용 요트와 국내기준 적용 요트 비교 |

〈해외 제작 요트의 다양한 환창(環窓)〉	〈국내기준에 따른 환창(環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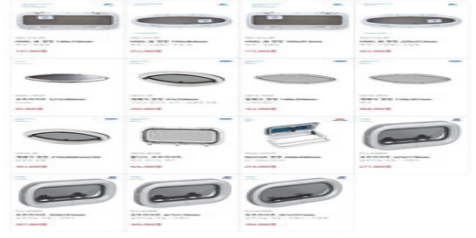	

* 외국에서 제작된 요트의 환창은 디자인이 다양하나, 국내에서 제작된 요트의 환창은 일반선박(어선, 화물선 등)의 환창과 동일함

수입 선박용 물건(기자재) 탑재 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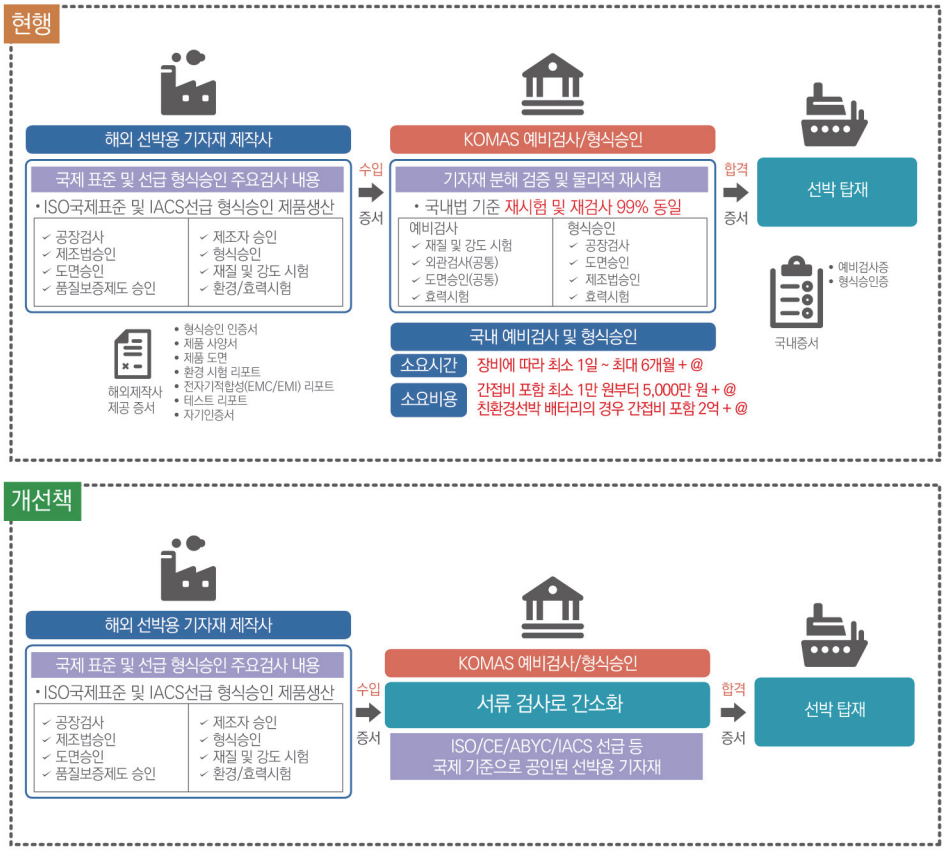

둘째, 마리나항만 개발기준·절차를 간소화하여 요·보트 계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5,366척('23년)으로 매년 2~3,000척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하여 요·보트 계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마리나항만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절대 부족한 계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요트·보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많은 비용(약 1,200억 원)과 시간이 소요(약 6년)되었다. 현재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하고, 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주 52시간 근무와 여가 확대, 삶의 질,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양 레저 활동과 관광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해양레저활동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둘째,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활동을 위한 잠수복 착용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없앰으로써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을 대여할 때 대여업체 직원이 요·보트에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대여가 어려웠으나, 양측의 계약에 따라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도 요·보트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행을 개선하여 요·보트대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하고 및 업무·조직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양레저관광업무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해양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관광의 각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 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추진단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수부의 노력, 문체부의 협조로 그간의 해수부의 숙원과제였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24.1.30.)함으로써 해양레저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참고1 보도자료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8. 13. (화) 16:00 **배포** 2024. 8. 13.(화) 10:00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新성장 산업화

- 4대 분야(▲레저장비 ▲계류시설 ▲레저 불편해소 ▲법령·기능 정비) 8건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 국내 요·보트 및 소형선박 제작 규제개선으로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기대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외레저관광객 유치 확대 등 산업발전 전기 마련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 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여 A사와 같은 선박제조사들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적으로 개선**한다.

* 세계관광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UNWTO, '23)

*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 : ('19) 29.9조 원 → ('20) 28.6조 원 → ('21) 31.3조 원 → ('22) 37.4조 원 (KMI 동향분석, '23)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개 분야별 8개 규제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IT, 자동차산업 등 연관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어 세계 해양레저장비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다만, 국내 선박 제조 현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국내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❶ 이에 해양레저선박(플레저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주요 국제선급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이로써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는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선박제작에 문턱 없이 적용할 수 있어,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의 수입대체 및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양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 등 계류시설 확충 방안

-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절대 부족한 **해양레저선박 계류시설을 조기에 확충**, 요트·보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5,366척**('23년)으로 매년 **2~3,000척씩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❷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많은 비용(약 1,200억 원)과 시간이 소요(약 6년)되고 있다. 현재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❸ 또한 국가·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역어촌계와 협의하여 **계류시설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어촌을 **지역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어촌계와 해양레저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3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

- 주 52시간 근무와 여가 확대, 삶의 질,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레저활동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❹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❺ 또한 현행 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또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❻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을 대여할 때 **대여업체 직원**이 요·보트에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대여가 어려웠으나, **양측의 계약**에 따라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도** 요·보트를 **직접·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인식을 개선하여 **요·보트 대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4 해양레저관광 업무 체계 조정 및 법령 통합

- **해양레저관광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관광의 각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❼ 그동안 해수부는 업계의 숙원이었던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규제혁신추진단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수부의 노력, 문체부의 협조로 그간의 숙원 과제였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24.1.30.).
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해외 레저 관광객 유치 등
해양레저관광의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❽ 이를 계기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업무의 중요성 증가에 발맞춰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규제혁신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신(新)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 4개 분야 8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요·보트 등 소형선박 시설·물건에 국제표준 인정	
기존	선박 검사기준이 국제표준과 국내기준이 달라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도 국내 별도검사에 비용시간 소요, 제한된 규격으로 세련되고 창의적 제작이 어려움
개선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 물건은 국내 검사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법령 개선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마리나항만 설치기준·절차 간소화	노후·유휴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선정	인구감소 유휴 어항 내 계류시설 설치,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

해양레저 이용객 불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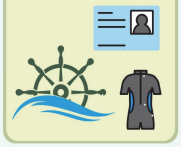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개선	수중레저 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시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추진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잠수복 착용으로 구명조끼 대체

레저선박 대여 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조종면허가 있는 임차인 책임 하 프라이빗한 선박대여 가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기본법) 제정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정책·관리 기능 강화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참고2 카드뉴스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新성장 산업화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해양레저
이용객 증대
해양레저
관광서비스
시장 확대
해양레저
장비생산
확대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대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요·보트 등 소형선박 시설·물건에 국제표준 인정
- 기존 :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도 국내 별도 검사로 시간과 비용 소요
- 개선 :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 물건은 국내 별도 검사 없이 검사 절차 간소화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
마리나항만 설치기준·절차 간소화
-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선정
노후·유휴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 인구감소 유휴 어항 내 어촌계와 협의후 요.보트 계류시설로 활용방안 추진


해양레저 이용객 불편 해소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개선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시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추진
수중레저 활동자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잠수복 착용으로 구명조끼 대체
레저선박 대여 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조종면허가 있는 임차인 책임 하 선박대여 가능


해양레저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체계개선
해양레저 관광 법령체계 정비
- 해양레저관광진흥법(기본법) 제정 등 정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레저 관광업무 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참고3 규제개선 방안 발표 이후 학계·산업계 등의 반응



〈민관 산학연 연합포럼 – '24.6.29.〉



〈 인천 해양레저 포럼 – '24.8.22.〉



〈학술대회 출범식 – '24.12.12.〉

참고4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세부 내용

■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국제표준 인정 (해양수산부)

현행 ▸ 국제표준 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 검사기준에 따라 국내 검사기관에서 별도 검사하여 인정, 검사에 추가적인 시간·비용 등 애로

개선 ▸ 선박 및 선박용물건 검사기준에 국제표준 인정규정 명문화
- 「소형선박 검사기준」 제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기준」 개정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고, 우리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주요 국제선급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사용 가능
(단, 국내에서 인명안전을 위하여 강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효과 ▸ 레저선박 제작 시 경제성·작업성 개선으로 선박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해양수산부)

현행 ▸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에 대해서만 가능하여, 까다로운 절차로 민간투자 유치 곤란

개선 ▸ 계류시설의 규모에 따라 개발기준·개발절차 간소화
-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

효과 ▸ 마리나항만의 조기 확충으로 인한 레저선박 계류시설 대폭 확대

■ 노후·유휴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해양수산부)

현행 ▸ 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노후 및 유휴 어항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촌계와 사전협의 없이 레저선박 어항 내 계류 시 갈등 발생

개선 ▸ 어항구역 유휴공간에 간이 요·보트 계류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어촌계와 협의 후 설치 추진하여 해양레저관광 안내소 등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방안 추진

효과 ▸ 부족한 계류시설 조기 확보 및 쇠퇴 지역어촌계 경제 활성화

■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제도 개선 (해양경찰청)

현행 ▸ 해양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에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선진국에 비해 해양레저인구 확대에 장애, 면허취득 규제완화 현장 요구
- 요·보트 조종면허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5일간 80만 원대 비용이 필요하여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음

개선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시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면허취득 소요 시간 단축 추진

효과 ▸ 해양레저 활동 진입장벽 완화로 직장인 등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

■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해양경찰청)

현행 ▸ 수상레저안전법령상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해 잠수복을 착용한 이용객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일괄 적용되어 불편 초래

개선 ▸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입고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이동 시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효과 ▸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 불편해소로 국내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在船) 관행 개선 (해양수산부)

현행 ▸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에 선장 등 직원 동승 관행으로 프라이빗한 선박대여가 불가능, 레저선박 대여업 활성화 장애

개선 ▸ 해양레저기구 대여 시 임차인이 조종면허 등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 임차인 책임하에 자율 이용토록 현장 인식 개선

효과 ▸ 요·보트 임차인 만족도 증대, 임대업체 인력·비용 절감으로 선박대여업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수산부)

현행 ▸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는 기본법과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법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지장초래

개선 ▸ 해양레저관광진흥법(기본법) 제정, 해양레저관광의 개념과 국가 정책 방향 제시, 해양레저관광 정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효과 ▸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정책기반 조성

■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해양수산부)

현행 ▸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에 한정한 현 정책 체계로는 해양레저관광의 중요성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

개선 ▸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정책·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지속성 유지

효과 ▸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효율적 대응

참고5 관련 사진



〈해양레저 기자재 업체 간담회-부산,'23.6.30〉



〈국무2차장주재 부처 조정회의- '23.10.10.〉





〈 김포 아라마리나 현장방문-'23.11.21 〉





〈 보트 제조업체 방문 – 경남 창원, '23.10.10.〉





〈경기국제보트쇼 참관- 일산킨텍스, '24.3.8.〉

12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최근 방위산업분야 수출은 빠르게 성장 중으로, 2023~2024년 2년간 평균 150억 불 이상의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하였고,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의 다변화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의 방산물자 수입국들은 수출무기의 성능보장은 물론 자체 정비능력 확보,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수출허가, 운반허가, 국방과학기술 이전 등의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방산 수출기업,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국방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총리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4.12.05.)에서 발표하였다.

(나) 추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하고 발표한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재 우리 무기체계 수입국의 요구 및 K-방산 수출무기의 MRO(유지·보수·운영) 거점을 해외에 설치하기 위해서 수출한 무기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수출할 때, 현재 수출 후 2년간만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수출 후 5년까지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수출허가 면제기준도 현행 수출허가서 상 수출품목에서 수출품목의 하위구성품까지 추가하는 것은 물론, 수출허가 면제품목에 대하여 수출 후 수출거래현황을 방사청장에게 제출 시 현재 7일이내에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효과로 향후 우리 방산업체들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MRO(유지·보수·운영) 거점을 해외에 설치·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우리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하여 구매국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시 방사청장의 기술이전 승인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방사청장의 승인없이 기술보유기관이 자체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동일국가에 동일품목을 2년이내 수출하는 경우에서, 수리부속인 경우 2년 이내의 조건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수출 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사전절차인 기술수출전문위원회를 수출업체 신청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기술수출전문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기간을 명문화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효과로 기술수출을 위한 허가기간 단축 및 규제완화를 통해 우리 방산수출기업들이 해외수출 경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방산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 해외로부터 무기도입 시 수입하는 무기체계의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의 절충교역 협상을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의 해외 방산업체와 할 때, 협상결과 평가등급에 있어서 중견기업을 대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네 번째,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수출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는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요소인 자료가중치와 난이도 가중치를 현재 범위값에서 고정값으로 정량화하여, 수출허가 사전절차인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시간을 단축하고, 기술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 방산수출기업들이 해외 구매국과의 초기 협상단계에서 가격제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섯 번째,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첨단 항공엔진, 유·무인복합, 군사위성 등 방산분야 첨단 전략기술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승격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들이 조세감면을 통한 첨단전략기술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1 세부 개선과제 (총 5건)

❶ 수출무기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면제 확대

현황
- ▸ 수출무기의 정비용 수리부속은 수출 후 2년간 허가 면제
- ▸ 수출허가서 상(上) 수출품목의 품명 및 규격이 일치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 ▸ 수출허가 면제품목은 수출 후 7일 이내 수출거래현황 제출

개선
- ▸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2년 → 5년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 ▸ 수출허가 면제기준 확대
  - 현행기준 + **하위 구성품 추가**
    * 방산수출입심사업무 훈령 개정
- ▸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7일 → 30일
  * 방위사업법 개정

효과
- ▸ 방산물자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신속대응 및 K-방산의 신뢰성 제고

❷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현황
- ▸ 기술이전 승인은 2개월 내 처리
- ▸ 동일국가에 동일품목을 2년 이내 수출하는 경우만 기술보유기관에서 자체 기술이전 승인
- ▸ 기술수출허가 신청의 필수절차인 '기술수출 전문위원회'의 개최 시기, 심의기간 규정 미비

개선
- ▸ 기술이전 **승인기간 단축**: 2개월 → **1개월**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
- ▸ 기술보유기관 **자체 승인기준 완화**
  - **수리부속은 '2년 이내' 조건 삭제**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
- ▸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개최**시기 및** 심의**기간 명문화**
  - 개최시기: **수출업체 신청시 개최**
  - 심의기간: **2개월 이내**
    * 방산수출입심사업무 훈령 개정

효과
- ▸ 기술이전 행정기간 단축/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❸ 중견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우대

현황
- ▸ 절충교역 참여에 있어서 대기업대비 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려움

개선
- ▸ 절충교역 협상결과 평가 시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등급 부여**
  - 국제 품질인증 확보 시: 無 → B 등급
  - 군수지원 관련사항 확보 시: C → B 등급
    * 절충교역 지침 개정

효과
- ▸ 중견기업의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기회 마련

❹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 정량화

현황 ▸ 방산수출 시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에 비정량적 요소로 예측이 어려움
- 초기 협상단계에서 가격제시 어려움

개선 ▸ 기술료 산정 요소인 자료가중치와 난이도가중치 **정량화를 통해 산정 소요시간 단축 및 예측성 제고**
* 국방과학 기술료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효과 ▸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시간 단축과 예측성 강화로 수출협상력 제고

❺ 방산분야 첨단기술 R&D 조세감면율 확대

현황 ▸ 방산분야 첨단기술은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되어 현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20% 적용

개선 ▸ **방산분야** 첨단 전략기술(군사위성, 유무인 복합, 첨단 항공엔진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협의 추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효과 ▸ 방산기술 조세감면을 통해 첨단기술 투자 지원 확대

13 공유숙박 규제개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공유숙박은 관광산업 활성화, 저렴한 가격 등 요인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유숙박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는 상황이며, 최근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중계업체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소 중개 등 음성적 공유숙박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내국인 공유숙박의 법제화 및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정부는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부처협의(11회),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8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법제화, 공유숙박 입지규제 완화, 미등록 숙박업 근절 유도 등의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6일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하였다.

(나) 추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유숙박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본래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숙박이 허용되었으나, 영업일수 180일 제한을 조건으로 내국인 숙박을 허용할 예정이다.

둘째, 공유숙박 허용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까지 공유숙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일반주거지역 미허용시 사실상 도시민박업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판단 하에 전용주거지역(1·2종)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까지 공유숙박을 허용할 예정이다. 주택유형은 건축법상 단독(다가구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에 한정되며 이는 현 외국인도시민박업의 주택유형과 동일하다.

셋째, 미등록 도시민박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문체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되, 미등록 도시민박업은 미등록 숙박업으로 간주하여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상 처벌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미등록 업체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계도 및 단속은 관광 및 위생부서간 적극적인 협동 하에 단속이 용이하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였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공유숙박제도와 관련한 규제 추진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 국무총리 주재 회의 개최를 통한 규제혁신 동력 확보

1 국무총리 주재 덩어리 규제 발굴·개선 전체회의

규제혁신추진단의 단장인 국무총리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추진단 내 과제 담당 팀장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 동 전체회의를 통해 혁파해야할 복잡한 덩어리 규제들을 발굴 및 선정하였고, 추진단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다수 부처의 법령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개별 부처의 일반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았기에 총리가 직접 추진단의 전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다수 부처들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독려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는 매 2주마다 개최되어 금년 한 해 동안 총 13회 개최되었다. 한 국무총리는 해외순방 등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규제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는 논의될 덩어리 규제가 대국민 생활에 미칠 파급력 및 논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과제별 담당 책임자가 과제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총리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단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필요한 경우 전 부처 과제로 확대하거나, 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에 적극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되도록 독려함으로써 규제혁신추진단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장·차관 주재 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전후하여 국무 2차장도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격주(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가 없는 주)로 팀장 또는 PM(Project Manager, 프로젝트 팀장)이 참석하는 검토회의를 주재하여 과제 발굴 및 개선안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부처 간 이견으로 개선안이 쉽게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또는 국무2차장 주재 부처 간 조정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현장과의 소통 강화

1 덩어리 과제 발굴

개선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되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문위원이 자신들의 경험 및 전문성을 살려 덩어리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경제단체 및 자치단체들이 직접 건의하기도 하였으며, 규제혁신추진단의 자문단에서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약 70여 곳의 민간 협단체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전라북도, 세종시, 인천시 등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자체가 직면한 난감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 수요를 접수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24년간 발굴된 덩어리 규제는 총 44건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 또는 국무 2차장 주재 점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덩어리 과제가 발굴되면 경험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위원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규제에 대한 심층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가 시작되었다. 동 과정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해외사례 비교검토, 데이터 수집 등이 이루어졌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실시하였다.

2 의견청취

주요 덩어리 과제를 발굴하고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팀 또는 프로젝트팀이 개최한 간담회, 자문회의 및 현장 방문의 수는 '24년 한 해 총 550여 회에 달했다. 각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는 필요시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자문위원도 적극 참석하였다. 일례로 규제혁신추진단은 9월 24일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3 국민 대상 홍보 강화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 국민들이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개선 현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3.5.2. 전용 홈페이지(http://foryou.better.go.kr/)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에는 규제혁신추진단 활동에 대한 소개부터 처음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 개선사례들을 카드뉴스, 웹툰 및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1만 7천여 명('24.12.31. 기준)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규제혁신추진단의 활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금년 8월 유튜브 채널(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을 개설하였다. 금년 추진단 출범 만 2주년을 맞이하여 홍보 동영상으로 '규제혁신추진단 2주년 성과와 계획'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하였으며, 그 외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알리는 동영상 32개(동영상 12개, shorts 20개)들을 제작해 게시하였다. 채널 전체 동영상의 총 조회수는 1,650,162회(총 3만 5천시간 시청)이고 채널의 구독자 수는 882명('24.12.31. 기준)이다.

4. 향후 계획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덩어리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제언 등을 바탕으로 신규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많은 기초 연구, 현장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외 사례·관련 법령·이해관계자 의견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었다. 추진단 출범 4년차인 '25년에는 이러한 기초 자료 및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을 적극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검토 과제

현재 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과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반려생활 편의 제고, △2025년도 광역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사항 수렴 추진계획, △양육친화 환경 조성,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등이 있다.

1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가) 검토 배경

규제혁신추진단은 그동안 추진해 온 덩어리 규제 외에 혁파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의 규제로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규제 개선을 선정해, 2024. 3월부터 새롭게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되고 있는 규제의 약 60%는 생활규제에 해당하고 이들 대부분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상대적으로 수용곤란이나 장기검토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추진단에서는 적극적 규제 개선의 관점에서 이들을 재검토하여 국민이 실제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 경과

추진단에서는 지자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 및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실)의 협조를 받아 최근 1년 이내에 규제신문고를 통해 처리한 규제 건의사항 중 수용곤란, 장기검토로

분류된 1,200건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중요도, 규제개선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2건을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 수행을 진행하였다.

| 규제개혁신문고 처리 현황 |

년도	접수(건)	처리 (건)				
		기시행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22-'23	4,203	549 (13.1%)	290 (6.9%)	858 (20.4%)	75 (1.8%)	2,431(57.8%)

이렇게 채택된 과제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유·무선 통화의 방법 등으로 민원인을 접촉하여 규제 내용의 재확인과 실질적 개선 방안 등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협의 및 조정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초 부처에서 수용곤란이나 장기검토로 이미 정하였던 사항을 번복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협의가 쉽지 않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회의(지원국장, 규제총괄정책관)를 통해 개선을 시도하였다.

(다) 검토 내용

추진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생활 불편 사항 해소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국민적 파급효과 등 기준에 따라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통한 국민편의 도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허용,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축면적 적용 제외 등
2) 개발제한구역 등 생활 시설 설치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임도설치시 관리계획 반영 제외, 전기자동차충전소·수소충전소 설치 시 부담금 면제 등
3)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 주말농장 내 주차장 허용, 농업용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분류
4)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도모: 고압가스안전시설의 상호·법인대표 변경시 법인단위 허가/신고 허용, 소방용품 인증시 보완횟수 규제완화 등
5) 소형건축물 규제완화로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실내 칸막이 설치시 하층부 높이제한 완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
6) 그림자규제 혁파: 패키징 설비의 부품별 상세도면 제출 면제, 건보공단의 민간 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개방 등

24년도 추진단이 부처 수용을 확보한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요약표와 같다. '25년도 추진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규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생활규제 개선과제 내용 (요약) |

분야	과제명	현황(문제점)	개선방안(부처 수용 부분)
생활 불편 사항 해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승강기설치면적이 건축 면적 1/80이하일 경우에만 건축물 층수·높이 규제 제외로 소형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시설 설치 곤란	▸장애인용 승강시설은 면적 산정시 1/8 기준 적용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정)
개발제한구역 등 생활시설 설치 규제 완화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면제	▸전기차충전소 등은 주유소·자동차 액화가스 충전소와 달리 GB 보전부담금 부과	▸전기차 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추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예정)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	주말농장내 주차장 허용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주말 농장에 주차장 시설 부재로 불편	▸24.8.1.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장(1면) 허용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농업기계로 분류되지 못하여 취득세·금융지원 등 혜택 부재	▸2톤 이내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지정(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등 개정 예정)
안전관리 제도개선	가스시설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주요 시설이 아닌 상호·법인 대표자 등의 변경 시에도 제조소별 허가/신고 요구	▸안전과 무관한 상호·대표자 변경은 법인단위 허가/신고 허용(고압가스법시행규칙 개정 예정)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개선	▸소방용품 생산업체의 소방 기술원 인증검사 보완횟수 제한으로 신제품 개발 기피	▸보완 횟수 확대(2회 → 5회, 소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
소형건축물 규제완화	실내건축 구조에 관한 기준	▸근린생활 휴게 음식점의 칸막이 상하층부 높이를 각각 1.7m로 제한하여 주방사용 곤란 및 추가 반자 시공 부담 초래	▸하층부에 대해 높이 제한규제완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예정)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 의무 완화	▸'22년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건축행위 시 경사도 없는 주 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단순 용도 변경시 편의시설 설치 완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예정)
그림자규제 혁파	패키징 설비 검사 관련 규제	▸산업안전공단은 패키징 설비의 부품별 상세 도면을 요구하여 부품 제조 업체는 기술 유출 우려	▸검사인증을 마친 패키지설비에 대해서는 개별 인증서류 제출 제외(공단교육)

2 반려생활 편의 제고

(가)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반려동물 양육인구(약 1,500만 명)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친화 사회로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인의 반려 생활(Pet Life)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연관산업(펫보험·펫푸드·돌봄·장례서비스 등)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관련 제도 보완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국정 과제(§48, '22.7.):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하고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

**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약 799만 마리

추진단에서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크게 등록, 양육, 장례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총 9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등과의 부처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였으며, 총리보고(3차례) 등을 통해 반려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나) 추진 성과

반려동물 관련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차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추진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 관련 협의를 12월 초에 완료하였다. 추진단 결과는 2025년 1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발표되었다.

한편 이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된 과제 중 등록 대상을 동물생산업체의 부모견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현행 반려동물 등록방식은 내장형(칩이식)과 외장형(목걸이 등)만을 인정하고 있어 반려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비문 등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등록방식을 도입, 반려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증 특례기간 이후 점진적으로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양육단계에서는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행 1.4% 수준에 불과한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반려동물보험 등록정보(동물명, 동물등록번호, 질병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DB화하여 보험사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서로 다른 질병명 등을 사용하고 있고, 보험사별로도 자체 질병명을 DB화하여 사용하고 있어 반려인의 혼란을 야기하는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동물진료 통계자료 활용을 위해 표준화된 진료 정보의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카페 등에 동반 출입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반려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라 펫푸드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용 펫푸드의 분류체계 부재로 반려인의 혼동이 예상되는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 또한 증가추세이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과 종사자 수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에 영업장 내 돌봄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4.10.17.) 등의 방식으로 반려동물 영업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례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장례 절차, 장례 업체 및 가격정보 등 반려인 수요에 맞는 정보제공으로 반려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24.4.). 또한, 동물 장례시설은 현재 고정식만 법적으로 허용, 접근성 제약으로 반려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실증특례로 시행중인 이동식 화장장의 엄격한 부가조건을 관할 지자체 또는 인근 동물장묘업자와 협의한 경우 이를 완화하도록 조치하였다(’24.7.).

3 2025년도 광역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사항 수렴 추진계획

(가) 검토 배경

규제혁신추진단과 광역 지자체는 지역의 손톱 및 가시같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중앙부처/광역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해 감으로써 첫째, 지역의 산단조성 등 개발에 따른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정부주도 사업의 신뢰확보와 지역주민의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둘째,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항 해결을 통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셋째, 지역민의 복지, 노동력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향후 추진동력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도에는 4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 바 있다.

(나) 검토 내용

지자체별 주요 추진사항으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축산업 폐업보상 기준 구체화 등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우리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단초를 제공한 덕분에 모두 해결되어 추진단에 대한 고마움을 표명해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실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전국 17개 광역시도 평가에서 1등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억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5건의 건의사항 중 서부간선수로 사용료 면제를 제외(농림부는 긍정적이나 농어촌공사가 난색을 표명)한 나머지 4건(투자관련 건의, 섬지역의 풍력발전 지원기준 개선, 그린벨트 총량제 검토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5건중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과거 국가보안시설인 청남대의 규제 완화 건의와 외국인력의 노동력 확충, 청남대 상수원 관련 규제는 최근 팔당상수원 규제 완화와 보훈부 교육원 조리·판매시설 허용 등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11건 건의사항은 주로 지역적인 현안사항으로 폐자원 활용문제, 농촌인력 문제, 유학생 문제, 장애아동 문제로서 해당부처에 검토의견을 보내고 부처의견을 토대로 심도있게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에는 나머지 13개 광역시에 대해서도 순회방문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과제추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추진한 과제들을 성과를 낼때까지 추적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별 규제개선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지정하는 등 심도있게 추진하고 챙겨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도에 건의된 과제에 대하여도 지속 관리하여 추진이 더디거나 어려운 과제는 조정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언론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2025년도 방문계획(안) |

방문권역	방문계획(안)	방문권역	방문계획(안)
강원권	2025. 3월	충청권	2025. 5월
제주권	2025. 6월	경북권	2025. 8월
호남권	2025. 9월	경남권	2025. 11월

참고1 광역지자체 간담회 현장방문 사진 및 언론보도



세종시 방문 간담회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현장방문



인천시 방문 간담회



글로벌캠퍼스 현장방문



충청북도 방문 간담회



청남대 현장방문



전라남도 방문 간담회



포스코 HY 현장방문

참고2 광역자치단체 규제혁신에 따른 개선 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3건)

❶ 축산업 폐업보상기준 구체화

현 황 ▸ 산업단지 **편입토지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개 선 ▸ 농업보상 논란이 빈번한 **축산업에 대하여 폐업·휴업의 구체적 보상기준 마련**

❷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현 황 ▸ **개발계획이 승인된 농지**에 대하여 **공익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건의

개 선 ▸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완료시점까지 경작에 따른 공익직불금 지급요망

❷ 국가산단 편입토지 재산세 부담완화

현 황 ▸ 국가산단 승인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건강보험료등 증가 부담**

개 선 ▸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세부담 완화로 부담 경감**

2. 인천광역시(5건)

❶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 차별개선

현 황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시 **수도권 분담비율을 국가·지자체 분담비율 조정**건의

개 선 ▸ 현재 분담비율이 30:70으로 되어있는 것을 50:50으로 조정 개선 요망

❷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현 황 ▸ 옹진군의 경우 **풍력발전 사업이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개 선 ▸ (개선) 옹진군이 **40㎞이내에도 유인섬이 위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망**

❸ 폐기물처리 가산금 조례 위임범위 확대

현 황 ▸ 폐기물처리 **가산금 조례 위임범위가 10%**로 제한되어 있어 **상한범위 확대** 건의

개 선 ▸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필요

❹ 서부간선수로 기능전환에 따른 법령개정

현 황 ▸ 서부간선수로가 사용목적이 농업용수에서 수로, 유원시설로 바뀌면서 연간 1억 원 사용료 면제 건의

개 선 ▸ **관련부서인 농림부**에서는 **필요성을 공감, 긍정적 검토**

❺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추가확보

현황 ▸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이 모두 소진 추가로 그린벨트해제 건의

개선 ▸ 관련부처인 국토부에서 **총량확대는 어렵고 타지역을 지정하면 그에 따른 해제는 가능**

3. 충청북도(5건)

❶ 수도법 시행령 행락행위 명확화

현황 ▸ 『수도법』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행락행위】개념의 명확한 정의 유권해석 건의

개선 ▸ 청남대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광등에 제약**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행락행위】를 명확하게 정의** 요망

❷ 청남대 관람객등 편의제공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현황 ▸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관람객등 불편은 물론 관광시설로 유명무실**

개선 ▸ 방문객, 관광객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보행교 조성 2)친환경 도선운항 3)주차공간 등 공공시설물 설치** 등 건의

❸ 지역맞춤형 광역비자제도 신설 및 도내 시범사업 허용

현황 ▸ 도내 **외국인력 및 유학생 증가에 따른 문제점** 노정 해소 건의
1)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절차 기준 경직 2)시간제 취업활동을 위한 사전허가 필수 어려움
3)외국인 유학생 비자 변경 어려움

개선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심사기준의 경직**성 개선, **학업 중 근로 시간제 취업활동을 위해 사전허가 필수** 개선, **유학생의 지역정착률 저조** 개선

❹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현황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임신,출산 **다자녀가정 지원등 정책 발굴** 추진 **의료비, 출산가정 지원등 금융권지원 협의에 따른 어려움**

개선 ▸ 1)출산 양육등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 건의 2)총사업비 10억 원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와 같이 신속협의 제도 도입** 건의

❺ RISE사업비로 혁신기관, 기업 등 인건비지원 건의

현황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 **대학외 혁신기관, 기업등에 인건비 지급 불가로 지산학연 협력 어려움**

개선 ▸ 지역대학의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①지산학연 협력 생태구축과 ②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③직업평생 교육혁신 ④지역현안해결 등 4대 목표**

4. 전라남도(11건)

❶ 배터리 공정스크랩 순환자원 지정

현황 ▸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 대하여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정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건의

개선 ▸ 배터리 제조과정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활용으로 제조원가 상승을 방지하고 제조원가 절감과 처리비용 감축 경기활성화

❷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확대

현황 ▸ **순환자원 지정대상에 사용후 배터리를 추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과정 없이도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개선 ▸ 원재료 수급에 있어 **해외조달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고 내수 경쟁력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❸ 지역신보 지금운용 다변화

현황 ▸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기술보증기금(3.7조 원)을 넘어 신용보증기금(13.2조 원)과 유사규모로 성장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자금운용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 건의

개선 ▸ "연기금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 요망

❹ 해상풍력 외부망 REC 가중치 산정기준 개선

현황 ▸ 발전사업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계통연계점 기준' 연계거리 산정차이로 보조금(REC)가중치 하락** 개선 건의

개선 ▸ 관련규정(고시)에서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는 **연계거리 계산근거 중 "한전계통"을 "기술적으로 연계가능한 송전선로"로 변경** 요청

❺ 계절근로제(E-8)사업 참여 근로범위 확대

현황 ▸ 농작물의 경작·생산·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한정,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로허용 범위를 농협이 운영하는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APC)들까지 확대**

❻ 일반고용허가제(E-9)외국인력의 항만내 고용

현황 ▸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국무조정실**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항구 및 해상터미널, 컨테이너터미널, 항만 배후단지 등 항만 관련 **"운수 및 창고업"은 일반고용허가제(E-9)허용업종에서 제외**

개선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하기 위함임을 감안, 항만내 "운수 및 창고업"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

❼ 계절근로자(E-8)국민연금 가입제외

현황 ▸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19개소→70)로 4대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증가 추세이나 **단기 체류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근로자에 혜택이 없는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공제**하고 있음
- 상용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4개국)내 계절근로 파견이 가능한 국가는 7개 국가로 이외 **국가는 국민연금 반환금 수령이 불가**해 반환 미대상 국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불만 고조

개선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 건의

❽ 외국인유학생(D-2)취업규제 완화

현황 ▸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발생,** 장기적인 지역정착에 힘들어지게 되고 이에 **불법 취업빈도 또한 다수 발생**
- 외국인 **유학생(D-2비자)의 시간제 취업 주당 20~30시간으로 제한(현재 주말과 방학기간은 무제한)**

개선 ▸ 출입국관리법』제20조(체류자격의 활동)개정 **시간제 근로 허용시간 및 취업가능 업종확대 건의**

❾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선

현황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복지부 평가에 따라 매년 국비(1~3억 원)가 차등 지원되며, 획일화된 평가기준은 전남도에 불리하게 작용
- **23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의료인력 확보 미충족으로 최저 C등급 7개소, 국비 291백만 원 감액**('23년 4,466→'24년 4,175)

개선 ▸ 출입국관리법』제20조(체류자격의 활동)개정 **시간제 근로 허용시간 및 취업가능 업종확대 건의**

❿ 장애아동 양육 위탁부모 대상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현황 ▸ 보행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주차·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발급**

개선 ▸ **장애아동 양육 위탁 부모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⓫ 장애이동 수당 의무지급 규정 신설

현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이동**의 경우, **장애수당과 달리 의무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미 **소득조사를 거친 상황에서 지급 담당자가 재차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 낙인 효과 발생

개선 ▸ **장애아동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의무 지급하도록 명시해 줄 것을 건의**

참고3 광역지자체 규제혁신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

[산단조성 관련 규제혁신 ❶]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세종시 관내 축산농가 87호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축산업을 폐업해야 됨에 따른 보상이 안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은 물론 또한 전업농가는 공직직불금을 단지 지정 시부터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 보상완료 시까지 기간 2-3년정도의 영농기간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부담이 되고, 아울러 산단편입토지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의 증가로 불편을 겪어 왔던 차에 규제혁신으로 개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 등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폐업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편입토지 전업농가의 공익직불금도 사실상 농사를 지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편입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전업농가의 실질적 혜택과 함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B관련 규제혁신 ❷] 개발제한구역 총량제의 유연화로 지역발전 도모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개발가능토지가 GB로 묶여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량제의 제도적 장치로 인해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어 차제에 건의를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GB운영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지정으로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하겠다.

[광역 비자제도 규제혁신 ❸] 광역비자제도 신설 및 시범사업 허용

광역 지자체 외국인력 및 유학생 증가에 따라 그동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절차의 기준 경직, 시간제 취업활동을 위한 사전허가 불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변경 어려움 등이 주 내용으로 지자체 인력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사증발급 및 심사기준 경직성과 학업중인 유학생의 근로시간에 취업활동을 위해 사전허가를 유연하게 개선하면 지역 인력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양육친화 환경 조성

(가) 검토배경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달이 있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할 경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부담 증가로 인해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5.1.)에 상정·발표하기로 했다.

(나) 검토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공공 3.8%, 민간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한 달이 있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시 고용인원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어 고용인원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위험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은 근로자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장애인고용 부담 증가로 인해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육아휴직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면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방식을 개선(고용부, '25.下)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5 택배서비스산업 규제 혁신

(가) 검토배경

택배서비스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평균 143회('22년) 이용될 정도로 필수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으로 정착되었으며, '14년 이후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배송시설 입지제한, 택배서비스용 화물자동차 톤수 제한, 택배차량 운전경력 제한, 첨단택배 관련 법령정비 미비, 대면처리 위주 택배기사 민원처리 관행 등으로 향후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성장 택배서비스산업을 육성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나) 검토내용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택배 서비스산업 규제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택배인프라 확충 관련,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을 허용하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일정규모 이상 주거단지 조성시에는 폐기물 보관시설과 같이 생활물류시설(집화, 보관, 배송 등)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원활한 택배전용 화물자동차 공급 관련,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2.5톤까지 증차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1.5톤 이상 2.5톤 이하의 택배전용 화물자동차 수요 및 택배기사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경력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첨단 택배 배송수단 도입 관련, 드론 및 로봇 등의 첨단 택배 배송수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방법 및 안전조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넷째, 택배기사 민원업무 처리 관련, 법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회원사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폐차 신고 등 택배기사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6 규제심판제도

1. 개요

| 이아람 사무관 | Tel. 044-200-2557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국민·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도입되었다.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에서 그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소관부처 의견청취, 국민여론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토록 권고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규제개혁플랫폼이다.

규제심판제도는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규제심판과제 선정단계이다. 규제심판과제는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경제협·단체 등의 건의와 같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제기된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선정한다. 규제총괄정책관은 접수된 과제들 중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인지 △시장 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인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정도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한다.

둘째, 의견청취단계이다. 해당 규제심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단체,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정부부처, 관련 지자체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거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국민 온라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셋째, 규제심판단계이다. 5~11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위원이 관련 이해단체 및 부처 의견청취 결과와 해당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식견 등을 바탕으로 심판 대상 규제의 개선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이다. 규제심판부의 결정은 개선권고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행정심판, 법원소송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개선 의견의 당위성·타당성이 소관부처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

넷째, 이행점검단계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부처에 통보하고 일정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관계부처의 이행실적은 매년 실시되는 규제혁신 평가에도 반영된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가 이를 불수용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 주요 심판 결과

| **신부섭** 사무관 | Tel. 044-200-2559
| **이아람** 사무관 | Tel. 044-200-2557

1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가) 규제 현황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일체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다.

(나) 규제개선 건의내용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 제기되었다.

(다) 규제심판 결과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개인의 소규모 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일종의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였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거래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라) 개선권고문

■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 (허용기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 (관리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범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마) 후속조치 현황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여 '24.5.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 (주요 내용)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 원 및 거래횟수 10회 이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등만 판매 가능 △2개 플랫폼업체(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

| 현장의 목소리 |

직장인 E씨는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소비기한도 긴 홍삼을 되파는게 그렇게 위험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고, 출산 예정인 F씨도 사용하지 않은 엽산제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걸 알고는 결국 판매하지 못하고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시범사업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섭취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일정 조건하에 재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중고거래 플랫폼사 관계자는 "국민편의 증진과 건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식약처와 지속 협조하며 부적합 거래를 차단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으로 해석하여
영업 신고 없는 개인간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제개선 권고 내용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우선,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제한*하여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시범사업을
'24.5월부터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 및 거래횟수 10회 이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제품 등만 판매 가능
△2개 플랫폼업체(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거래 가능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규제 합리화

(가) 규제 현황

'기계설비'는 보일러·에어컨·환기설비·급수펌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흔히 건축물의 '혈관·호흡기'에 비유된다. 이러한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8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현행 법령은 건물 관리주체에게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점검·관리·운용을 전담하는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새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필요성이 큰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개별난방 500/중앙난방 300세대 이상)에 적용 중

(나) 규제개선 건의내용

연면적 1만㎡ 미만의 건축물은 규모가 작아 전담 유지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유지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학교시설 등 공공 건축물은 1만㎡ 미만이더라도 동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만㎡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예산상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일부 지방은 구인난이 심한 상황이어서 의무 준수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가 지속 제기되었다.

(다) 규제심판 결과

규제심판회의 개최('24.4.9.) 당시, 1만㎡ 미만 학교시설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의무 시행일('24.4.17.)이 열흘이 채 남지 않았던 상황으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컸다. 이에 심판회의에 상정하여 규제개선을 검토토록 결정하였다.

규제심판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시행일에 맞춰 이행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실제로 앞서 동 제도를 시행한 중·대규모 건축물들의 현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1만㎡ 이상의 학교('23.4.부터 시행)도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1만㎡ 미만 소규모 학교 등 건축물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지관리자의 업무량 등을 고려, 유지관리자 중복선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건물 관리주체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시행일이 도래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관부처의 판단하에 시행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개선권고문

■ 국토교통부는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만㎡ 미만 학교시설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추가 고시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중복 선임 범위 설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 시 시행시기 조정을 검토할 것

(마) 후속조치 현황

국토부는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면적 1만㎡ 미만 학교시설 등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24.4.)하여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24.5.)하였으며, '25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현장의 목소리 |

지방에 위치한 A초등학교 교장 K씨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눈앞이 캄캄했다. 소규모 학교라 시설관리직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 별도의 예산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내에 신설된 '기계설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 제도 시행일에 맞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규제심판 개선권고로 1명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다수의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학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건물(1만㎡ 미만) 중 학교 등
공공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할 예정('24.4월)이었으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 확보와
구인이 어려워 의무 준수가 어렵다는
고충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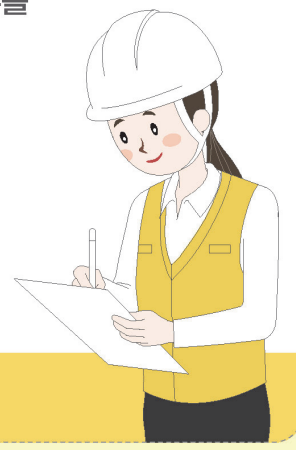

규제개선 권고 내용

**1만㎡ 미만의 소규모 학교시설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중복선임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시행시기를 조정할 것**



소규모 학교 등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1명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다수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학교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3 즉석판매 농산가공품의 농산물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가) 규제 현황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HACCP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약 1억 원) 등의 문제로 대다수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식품 제조영업을 하고 있으나, 즉판업 신고시에는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의 판매와 온라인·통신판매만 가능하고, 일반 소매 매장에서의 판매는 불가능하여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규제개선 건의내용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사과즙 등을 제조한 경우 제조시설이 있는 영업소나 온라인·통신으로만 판매를 해야 하나, 제조시설이 있는 영업소는 통상 농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농민들은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지 않아 판로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민들은 읍·면내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자신들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규제심판 결과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는 식품안전,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가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였다. 또한 동 규제의 소관부처는 식약처이나, 실제로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농산가공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물론, 직거래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품안전 전문가, 지방행정 전문가 등으로 심판부를 구성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규제심판부는 농산물 직거래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농가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의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낮으며,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여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을 고려해 즉석판매제조 영업소가 소재한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농민들이 제조한 농산가공품 판매를 허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라) 개선권고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마) 후속조치 현황

식약처에서는 '24.9.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즉석판매 농산가공품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 현장의 목소리 |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산물 직거래매장에서 상품기획을 담당하는 D씨는 삶은 나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고객들의 건의를 듣고 삶은 나물 판매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D씨는 삶은 나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에서의 판매만 가능하고 유통 판매는 불가능한 즉판업 영업의 특성상 해당 직거래매장에서 직접 나물을 삶아서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고, 외부에서 삶은 나물은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쉽게도 D씨가 근무하는 매장은 조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공간이 없었고, 고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삶은 나물 판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D씨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농민과 고객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고, 이것이 농산물 직거래매장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동 규제개선으로 즉판영업신고를 한 농민들이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난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자신들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소비자들도 직거래매장에서 기존에 구매할 수 없었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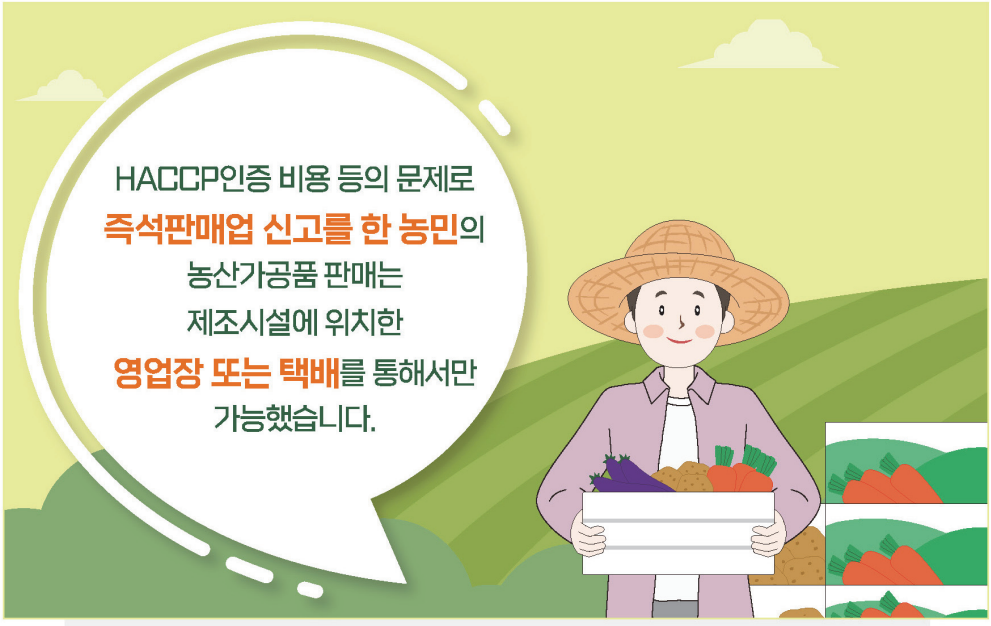

규제개선 권고 내용

즉석판매업 신고를 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농산가공품은 영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자체 소재 농산물직거래매장에서 판매 허용할 것



4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가) 규제 현황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설치 등과 같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로법령은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의 점용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영리목적의 도로점용 중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소 진·출입로를 위한 점·사용에 한해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나) 규제개선 건의내용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25% 감면을 일괄 적용 중이다. 그러나 '24.5.1.부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그간 재난 정도에 비례하여 감면해 온 25% 일괄 감면율을 유지할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소 진·출입로'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25% 감면이 사라진다면, 1건당 연평균 약 58만 원의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었다.

(다) 규제심판 결과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괄 감면율 25%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크다는 데 공감하여 규제심판회의 상정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채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로점용료가 급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의 도로점용료도 감면율(50%)을 2년간 적용하기로 결정('24.3.27.)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도 계속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개선권고문

■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 코로나19 유행으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시지가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국토부는 향후 2년간('25.1.1.~'26.12.31.)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

(마) 후속조치 현황

향후 2년간('25~'26년) 국토부 소관 도로에 대해 25% 추가 감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자체 소관 도로에 대해서는 감면 협조요청 공문을 송부('24.6.)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

소상공인 L씨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생업이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년에 도로점용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감면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는 걱정이 앞섰다. 경기침체의 여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다보니 아직은 소득 수준이 이전만큼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권고로 향후 2년간('25~'26년) 도로점용료 추가 감면이 연장됨에 따라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선 권고 내용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일괄 감면을 2년간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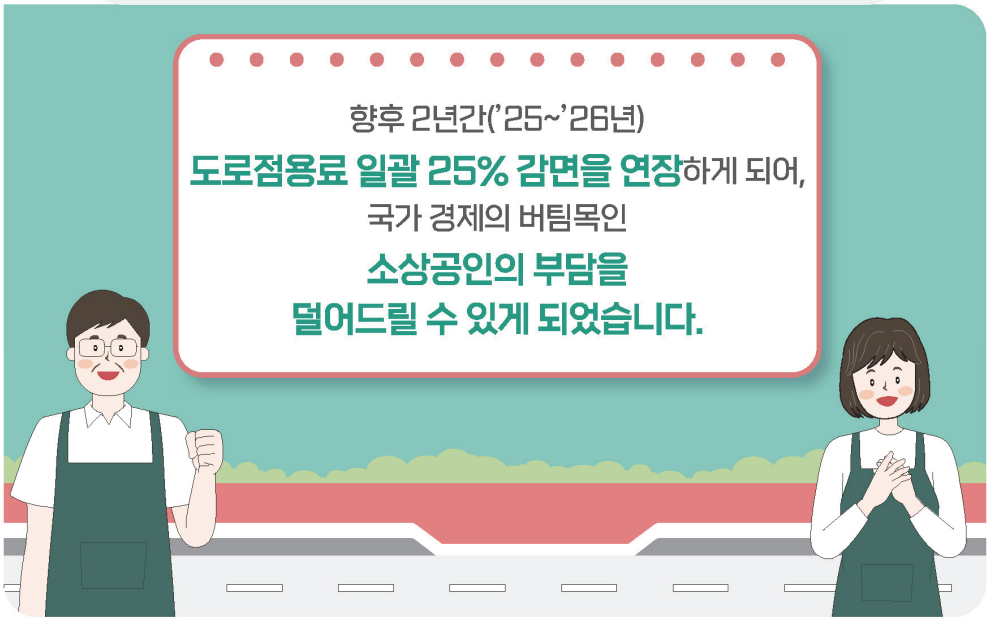

5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승선대상 확대

(가) 규제 현황

소외도서는 유인도서 중 여객선 등이 기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 교통수단도 없는 섬으로서, 전체 465개 유인도서 중 69개 도서가 소외도서로 분류된다.

소외도서 주민 및 방문객들은 교통수단이 없어 내륙왕래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윤석열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사용 중인 행정선을 통해 내륙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국정과제(41번)로 추진중이다.

(나) 규제개선 건의내용

현행 「섬 발전 촉진법」 및 시행령은 행정선의 운영 목적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해 섬 발전 촉진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승선 대상을 '섬 주민'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의 친척도 행정선을 탈 수 없어 별도 선박을 알아봐야 하는 등 행정선 운항의 교통편의 개선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다) 규제심판 결과

규제심판부는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은 '교통'이라며, 교통이 취약한 소외도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행정선 승선대상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방문객들로 인해 섬 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행정선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승선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섬세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대해 권고하였다.

또한,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승객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을 관련 지원사업 지침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협조 요청하였다.

(라) 개선권고문 및 협조 요청문

■ 행정안전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해당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행정선의 이용 대상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도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 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하여, 행정선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운송 가능한 승객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후속조치 현황

행정안전부는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도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장의 목소리 |

K씨는 큰아버지가 사는 △△섬에 항로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섬은 여객선이 다니지 않다보니 쉽게 가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간 돈을 주고 배를 따로 빌려야만 가볼 수 있었던 큰아버지 댁에 방문하기 위해 항구를 찾았다. 그러나 친척이라도 섬 주민인 큰아버지께서 동행해야만 행정선을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승선이 거부되었다. 결국 K씨는 큰아버지께 육지까지 마중 나오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권고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승선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친척·지인 등이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섬과 내륙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선 등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선대상이 '섬 주민'으로 한정되어 친·인척 조차
섬 주민이 직접 동행해야만 탈 수 있는 등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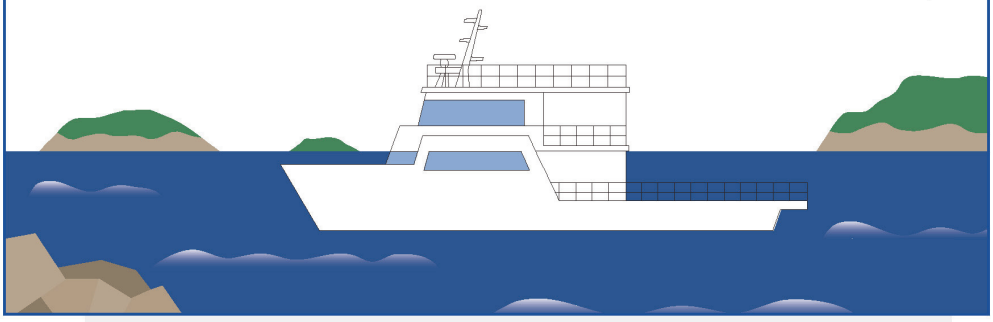

규제개선 권고 내용

**승객 안전과 섬 주민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선 승선대상을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개선할 것**

소외도서 운항 행정선의 **승선대상을 확대**하여
친·인척 등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섬과 내륙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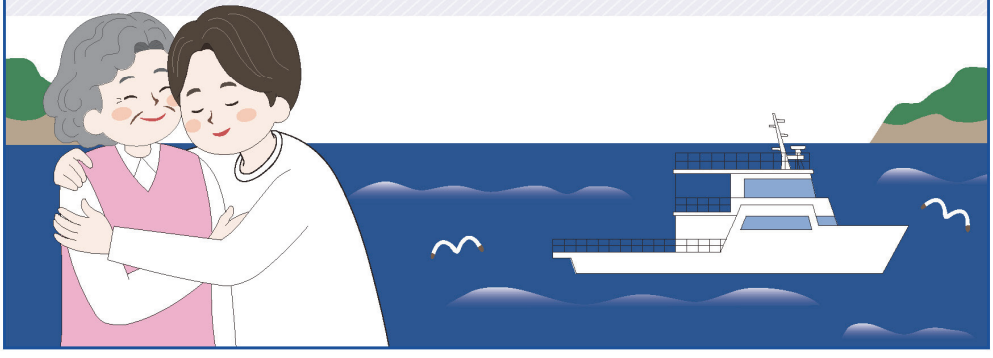

6 렌터카 차령 등 규제완화

(가) 규제 현황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후 일정기한('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렌터카는 1년, 택시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은 사업종류와 차종에 따라 등록 이후 일정기한('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택시는 차종에 따라 5~9년, 렌터카는 5~8년이 원칙이고, 안전검사 등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인택시) 경·소형(5년), 중형 및 2,400cc미만 대형(7년), 2,400cc이상 대형 및 친환경(9년)
(렌터카) 경·소·중형(5년), 대형(8년), 친환경차는 별도 기준 없음(차량 크기에 따라 5년 또는 8년)

(나) 규제개선 건의내용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기술발달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렌터카 등록가능연한('차량충당연한')은 2002년, 사용가능기한('차령')은 1996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 규제심판 결과

규제심판부는 현재의 차량 제작기술은 지난 2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도로여건 역시 크게 개선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개인택시보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렌터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한 것 역시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등록가능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라) 개선권고문

■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관련 등록가능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기한(차령) 규제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과 도로여건 개선 등 주행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렌터카는 그대로여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의 운영목적에 따른 특성 및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5년 상반기까지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마) 후속조치 현황

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여객자동차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장의 목소리 |

렌터카 사업체를 운영하는 J씨는 늘어나는 렌터카 수요에 대비해 사업용 차량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렌터카로 활용하기 위해 구비하는 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해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차량을 구비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또, 차령이 일정 기한을 지나면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성능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달리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렌터카 운행상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렌터카로 활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범위가 확대되어 렌터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렌터카 요금 인하 여력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렌터카 사업용 차량은
출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이후 차종에 따라 5~8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소·중형(5년), 대형(8년), 친환경차는 별도 기준 없음
(차량 크기에 따라 5년 또는 8년)



규제개선 권고 내용

운행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렌터카 사업용 차량의 등록가능 연한(차량충당연한)과 사용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할 것

향후 **렌터카 사업용 차량의 등록 및 사용 규제가 완화**되어,
렌터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렌터카 요금이 인하되면
국민들께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제1기 규제심판부 성과집 발간

| **이아람** 사무관 | Tel. 044-200-2557

국무조정실 규제실은 제1기 규제심판부의 임기 만료('22.8.~'24.8.)를 계기로, 규제심판제도 2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의 규제심판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규제심판 건의 활성화 및 업무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과집을 발간하였다.

제1기 규제심판부는 2년간 17건의 규제를 개선권고하였고, 이 중 8건의 규제가 개선이 완료되었다. 나머지 9건의 규제들은 소관부처에서 시범사업 운영, 관계법령 개정 추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각 과제별 후속조치가 추진됨에 따라 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제심판위원 및 각종 경제협·단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7 규제개혁신문고

| 고명수 사무관 | Tel. 044-200-2634

1. 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범정부 규제혁신 건의 창구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행정규제기본법」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한 규제개선 사항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규제개혁신문고는 '부처답변 → 소명요청 → 부처 2차 답변' 과정을 통해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규제건의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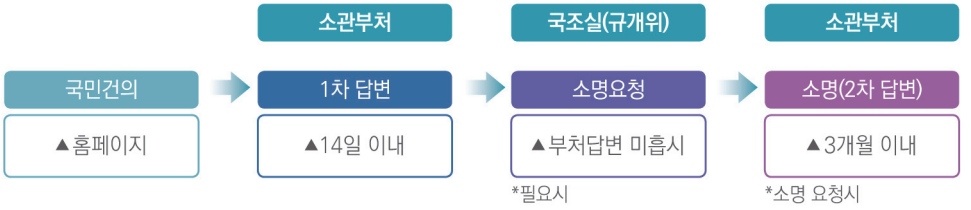

1차 답변 소관부처는 규제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건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부처에서 심층 검토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답변 기간을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소명요청 국무조정실은 답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부처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소명 (부처 2차 답변)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의 답변이 불합리하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임에도 소관부처가 소극·관행적으로 답변한 경우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관부처는 소명대상 규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 심층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규제개혁신문고는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제건의 수단이다. 2014년 3월 개설 이후 운영체계를 지속 정비·강화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마다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신문고는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꾸준히 우수 평가(▲'18년 4~6위 ▲'21년 3~4위 ▲'24년 3~5위)를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규제개혁신문고에 '대한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를 추가·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역별 접수센터(7개)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상시 접수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 검토·협의 등을 거쳐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회신하고 있다.

구 분	이 전	현 재
❶ 국민 권리	규제의견 제출제 (소극적 권리)	규제정비 요청제 (정부 성실답변 의무→적극적 권리)
❷ 건의 창구	비전용 · 비독립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內 일부 운영)	전용 · 독립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❸ 건의 경로	분산 · 다원화 (부처 · 지자체별 개별 접수)	통합 · 일원화 (부처 · 지자체 연계→ 접수창구 단일화)
❹ 지자체 건의	전담창구 부재 (지자체 상시 · 즉시적 건의 불가)	전담창구 마련 (지자체 상시 · 즉시적 건의 가능)
❺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부재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반영

1. 국민 권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을 통해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의견 제출제'에서 '규제정비 요청제'를 도입하였다. 국민이 규제정비를 요청하면 정부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2. 건의 창구: 규제개혁신문고의 전용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개설('17.10월)하여 국민이 쉽게 규제건의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PC·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21.1.)하여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3. 건의 경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연계·통합하여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였다.

4. 지자체 건의: 제도와 현장의 경계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상시·즉시적으로 규제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담 창구를 마련('20.1.)하였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절차 등을 지자체 등 지역 요구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의 현장체감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5.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활용도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21.10.)하였고, 2022년부터 지자체 건의·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매년 규제현안이 있는 지자체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찾아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넘어 '함께하는 규제개혁신문고'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 2024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33,421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6,792건을 개선하였다. 2024년에는 총 3,702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 2024년 규제건의 처리 건수 |

규제건의	처리	전부수용	일부수용	대안제시	기시행	수용곤란	중장기검토
3,702	3,633	232	236	2	413	2,750	69

규제건의(3,702건) 유형은 ▲국민생활 건의가 53.1%로 가장 많았고, ▲기업 22.4% ▲자영업자 16.1% ▲기타 8.4%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등 민생분야 관련 건의가 약 69.2%를 차지한다.

수용된 규제건의(470건) 유형은 ▲국민생활 건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기업 25.3% ▲자영업자 17.2% ▲기타 5.3% 순이었다.

5. 주요 개선사례

❶ 파크골프장의 개발제한구역(GB) 내 설치 허용 (국토부)

현황 ▸ 파크골프장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심인근 개발제한구역(GB) 내 설치는 불가(국토부 유권해석, '24.9.)

개선 ▸ 파크골프장도 GB 내 설치가능한 유사 생활체육시설(축구장 · 야구장 등)처럼 설치 허용

➡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노인 등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 **유권해석 변경 ('24.11. 완료)**

❷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금지규제 완화 (국토부)

현황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업시행 시에는 구역관리 강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20만㎡↑)의 정형화 지역만 허용하고 있어, 일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최소 허용면적(20만㎡) 요건 불충족으로 개발사업 불가

*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나 현재 반환된 구역

개선 ▸ 「미군공여구역법」상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GB해제를 허용

➡ 생산·부가가치 5.8천억, 고용 약 1만 명 기대(의정부시 추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24.4. 완료)**

❸ 도로반사경 높이를 완화하여 대형차량 사각지대 해소 (국토부)

현황 ▸ 도로반사경 높이는 1.8~2.5m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여, 버스·화물트럭 등 대형차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확보에 제약

개선 ▸ 도로반사경 높이를 도로·교통 및 지역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 설치 가능토록 허용
➡ 대형차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 해소로 보행자 안전확보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25.12.)
(국토부, '24.4월부터 현행지침 근거로 개선사항 반영 허용했으며, 혼선 방지를 위해 지침 개정 추진)

❹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규정 마련 (농식품부)

현황 ▸ 수의사의 '동물진료기록' 발급 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 발급 거부

개선 ▸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의사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도록 개선
➡ 반려동물 진료기록 관련 투명성 문제 해결

➜ 「수의사법」 개정 ('25.12.)

❺ 도심 속에 근린생활시설로 공유창고 설치 허용 (국토부)

현황 ▸ 공유창고 용도가 인정되지 않아 도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불가

개선 ▸ 공유창고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여 도심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토록 개선
➡ 수납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상가 공실률 감소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5.6.)

❻ 소방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건물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 의무설치 규제 합리화 (국토부)

현황 ▸ 모든 건축물은 2층부터 11층까지 층마다 1개 이상의 '소방관 진입창' 의무설치 필요(층수 단일기준 적용, 높이는 미고려)
* 반도체 공장 등은 층고(약 8m)가 높아 사다리차의 사다리 높이의 한계(약44m)로 인해 9층 이상부터는 소방관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일률적으로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 의무설치 필요

개선 ▸ 반도체 공장 등 건축물 종류별 층고가 다른 점을 고려, 11층 이하 또는 44m 이하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토록 개선(층수 또는 높이 복수기준 적용)
➡ 층고가 높은 건물의 고층에 진입창 설치에 따른 불필요했던 기업 부담 완화

➜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개정 ('25.6.)

❼ 대형화면 스마트폰에 대한 '안전확인' 외부 시험검사 면제 (산업부)

현황 ▸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크기가 17㎝ 이상이면 제조업체 자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 아닌 태블릿 PC(노트북)처럼 '안전확인' 대상이 되어 외부 시험검사 필요

개선 ▸ 스마트폰 화면크기가 커지는 시장상황을 고려, '안전확인' 대상기준을 상향(17㎝ → 20㎝), 대형화면 스마트폰에 대해 외부 시험검사 면제

➡ 대형화면 스마트폰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실시로 신제품 출시기간 단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25.6.)

❽ 수도권 외국인근로자의 지방업체로의 이동 허용 (고용부)

현황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전국 5개의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일정조건** 충족 시 건설·서비스·조선 업종에 한하여 타권역(수도권 제외)으로 변경 허용

* 5개 권역: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 사업장 변경신청 후 1개월 동안 동일 권역 내 채용수요가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행위가 미이행된 경우

개선 ▸ 일정조건 충족 시 모든 업종에 대해 타권역(수도권 제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지방 권역으로 사업장 변경 허용

➡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난 해결에 기여

➜ 「외국인근로자 권역 내 사업장 변경 허용 지침」 개정 ('25.1. 완료)

❾ 이·미용실에서 별도의 분리된 판매공간 없이 샴푸 등 화장품류 판매 허용 (복지부)

현황 ▸ 이·미용실에서 화장품(샴푸, 염색약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별도로 분리(또는 구획)된 판매공간 필요

개선 ▸ 이·미용실에서 별도의 판매공간이 없어도 화장품 판매 가능토록 개선

➡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 기대

➜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개정 ('24.8. 완료)

❿ 벌꿀에 대한 '천연' 표현 허용 (식약처)

현황 ▸ 벌꿀 등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은 '천연' 표현이 원칙적으로 불가('자연' 표시는 허용)

개선 ▸ 자연상태로 채집한 벌꿀에 한해 '천연벌꿀' 표현 허용토록 개선

➡ 양봉농가 애로 해소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 ('25.6.)

6. 향후 계획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민생·경제 규제개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규제애로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자체 및 협·단체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확대·강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수 국민이 개선을 원하는 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한편,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8 규제혁신 소통

1. 현장방문

1 세계 최대 규모의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단지 시운전 현장방문

| **고명수** 사무관 | Tel. 044-200-2634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해외 등 민간자본 48조 원을 투자하여 총 26개 단지에 8.2GW 용량의 발전설비(한국형 원전 6기 규모)를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축이며, 해상풍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문제와 30여 개에 달하는 인허가(10개 기관 소관) 절차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에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 '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목표 14.3GW, '23년 기준 보급량 0.1GW(100MW)로 달성률 1%

특히, 군 작전성 제한에 대한 우려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이 대형화(1기당 10MW급) 되면서 높이가 250m에 달하는데, 500피트(약 152.4m)를 초과하는 발전기는 군 레이더망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해상풍력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 무산 및 국제소송이 우려되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군 작전성 제한 등 규제 애로를 해소하였다.

그 결과,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첫 사업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96MW, 0.9조 원 투자)'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조성되어, 2025년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1월 18일에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현장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기업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규제애로 해소로 본격화된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 48조 원의 안정적 투자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원항만·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신항 내에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을 위한 신규 철재부두가 건설되고, 해상풍력 부품 공급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12.6만 평)가 조성되는 한편, 해남 화원조선산업단지(6만 평)에도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향후 450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약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전남도 추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해상풍력과 같이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장에서 직접 챙겨나갈 예정이다.











국무총리
전남 해상풍력단지 현장 방문

2024.11.18. 전남 신안·목포



한국경제

2024년11월18일14:59

닻 올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전남의 '숙원' 해소한 한덕수 총리

국조실 중재로 부처·지자체 간 이견 해소



사진=연합뉴스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18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등에 가로막혀 10년 이상 지연됐던 이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배경에는 부처 간 중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뚝심'이 있었다는 평가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단지 등을 찾아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자본 48조원을 투자해 26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전 67기와 맞먹는 8.2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 총리가 이날 방문한 1단지는 26개 단지 중 첫 사업이다.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전에 돌입한다.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3년 본격 추진됐지만,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부 부처 10곳의 30개 개별법률상 인·허가, 인근 주민의 반발 등 난관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군사 관련 규제가 발목이 잡혀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국방부가 '풍력 발전기가 군사 레이더를 가린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발전기 높이는 남산 서울타워(236m)보다 높은 250~280m인데, 군 작전성을 고려하면 높이를 500피트(152.4m)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 의견이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이견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관계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 간 조율을 거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정부 안팎에선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의 양축이어야 한다는 한 총리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향후 지원항만·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 4500여개 유치, 일자리 약 12만개 창출 등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The JoongAng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029면 사설/칼럼

걸음마 단계 해상풍력이 신바람 일으키려면

시론



손충열 인하대 명예교수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명예부회장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감축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이지만 삼면이 바다여서 해상풍력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공사 중인 전남해상풍력단지를 최근 방문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과 '탄소중립 2050'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 해상풍력발전은 124.5㎿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도 그렇고, 주요 8개국(G8) 진입을 노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교해도 심제 해상풍력 규모가 미미하다.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하지만 주민 수용성, 수많은 인허가 문턱, 국내산 터빈의 경쟁력, 시공 경험 부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야야 국회의원들이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공공 주도 계획 입지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돼 효과를 볼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

그렇다면 국내 해상풍력 분야가 직면한 현실은 어떤가.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많지만, 시공 등 실제 추진되는 사업이 매우 적은 것이 특히 문제다. 이 때문에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조업, 건설업체, 금융회사들이 해상풍력산업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터빈 등 주요 기자재의 경쟁력은 해외 기업과 자본에 밀린다.

따라서 해상풍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시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해상풍력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형성해야 기자재·시공 등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국내 금융회사와 모험자본들이 과감하게 PF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잠재력 크지만 많은 어려움 봉착
민간 기업의 성공 경험 축적 중요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 해야

해상풍력 업계가 주목하는 민간 해상풍력사업은 한 총리가 방문한 전남 해상풍력 외에도 영광군 낙월면 앞 바다에 짓고 있는 낙월해상풍력이 있다. 96㎿ 규모의 전남해상풍력은 2022년 정부 입찰에서 선정돼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군 작전 관련 문제를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협의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은 덕분에 사업 주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년 3월 준공할 거란 소식이다.

낙월해상풍력(364.8㎿)은 2023년 정부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 중에 유일하게 공사 중인 사업이다. 민간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1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국산 비율이 70%인 낙월해상풍력은 지난 3월에 공사를 시작해 공정률이 30%다. 순조롭던 낙월해상풍력도 최근 해상 공사 장비 관련 문제가 제기돼 공정 지연 등이 발생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 시공·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발전 공기업들이 추진했던 공공사업이다. 반면 전남해상풍력과 낙월해상풍력은 덴마크와 태국 기업이 한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사업이다. 육상보다 공사 환경이 더 복잡한 해상풍력 사업은 무엇할 것도 없이 더 힘들다. 한국은 외국보다 해상풍력 사업이 뒤처져 있다. 따라서 선도적인 민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풀어가면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문제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인류 문명과 산업 역사를 되돌아보면, 초기 단계에서 혁신적 기업가들이 출현해 이성과 논리보다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통해 산업을 개척하고 성장시켜왔다. 지금 우리 해상풍력 산업에서 필요한 것은 실패 위험을 무릅쓰는 혁신적 사업가들을 응원하는 것이다.

초기 개척자들이 성공하면 주저하며 위험을 기피하던 대기업과 전통적 자본을 해상풍력산업으로 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도 장기적 비전을 갖고 해상풍력 개척자들이 신바람 나게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도록 후원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한국경제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A31면 오피니언

민관 합심 전남 해상풍력단지 준공 … 님비 극복 모범사례

SK이노베이션 E&S가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운전에 들어갔다. 2017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첫 민간 주도로 조성되는 해상풍력 단지다. SK와 덴마크 국민연금 자회사 CIP가 합작해 세운 전남해상풍력은 지난해 초 별도 보증 없이 프로젝트 자체 신용만으로 파이낸싱에 성공해 투자를 진행했다. 담장은 96㎿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3월 상업운전이 목표다.

당초 이 사업은 원지 어민들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인근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되고 해양 환경이 파괴될 것이란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구와 함께 풍력산업 고도화를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지원 기틀을 마련했다. SK, 전라남도, 신안군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또 어민들과 머리를 맞대 올어드는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람연금'을 통해 발전소 가동으로 생기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제도다. 2030년 8.2GW 전력이 생산되면 4만 신안군민 1명당 연간 600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0개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군 작전에 따르는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습지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철탑을 이용하는 가공(架空)선로도 가능토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여서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성사시킨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몽니와 님비(NIMBY)를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전력 분야만 하더라도 하남시 일부 주민이 반대로 동서울변전소 송전탑 옥내화와 증설이 가로막혀 있다. 최근 10년간 제때 공사를 마친 전력망 확충사업은 8%에 그친다. 정부와 지자체가 팔짱 끼고 기업에만 맡겨 둔 결과다. 전남해상풍력 사례처럼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프라 구축은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2 청암중·고(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졸업식 현장 방문

| 안준열 사무관 | Tel. 02-3778-3443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분을 격려했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이하 "학평")으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이날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 어르신들이며,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학교 무상급식이 시설에는 제공되지 않고, 교직원 보수 또한 일반 초·중·고교 교직원에 비해 80%이하의 수준으로 열악한 여건속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국무총리의 학평시설 졸업식 참석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 규제 개선과제의 하나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채택,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주무부처와 함께 기울이는 중이다

실제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학평시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10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를 통해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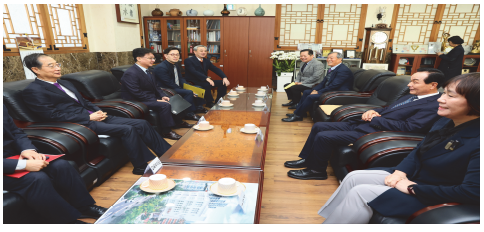



3 경제6단체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 **박소정** 사무관 | Tel. 044-200-2666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남형기 국무2차장를 비롯한 규제조정실과 국장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형기 국무2차장은 경제계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내 검토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과 핵심규제 개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경제6단체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경제6단체 간 정기적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4 규제개혁위원회 첨단의료기기 현장방문

| 노수빈 사무관 | Tel. 044-200-2443

5월 24일(금)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김종석) 및 위원 9명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현장인 '현대·기아차 로보틱스랩'을 방문하였다. 해당 시설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연구조직으로 의료용 로봇, 로봇 관제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들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 시찰과 로보틱스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첨단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방문 시 해당업체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착용로봇 등에 대한 임상시험 간소화,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현장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절차 간소화 및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5 규제개혁위원회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현장 방문

| **조대웅** 사무관 | Tel. 044-200-2445

3월 19일(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장(윤명오), 소방청 자체 규제개혁위원장,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등은 소방용품 인증제도 관련 현장 소통을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방문하였다.

윤명오 분과위원장은 수신기 시험실, 공기질 분석실, 소화 시험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또한,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분과위원장은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 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목소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6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 **안준열** 사무관 | Tel. 02-3778-3443

규제혁신추진단은 9월 24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행 법령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 등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각계의 전문가 및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중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 토론 참석자: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前차장

세미나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관련 일선 행정청의 불합리한 허가·관리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도입,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총회 등 회의 시 전자적 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세미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24.(화) 14:00	배포	2024. 9. 24.(화) 10:00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논의 본격화

– 규제혁신추진단,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 설립 인가주의,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 허용 등 제도개선 방향 제시

□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9월 24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현행 법령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 등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의 주도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많았다.

□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되었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 토론 참석자: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국장, 한국공익법인협회 김일석 상임이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 김순철 중소기업청 前차장

• 세미나 참석자들은 **비영리법인관련** 일선 행정청의 불합리한 허가·관리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 도입**,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 허용**, 총회 등 회의 시 **전자적 방법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남형기 국무2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의 법률적, 경제적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그동안 **총 300여 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소개하고,

• "오늘 세미나가 비영리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적극행정

| **이현정** 사무관 | Tel. 044-200-2429

1 개요

정부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관리·공유한다. 작년 국무조정실은 전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국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총 4회에 걸쳐 대표사례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총 20건이 선정되었다.

2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가). 제1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24.6.)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법제처)

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단순 법령정보 및 판례 등 제공 서비스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필요
개선 별지 서식에서 정부24의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서식을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② 국내 반도체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규제 개선(과기정통부)

기존 전파법상 주파수는 할당받은 자가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므로, 이미 다른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반도체 장비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
개선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전파법에 따른 배타적 이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대체 반도체 장비 개발비 1,500억 원 절감

③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지원(금융위)

기존 정책서민금융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고용지원이 필요하고,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금융-고용 연계체계 부재
개선 고용부와 협업하여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조기시행이 가능한 과제를 적극발굴하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전담창구 설치

④ 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대사관·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허용(재외동포청)

기존 재외국민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계좌가 필요하여 계좌 개설을 위해 국내를 방문함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 사회적 비용 발생

개선 국내 계좌 없이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도입

⑤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 가능(산업부)

기존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실무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중급기술자까지만 승급이 가능하여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 발생

개선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이 가능하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 승급 예상



(나).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24.8.)

①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과기정통부)

기존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므로 노인·장애인 등의 거동불편자는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

개선 집배원이 직접 에너지바우처 미수령가구를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전달

②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해경청)

기존 전 세계 해양 구조기관은 공용통신망을 24시간 의무 청취해야 하나, 한정된 인력(2명)으로 인해 구조신호 인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개선 구조신호(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등)를 AI가 인지하여 구조기관에 자동 전파하는 '구조신호 자동 식별 시스템' 개발

③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산림청)

기존 '23.4월 강릉 산불 등 전력선 주변 수목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

개선 전력선 주변 수목 관리주체인 한국전력 등과 협업하여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작업 추진

④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를 위한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식약처)

기존 희귀질환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를 발급하기 위해 매번 진단서 제출 필요

개선 정기적인 자가치료용의약품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복지부)

기존 간병·재활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바우처 사용가능기관의 기본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이용자 편의 저하

개선 네이버지도를 통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가능기관 검색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BEST 5

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우리 삶

2주간(7.23~8.5) 9,907명 참여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1 냉·난방 등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 가구를 방문하여 전달
(1,246가구 중 867가구 배송 완료)



드*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집배원이 직접 바우처를 전달하게 되어 좋습니다. 올여름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2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AI가 구조신호(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등)를 인지하여 구조기관에 자동 전파하는 시스템 개발



B*****K
드넓은 바다에서 AI를 이용하여 구조신호를 듣는다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한전과 협업하여 전력선 인근의 산불 위험목(2,161그루)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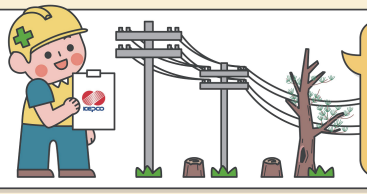

해*별
전력선 주변에 있는 나무로 인한 대형산불은 환경뿐만 아니라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큰 재해인 것 같아요. 전력선 인근의 산불 위험목 제거, 환영합니다.

4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 치료를 위한 해외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정기적으로 해외 의약품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발급을 위해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



피*팬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의 심신이 괴로운데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한다면 환자와 업무 처리 담당자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5 사회서비스(간병 등) 전자바우처 사용가능기관, 네이버 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이용자와 가까운 기관의 검색 및 예약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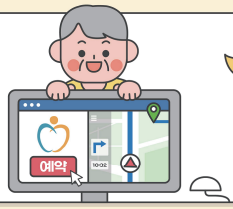

시***사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 검색뿐 아니라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유용한 것 같아요. 국민 편의와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적극행정, 지지합니다!

국무조정실

(다).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24.10.)

①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농식품부)

기존 반려견 등록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반려견 소유자가 대부분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반려견 소유자 불편 가중

개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② 낚시어선 승선신고, 수기작성 대신 QR코드로 가능토록 개선(해경청)

기존 낚시어선 승객은 수기로 승객명부를 작성하므로 작성자의 필체에 따라 식별이 난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

개선 승객명부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QR코드나 URL을 통해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③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병무청)

기존 병역의무자(25~28세 병역미이행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단기(6개월 이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처리에 통상 2일 소요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

개선 병역의무자가 나이·여행기간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서류검토 없이 당일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 조달계약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30억 원의 인지세 비용 절감(조달청)

기존 인지세법상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도급계약에만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공급계약·단가계약을 도급계약과 구분하기 어려워 '11년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 부과

개선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닌 공급계약·단가계약의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⑤ 채무당사자의 관계인(가족 등)에게도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금융위)

기존 '채무당사자'만 채무자대리인 법률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족, 지인(직장동료 등) 등 관계인에 대한 지원 불가

개선 채무자대리인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24년 제3차) BEST 5

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우리 삶

12일간(9.23~10.4) 5,037명 참여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1 반려견 등록정보 변경 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23년 1월~)

시·군·구청 방문 대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16,000건 해결
(24년 1월~9월)



S***e
반려견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려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해서
눈치가 많이 보였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2 낚시어선 승선 신고, 수기작성 대신 QR코드로 가능토록 개선 (24년 7월~)

올해 7월부터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동해안의 항구(2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중, 향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체**아
QR코드로 승선신고가 가능하므로
편의성은 물론, 더 꼼꼼한 체크와
영구적인 승선신고자료 보관이
가능해지겠네요!

3 병역의무 미이행자(25~27세)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온라인에서 즉시 처리 (23년 12월~)

허가처리가 통상 2일 소요되는 대신,
신청 시 별도의 서류검토 없이
즉시 허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올해 상반기에 10,408건 처리)



o****5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4 조달계약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30억 원의 인지세 비용 절감 (24년 7월~)

인지세 부과대상 약 45% 축소
(연간 약 35,600건→19,600건),
연간 약 30억 원의 인지세(건당 평균 20만원) 비용 절감



a*****e
1,000만원이 넘는 조달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여부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함으로써 계약과정에서의
법적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5 채무당사자의 가족 등에게도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24년 7월~)

채무자대리인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으로 확대



지*맘
채무당사자의 주변인까지 아우름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

(라).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24.11.)

①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농식품부)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이상고온은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

개선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②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농식품부)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 불합격 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함

개선 검역 불합격한 멸종위기종 등의 처리방법에 '국가동물보호시설 기증'을 추가하고, '20년 검역대상부터 소급 적용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복지부)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료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미확보

개선 시스템 유지보수예산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실거주지 신청 허용

④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취소 허용(공정위)

기존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달리,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당일이라도 영업시간외(평일 9~17시 외, 주말, 공휴일)에 항공권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개선 국내 주요 8개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하는 경우 24시까지 무료 취소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⑤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국세청)

기존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 중이나, 연도별로 건건이 환급신고서를 입력해야 하는 등 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 하나의 화면으로 연도별 수입금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24년 제4차) BEST 5

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우리 삶

14일간(11.6~11.19) 5,607명 참여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1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

*기존에는 가뭄, 홍수, 이상저온 등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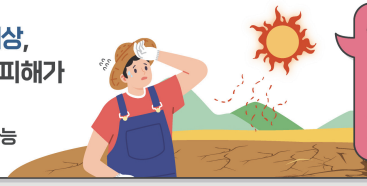

미소**** 아이

점점 심해지는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멸종위기종 반입 시, 검역에서 불합격한 경우 폐기해야 했으나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



소*기

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동물을 폐기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국가시설에서 보호·관리토록 하여, 동물보호, 멸종위기종 보전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네요

3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할 주소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가능



뽀*

직장 등의 문제로 서류상의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마다 주소지를 찾아가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올해부터는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합니다

4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 0시부터 23:50분까지 취소 허용

*기존에는 당일 9시~17시만 취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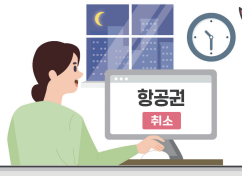

또****맘

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23:50분까지 환불이 가능한데 여행사에서는 17시까지만 되어 불편했어요

5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의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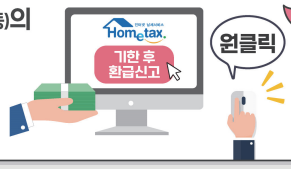

피*팬

세법은 자주 바뀌고 너무 복잡해서 일반 서민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을 한번의 클릭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

3.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 조남식 주무관 | Tel. 044-200-2916

1 추진 배경

정부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국민 생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민생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개선해왔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 홍보, 콘텐츠 참신함 부족 등 관행적 홍보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홍보영상을 국민이 직접 만드는 계기를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관심을 환기하고 국민의 시선과 개성을 활용하여 홍보 공급자와 수요자 경계를 허물고자 '2024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추진했다.

2 공모전 개요

공모전은 2024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가자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제공한 30여 개 예시 사례 또는 본인이 경험한 규제혁신 사례를 온라인 홍보에 적합한 30초~120초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콩트, 뮤직비디오 등 형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하도록 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유도했다.

총 46건을 접수하고 그 중 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 1차 국무조정실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최우수상 1건은 국무조정실장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건은 각각 국무조정실장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상 3건은 각각 상금 100만 원, 가작 4건은 각각 상금 25만 원을 시상했다.

3 주요 결과

개인과 팀을 합해 총 135명이 참가하여 영상 46건을 접수했다. 대학생부터 임산부,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했으며 특히 유튜브 및 영상에 친숙한 2040세대와 규제혁신을 체감한 경험자 참가가 두드러졌다. 다양한 사례들이 애니메이션, 그리기, 상황극, 뮤직비디오, 뉴스·다큐멘터리 패러디 등 참신하고 흥미롭게 표현되었으며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출연자 연령 폭도 넓었다.

최우수상은 오상우 씨의 「시작은 목소리부터, 성과는 일상으로까지!」로 일상과 일터 속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본인의 손그림과 목소리로 표현하여 진정성과 전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입국자 세관신고 의무 완화 ▲무라벨 생수 낱개 구매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허용 ▲조난구조 AI신호 활용 확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우수상 2건 중 Y.B.O.G팀(윤민재, 고범준, 배범근, 오승태)의 「이게 되네?!」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게 되네?!'를 반복적으로 재밌게 표현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준브로스팀(김준영, 구의강, 정예민, 이인희, 박현진)의 「규제혁신이 바꿔준 우리들의 '오늘'」은 자가치료용 희귀약품 수입 간소화, 장애가족 돌봄급여 범위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혁신사례를 수준높은 촬영·편집기술로 감동적인 다큐 형식으로 담아냈다.

장려상 3건 중 원형상 씨의 「3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규제혁신」은 빠른 화면전환과 귀에 꽂히는 음성을 가미한 영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효율적으로 전달한 것이 특징이었다. 배유미 씨의「혁신 외 출입 금지」는 규제혁신 성과를 색채가 풍부한 드로잉을 통해 소개했고, 정강이팀(강은수, 이종명, 전영현)의 「'그것'이 내게로 왔다」는 뉴스와 영화 티저 광고 등을 패러디하여 규제혁신으로 더 나아진 일상을 참신하게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최병민 씨의 「규제 다이어트」, 허윤정 씨의 「규제혁신으로 더 넓어진 혜택, 국민 곁에 함께 합니다」, 한국취업센터팀(조국, 한은민, 조환준)의 「규제혁신이 찾아갑니다」, 생각솜씨팀(조주상, 고혜정)의 「'가능'한 변화들」 등 4건은 영상미와 정보전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가작으로 선정됐다.

|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수상자 목록 |

구 분	작 품 명	작가·팀명
최우수상 ※국조실장상, 상금 300만 원	‣ 시작은 목소리부터, 성과는 일상으로까지!	오상우
우수상 ※국조실장상, 상금 200만 원	‣ 이게 되네?!	Y.B.O.G(윤민재 등 4명)
	‣ 규제혁신이 바꿔준 우리들의 '오늘'	준브로스(김준영 등 5명)
장려상 ※상금 100만 원	‣ 3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규제혁신	원형상
	‣ 혁신 외 출입 금지	배유미
	‣ '그것'이 내게로 왔다	정강이(강은수 등 3명)
가작 ※상금 25만 원	‣ 규제 다이어트	최병민
	‣ 규제혁신으로 더 넓어진 혜택, 국민 곁에 함께 합니다	허윤정
	‣ 규제혁신이 찾아갑니다	한국취업센터(조국 등 3명)
	‣ '가능'한 변화들	생각솜씨(조주상 등 2명)

|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우수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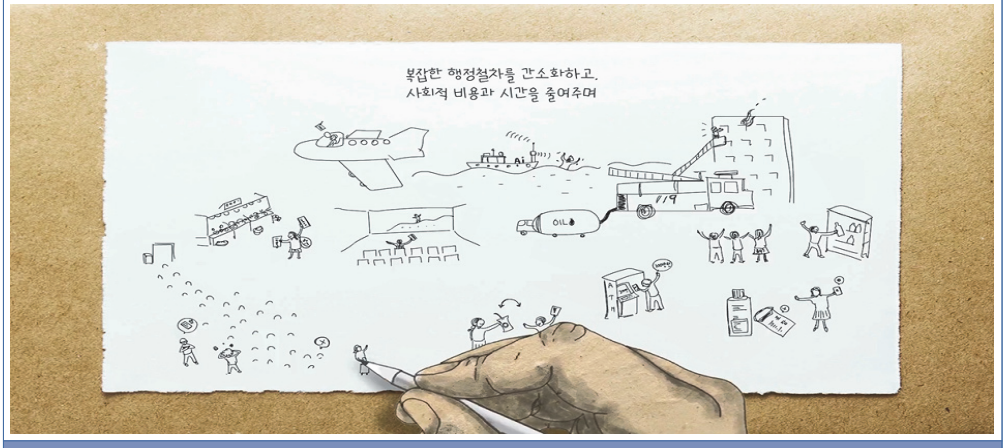

시작은 목소리부터, 성과는 일상으로까지!
(최우수상 / 국무조정실장상, 상금 300만 원)



이게 되네?!
(우수상 / 국조실장상, 상금 200만 원)



규제혁신이 바꿔준 우리들의 '오늘'
(우수상 / 국조실장상, 상금 200만 원)



3가지 사례로 알아보는 규제혁신
(장려상 / 상금 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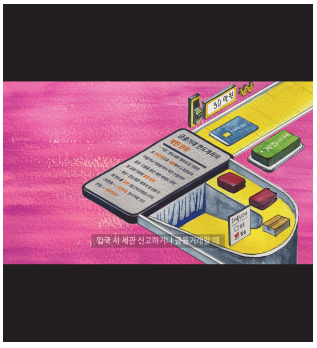

혁신 외 출입 금지
(장려상 / 상금 100만 원)



'그것'이 내게로 왔다
(장려상 / 상금 100만 원)

※ 가작 4건(작품 당 상금 25만 원)

4. 웹툰(Webtoon)을 활용한 규제혁신 홍보

| 고금희 사무관 | Tel. 044-200-2914

1 추진 배경

국무조정실은 더 많은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SNS 채널 운영, 전광판·온라인 광고, 방송, 국민참여형 이벤트, 국정홍보채널 및 정기간행물 협업,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환경에서 불편·부담을 줄인 규제 개선 사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 방안을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MZ세대에게 친숙한 '웹툰(Webtoon)'을 활용한 규제혁신 홍보를 추진했으며,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웹툰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쉽게 전달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됐다.

2 추진 경과

웹툰 제작에는 홍익대, 호서대, 경기과학기술대에서 웹툰·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 제목은 '지금이야! 규제를 뒤집어라!'로 정하고, 20~50컷 분량의 웹툰 총 6편을 제작했다.

웹툰의 주제는 킬러규제 개선, 민생규제 개선, 황당규제 개선, 규제심판,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6개 분야의 주요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감성과 스토리를 더해 규제혁신 사례를 일상 속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제작 과정에서는 대학·학생들과의 주제 선정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스케치 및 채색 전·후로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에듀테인먼트, 드라마,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와 개성 있는 그림체를 표현하면서도 시리즈 전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했다.

|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 '지금이야! 규제를 뒤집어라!' 목록 |

웹툰명(작가)	규제혁신 사례
▸ **취준생 그만두고 농사나 할랍니다** (경기과학기술대 박수인)	**[킬러규제 개선]** 불법 농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슬기로운 향수 생활** (홍익대 장문경)	**[민생규제 개선]** 해외에서 여행자가 향수 구매 시, 면세기준 용량 상향(60→100ml)
▸ **봉투 하나의 온기** (경기과학기술대 송명현)	**[황당규제 개선]** 아동급식카드로 음식 외에 봉투도 구매 허용
▸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문제 해결** (호서대 안재영)	**[규제심판]**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인터넷 뱅킹·ATM 30→100만 원 등)
▸ **돗개가 간다** (홍익대 김지민)	**[적극행정]**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 치료를 위한 해외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 **아띠와 함께** (호서대 강혜빈, 조하연)	**[규제샌드박스]**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허용

3 주요 결과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는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 블로그·페이스북 등 규제혁신 온라인 홍보 채널뿐만 아니라 국정홍보 채널 및 관계 부처 SNS를 통해 게재됐다. 또한 정책 주간지 'K-카툰 공감'(2만 부 발행)에서도 3회에 걸쳐 연재되며 독자들에게 소개됐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규제혁신 전용 작품관을 개설해 공개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자체 심사를 통해 고품질 작품만 연재를 허용하는 플랫폼으로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는 11월 말 게재 이후 약 2주간 조회수 37.5만 회, 국민 참여 댓글 1만여 개, 평균 별점 9.7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웹툰은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추가 활용됐다.

| 카카오페이지 게재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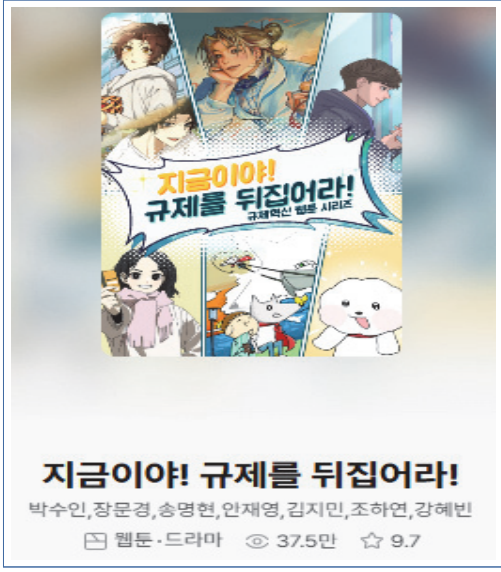



| 국민 댓글 모음(1만여 개 댓글 中 발췌) |

지니맘 24.11.25

너무 재밌개 읽고있는데 규제개선이 목적이었네요. 참으로 신박하다

김□규 24.11.25

봉투도 지원해준다니 세심한 배려 인상 깊네요. 이걸 보고 꼭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이런 사소해보이거나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나가는 것 또한 혁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민굥 24.11.25

규제혁신 응원합니다
웹툰으로 알기쉽게 알려주니 더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규제개혁이고 노력이 아닌가십습니다

winnie 24.11.25

웹툰으로 바뀐 규제를 알려주셔서 매우 유용하네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도 사라질 것 같아요. 좋은 기획해 주셔서 좋네요.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W^^W 24.11.25

이제는 어려운 내용들도 다 웹툰으로 쉽게쉽게 우리 생활에 접근하게 나오네요. 이런게 규제혁신이 아닐까 싶네요

김□경 24.11.25

제가 잘 몰랐던 걸 웹툰으로 쉽게 이야기 해주니 재미있고 좋네요.^^

위아더챔픈 24.11.25



이런 아동급식카드가 이렇게 감동적일 일이냐고.

강□화 24.11.25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을
웹툰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행정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바뀐 규제가
풀린 규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단순한 글은 눈에서 그냥 스쳐지나가버리기 일쑤지만
이렇게 msg처럼 웹툰이 첨가되면 아티스트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해도 쉽게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 공무원님들이 세계최고가 아닐까요^^

1984000 24.12.01

어떻게 이런 색감을 쓰시지,,.....
눈호강 제대로 하고 가요
그림체 미쳤네요

|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 '지금이야! 규제를 뒤집어라!' 표지 모음 |



9 규제개혁 국제협력

| **윤현정** 사무관 | Tel. 044-200-2431
| **전예진** 사무관 | Tel. 044-200-2428

1. 개요

규제개혁 국제협력은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려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 동향을 연구하고 각국의 규제개혁 국가 경험을 공유하여 국내 규제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협력의 주요 업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RPC: Regulatory Policy Committee)와 협력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 정책 및 추진성과를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OECD와의 규제 협력사업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여왔으며, 올해부터는 OECD에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고 한-OECD 협업사업을 체결하여 한-OECD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요청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 경험을 전수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 2024 OECD 규제정책평가(iREG)

1 총론

2024년 11월,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개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처음으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1위를 기록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마다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OECD 규제정책평가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규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각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여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것이다.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실시한 첫 해인 2015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10위권을 기록했다. 이후 두 번째 평가인 2018년부터는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내로 진입하여 2021년까지 상위권을 유지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는 38개 회원국들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규제정책과 규제제도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2023년 5월 OECD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일반 제도 관련 약 1,000여 개의 질문을 송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OECD에서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처음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규제정책의 전 단계에 걸쳐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이러한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24년 11월 20일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평가결과가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회원국별 규제정책 개요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2024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은 2025년 상반기에 발간되어 OECD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규제 선진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분야별 평가결과

(가)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38개국 중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분야에서 줄곧 2~4위의 상위권을 유지했었지만,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 검증을 강화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후평가 (Ex-post Evaluation)

우리나라는 사후평가 분야에서도 법률, 하위법령 모두 최초로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순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법률은 4단계(5위→1위), 하위법령은 6단계(7위→1위) 상승했다. OECD는 사후평가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당초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 발전이나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에 발생하지는 않는지, 기술 발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처음에 규제를 만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통상 3년(최대 5년) 주기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행 중인 규제를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당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다)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률은 3위, 하위법령은 5위를 기록했다. OECD는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전 단계에 걸쳐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에 상품,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에게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사업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

(라) 기타 : 투명성 (Transparency)

OECD는 올해 처음으로 투명성 지표를 신설하여 규제제도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하위법령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투명성은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요소로써, OECD는 회원국들이 각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규제정포포털, 규제혁신 블로그 등에 현행 규제, 관계부처, 규제개선과제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정부가 신설, 강화하려는

규제를 공개한다. 특히, 2022년 5월부터는 재검토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정보 범위를 확대했으며,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2년 7월 행정절차법을 개정했다.

3. OECD와의 협력

1 제30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0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4월 11일~12일 2일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2024년 규제정책전망 영향력 확대 및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및 글로벌 표준 거버넌스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OECD는 2024년 규제정책전망의 사용과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확보 및 참여 보장 △사회적 불평등 증가에 따른 규제의 분배적 영향성 고려 △사람 중심의 접근방식 △정부의 투명성·책임성·신뢰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후 위기와 기타 환경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녹색전환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례 공유를 통해 국제적 공통 규칙 및 국제기구를 통해 합의된 인프라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제31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1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11월 20일~21일 2일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OECD 규제정책전망 및 규제평가 결과 승인, 성공적인 규제 정책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 구축 및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OECD는 성공적인 규제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절차의 투명성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참여방식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했다.

4. 미주개발은행(IDB)와의 협력

그간 한국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규제개혁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24년에는 그 협력의 범위를 중남미 지역까지 확장했다. 2024년 10월, 국무조정실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DB의 요청을 받아 중남미 규제네트워크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남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했다. 회의에 연사로 참여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How Korea Harnesses Digital Tools to Promote Regulatory Reform)'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규제정보화 시스템, 규제정보포털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한 규제 성과를 널리 알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페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등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기술적으로 전수하는 IDB의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협력하여 3개국의 규제 담당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규제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한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5. 양자 간 협력

국무조정실은 5월 30일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처장을 대표로 하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했다. 태국 내각사무처는 태국 총리실 소속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2017년 태국 내각사무처의 첫 방한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규제조정실장과 태국 내각사무처 처장 면담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태국 내각사무처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심사 제도 및 실무 운영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7일에는 멜리에프 후다요르 후람오비치(Meliev Khudayorl Khurramovich)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방문단도 맞이하여 양국 간의 규제개혁 교류 의지를 교환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첫 국무조정실 방문인만큼, 규제개혁 추진체계,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제도, 규제샌드박스 등 한국의 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했다.

OECD 규제정책평가 우리나라 순위

OECD

• OECD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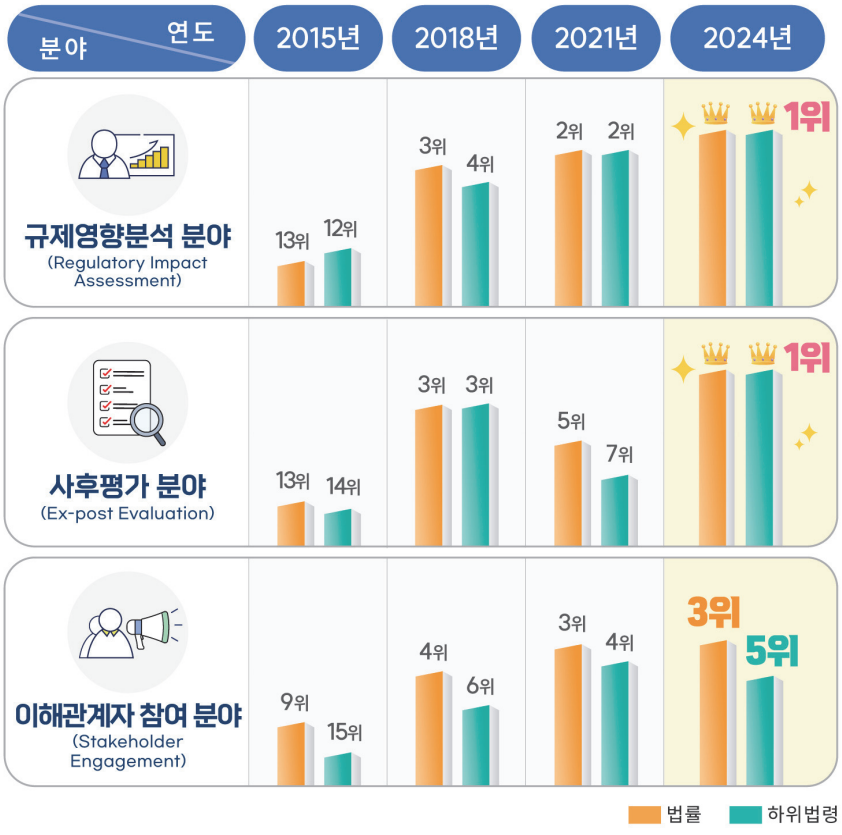

• OECD는 2024년에 투명성(Transparency) 지표를 처음 제정·공개

➜ 법률·하위법령 모두 1위

국무조정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OECD 규제정책평가 우리나라의 성과

OECD

1 규제영향분석 분야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심층심사 대상 확대 (22년 5월)
  (신설·강화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 면밀히 검토)
-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편익 검증 강화 (23년 4월)
  (불합리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

2 사후평가 분야
(Ex-post Evaluation)

- 규제 시행 후, 주기적으로 재검토
  (최대 5년, 통상 3년)
- 규제가 의도한 목적을 미달성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규제 개선 (22년 5월)

3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
(Stakeholder Engagement)

-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 건의
  (www.sinmungo.go.kr)

기타 투명성 지표
(Transparency)

- 규제정보포털 facebook blog
  규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www.better.go.kr 등)
-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에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공개
  (www.lawmaking.go.kr)
- 온라인공청회 확대 (22년 7월)

국무조정실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
규제개혁백서

03 신설·강화 규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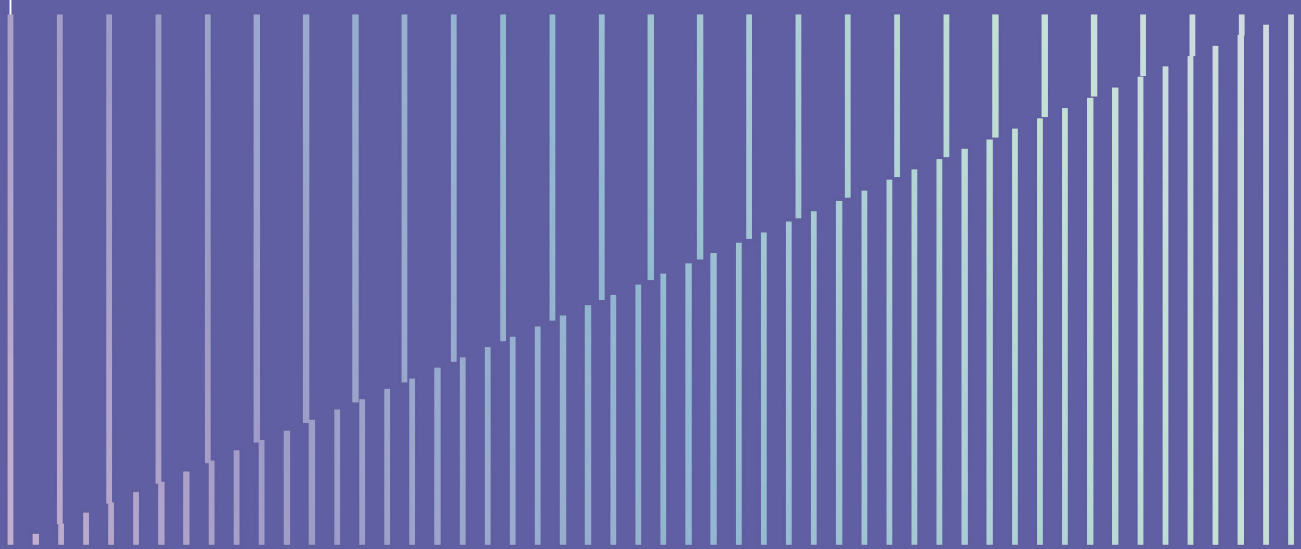

1. 2024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주요 결과

2. 규제영향분석

03
신설·강화 규제 심사

1 2024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주요 결과

1. 요약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842건(중요규제 115건, 비중요규제 727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은 철회권고, 79건은 개선권고, 9건은 부대권고를 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개선하였다.

| '24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11	2	9	0	9	0	0
경찰청	13	28	24	4	1	0	0	3
고용노동부	5	9	9	0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11	14	7	7	0	6	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18	17	1	0	1	0	0
관세청	1	1	1	0	0	0	0	0
교육부	14	26	23	3	0	1	1	1
국가보훈부	7	7	7	0	0	0	0	0
국가유산청	8	14	12	2	1	1	0	0
국민권익위원회	1	1	1	0	0	0	0	0
국방부	3	9	9	0	0	0	0	0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국토교통부	77	128	120	8	2	4	1	1
금융감독원	5	5	5	0	0	0	0	0
금융위원회	25	45	30	15	0	6	2	7
기상청	2	4	4	0	0	0	0	0
기획재정부	4	4	4	0	0	0	0	0
농림축산식품부	40	75	66	9	0	8	0	1
농촌진흥청	4	4	4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18	27	26	1	0	1	0	0
방송통신위원회	2	7	2	5	0	3	0	2
법무부	2	6	2	4	0	3	0	1
보건복지부	39	58	47	11	0	7	2	2
산림청	10	21	21	0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22	36	32	4	0	4	0	0
소방청	55	59	48	11	2	7	2	0
식품의약품안전처	29	45	45	0	0	0	0	0
여성가족부	3	3	3	0	0	0	0	0
우주항공청	1	1	1	0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2	4	4	0	0	0	0	0
재외동포청	2	5	4	1	0	1	0	0
조달청	2	2	2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4	7	1	6	0	5	0	1
질병관리청	4	5	4	1	0	1	0	0
통일부	1	1	0	1	0	1	0	0
특허청	4	8	4	4	0	4	0	0
해양경찰청	3	3	2	1	0	0	1	0
해양수산부	38	74	70	4	1	3	0	0
행정안전부	13	27	26	1	0	1	0	0
환경부	27	40	38	2	0	2	0	0
계	520	842	727	115	7	79	9	20

2. 경제분과위 심사 결과

가. 공정거래위원회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1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1.17.)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3)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4.12.)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2 (중요 1, 비중요 1)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4.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2 (중요 1, 비중요 1)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4.2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7)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4.2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0.1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1)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11.2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6 원안의결 8	신설 8, 강화 6 (중요 7, 비중요 7)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신설)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납품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매장임차인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

  * ① 납품업자 등의 인력 관련 결정 시 지시·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② 판매품목·시설규모·영업시간 등 경영 관련 사항을 부당하게 제한 ③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대한 사전협의·승인 요구, 제한·중단 ④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 결정·유지·변경 요구 ⑤ 그 외 독자적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심사결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규정한 각 유형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피규제자 의견 중 타당한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나) 기업결합 심사기준

[심사내용]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직전년도 월평균) 5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또는 사업부문) ▵국내 연구개발 지출액(직전년도)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결합하는 경우,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에 해당하더라도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서 제외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3,000억 원 이상(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인 경우

[심사결과] ① 결합 대상이 월평균 이용자수 500만 명 이상인 '사업부문'인 경우 이용자수를 판단하는 대상 시점이 불명확하므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기업결합) 신고일 기준 직전년도'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② '연구개발 연 300억 원' 기준은 경쟁제한성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은 점, R&D 과소투자 우려 등을 고려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③ 재검토기한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기준** (강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구입강제품목 지정)이 허용되는 절차적 요건으로 ① 구입강제품목 지정 사실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고, ② 구입강제품목을 확대하거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추가

[심사결과] 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서 '유지'와 '성실하게'를 삭제하되, 향후 고시에서 구체적 협의 내용·방법 등을 보완할 것을 **개선권고** ② 사전협의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신제품 출시 관련 협의 시점·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구체화할 것을 **부대권고** ③ 가맹본부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위해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및 예외사유 (신설)

-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마련

  * 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기업집단의 범위가 일치하고, ② 해당 자연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동일인이 되는 법인 제외)·채무보증·자금대차 및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경영참여(임원재직 등)·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는 경우

[심사결과] 사익편취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필요성·적정성이 인정되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 주기를 2년으로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마)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심사내용] **중요사항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신설)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용량·규격,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

  * (대상품목) 총 119개 품목(가공식품 80개, 생활용품 39개)
  (위반유형) 고지하지 않고 ▵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 또는 ▵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5%p 초과하여 감축
  (고지방법) 제품 포장/제조사 홈페이지/판매장소(온라인 포함) 중 한 곳에 3개월 이상 표시(게시) 및 한국소비자원에 통지

[심사결과] ① 중요 원재료의 경우 변동비율 5%p 이하는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용량·규격·중량·개수의 경우에도 변동비율 5% 이하는 고지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권고** ② '중요 원재료'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업계 부담을 고려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③ 고지방법에 대해 포장·홈페이지·판매장소 중 한 곳에 표시해야 함에도 한국소비자원 통지까지 의무화한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④ 고지해야 하는 시점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⑤ 대상품목은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해당여부가 아닌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강화)

-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주요 규제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대한 증빙 및 예외 규정 강화*

  * (증빙자료) 판매원별 산정자료 추가 제출
  (영업기간) 영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기간 실적 인정
  (방문판매 실적) 후원방문판매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해온 경우 방문판매업 판매자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삭제

[심사결과] ① 판매원별 산정자료 추가 제출은 업체의 부담이 과도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② 영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영업 시작 시점에 따라 예외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기간'만을 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사)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심사내용]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 구체화 (신설)

-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4.6월)하여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고, 동 고시를 제정하여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유형을 규정

[심사결과] ① 협의 결과 통지 시점이 불분명하여 통지가 지연되거나 혼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조건 변경 이전'에 통지해야 함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② 거래상대방이 단독으로 거래조건 변경시 사후협의를 허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사전협의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지영** 사무관 | Tel. 044-200-2424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총 13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1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8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06.)	원안의결 1	신설 (비중요 1)
(3)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1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1.2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7	신설 15, 강화 3 (중요 1, 비중요 17)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심사내용]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조치의무 (강화)

① 이용자가 많은* 부가통신사업자(구글, 카카오 등)에게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민원)을 한국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확보의무를 부과(제30조의8 제2항)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며, 하루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1 이상(시행령 제30조의8 제1항)

② 실시간 응답은 이용자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포함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기술적 조치 요구, 법령 질의 등 24시간 이내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규정

[심사결과]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며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원 처리기한을 24시간 이내로 의무화하는 것은 민원 내용, 사업자의 특성 및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

- 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기한을 24시간 이내에서 3영업일 이내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② 온라인 및 전화 처리시스템을 모두 확보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편의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다. 관세청

| **송경준** 사무관 | Tel. 044-200-2398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라. 국토교통부

| **문지영** 사무관 | Tel. 044-200-2424
| **장인식** 사무관 | Tel. 044-200-2423
| **성연주** 사무관 | Tel. 044-200-2440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건축법 시행령 등 총 77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12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8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철회권고, 1건은 부대권고, 1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1.16.)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2.08.)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2) 철도용품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3)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3.1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8)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19)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4.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0)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5.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3.)	철회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2 (중요 2, 비중요 1)
(2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9)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6)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8)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1)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3)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4)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7)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9)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0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6)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8)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0.2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59)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0)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1.11.)	부대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4 (중요 1 비중요 4)
(6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8)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0)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1)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2)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7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6)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5 (비중요 6)
계		개선권고 4, 철회권고 2, 부대권고 1 원안의결 121	신설 77, 강화 51 (중요 8, 비중요 120)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궤도·삭도 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신설 (신설)

- 궤도 차량의 이동편의시설과 승강장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8인승 이상 궤도차량(모노레일, 경전철 등)과 삭도차량(케이블카 등)의 경우 동일한 선로에 운영 중인 전체 궤도차량 중 2곳 이상에 가로 1.2m, 세로 0.7m 이상의 휠체어 고정설비 등 휠체어 이용에 적합한 구조가 확보된 휠체어 전용 공간 마련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의 적절성,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원안동의**

(나)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심사내용] 물류창고업의 등록 기준 등 (강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외 별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문배송시설도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 주요 요건(입지기준)으로 집적화 방지,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설치 금지, 시설면적 200㎡당 주차면 최소 1대 확보 등을 규정하면서,(개정안 제3조제4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 지방자치

단체가 지나친 밀집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입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안 제3조제4항제3호마목)

[심사결과] 개정안 제3조제4항제3호마목은 권리제한·의무부과 내용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아울러, 개정안 제3조제4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 이외에 추가적인 입지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부령에 추가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다) 회전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심사내용] 현장안전 유도요원 교육훈련 의무 신설 (신설)

- 화물을 내리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된 현장안전 유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토록 하면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항공기사용사업체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립, 운항규정 변경·신고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평가주기 축소 및 평가대상 확대 (강화)

① 전세버스사업자 등 운수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주기를 '매 5년' → '매 3년'으로 축소

②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무점포 판매업자 보유 화물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18년 평가 도입 이후 평가 대상 운수업체의 중·경상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평가 주기를 축소해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지, 운수사업자의 안전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하고,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것을 고려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①, ② 모두 **철회권고**

-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거쳐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마) 건축법 시행령

[심사내용]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 건축물 (신설)

- 단독·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 이때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심사결과] 주택 등의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는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나, 거실 설치 자체를 금지하여 거주 외 목적으로도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중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단독·공동주택은 지하층에 설치하려는 거실이 거주 용도가 아닌 부속용도(사무, 작업, 주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거실'과 '부속용도'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지자체는 반드시 지하층 거실 설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운영하게 하고, 지자체마다 금지/허용 기준이 상이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부대권고**

(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심사내용] 무량판 구조 건축물 점검기준 강화 (강화)

- 무량판 건축물은 최초 정기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을 실시할 때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측정, 전단보강철근 확인 등 장비점검 추가 실시
- 장비점검 방법은 구조계산서 검토 및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및 전단보강철근(철근탐사장비) 검사로 규정

[심사결과] 무량판 구조 붕괴 시 뚫림파괴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후 건축물(사용연수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장비점검이 의무화되어 있고, 특정 건축구조에 대해 강화한 타법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무량판 구조만 일률적으로 장비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근거가 부족

- 타 건축구조와 동일하게 비주거용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최초 정기점검(5년 이내) 시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육안점검 시 바닥판과 기둥의 접합부위에서 균열 및 손상이 발생했다면 장비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심사내용]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 강화 (강화)

- 콘크리트에 포함된 물의 양(단위수량) 시험 의무화
- 최소 1회/일, 배합 다를 때마다, 타설량 120㎥마다 실시하며, 기존 품질시험 항목도 (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압축강도, 휨강도) 단위수량 검사 빈도와 통일

[심사결과]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자 콘크리트에 임의로 물을 타는 가수행위 관행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광주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22.1.11.)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위수량 품질시험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원안동의**

- 가수행위는 작업자가 고층으로 펌프카를 이용해 레미콘을 운송할 때 수월하게 압송(押送)하고자 물을 타는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고층부 레미콘 슬럼프(반죽질기) 규격 현실화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마. 금융감독원

| **최인협** 전문위원 | Tel. 044-200-241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총 5개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바. 금융위원회

| **최인협** 전문위원 | Tel. 044-200-241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금융투자업규정 등 총 25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4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5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3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2.0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3.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4)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0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24.)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 2)
(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8.23.)	개선권고 1 부대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강화 1 (중요 5)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9.11.)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	신설 5 (중요 3, 비중요 2)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1.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2, 강화 1 (중요 1, 비중요 2)
(22)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2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6, 부대권고 2, 원안의결 37	신설 32, 강화 13 (중요 15, 비중요 30)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심사내용]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 (강화)

-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향후 발생할 손해를 미리 반영하도록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한 회계 계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단계적으로 130%까지 상향

[심사결과] 상호금융업 조합의 건전성 강화 및 여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이행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신설)

-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지정하고, 예치금 등의 100분의 10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며,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동 제정 사항은 그 필요성,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관리기관에게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분리하여, 국채 등 자산으로 운용토록 의무화한 것은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일탈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취지에 맞게 가상자산업자가 예치금을 안전한 방법(예금 등)으로 관리기관에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 동향 및 이용자 보호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여, '26.12월까지 그 점검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심사내용]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신설)

- 예치금 관리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국채·지방채·정부보증채 등 외에 금융회사가 지급보증한 채권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용자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계좌)으로 보관해야 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도록 함

[심사결과]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규율체계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고, 해킹 등 사고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인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콜드월렛 보관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비용에 비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고 주요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의무화 (신설)

- 주권상장법인의 비계열사간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동의(의결)을 의무화

[심사결과]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 산정규제가 폐지될 예정인 만큼 합병가액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며, 동 규제에 따라 합병제도의 공정성 확보, 이해주주 보호로 인한 편익이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신설)

-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의 적정성,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이사 전원의 서명 필요)을 의무화

[심사결과] 합병관련 이사회 논의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이사회의 책임성 강화, 주주의 정보접근성 확대 등의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합병제도에 대한 공정성 확보, 주요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심사내용] 이용자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의무 (신설)

-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합계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할 때,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 포함)로, 예치의 경우 은행 및 체신관서로,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 회사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제한하며,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및 선불업자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예치, 국채·지방채 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파산 등 유사 시 환급여력 확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인정됨

다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선불충전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만큼 자금운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고시 및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선불업자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상 독립법인인 모회사-자회사 및 지주회사-자회사 등에서 통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호대상에 편입

[심사결과] 자회사를 가맹점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선불업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맹점 준수사항 (신설)

- 선불업자가 가맹점(전자지급결제대행)을 모집하거나, 가맹점이 하위 가맹점을 모집할 때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심사결과] 가맹점이 등록 가맹점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등록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가맹점 등록여부 확인이 가맹점 최초계약 시 및 갱신 시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비조치의견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할 것을 **부대권고**

또한, 거래내용 정보가 과도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등 관련지침에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등 (신설)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하려는 선불업자는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의 합병 또는 파산 등 소액후불결제업무 영업 종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 소액후불결제업무의 폐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취소, 합병·해산시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및 관리 의무 (신설)

-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총 제공 한도는 직전 분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로 규정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소액후불결제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되어 왔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

(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신설)

-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을 통지 시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서면을 대체할 수 있으며, 통지 도달여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채권회수 조치 통지 방법을 규정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은 양도 제한 채권으로 규정

[심사결과] 내용증명 발송 시 발송 주소를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자 주소로도 허용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처리 시스템이 확충될 때까지 등기 통지도 허용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열람기간 인정 등 도달 여부 해석 등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아울러,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횟수 산정 시 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세 번 이상 양도 채권은 추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향후 법 개정 시 위임 규정 신설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하는 한편,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신설)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 28시간 이하, 특정 수단(방문, 전화·문자, 이메일, 팩스)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으로 추심연락 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추심연락 제한 수단을 3가지 이하로 제한 시 개인금융채무자가 3가지 모두 전화번호(휴대폰, 직장, 자택)로 제한 수단을 요청할 경우 사실상 방문만 가능하게 되어 추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추심연락 제한 수단을 2가지 이하로 수정하고,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등의 공표 (신설)

- 개인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 공표 시 행정처분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행정처분의 제목 등 포함사항*을 규정

  * ①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②상호, 소재지 및 성명 ③대부업 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④위반행위 ⑤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⑥행정처분일·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심사결과] 공표로 인한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바, 행정처분 등의 공표 시 공표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등 절차적 보호장치를 명문화할 것과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신주배정 방식 제한 (신설)

- 상장법인 간 합병 시, 존속 상장법인이 자신이 보유하는 소멸 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소멸 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동 자사주 이전을 금지하고, 상장법인이 분할·분할합병 시, 단순분할·분할합병 신설회사 및 분할승계회사가 동 분할 상장법인 주식(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 분할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단순분할·분할합병 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율

[심사결과] 합병·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고, 일정기한 내에 소각·처분까지 강제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 점검 등을 위해 동 규정에 대해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아) 전자금융감독규정

[심사내용]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범위 확대 (강화)

-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에 따른 주전산센터 기능 마비 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상호저축은행을 추가

[심사결과] 재해 발생 등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전산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무준수 대상 기관이 일부에 국한되고, 대상 기준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관련 법령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예기간(1년)을 설정하여 이행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의결**

사. 기획재정부

| **송경준** 사무관 | Tel. 044-200-2398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관세사법 등 총 4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관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세무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아. 농림축산식품부

| **김인구** 사무관 | Tel. 044-200-2885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농산물 검사관 교육기관 지정 운영요령 등 총 40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7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5건 중 8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고, 6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농산물 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요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25.)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중요 1, 비중요 2)
(4)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3.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3.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3.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4.1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신설 4 (중요 3, 비중요 1)
(1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4.12.)	원안의결 5 개선권고 2	신설 7 (중요 3, 비중요 4)
(11)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4.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5.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개정안	예비심사 (2024.6.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6.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6.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6.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8)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6.3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9)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7.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7.1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7.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7.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8.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제정안	예비심사 (2024.9.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4.9.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9.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가축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7.)	원안의결 6	강화 6 (비중요 6)
(3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11.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3)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1.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34)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6)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8)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4	신설2, 강화2 (비중요 4)
(40)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8, 원안의결 67	신설 56, 강화 19 (중요 9, 비중요 66)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요령

[심사내용] 브루셀라병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환경검사 세부기준 및 입식 허용요건 (강화)

- 가축 재입식 전 환경검사는 브루셀라병으로 한정함을 명시하고, 환경검사 시 시료채취요령을 신설하며, 환경검사 실시사유에 시험소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브루셀라병 발생농장에 대한 재입식 전 환경검사는 소독점검으로 브루셀라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밖에 시험소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환경검사 필요성 판단과정에서 시험소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범위 및 기준 (신설)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로 구분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용도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로 세부 지정기준을 별도로 정함

  •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기준

  1)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정 가능

  2)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 지형, 지물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농촌마을이 분할되지 않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

  3) 농촌마을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 입지 등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와 제84조 및「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제3편 제2장 제7절의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에 따름

  4)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는 제외한다)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심사결과]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세부 지정기준 중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기준 3)과 4)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입지·건축규제(건폐율 등)가 농촌마을보호지구에 강제로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법률의 내용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제도가 또 다른 토지이용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구 지정 목적에 알맞은 꼭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중하게 지정·운영할 것을 **부대권고**

(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심사내용] 맹견사육허가, 맹견 안전관리, 기질평가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① 맹견사육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첨부서류, 처리기간 등을 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중성화수술이 불가한 경우의 요건에 대해 세부내용을 정함

  • 중성화수술이 불가한 경우를 8개월 미만의 맹견으로 한정하고, 중성화 수술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수의사의 진단서 제출 및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②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맹견사육허가자 이외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를 정함

•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안 제12조의4 제1호)

③ 기질평가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 기질평가를 거쳤으나 맹견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개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의 기준을 정함

• 20시간의 범위내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가능

- 맹견의 기질평가 대상월령 및 절차 등을 규정

• 기질평가는 6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대상으로 하고, 기질평가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① 맹견사육허가에 관한 사항

- 노령견, 심장질환견 등 중성화수술이 불가한 경우가 명백히 존재하고, 중성화수술 강행 시 개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의 생명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중성화수술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임일탈을 최소화하면서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개선권고**

- 조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중성화수술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 맹견사육허가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허가 절차·기준 등의 적정성과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②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피규제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과 접근성, 관련 인력 확보 가능성, 업계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농식품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개정안 제12조의4제1호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 맹견 소유자 등이 도움이 필요할 때 불편·혼선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업·단체의 홍보·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권고**

- 맹견사육허가자를 대신해 맹견의 외출 등을 돕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준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기준의 적정성과 현장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③ 기질평가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도 맹견과 동일한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교육·훈련 시간을 차등화하여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기질평가 시점을 6개월령 이상으로 정한 규정은 위임일탈 소지,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을 통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기질평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통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도 조례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부대권고**
-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적정성과 현장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기질평가제도 및 교육·훈련, 맹견취급허가, 맹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① 기질평가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을 정하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20시간의 범위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
  - 최초 정기교육은 6개월이내 3시간으로 하고, 이후 정기교육은 매년 3시간 이수

② 맹견취급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맹견을 취급(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맹견취급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함
  - 맹견 취급영업 허가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맹견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 영업장의 외벽은 어린아이 등이 손을 집어넣어 맹견과 접촉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영업장은 콘크리트 등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 사육실은 맹견을 1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는 구조이어야 함. 다만, 어린 맹견이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등 해당 동물의 특성 및 성향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 맹견 1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함

③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 맹견과 외출 시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도지사의 맹견위해방지 조치 명령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 2미터 이하의 목줄만을 사용,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맹견의 이동 제한

• 외벽 등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등 표시, 그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

[심사결과]

① 기질평가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의 명으로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정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처음 되입되는 제도이고, 적정성과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② 맹견사육허가·취급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맹견 취급영업 허가기준의 적정성은 인정되나, 기존 맹견 취급영업자가 시행 시기에 맞춰 모든 시설·인력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1년의 경과조치를 하도록 **개선권고**

- 맹견취급 허가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허가 절차·기준 등의 적정성과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③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맹견과 외출 시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도지사의 맹견위해방지 조치 명령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원안의결**

(마)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심사내용] 유기농업자재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강화)

- 유기농업자재의 원료수입자는 원료수출자에게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받아 보관 및 공시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유기농업자재 수입원료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관련 내용은 원료 수입자의 부담에 비해 규제의 효과는 미미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와 유기인증 농가 보호를 위해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분석 기술개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부대권고**

자. 농촌진흥청

| **성연주** 사무관 | Tel. 044-200-2420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 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차. 방송통신위원회

| 문지영 사무관 | Tel. 044-200-2424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3, 개선권고 3	신설 6 (중요5, 비중요 1)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3, 원안의결 4	신설 6, 강화 1 (중요 5, 비중요2)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①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의무 (신설)

-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국내에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불법정보 유통 방지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제35조의2제1항)
  - (사업 종류) 원본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국내 임시서버에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한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시설의 운영·관리자
  - (사업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지침 마련 및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접수·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제35조의2제3항)

② 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등 (신설)

-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 및 안전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중 방통위의 운영·관리실태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의 기준과 실태점검 절차를 규정(제9조의13·14)

• (본인확인기관 점검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연계정보 생성·처리 건수가 100건 이상 또는 해당 기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한 자

• (연계정보 이용기관 점검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건 이상 제공받거나 해당 기관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

• (실태점검 절차) 공무원은 실태점검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점검 근거·목적, ▵점검 일시, ▵점검자 인적사항, ▵점검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 연계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 구체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생략 가능

③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신설)

-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하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하면서,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 보관·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 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제9조의12)

④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신설)

-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 시 방통위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제9조의9)

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신설)

- 세부 심사기준을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이용자 권리보호 방안의 적절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제9조의10)

[심사결과]

①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의무

-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안 제35조의2제1항)에 대해, 타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징인 '전송'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의 범위와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안 제35조의2제3항)의 경우, 책임자 관련 규정은 유사 분야와 비교할 때 형평성 등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자' 대신 '담당자'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지침 마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② 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등

- 사전에 점검 계획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권익 또는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정조사 기본법」 등 타법 사례를 고려하여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필요·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③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 연계정보를 생성·처리 후 폐기하는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를 지속 보관하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폐기와 보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계정보 보호조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④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안동의**

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안동의**

타. 산림청

| 장인식 사무관 | Tel. 044-200-242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0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2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8)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7.)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21	신설 16, 강화 5 (비중요 21)

파. 산업통상자원부

| **송경준** 사무관 | Tel. 044-200-2398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등 총 22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3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6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3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2.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0.)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	신설 5 (중요 2, 비중요 3)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0.)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11.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제출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4.11.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11.22.)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19)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4 원안의결 32	신설 29, 강화 7 (중요 4, 비중요 32)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심사내용]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설정 (신설)

-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 대상으로 ① 연간 전력 사용량 20만MWh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대수선하는 소유자 ② 연면적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를 설정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로, ① 400MWh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② 500MWh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중소형 발전설비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열에너지 등

[심사결과]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의 범위를 2가지 안*으로 분석한 바 사업자 부담 완화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1안 선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피규제자인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자와 수혜자인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이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 (1안) 연간 전력 사용량 20만MWh 이상 시설물 소유자, 연면적 100만㎡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 (2안) 연간 전력 사용량 60만MWh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연면적 300만㎡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

[심사내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사업자 규모 설정 (신설)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으로 ① 10MW 이상 전기사용계약 체결 사업자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를 설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심사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을 송전계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0MW 이상 전기사용자로 설정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전력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실제 전기사용 입주자와의 이중 규제가 우려되므로 ①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에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를 삭제하고, ②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점검 등을 위해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심사내용]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

- 산업부장관이 비상동원광산*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운영·관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비상동원광산이 생산·가공하는 핵심자원이 고시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 산업부장관이 더 이상 지정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

* 산업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행정기관의 재량과 관련한 사항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관에 필요 이상의 재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중 '산업부장관이 더 이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별도 규정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무 제한 없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담기관이 지정받은 핵심자원이 고시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산업부장관이 더 이상 지정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

- 산업부장관이 비상동원광산*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운영·관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비상동원광산이 생산·가공하는 핵심자원이 고시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 산업부장관이 더 이상 지정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

  * 산업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심사결과] 법령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그런데 '산업부장관이 더 이상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핵심자원의 생산·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등 산업부장관이 더 이상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하. 우주항공청

| **문지영** 사무관 | Tel. 044-200-2424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우주개발 진흥법 총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9.)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거. 조달청

| 이문희 사무관 | Tel. 044-200-2421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혁신제품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등 총 2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조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혁신제품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안	예비심사 (2024.04.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너. 중소벤처기업부

| 이문희 사무관 | Tel. 044-200-2421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총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4.05.23.)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4.06.21.)	개선권고 3	신설 3 (중요 3)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본심사 (2024.06.21.)	개선권고 2	신설 2 (중요 2)
계		개선권고 5 원안의결 2	신설 5, 강화 2 (중요 6, 비중요 1)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심사내용]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향 (강화)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5%로 0.01%p 상향(단,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0.07% 적용)

[심사결과] 소기업·소상공인 보증공급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인상된 출연요율 수준이 타 보증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며, 중기부·금융위 간 업무 협약을 반영한 것으로써, 규제비용 대비 편익이 크고 이해관계인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신설)

-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중 ①사업개시(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법인은 설립일), ②계속유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업종), ③차별성(인지도, 기술·제품·서비스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독창성, 지식재산권 보유 등에 대하여 중기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점기준으로 평가), ④기여도(관련 법규 준수, 장기고용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기부등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중기부장관이 공고하는 배점기준으로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

[심사결과] 기여도의 요건으로 자발성을 본질로 하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역사회에 기부'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으로 수정하고, 차별성과 기여도에 관한

세부 평가 기준 등을 공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공고'를 '고시'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판단기준 (신설)

-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로 인정되기 위한 동일성 유지기준으로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 승계 후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함

[심사결과] '사업승계 후 10년 이상 유지 기준'은 구체적 사례의 적용 과정에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기준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부분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① 업력요건(15년 또는 30년)에 이미 도달한 사업체 또는 ② 업력요건 도달까지 10년 미만이 남은 사업체를 승계한 경우, 10년 기간 충족시까지 백년소상공인 불인정

[심사내용]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 (신설)

- 소상공인법에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①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이 발생한 경우와 ②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③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중기부장관이 지정취소로 판단한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기준에서 '백년소상공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중기부장관이 지정취소로 판단한 경우'는 내용이 불명확해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 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사내용]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및 지정표시 (신설)

-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사업장·제품·포장·용기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기부장관이 정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세부 사항을 '공고'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공고'를 '고시'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백년소상공인 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신설)

- 중대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1회 위반 시 지정취소하고, 그 외 사유(지정요건 상실, 영업지속 불가, 사회적 물의 등)는 2회 위반 시 지정취소 하도록 규정함

[심사결과]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서 구체적 처분 사유별로 처분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더. 특허청

| **이문희** 사무관 | Tel. 044-200-2421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등 총 4개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 중 4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3.)	개선권고 3	강화 3 (중요 3)
(2) 산업재산 정보의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03.)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상표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4 원안의결 4	신설 5 강화 3 (중요 4, 비중요 4)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심사내용] 조사원·분류원 자격요건 추가 및 교육 강화 (강화)

- 국내상표조사원·분류원의 연수교육 이수 요건을 폐지하고, 상표정보검색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상표조사원은 번역·독해·영작 능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추가하였고, 조사원 등이 받아야 하는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채용 기간이 아니라 경력에 따라 시간을 차등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

조사원 등의 자격요건과 교육의 강화는 전문성 제고 및 조사보고서 품질 편차방지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격요건 관련내용은 피규제자의 선택의 다양성 제약 및 상표검색사의 조사원 자격독점 우려 등 경쟁 제한적 측면이 있어, 조사원 등의 자격취득 의제요건에 '지식재산관련 학사 및 경력 5년 요건'을 추가하고,

제9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제10조(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 별표4(상표검색사 자격), 별표5(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의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필요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매 3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전문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및 역량평가 재실시 사유 추가 (강화)

- 2회 연속 조사보고서 품질이 최하위 또는 2회 연속 하위 20%에 속하는 전문기관과 공정한 사업수행 여부 등이 우려되는 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사업참여 신청 전제조건인 역량평가 실시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되었거나, 역량 평가 응시 이력이 없거나 통과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를 추가 규정함

[심사결과] 상표조사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제고 및 사업참여 제한 사유의 명확화·타당성 확보를 위한 것은 적정하나, 제19조(사업수행 요건), 재20조의2(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의 규정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보완 필요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매 3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신규 조사원의 물량 제한 및 전문기관의 물량 회수 사유 추가 (강화)

- 경력 6개월 미만의 조사원에 대하여 조사 물량을 국내는 1,488건, 국제는 1,248건으로 제한하고,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전문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기타 법령 위반 등을 물량회수 사유로 추가 규정함

[심사결과] 신규 조사원의 물량제한과 전문기관의 물량회수 사유 추가를 통해 상표심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적정성은 인정되나, 물량 회수 관련 일부 규정의 경우 불명확한 해석 우려 및 상표심사 지원사업 운영 방향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요건 규정(신설)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24.2.6.제정, '24.8.7.시행)되어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체계적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시설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

[심사결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인력·시설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력·시설요건으로 단순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산업재산진단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라고 규정한 것은 규제의 명확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러. 해양경찰청

| **최은지** 사무관 | Tel. 044-200-2441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총 3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6.05.)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부대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심사내용] 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기준 (신설)

-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하며, 일부 수역에서만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선박높이에서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뺀 값)를 통신내용 중 하나로 포함해 옴
- 최근 선박이 교량 또는 송전선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상 최고높이를 관제통신해야 하는 수역을 확대하고 그에 맞는 관제통신 신고기준을 마련함

[심사결과] 일부 교량 및 송전선로의 높이가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기준과 동일하거나 근접하며, 교량·송전선로의 높이와 신고기준 사이의 통일된 원칙을 찾기 어려움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가 통신내용을 바탕으로 운항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구역별로 조수간만의 차 등 특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되, 안전에 유념하여 규제를 운영하고 필요시 고시 개정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머. 해양수산부

| **최은지** 사무관 | Tel. 044-200-2441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38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7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4건 중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하였으며, 7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 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2.02.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4.2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7.)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비중요 1, 중요 1)
(1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0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7)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9)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어선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10.1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5	신설 7 (비중요 5, 중요 2)
(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자율운항 선박의 안전 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1.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35)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1 (비중요 1)
(3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17.)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1)
(38)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원안의결 70	신설 64, 강화 10 (중요 4, 비중요 70)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심사결과] ①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개선·보수 명령에 대한 가중 처분으로 양식·가공·출하의 제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명령 간 완결성이 부족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②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와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요건을 상실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로 상호 중복되는 바,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설 이용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취소 대상이 '시설'과 '이용한 행위' 중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조문의 수정·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심사내용]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강화)

-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항만용역업과 검수·감정·검량사업을 통합한 사업으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함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자본금 기준은 항만용역업과 검수·감정·검량사업의 자본금 기준의 단순 합이었으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심사결과] ① 항만용역업과 검수·감정·검량사업의 자본금 기준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자본금 기준 증가액이 5천만 원으로 산정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③ 항만종합서비스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자본금 기준을 추가 상향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을 준비한 피규제자의 신뢰성이 저해되므로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자본금 기준 개정안을 **철회권고**

(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심사내용] 안전관리체계 구축 (신설)

- 선박소유자는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건강담당자를 1명씩 임명하고, 선원 중 안전대표자를 선출하고 선내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자는 일정한 지식을 보유하고 육상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선박의 작업활동 시 안전 감독 및 선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심사결과] ① 안전보건관리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지식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소형선박회사의 경우 해당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식요건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육상조직(선박회사)의 인력으로 통상 선박에 탑승하지 않아 업무 중 '선박의 작업활동 시 안전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선박의 작업활동 절차 마련, 사고예방 지원 등 안전감독'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교육훈련 (신설)

- 선박소유자는 선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대표자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 및 보존해야 함

[심사결과] ① 종이문서의 분실 위험성 및 보관의 불편성 등을 고려할 때, 전자문서로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개선권고** ②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법령으로 제도 운영과정의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3. 행정사회분과위 심사 결과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윤초희** 사무관 | Tel. 044-200-291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총 6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9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1.25.)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1.31.)	개선권고 3	신설 2, 강화 1 (중요 3)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예비심사 (2024.03.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8.09.)	개선권고 4	신설 3, 강화 1 (중요 4)
(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기준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8.2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9 원안의결 2	신설 7, 강화 4 (중요 9, 비중요 2)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심사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신설)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의제기 절차(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을 규정

[심사결과] 평가 대상 중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처리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기준이 모호하여 예측가능성이 낮으므로 평가대상 선정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만14세 미만 아동 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주요 이용 대상자로 하는자'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로 수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최소화

평가계획은 평가일 14일 전까지 수립하고, 평가계획 수립시 지체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해외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보장, 편의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0일로 확대하도록 **개선권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신설)

-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CPO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CPO의 자격요건으로 개인정보 경력 3년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 총합 6년 이상을 요구하고, CPO가 업무계획 등을 연 1회 이상 대표자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CPO 독립성 보장 의무 규정

[심사결과] CPO 선임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CPO의 개인정보보호 경력 등 6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학위와 정보보호·정보기술 학위의 인정 경력을 일치시키고 자격요건에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과 기업 자율성에 대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연 1회 이상 대표자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 체계 구축' 규정을 완화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강화)

-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처리하는 경우 국외이전의 사실 및 해당 국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공개토록 규정

[심사결과]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서비스에 접속한 국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기업 등이 수집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설명 요구 또는 이의제기시 정보처리자의 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면서 세부 범위, 내용, 기준 등을 안내서를 통해 세부 개념과 대상을 구체화

[심사결과] 자동화된 결정 조치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 범위, 내용, 기준 등은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시행령 또는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개인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정보보호, 정보처리자의 전송시스템 설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토록 의무화하고 정보 전송의 안정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개보위가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되, 필요 시 개보위가 별도 규정

[심사결과] 개인정보위가 필요 시 전송방법·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재량 행사가 우려되므로, 필요 시 개보위가 별도로 규정토록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전송방법, 범위(언제 수집정보부터 전송) 등 하위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신속히 구체화한 후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정보수신자에 관한 사항

- 제3자 전송정보의 수신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일반수신자'(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술 기준 충족)로 한정하고, 전문기관은 △중계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 △일반 전문기관으로 분류,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일반 전문기관 겸업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반수신자의 마이데이터 관련 업무범위와 시설·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공기관(중계 전문기관)의 일반 전문기관 겸업 허용은 경쟁제한 및 대규모 정보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며,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요건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강화)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결합전문기관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결합실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정보전송자 범위) 제3자 대상 전송자의 경우 의료(상급종합병원 등), 기간통신, 통신판매·중개(온라인 유통), 부가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세부기준은 고시에 위임), 본인 대상 전송자의 경우 분야의 한정 없이 저장·관리 정보주체 수를 기준으로 제3자 대상 전송자보다 폭넓게 설정(고시로 추가 가능)
- (전송 대상 정보 범위) 제3자 대상 전송 정보 범위의 경우 병원진단·처방·검사결과, 기간통신가입·이용·청구·납부 정보, 유통·부가통신주문·구매·이용·지불 정보 등 포함하도록 하고, 본인 대상 정보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보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송요구가 가능하나, 제3자 이익 침해 및 전송자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정보전송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료(병원) 및 기간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신판매·중개(유통), 부가통신 등 타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범위와 일치시키고, 시행령 상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전송자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여 논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고시하는 자'로 규정하여 전송자를 명확히 확정할 것을 **개선권고** 하고, 고시에 위임한 정보전송자의 세부기준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용가능한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전송 대상 정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업 초기 부담, 민감정보 유출 및 현장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제3자 대상 전송정보의 범위를 일치시키고, 법 시행 이후 시장 수요에 따라 전송정보를 확대할 것을 **개선권고**

(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심사내용]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4.3.15. 시행)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거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 요구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필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 '중대한 영향'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제시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심사결과] 본 고시에 '자동화된 결정' 및 '중대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나. 경찰청

| **권태영** 사무관 | Tel. 044-200-2436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총 13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2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8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하였으며, 2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2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6.19.)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03.)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7)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8.0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11)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0.24.)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0.)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비중요 7)
계		철회권고 1 원안의결 27	신설 20, 강화 8 (중요 4, 비중요 24)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시 의무 등록 대상 (신설)

- 「도로교통법」('24.10.25. 시행) 개정으로 여객·화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설치 의무는 없음) 시·도 경찰청장에 등록* 의무 부여(법 제50조의3 제2항)

  * 등록시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및 정기검사 이행 의무 발생(위반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시·도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는 차량의 범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심사결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개정「도로교통법」제50조의3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와 동일한 부담을 부여함에 따라,
- 자발적 설치자의 부담이 미설치자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장치 설치를 기피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되는 바,
-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상 차량의 확대(어린이통학버스 추가)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자발적 설치 차량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을 해소한 이후에 추진할 것 **철회권고**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자발적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부대권고**
-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중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법령 시행 전 이미 설치한 경우도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화하여 피규제자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부대권고**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 (신설)

- 도로교통법 개정('24.2.13., '24.8.14.시행)으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 경력요건*에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년 이상 근무경력도 확대 인정하며 시행령에 세부 업무 위임

  * (기존) 도로교통 업무 3년 이상(관리직 경력만 해당)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 업무 3년 이상

- 시행령 제68조의2 신설하여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 ▲기능검정 업무로 규정('학과교육' 경력은 제외)

[심사결과] 도로교통법(제108조)상 학감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과 ▲기능검정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사내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 요건 등 (신설)

- (사용요건)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발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 가능(안 제2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고지방법)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안내문구 부착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촬영사실 고지(안 제3조)

- (보관기간) 원칙적으로 30일간 영상·음성 기록을 보관하되, 증거보전 등 필요한 경우 목적 달성시까지 보관 가능(안 제5조)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적법하고 객관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피촬영자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권력의 오·남용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 증거 수집 및 보전을 위한 목적에 한해 사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형태의 고지방법 및 30일의 적정 보관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강화)

- (소음기준) 소음기준을 5데시벨씩 강화하되, 체감 피해가 큰 지역(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은 야간·심야 시간에 한해 10데시벨 강화
- (배경소음) 배경소음이 소음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측정된 배경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등가소음도 기준에서 20데시벨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적용

[심사결과] 동 규제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 자유 간 조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 (소음기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불편이 과도하게 초래되고 있는 점 및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 (배경소음) 배경소음도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합리적 소음기준을 설정하는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다. 고용노동부

| **김성봉** 사무관 | Tel. 044-200-2447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개정안 등 총 5개 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 중 9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3.2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5.6.)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4) 근로기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9	강화 9 (비중요 9)

라. 교육부

| **김수현** 사무관 | Tel. 044-200-2439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4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2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6건 중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부대권고, 2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4.)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2)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3.02.0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2.15.)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4, 강화 1 (중요 1, 비중요 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4.17.)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고등교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4.07.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부대권고 1, 원안의결 24	신설 23, 강화3 (중요 3, 비중요 23)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심사내용]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지역선발 의무 및 舊 자립형 사립고에 자기주도·사회통합 입학전형 도입(신설)

- 지역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선발 특례 자사고에 대해 모집 정원의 20% 이상 지역 학생 선발 의무 신설
- 타 자사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舊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자기주도학습* 전형 및 사회통합 전형** 적용 예외' 특례 폐지

*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내신·면접으로 선발 **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심사결과] 동 규제는 교육선택의 다양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역 내 충원율이 평균 52%인 점, 舊 자립형 사립고 모두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기실시 중인 점 등 대상 학교들의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심사내용]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 의무 (신설)

-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기관 등 관계 시설·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에 협조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평생교육사를 고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인 평생교육기관의 자료제출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사의 방법·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모법 위임일탈 소지가 있으므로 '자료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심사내용] 대학 입시비리 학생정원 감축 처분 기준 (강화)

- 대학 입시 부정·비리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입시비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심사결과]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사회적 특수성 및 입시 주체인 학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입시비리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중대한 입시비리의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정책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제재수단으로서 정원감축의 실효성 및 대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마. 국가보훈부

| 김성봉 사무관 | Tel. 044-200-2447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7	신설 4, 강화 3 (비중요 7)

바. 국가유산청

| **김수현** 사무관 | Tel. 044-200-2439, coors@korea.kr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등 총 8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1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1건은 개선권고, 1건은 철회권고,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0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10.)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2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원안의결 12	신설 13, 강화1 (중요 2, 비중요 12)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신설)

- 지정문화유산 훼손 및 지원예산 부당집행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 신설

[심사결과] 개정안은 가치상실이나 저하에 이르는 문화유산 훼손시 1차 위반의 경우에도 바로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가치상실·저하 정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규제 예측가능성이 낮고, 유사법령에 비해서도 규제수준이 과도하므로 1차 위반의 경우는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사소한 부주의·오류 등은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발굴현장 안전사고 의식 제고를 위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심사결과] 현행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도 1차 위반은 경고에 불과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기준으로 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모범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인명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임일탈의 우려가 있으며, 허가조건인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이미 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벌칙을 각각 부과받게 되어 있는 등 상위법 위임일탈 및 중복규제로 인한 과도한 규제부담 소지가 있어 **철회권고**

사. 국민권익위원회

| **윤초희** 사무관 | Tel. 044-200-291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아. 국방부

| **권태영** 사무관 | Tel. 044-200-2436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9	신설 3, 강화 6 (비중요 9)

자. 기상청

| **노수빈** 사무관 | Tel. 044-200-244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3.10.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차. 문화체육관광부

| **김수현** 사무관 | Tel. 044-200-2439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18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2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1건은 개선권고, 2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4.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7.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1)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9.2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6	신설 25, 강화2 (중요 1, 비중요 26)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심사내용] 웹소설 등 판매촉진비용 전가 금지 (신설)

- 웹툰·웹소설 판매자(플랫폼社)가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CP社)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전가행위 금지 위반 시 문체부가 공정위에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접 부과 가능

[심사결과]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만 있으면 불공정한 비용전가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합의 없이'를 '부당하게'로 수정하는 한편, 개정안 해석상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문체부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중복규제가 우려되는 바, 공정위 조치와 별개로 문체부가 과태료를 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카. 법무부

| **권태영** 사무관 | Tel. 044-200-2436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총 2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3건은 개선권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난민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6.14.)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강화 2 (중요 2)
(2)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7.24.)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	신설 4 (중요 2, 비중요 2)
계		개선권고 3 원안의결 3	신설 4, 강화 2 (중요 4, 비중요 2)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심사내용] 보호기간 상한 설정 및 보호해제시 조건 부과 (신설)

-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정하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등 위반의 죄를 범한 외국인은 최장 36개월 범위에서 보호 가능
- 보호해제 시 ▵주거 제한 ▵정기적 출석·보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 보호기간 상한 설정 관련 △ 불법체류자 증가 상황에서 강제퇴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 보호기간 상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는 불법체류 관리의 중요사항이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정책재량인 점 △ 주요국가의 보호기간 상한 사례 등 고려 시, 일반적인 경우 보호기간 상한 18개월과 국가보안법 등 위반시 36개월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 보호해제 시 조건 부과 관련, '법령에 반하는 활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경미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의 전제가 되는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제46조 제1항*)의 범위에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허위서류 제출한 경우 등

[심사내용]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신설)

-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 등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회피하거나 법령에 반하는 활동 또는 취업을 한 경우 등은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은 재보호된 날부터 기산

[심사결과]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관련 '법령에 반하는 활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경미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보호의 전제가 되는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제46조 제1항)의 범위에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난민법

[심사내용]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제한 (강화)

-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 관련, 판단근거를 명확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 (강화)

-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제한 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유로 난민인정 제한사유(법 제19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사유로 취소·철회가 가능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타. 보건복지부

| **양국현** 사무관 | Tel. 044-200-2399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9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5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8건 중 7건은 개선권고, 2건은 부대권고, 4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3.22.)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2)
(6)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5.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05.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등록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5.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0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8.0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8.2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0)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9.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9.11.)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32)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0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33)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10.18.)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3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10.28.)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1 (중요 2)
(3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2.23.)	개선권고 2	신설 2 (중요 2)
(3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개선권고 7, 부대권고 2, 원안의결 49	신설 42, 강화 16 (중요 11, 비중요 47)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심사내용] 비용의 본인부담 (강화)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비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현행 20~50%)*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

  *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

  **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의 상한으로서,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

[심사결과]

-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 방지 등 건강보험 급여·비용 부담의 형평성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동의**

[심사내용]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시기**에 취득하는 사항 반영

  * ①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또는 ②6개월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주권 취득 △ 비전문취업(E-9) △ 결혼이민 △ 유학·연수)

  ** 피부양자 자격은 ①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민등록일 등(재외국민등록, 국내 거소신고, 외국인등록) 또는 자격 신청일에 취득(현행)하고, ②미충족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취득(개정안)

[심사결과]

- 동 규제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 거주요건 범위 내에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동의**

  * '19.7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등이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자살예방교육 강화 (신설)

- 자살예방교육의 실시 의무기관으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장관·지자체장이 정한 기관·단체를 규정

  *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심사결과]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살예방교육과 자살률 감소 효과 간 연관성이 불명확하므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노력기관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기타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교육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법제처와 협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재검토기한('25.1.1.~'27.12.31.) 내에 자살예방교육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대상·내용·방법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심사내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아동 정원 25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1명 추가 배치(공포 즉시 시행)

[심사결과]

- 현실적으로 채용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정안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개시되는 '25.1.1.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확대 (강화)

- 신축되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 ①설치대상의 추가 및 ②既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면적기준 확대

[심사결과]

- 편의시설 설치에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연장하고, 추가로 건축법상 연면적 2,000m^2 미만인 건축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비응급환자 또는 경증응급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 (강화)

- ▲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권역외상·전문응급·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권역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50~60%에서 90%로 상향 조정

[심사결과]

- 규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운영상황,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여 '25.12.31.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심사내용]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기준 (신설)

- 음압격리병실*의 시설별(음압병실, 전실, 화장실, 급기·배기시설, 차압계·차압표시계) 면적, 위치, 내부장비 설치 및 공간 간 음압차,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 등을 규정

  * 병실의 공기압을 낮춰서 외부 공기는 병실 내부로 유입되고 내부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에 떠다니는 감염원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특수병실

[심사결과]

- 동 규제와 질병청 소관「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간 중복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와 질병청이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24.12.31.까지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사내용]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기준 (신설)

-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유형(법인, 회사 등), 운영기간(1년 이상), 고용(고용노인이 5명 이상), 제한사유(인위적 감원조치, 인력파견 유사업종, 동일·유사한 지원, 부도·화의·법정관리) 미해당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심사결과]

-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신청자들이 지정기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문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 사무실·상담실·교육실 수를 전체 1실 이상에서 각각 1실 이상으로 하고, 연면적은 100㎡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하며, 상근직원 수는 4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함

[심사결과]

-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 및 인력배치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인력배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사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취소 및 사용제한 기준 (신설)

-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에게 폭행·상해·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발달재활,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9개 서비스

[심사결과]

- 이용권의 제한대상이 되는 금지행위 중 '이용자가 폭행·상해·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고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사자 간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재처분 대상 여부 판단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성희롱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원회의 운영을 권고하거나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신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종사자(제공인력)가 이용자에게 폭행·상해·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지

[심사결과]

- 위반행위의 유형(폭행 등) 및 사법적 판단(유죄판결 등)과 연계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은 경우 12개월 자격정지 처분' 항목을 △'폭행·상해·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는 12개월(유죄판결 받은 경우) 및 9개월(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 받은 경우) 자격정지로 구분하고,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는 6개월 자격정지로 분리할 것을 **개선권고**
- 성희롱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원회의 운영을 권고하거나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권고**

파. 소방청

| 조대웅 사무관 | Tel. 044-200-2445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총 55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5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9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7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4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소방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1.1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2.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소방장비에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3.28.)	철회권고 1	강화 1 (중요 1)
(18)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4.1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2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5.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5.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0.)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5.1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31)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9.)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33)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6.13.)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4.07.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9)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10.)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40)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7.24.)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4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8.09.)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45)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8)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9.2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50)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5)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철회권고 2, 개선권고 7, 부대권고 2, 원안의결 48	신설 19, 강화 40 (중요 11, 비중요 48)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심사내용]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성질상 분리 도급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공사의 범위 신설 (신설)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범위를 문화재 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 부지면적 10,000㎡ 이상인 재개발 공사, 부지면적 10,000㎡ 이상이며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재건축 공사로 규정

[심사결과] 재개발·재건축 공사는 분리도급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사 시행 주체 및 규모와 관련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것을 **개선권고**

- 변화하는 기술 상황 및 업계 환경 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3년)할 것을 **개선권고**

- 다양한 공사 기술·유형에 대해 전문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공신력 있는 심의기구·절차를 거쳐 분리도급 예외 허용여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것과 이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부대권고**

(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심사내용]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감지기의 난연성능 조건 추가, 무선통신 점검주기 단축, 주위온도·시험·반복시험 등 각종 시험요건 신설 및 강화

[심사결과] 비화재보 방지효과를 위해 도입된 다중센서형 감지기는 비화재보 방지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현행 규정(제4조 제2항)에 다신호식 감지기 정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중센서형 감지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 다만, 다중센서형 감지기를 신설하려던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다신호식 감지기 조항을 수정할 것을 **부대권고**
- 습도시험을 비롯한 내습성 관련 조항은 현행기준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해외기준(UL 268)과 비교하여 시험기준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내습성시험 항목을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는 자체규제위 의견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은 것은 **원안동의**

(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심사내용]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피난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 상향, 미끄럼시험·토크시험 등 각종 시험규정 신설 및 사용자편의 증진을 위해 사다리 구조와 관련된 조항 추가

[심사결과] 피난사다리에 완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제6조 제4호)은 완강장치가 없을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 완강장치는 업계·소비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완강장치를 제작·활용하고 있어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완강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항(제6조 제4호)은 현행 규정대로 존치시킬 것을 **개선권고**

(라)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심사내용]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 소방용 수격흡수기의 구조 및 재료, 내압·본체강도·수격압흡수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기준 등을 신설함

[심사결과] 수격흡수기는 현재 다양한 건물의 배관에서 기사용중으로, 소방용 수격흡수기에 요구되는 성능은 일반 수격흡수기에 요구되는 성능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 고시 제정안을 **철회권고**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규정 (신설 1, 강화 1)

- (시행령 제15조)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대상은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규정
-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검검 이행실태 평가방법은 ▲최초평가: 예방규정 제출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시 ▲정기평가: 직전 평가한 날부터 4년 이내 실시 ▲특별평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예방규정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나 「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항목과 중복될 경우, 평가를 면제함

[심사결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 화재발생·피해 관련 통계·연구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곳을 선별하여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대상 범위를 지정할 것을 **개선권고**
- 재검토형 일몰(5년)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추후 규제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
- 유사 법령간 중복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피규제 집단을 조속하게 파악할 것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예방규정 수립 단계부터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을 **부대권고**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 기업의 자율평가를 활성화할 것과, 정부 주도의 평가는 화재 고위험군에 한하여 수행할 것을 **개선권고**
- 재검토형 일몰(5년)을 설정 할 것을 **개선권고**, 중복되는 점검·평가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킬 방안을 검토할 것과, 평가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도를 높일 것을 **부대권고**

-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원안동의**
- 특별평가의 사유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바)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심사내용]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을 규정, 밸브대강도·염수분무·도막두께시험 등 신설 및 내압력·부품 재료 기준 강화

[심사결과] 소화전의 내부부품이 KS 인증 부품인 경우, 내부 업무 세칙에 근거하여 시험을 생략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KS 인증 부품은, 해당 KS 기준이 기술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부대권고**

(사)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심사내용]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유수제어밸브의 최고사용압력을 규정,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점착·반복·노화·내압시험 등 각종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심사결과] 개정안은 국내기준임에도 ANSI, JIS 등 해외 규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소방청은 정유소, 공장 등 거대 플랜트 설비에 KS 규격이 아닌 ANSI, JIS 규격을 사용 중이므로 호환성 확보를 위해, ANSI, JIS 규격을 명시하였다는 입장으로

- 부품 호환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처럼 국내 기준(KS) 외에 ANSI, JIS 등 해외 규격을 포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신력 있는 해외규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3호의 '적합한 공인규격'에 해외 특정 규격을 명시하거나 KS 등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되, 적정 수준으로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것을 **개선권고**

(아)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심사내용]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정수압·주위온도시험·반사판강도·진동시험 등 기존 시험 항목 기준을 강화하고, 응력부식균열·상승률·최소작동압력·실화재시험 등 신규 시험 기준을 도입

[심사결과] 섭씨 30℃부터 분당 2℃씩 상승시키는 상승률 시험은 실제 화재 시 급격한 온도 상승률과 상이하므로 스프링클러헤드 작동 신뢰성 검증에 적합한 시험으로 볼 수 없고, 해외기준(UL, FM 등)에서도 상승률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 상승률 시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 제13조의3 상승률 시험 신설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자)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심사내용]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

-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댐퍼에 점검구 설치 의무화, 예상제연구역 인근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강화, 건물 완공 후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기준 및 절차 신설

[심사결과] 댐퍼 점검구를 신설하는 목적은 댐퍼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전제로 댐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댐퍼의 내열성, 밀폐성, 내구성 등 댐퍼 자체의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차)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심사내용]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최대배관길이시험 도입, 최대수직높이 실증시험의 시험방식 변경, 방출시험 모델기준 및 설계사항을 검증하는 시험 횟수 강화

[심사결과] 최대배관길이시험은 시험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시험을 위한 규제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짧은 배관(~5m)을 활용한 최대수직 상승높이시험방식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 최대배관길이시험은 신뢰성 있는 해외사례(NFPA, UL등)의 배관체적비 기준을 도입할 것과, 제조업체가 제시한 높이만큼 실제 배관을 제작하여 최대수직 상승높이시험을 실시할 것을 **개선권고**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중진 주무관 | Tel. 044-200-2442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29개의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4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5)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9)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 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원안의결 45	신설 27, 강화 18 (비중요 45)

거. 여성가족부

| **노수빈** 사무관 | Tel. 044-200-244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 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4.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너. 원자력안전위원회

| **김성봉** 사무관 | Tel. 044-200-2447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원자력안전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6.21.)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1 (비중요 3)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8.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원안의결 4	강화 2, 신설 2 (비중요 4)

더. 재외동포청

| 안중진 주무관 | Tel. 044-200-2442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02.2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 3, 강화 1 (중요 1, 비중요 3)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위반사항 시정기간 및 가중처분 관련 규정 신설 (강화)

- 해외이주알선업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기간 및 누적 차수 적용 기준* 마련

* ① 해외이주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 2개월 내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여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으로 간주 ②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누적 차수를 산정할 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처분은 제외

[심사결과] ① 해외이주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기간 부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경고'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재량권 행사로 시정기간이 과소하게 부여되지 않도록 '2개월 내'를 '2개월'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② 누적 차수 적용 기간(2년)을 1년으로 완화하여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개선권고**

러. 질병관리청

| **양국현** 사무관 | Tel. 044-200-2399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 총 4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2.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분과위심사 (2024.10.18.)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	신설 5 (중요 1, 비중요 4)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사내용] 중앙손상관리센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 (신설)

- 손상관리 관련 사업 미수행,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미달, 지도·감독 미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 가능

  *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injury) 관리를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손상관리에 관한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심사결과]

- 모법에 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에 관한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위탁 취소 규정(안 제5조, 제8조)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모법에 위임근거를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머. 통일부

| **권태영** 사무관 | Tel. 044-200-2436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개선권고 의결하였음

|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6.19.)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계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 (신설)

-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②지역적응센터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그 밖에 지역적응센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

[심사결과] '그 밖에 지역적응센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의미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버. 행정안전부

| **김성봉** 사무관 | Tel. 044-200-2447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2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1건에 대해 개선권고 하였으며, 2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4.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2024.6.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4.6.21.)	원안의결 7	강화 6, 신설1 (비중요 7)
(7)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심사 (2024.7.11.)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9.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1.)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25.)	원안의결 4	강화 2, 신설 2 (비중요 4)
(13)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6	강화 15, 신설 12 (중요 1, 비중요 26)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교육이수 의무 신설** (신설)

-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 모든 관리책임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 시행 전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시행규칙 시행 전 이미 지정되어 있는 관리책임자들에게는 시행일로부터의 별도 기한(부칙으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을 부여하도록 **개선권고**

서. 환경부

| **노수빈** 사무관 | Tel. 044-200-2443

1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개요

- 2024년도에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27개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대해 4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0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3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1.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2.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3.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12.)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4.29.)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7)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6.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7.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08.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예비심사 (2024.08.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09.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4.09.3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9)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분과위심사 (2024.10.1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0)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4.10.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4.10.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4.11.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과위심사 (2024.12.13.)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2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4.12.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개선권고 2 원안의결 38	신설 27, 강화 13 (중요 2, 비중요 38)

2 주요 신설·강화 규제 세부 심사 내용

(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심사내용]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설)

-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을 신설하고,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면서 특히, 지정기준 중 인력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5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 전담 인력의 경우, 품질인증 전반의 행정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 지식·경력 등을 갖춘 2명 이상의 인력요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경우, 고시에 규정된 인증대상 품목이 '투수성 포장재' 하나인 점, 지정기준은 최소한의 필요 인력 규모를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상근심사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3명 이상의 상근심사 전문인력 확보'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나) 지하수법 시행규칙

[심사내용] 유출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신설)

-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의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하는 조치명령의 세부 내용으로 '관측정 설치, 수량·수질 모니터링, 이용시설 점검 및 문제 개선,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조치명령 미이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형벌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 제15조의2제1항 제3호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행정청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2 규제영향분석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1. 제도 개요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역할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생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2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

3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 강화

4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2. 작성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순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세부항목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유형,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감축제, 규제정비계획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규제의 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경쟁제한·기술·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비용·편익분석
Ⅲ.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규제의 집행 가능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경과, 향후 평가계획, 규제정비계획, 종합결론

3. 작성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및 유형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분석서 작성유형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작성유형	기 준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 명 이상 등) • 명백하게 진입 또는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다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규제 • 규제 수준 및 정도가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 기타 비용분석이 필요한 규제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 • 기타 표준형을 제외한 규제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서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다만,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강화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3),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차등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19년 7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법 제5조의2).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아울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성 등 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또한, 자체심사를 할 경우 반드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및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심의

4 예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예비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개 요건에 해당될 경우(령 제8조의2)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 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평가의뢰(국무조정실→작업단), ②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③검토의견 제출(작업단→국무조정실), ④규제심사(국무조정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21.8.11.)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부):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2024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610개 법령, 1,055건 규제사무의 신설·강화규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총 18개 법령 22건의 규제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6 2024년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중 ①부실감리에 대한 제한 강화 ②부실설계에 대한 제한 근거 규정 신설	①국가계약법령 기준 대비 과도, 감리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②기준이 모호하고 부실의 규모 및 경중에 관계없이 제한하여 설계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 ①감리자의 제한기간을 현행유지 / 또는 세분화 ②보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2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시설요건으로 사무실 보유 의무 규정	사무실 마련 비용 및 임대료 등 공급자의 진입비용을 높임으로써 공급자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 ➜ 사무실 보유 요건을 삭제할 필요
3	국토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버티포트(vertiport) 개발사업 허가기준으로 법인(자본금) 10억 원, 개인(자산) 20억 원 이상의 재무능력 요건을 규정	재무능력 요건은 합리적 이유없이 높이 설정되어 잠재적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등 경쟁제한성 존재 ➜ 버티포트 등급별로 허가기준 차등 적용 / 또는 재무능력 기준을 토목건축업 수준으로 하향 조정
4	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급지별로 각각 5천만 원 상향	합리적 이유 없이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건을 벗어나는 것. 기존 중·소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 현행 자본금 등록기준을 유지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5	해수부	어선법	어선건조업(설계·정비·개조·수리를 포함)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기술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등록제 도입	어선설계는 부실한 어선 건조·정비 현장을 관리하려는 규제목적 고려시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낮음.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 설계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 등록대상에서 어선의 설계만을 하는 사업자 제외
6	과기부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용역업자의 자격을 '정보통신기술사'로 한정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공급자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경쟁능력의 차별을 유발할 우려 ➜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하는 '특급기술자'로 확대하여 적용
7	문체부	국악진흥법 시행령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으로, 대학·공공기관 외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32조)상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국가지원을 받는 대상사업자의 형태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국악관련 서비스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공급자 간의 경쟁능력 차별을 야기하여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 ➜ 대상 사업자 지정요건 확대
8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가 유사·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가격규제,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하고 경쟁유인을 감소 ➜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불가피하게 도입시 담합을 유발하지 않을 방안 설정 등
9	농림부	농촌지역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대상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지정 대상사업자의 형태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관련 시장의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를 제한할 우려 ➜ 대상 사업자 지정요건 확대
10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권의 평균가격이 최근 2개년도 평균가격의 70%이하가 된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변경	시장안정화 조치는 직접적인 가격통제 규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조항 및 구체적 기간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 ➜ 안정화 조치 개시기준에 대한 재검토 조항 마련
11	산업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규정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및 교육서비스의 다양성 및 품질향상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성 존재 ➜자본금 보유 요건을 삭제 / 또는 자본금 규모를 하향 조정

다. 중소기업영향평가

1 개념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화를 검토하고 차등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법 제8조의2. 2018.4.17.개정 2018.10.17. 시행).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24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검토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은 618개 법령의 신설·강화 규제안을 검토하여 39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6 2024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차주 귀책 사유로 인해 정산이 필요한 정당한 금전 요구(공과금, 지입료 등)는 제외하도록 예외사항 및 유예기간 마련
2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스피스 병상 등 관련 자료 제출	'자료제출 협조 의무'는 상위법 위임일탈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 삭제 후 필요시 법률에 반영할 필요
3	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강화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증이 필요할(부정신고 의혹 등) 경우에만 판매원별 산정자료 요청
4	농림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수입원료 사후관리 기준 강화	문제가 된 성분을 검사대상으로 추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실효성 재검토, 유예기간 부여 방안 등 검토
5	산업부	산업기계용 재제조 베인펌프 품질인증기준	산업기계용 재제조 베인펌프 품질인증기준	소음인증기준의 도입 여부 또는 현재 75dB(A)로 설정되어 있는 소음인증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 필요
6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가맹점의 준수사항	유통업체 및 플랫폼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등록할 수 있는 준비기간 부여 필요
7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연도중 시행으로 지자체별 '25년도 오염도검사 수행시기에 따라 상이한 기준 적용, 영업 사정상 강화된 기준 대응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시행시기를 '26년 1월로 연장 검토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8	기상청	기후변화감시 예측법 시행령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기준 규정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기상 분야 기술자격증을 갖춘 사람도 인력기준으로 추가 검토 필요
9	해수부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시행령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설명회 및 주민 등의 의견 재청취	시행령 제12조 제4호 삭제 또는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화 필요

라. 기술영향평가

1 개념

기술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표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특히, 과도한 시험·검사·인증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유사한 시험검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험·검사 해야 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추진경과

'12.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도록「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실 훈령 제696호)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에 신설하였다('12.12월).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설정을 위해 '14.1월 '기술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15.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신설·강화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기술규제 기업애로개선지원단(舊,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간 약 16여 건의 개선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기술규제 합리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3.7월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시 기술영향평가 사항을 검토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였다.

3 대상

기술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은 118개 법령, 150개 규제사무를 검토하여 총 103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5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환경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재활용사업자의 투입원료 및 시설기준	**(정책목적실현을 위한 기준명확화)** 알칼리 제거 헹굼 설비에 관한 기준 중 「잔류 알칼리 pH 0.7±0.03」의 목적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목표값 설정 필요
2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멘트제조업 최대배출기준 신설	**(정책목적실현을 위한 기준명확화)** 염화수소, 납화합물, 벤젠, 페놀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명확화
3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추가(의류관리기)	**(국가표준 일치화)** 관련 KS에서는 탈취 성능 시험의 절차에서 테들러백을 항온챔버에서 꺼내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어 시험절차가 불명확
4	산림청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평가의 세부기준 추가	**(데이터 명확성 확보)** 개정안 마련 시 2,877건의 농도 측정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평가점수별 농도 범위 설정에 활용하였으나 실제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5	국가유산청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통재료 인증심사 대상 및 심사 기준 등	**(기업부담 완화)** 전통재료 인증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경우 상위법에 인증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6	농촌진흥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등록신청서류 검토 기준 등	**(국제수준 부합화)** 꿀벌 유충 급성독성시험 또는 만성독성시험 면제요건에 관하여 EPA에서는 꿀벌 섭식독성 100㎍/bee 초과의 경우 무독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 필요여부 검토
7	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내압용기의 시험방법 및 절차 변경	**(안전성 확보)** 자동차용 내압용기는 차량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내압용기와 달리 설계검사 시 화염시험을 적용하고 있음. 밸브 또는 안전장치 변경에 대한 변경설계검사 시 화염시험이 필요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단축	**(합리적 근거 확보)**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는 대상 항공기로 기령 40년이 경과한 헬리콥터를 규정한 것의 근거 부족
9	국토교통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 효율등급 신고·표시의무 신설	**(피규제자 대응시간 부여)** '23년 6월 1일부터 시행,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완료된 차량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추가 대응시간(6개월)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10	국토교통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고시	모의비행훈련장치 인증성능 기준 강화	**(국제수준 부합화)** 다수의 모의훈련장치가 FAA 규정을 따르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일부 최신 FAA 규정과 상이한 부분 수정 필요

2024
규제개혁백서

04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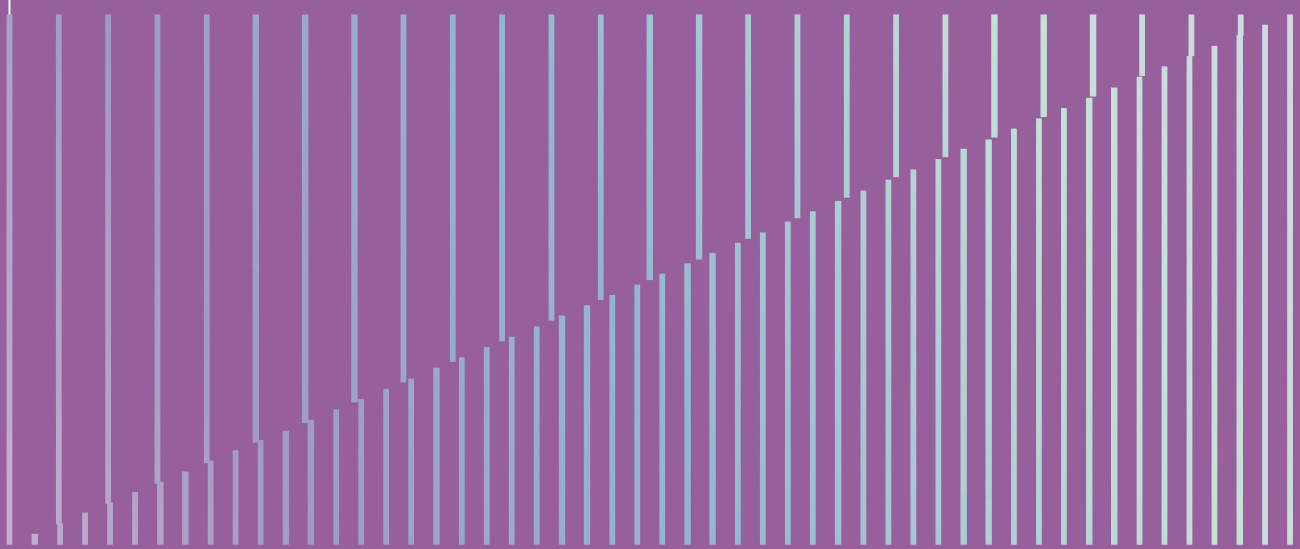

1. 행정규제기본법
2. 규제등록제도
3. 일몰규제 정비
4. 규제비용감축제

04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1 행정규제기본법

| 이현정 사무관 | Tel. 044-200-2429

1. 입법연혁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 공포되고 1998년 3월 1일에 최초 시행되었다. 같은 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심사 도입, 기존규제 정비 등 현재의 규제 시스템 체계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8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근거 마련('13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형평 근거 마련('18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19년), 규제샌드박스 절차 통일 및 재검토결과보고서 작성·보존('23년) 등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 하는 등 규제혁신을 뒷받침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연혁 |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내용
1997.8.22. (1998.3.1.)	△행정규제 등록 및 대국민 공표, △규제영향분석제도, △기존규제 정비, △신설·강화시 규제일몰제 △규개위 설치 등
2005.12.29. (2006.6.30.)	△규제사무목록 국회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존속기한 도래시 국회 제출, △규개위 위원 증원(20명 → 25명)
2010.1.25. (2010.1.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3.7.16. (2013.8.17)	△재검토형 일몰제 근거 마련
2015.5.18. (2015.5.18.)	△규제영향분석시 중소기업 영향 고려
2017.11.28. (2018.3.1.)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2018.4.17. (2018.10.18.)	△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차등적용, △규제정비 요청 처리절차(규제개혁신문고), △연관규제 개선, △규개위 회의록 공개
2019.4.16. (2019.7.17.)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도입 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우선 고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2023.7.11. (2024.1.12.)	△재검토기한 미설정사유 소명 의무화, △재검토결과보고서 작성·보존·공개,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식 통일, △규개위 개의요건 신설 등

2. 시행령 개정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2024년 총 두 차례 개정되었다.

첫 번째 개정(2024.1.9. 공포, 2024.1.12.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둘째, 규제의 재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다.

셋째,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관계법률을 명시하고, 규제특례위원회 상정 기한, 재심의 절차 및 기간, 규제 특례 변경 신청 절차 및 기간 등을 명시하였다.

넷째,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승진임용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두 번째 개정(2024.12.10. 공포·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 운영에 필요한 표준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규제 특례 관련 기관의 장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신 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신 설〉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산업융합 촉진법」 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신 설〉	제13조의3(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 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의6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요청한 날부터 위원회가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13조의4(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정비 계획 5.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이 없더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 경우에는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규제의 면제일 또는 완화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신 설〉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규제등록제도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1. 개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행정규칙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규제사무 목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대상 및 단위

규제등록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규제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이다.

|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등록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제도 개편 이전까지 정부는 규제등록 시 '규제사무'를 하나의 등록 단위로 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를 한 건의 등록규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규제사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조(條)를 묶어서 하나의 '규제사무'로 정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사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처별 규제 수 및 총 규제 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주관적인 '규제사무'가 실제로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체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규제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등록 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등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규제등록 시스템으로 전송받고, 각 부처 규제 담당자들이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등록된 규제조문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부처별 소관법률과 연계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규제조문을 규제등록카드와 함께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일몰규제 정비

| 윤초희 사무관 | Tel. 044-200-2913

1. 규제의 재검토 개요

1 개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유형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형은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해당 법령 등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

4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통상 3년)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5 적용원칙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 목적이 한시적이거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재검토기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2024년 심사 결과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총 32개 부처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40건에 대해 규제존속 및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성을 심사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경제단체 대상 의견수렴을 지난해 20일보다 확대하여 40일간('24.3.7.~'24.4.16.) 진행하였고, 민간전문가 TF 확충(26→40명)과 과학기술·건축 등 전문분야 위원 비중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740건의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심사 결과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3. 주요 정비 사례

(가)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기준 완화

개선내용 **(기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기준* 충족이 필요하나, 그간 지정 기업 없음

* 연간 총 매출액 5억 원 이상이고,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변경)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업 지원사항 확대

* 총 매출액 기준 삭제 및 매출액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구체화, 매출기준과 별도로 연구개발 비중도 인정

기대효과 로봇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기술혁신 촉진

(나)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완화

개선내용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에 손 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함

(변경) 입원실 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 손 씻기 시설이 있다면, 입원실 내 별도의 손 씻기 시설 설치 의무 배제

기대효과 정신의료기관의 경영부담 경감

(다)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구비 기준 완화

개선내용 **(기존)** 대학도서관 시설(재학생 1인당 1.2m^2 이상) 및 자료(기본도서 수, 연간 증가 책 수) 기준* 규정

* 전문대: 학생당 30권(연간 1권 이상 증가), 이외: 70권 이상(연간 2권 증가) 등

(변경)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폐지하되, 다만 폐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방식의 정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을 부대 권고

기대효과 학술 정보 디지털화에 대한 대학의 대응성 제고

(라) 대학도서관 사서 등의 교육 부담 완화

개선내용 **(기존)** 대학도서관 사서 및 직원은 매년 27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면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 직원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바다해설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변경) 대학도서관 사서 등 교육의무 폐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교육 부담 완화(교육시간 또는 주기 조정) 및 바다해설사 자격취득 교육시간 축소(100 → 80시간)

기대효과 대학도서관 사서 등의 교육부담 완화

(마)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완화

개선내용 **(기존)**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재 사용중인 로마자 표기가 동일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라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변경) 변경 제한 기준이 되는 요건(동일 성명인의 1% 이상 사용 등)을 완화하고, 로마자 표기 변경이 제한되는 예시 목록 현행화

기대효과 국민의 여권 로마자성명에 대한 변경 제한을 완화하여 선택권 확대

(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명확화

개선내용 **(기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규정

(변경) 최근 경영환경 변화(EU 공급망 실사지침, 납품단가연동제 등)를 반영하여 ▲ESG 관계법령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동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추가

* (현행)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수급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시 정보를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포함

기대효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사) 가정폭력상담소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각종 서류 보관의무 완화

개선내용 **(기존)** 청소년복지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는 소속 직원과 입소자 인적사항, 상담일지 등 각종 장부 또는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

(변경) 사회서비스기관 등이 보관 또는 비치해야 하는 각종 장부·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기대효과 가정폭력상담소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행정부담 완화

(아) 학점은행제 학력인정기준 완화

개선내용 **(기존)**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졸업학점 기준(대학 140, 2년제 80, 3년제 120점) 규정

(변경) 일반대학의 졸업학점이 130학점 내외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점은행제 졸업학점 기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기대효과 일반대학의 졸업학점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 반영 및 학습자의 학점이수 부담 완화

(자)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공표요건 완화

개선내용 **(기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때 신문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규정

(변경) 인터넷 매체가 주류를 이루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

기대효과 인터넷 매체가 주류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 선택권 보장 및 민간 자율성 확대 기대

(차) 유통표준 전자문서 보관의무 관련 정의 규정 마련

개선내용 **(기존)**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3년간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 미흡

(변경)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표준전자문서'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기대효과 유통부문 전자문서 표준화 및 보관을 통한 유통데이터 활용 및 보안 강화 등 규제의 실효성 제고

4. 사후규제영향분석

한편 24년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등 14건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후규제영향분석이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객관적·과학적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다. 규제 전문 연구기관인 규제연구센터(KDI,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비용편익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시 규제연구센터의 사후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5.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약 1,600여 건의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타당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폐지·완화 등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4 규제비용감축제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1.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감축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비용감축제의 전신인 규제비용관리제는 2년 간('14년 7월~'16년 6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총리 훈령 제정(「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16년 7월)을 통해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다. 2018년 1월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종합평가 연구용역('17년 9월~12월) 결과에 따라 법제화는 곤란하지만 훈령·지침 등의 제도개선·보완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22년 7월에는 규제비용감축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4개 부처로 대상기관을 조정하고, 규제비용관리제에서 감축제로 전환하였다. 전부처 기준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규제비용 200%(One-In, Two-Out) 감축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비용감축제에서는 이전과 달리 전부처 규제비용 200% 감축을 위한 부처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부처별 감축 성과에 따른 환류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해외 사례 |

- (호주) 새롭게 발생되는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규제완화 혹은 규제품질 개선을 통해 규제비용을 상쇄하도록 권고하는 규제상쇄원칙(Offset rule) 운영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Two for One Rule"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17.1월)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1.1월)

나. 운영절차

1 적용대상

규제비용감축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는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 제외 요건 |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2 운영절차

규제비용감축제는 기존의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감축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한 비용적립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규제비용감축제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과 비용분석위원회 자문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연간균등순비용 100억 원 이상인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후 비용분석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비용감축제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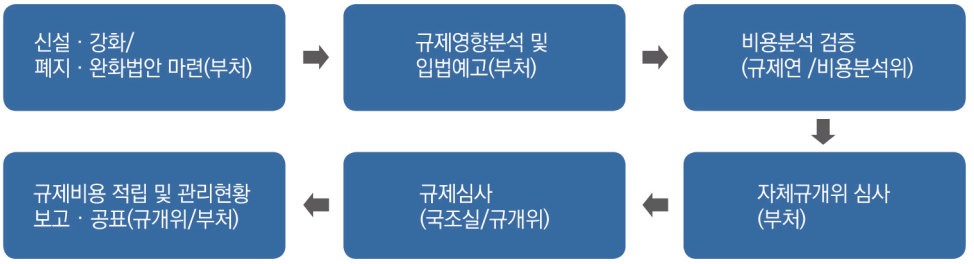

※ 반기별로 부처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규개위 보고·공표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3 운영관련 조직

(가)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규제비용감축제(舊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각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비용분석업무는 KDI의 경우는 분석평가팀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비용분석평가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나) 비용분석위원회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인(규제심사관리관)과 규제연구센터장 2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가. 규제비용감축제 운영실적

2024년 24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9,594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 동 기간 중 신설·강화(Cost-In) 규제로 인해 총 865억 원의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폐지·완화(Cost-Out) 규제로 총 1조 459억 원의 규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4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3개, 순비용 증감이 없는 기관이 6개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별로는 산업부(-5,867억 원), 농림축산식품부(-1,842억 원), 해양수산부(-558억 원) 등으로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금융위원회(174억 원), 복지부(66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12억 원)은 규제순비용이 증가하였다.

| 2024년 규제비용감축제 기관별 운영현황 |

(단위: 백만 원 / '24년 규제순비용 순)

기관명		Cost-In 금액 (A)	Cost-Out 금액 (B)	규제순비용 (A-B)	감축률
총 계		**86,474.34**	**-1,045,916.07**	**-959,441.73**	**1,209.5%**
1	산업통상자원부	39,054.46	-625,714.52	-586,660.06	1,602.2%
2	농림축산식품부	5,538.65	-189,706.01	-184,167.36	3,425.1%
3	해양수산부	3,239.10	-59,050.61	-55,811.51	1,823.1%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52,757.19	-52,757.19	순감
5	산림청	255.85	-22,666.91	-22,411.06	8,859.5%
6	국토교통부	7,821.72	-29,330.41	-21,508.69	375.0%
7	환경부	796.83	-21,614.37	-20,817.54	2,712.5%
8	문화체육관광부	-	-14,858.30	-14,858.30	순감
9	고용노동부	-	-13,102.74	-13,102.74	순감
10	공정거래위원회	144.55	-8,004.80	-7,860.25	5,537.7%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02.31	-5,036.15	-2,033.84	167.7%
12	방송통신위원회	-	-1,664.66	-1,664.66	순감
13	중소벤처기업부	-	-864.38	-864.38	순감
14	질병관리청	-	-68.01	-68.01	순감
15	특허청	-	-12.59	-12.59	순감

기관명		Cost-In 금액 (A)	Cost-Out 금액 (B)	규제순비용 (A-B)	감축률
총 계		86,474.34	-1,045,916.07	-959,441.73	1,209.5%
16	행정안전부	-	-	-	-
17	관세청	-	-	-	-
18	기획재정부	-	-	-	-
19	국가유산청	-	-	-	-
20	교육부	-	-	-	-
21	여성가족부	-	-	-	-
22	식품의약품안전처	1,249.08	-92.94	1,156.14	7.4%
23	보건복지부	7,980.81	-1,371.48	6,609.33	17.2%
24	금융위원회	17,390.98	-	17,390.98	0%

나. 주요 사례

1 Cost-Out 주요 사례

참고 Cost-Out 규제

❶ **전력기금 부담금 완화**(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존 ▸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

개정 ▸ 부담금 요율을 전기요금의 3.7% → 3.2% → 2.7%로 인하

효과 ▸ 전기 사용에 대한 부담금 감소로 **연간 약 6,196억 원 절감**
➜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소상공인 등의 전력기금 부담금 절감

❷ **양식면허 어장청소 주기 완화**(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령)

기존 ▸ 양식품종, 양식환경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어장청소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

개정 ▸ 양식품종 및 양식환경에 따라 어장청소 주기를 3~5년으로 완화

효과 ▸ 어장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연간 약 590억 원 절감**
➜ 양식업 사업자의 어장청소에 따른 부담 감축

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손해배상보장 범위 합리적 조정(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기존 ▸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규정

개정 ▸ 의무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면서, 가입대상자 범위 대폭 완화
* 매출액: 5천만 원 → 10억 원 / 정보주체수: 1천 명 → 정보주체수 1만 명

효과 ▸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의 보험 가입 비용 감소로 **연간 약 528억 원 절감**
➜ 개인정보를 보유한 민간기업의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 감축

❹ 산지 전용 재해위험성 검토 관련 이중규제 개선(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기존 ▸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와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자연재해대책법)를 이중으로 제출

개정 ▸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만 제출토록 허용

효과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비용 **연간 약 115억 원 절감**
➜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 신청인의 비용 부담 경감

❺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기존 ▸ 발전된 센서를 부착하여 안전성이 더 올라간 자율주행차임에도 불구하고 센서 변경으로 '동일 자율차' 판정을 받지 못해 임시운행 전 의무사항 발생

개정 ▸ 허가요건 유사 차량은 신속한 운행허가 취득이 가능토록 동일 자율차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旣 허가실적 등 요건 충족 시 시험운행 면제 등 신속허가제 도입

효과 ▸ 시험횟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요비용 절감으로 **연간 약 62억 원 절감**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계 애로사항 해소 및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

❻ 집단에너지설비 정기검사제도 개선(산업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존 ▸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배열회수 보일러를 보유한 사업자의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1년마다 검사 의무 부과(검사 시 보일러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

개정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효과 ▸ 검사비용 경감, 발전손실량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연간 약 58억 원 절감**
➜ 정기 검사로 인한 사업자의 **보일러 가동 중단** 등 **부담 경감**

2 Cost-In 주요 사례

참고 Cost-In 규제

❶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설정(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개 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자'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자의 범위를 전력 예상 사용량 또는 개발사업 연면적의 일정 기준으로 규정*

효 과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비, 운영비 등 **연간 약 208억 원 발생**

❷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구체화(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기 존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보험 가입을 위한 세부 규정 부재

개 정 ▸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 등의 보험 가입 시기, 배상한도액 등 구체적 사항 규정

효 과 ▸ 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비용 **연간 약 54억 원 발생**

❸ 자살예방교육 강화(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기 존 ▸ 자살예방법상 의무교육 기관인 국가기관, 지자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교에 대해서만 교육 의무 부과

개 정 ▸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기타 복지부장관 등이 정한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年 1회 이상 교육 실시

효 과 ▸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근로자의 교육 참여 기회비용 **연간 약 45억 원 발생**

❹ 상임감사 의무 선임 대상 지역 농축협 확대(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기 존 ▸ 최근 결산보고서상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에 대해 상임감사 1명 선임 의무

개 정 ▸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조 원 → 8천억 원 이상으로 강화

효 과 ▸ 상임감사 선임에 따른 인건비 발생 등으로 **연간 약 42억 원 발생**

❺ 집적정보 통신시설(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과기부,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기존 ▸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의 재난 관리 강화를 명확한 의무 규정 부재

개정 ▸ 집적정보 통신시설에 대해 ▲전력공급의 연속성 강화 ▲예비전력설비(UPS, 배터리, 비상발전기) 안전관리 강화 ▲재난(지진, 수해, 화재) 보호조치 강화 등 유형별 의무사항 부과

효과 ▸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의 기축시설 및 신축예정시설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추가 설비 구축 비용, 운용 비용 등 **연간 약 30억 원 발생**

❻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확대(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기존 ▸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면적(100㎡ 등) 이상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개정 ▸ 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면적에 관계 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대상 시설 종류를 확대

효과 ▸ 시설별 편의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연간 약 20억 원 발생**

05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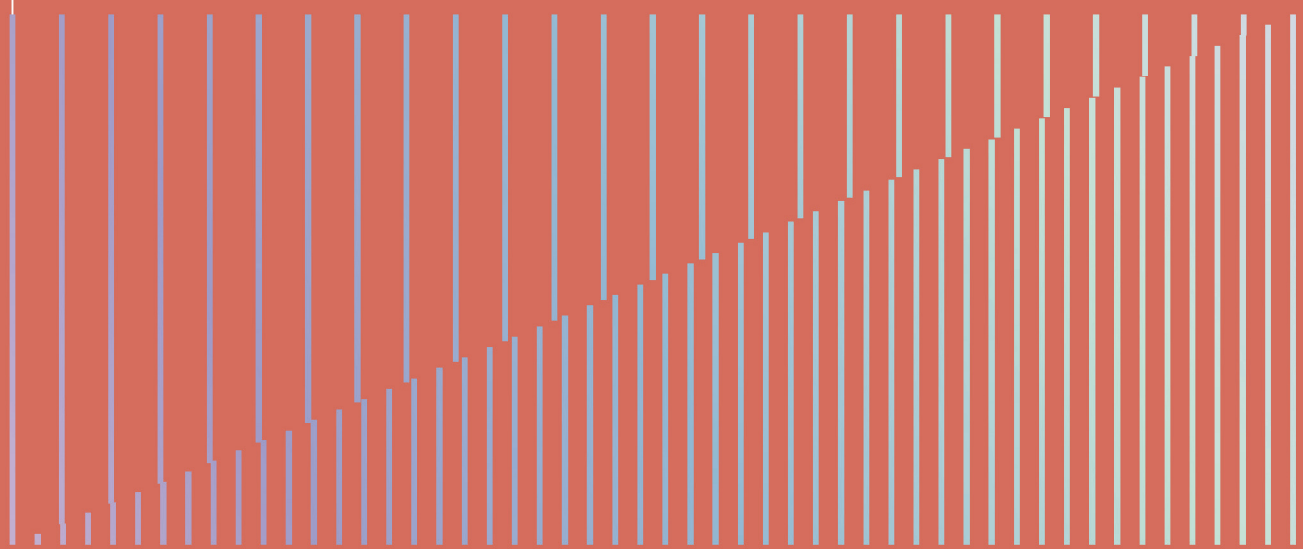

1. 2024년 규제혁신 평가

2. 202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05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 2024년 규제혁신 평가

| 강주연 사무관 | Tel. 044-200-2452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실시되는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규제혁신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및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기관별 등록규제 조문수,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기관*을 제외한 3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선정하였다.

* 외교부, 통일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주요 평가 방향은 사회환경 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춰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민 경제 및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핵심 규제 및 다부처 연관 복합·갈등규제 개선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신산업 규제 정비, 규제샌드박스 실적 등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한 국민·기업의 현장 건의과제 개선노력, 규제비용 감축, 신설·강화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 등 규제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홍보 노력에 대한 평가도 지속하였다. 또한, '24년도부터는 다부처·다법령 관련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규제혁신 협업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각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의 전년대비 개선 노력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평가방법은 장관급 기관(22개)과 차관급 기관(14개) 총 36개 기관에 대하여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규제개혁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분과위원장), 규제조정실 실·국장, 민간전문가로 구성(4개 분과, 17명)

평가항목은 크게 핵심 분야 규제개선 55%, 규제품질관리 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20%로 구성하였다. 핵심 분야 규제개선 항목에는 핵심규제 개선, 신산업 규제개선 등 중점과제 개선 성과와 규제개혁신문고, 현장규제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 성과가 포함되었다. 규제품질관리 항목에는 규제비용 감축 성과,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실적, 신설·강화 규제 관리 노력 등이 포함되었고,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항목에는 국민소통 실적과 규제혁신 부처간 협업,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핵심 분야 규제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등 각 부문에 대한 부처의 전년대비 개선 노력이 가점 지표로 평가에 반영되었다.

2. 규제혁신 평가 결과

2024년 규제혁신의 중점 추진성과 중 하나는 국민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불편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 규제혁신 노력을 결집하여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핵심규제를 개선한 것이었다. 민간주도 규제심판,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부처·이해관계자 갈등규제를 적극 혁파하였고,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 건의·소통을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였다.

2024년 규제혁신의 또 다른 중점 추진성과는 규제샌드박스 등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 것이었다. 2019년에 최초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였으며, 총리 주재 현장 간담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사후규제영향분석 확대 등 규제 품질관리 강화로 국민·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정책 국제평가인 OECD 평가에서 최초로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규개위의 중요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규제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규제비용감축제를 적극 운영하여 약 8,800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국민·경제단체 의견수렴, 전문가TF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총 191건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인해 2024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역대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6개 기관의 종합만족도는 전년(75.2점) 대비 0.6점 상승한 75.8점으로 산출되었다. 종합만족도는 2019년 하락하였다가, 2020년부터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부처별 평가 결과

2024년 평가에서는 킬러규제, 중소·소상공인, 신산업 분야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했거나, 국민불편 해소 등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직제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 기관(직제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참고 기관별 우수사항

가. 장관급 기관 (직제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통신 규제혁신으로 국민부담 완화 및 혁신성장 지원

- 단말기유통법 폐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업료 감면 등 통신분야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
-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국가R&D 예비타당성평가 폐지 등 R&D 규제 개선으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장하고, R&D 투자 활성화 및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

행정안전부 – 국민생활 밀접규제 개선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 뒷받침

- 폐교재산 무상양여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를 확대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민원·공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 배송, 주차 네비게이션 등 첨단기술과 주소정보 융합으로 주소정보 기반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모델 개발의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규제를 집중 발굴·정비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확대 기반 마련

- 자투리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으로 농촌 활력을 제고하고, 수직농장 설치 간소화 등으로 신산업 투자 활성화 도모
- 반려동물의 진료절차 표준화, 진료비용 게시항목 확대 등으로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펫푸드 영양표준 마련 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현장규제애로 해소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유망사업 선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온라인 배송 허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쇼핑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
-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하는 등 미래 핵심산업 확산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주택·교통 등 분야에서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을 유연하게 해제하고, GB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시 GB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GB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편익 증진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임대제도 합리화 등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와 주택사업 활성화 지원

환경부 – 환경 규제혁신으로 지역 발전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 상수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합리화, 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환경 분야 토지이용규제 개선
-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바이오가스화, 복지부 협업을 통해 폐치아·폐지방 활용 의료제품 생산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통해 탄소중립 및 신기술·신산업 성장 촉진

나. 차관급 기관 (직제순)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장 소통을 토대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식품·의료분야 규제 적극 발굴·개선

-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겪던 과도한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 면제 및 기준을 완화하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 이동형 점포(푸드트럭)에서 냉장·냉동 차량을 통한 축산물 판매 허용 등을 통하여 소비자 편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관세청 – 국민편의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규제 혁신 적극 추진

-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한도 상향, 수출신고절차 개선 등으로 통관수수료 절감 등 수출통관 편의 강화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특례 도입 등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블렌딩 수출목적의 석유제품 수출·관세 환급절차를 마련하여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에 협력

조달청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조달분야 킬러규제 집중 발굴·개선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 기업재기 지원을 위한 과징금 체계 합리화 등 공공조달 킬러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사항 완화
- 행정편의적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

산림청 – 합리적 산지·임업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35.8㎢) 등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제한 삭제 등 임업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임업규제 해소 집중 추진

2 2025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박도연 사무관 | Tel. 044-200-2416

1. 기본방향

2025년에는 핵심 국정 기조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 경제 활성화, ② 민생 활력 제고, ③ 규제혁신체계 내실화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여덟 가지 규제 혁신 기획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부터 국민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도의 관계부처 합동발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세부 추진방향

경제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8대 핵심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이 여덟 가지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참고 3개 분야 8개 기획과제

분류	킬러규제명
경제 활성화	①경제단체 협업 기반 핵심규제 혁파 ②양극화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촉진 ③국가전략기술 등 신산업규제 혁신
민생활력 제고	④그림자규제 대대적 정비 ⑤지역맞춤형 덩어리규제 혁파 ⑥현실에 맞지 않는 생활불편규제 개선
체계 정비	⑦네거티브(유연한 입법방식 등) 전환 촉진 ⑧재검토규제 정비율 제고

가. 경제활성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반등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집중 발굴한다. 경제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계층·지역·기업 규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경제·행정·사회 분야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규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재정비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제2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맞춤형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기획형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신산업 진입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나. 민생활력 제고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상위법령 개선에도 여전히 하위 규칙·고시·지침 등에 남아 있는 규제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인증 및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공공기관의 각종 인증 및 평가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공식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행정조사도 개선한다. 2007년 이후 11차례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행정조사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23년에 77건을 정비한 이후 2년이 지난 만큼,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규제 혁파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여섯개 권역으로 나누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는 핀셋형 규제 개선을 추진해 지방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생활불편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가 직접 규제를 찾아내는 동시에 국민이 규제를 발굴할 수 있는 투트랙(Two-Track) 체제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기존체계 운영 내실화

2023년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으로 100건을 정비한 데 이어, 전환 대상을 확대해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재검토 대상 규제가 약 1,6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일몰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
규제개혁백서

06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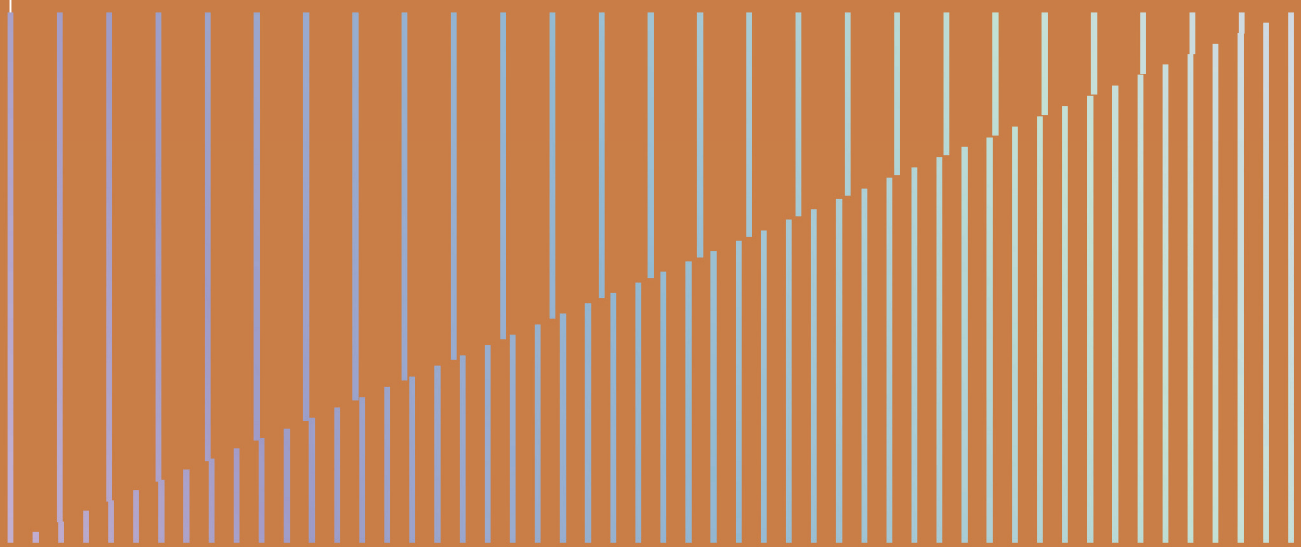

1. 각 부처 규제혁신 성과사례
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3. 추진단 주요 활동 내역
4. 규제개혁 관련 법령

06 부록

1 각 부처 규제혁신 성과사례

| 강주연 사무관 | Tel. 044-200-2452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허용 분야 확대	기 존 안전한 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자율주행로봇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시 개 선 모빌리티 전 분야, 공익목적 AI 활용 등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 확대 조치사항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기준 개정 및 자율주행버스 등에 규제특례 허용
2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기준 정립	기 존 AI 개발 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학습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관련 법률 규정 적용방안과 처리기준이 불명확하여 불확실성 존재 개 선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기준 정립 조치사항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3	개인정보 안심구역 확산	기 존 AI연구, 자율주행 개발 등을 위해 보안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보다 자유로운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 개 선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 조치사항 개인정보 안심구역 추가 지정
4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기 존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로 종래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규정 체계로는 위탁자(이용사업자)의 수탁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관리·감독의무 이행이 곤란 개 선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업자 간 실효적 위·수탁 관리·감독 이행 기반을 마련 조치사항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기본계획 수립
5	합성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 존 개인식별위험은 제거하고 데이터활용가치는 유지 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 (SyntheticData) *활용수요증가 * 원본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실제 원본 데이터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재현한 허구의 데이터 개 선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활용 절차 및 참조모델 마련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 조치사항 합성데이터 활용 절차·기준 마련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사전적정성 검토제 본격 시행	기 존 빠르게 발전하는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의 사업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 개 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조치사항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규정 고시 제정
7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완화	기 존 조사필요성이 낮은 공공기관까지 반복조사, 다른 점검·평가와 점검 중복 등 개 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을 통해 고유식별정보 관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에 갈음할 수 있게 하여 중복조사에 따른 부담 완화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8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 대상 기준 완화	기 존 일정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전년도 기준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가 일일평균 1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 선 전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 완화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9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기 존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해당분야 경력*등 자격요건 신설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경력 합산 4년이상 개 선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기준 旣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신설 경력요건 적용을 2년 유예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10	음성·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기 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정형데이터 활용 어려움 * 음악, 소리 등 음성, 사진, 영상, 자연발화 텍스트 데이터 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개 선 음성·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11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 통일성 제고	기 존 현행법 체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요건이 서로 상이** * 개인정보보호법은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신용정보법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각각 규정 **담당조직전문인력으로인정되는경력분야,학위·경력요건을다르게규정 개 선 상이한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 인한 제도 수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기준의 표준화를 추진 조치사항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2	행태정보 처리 유형별 기준 마련	기 존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 처리의 경우 별도 규율이 없어 처리기준이 모호 개 선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권고조치도 제시 조치사항 온라인 행태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2 경찰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실종아동 DNA 유전정보 보존기간 연장	기 존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유효단서임에도 10년이 경과한 DNA 유전정보를 당연 폐기하도록 규정 개 선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DNA 유전정보를 영구보존 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2	민원 서식 사진규격 단일화	기 존 대부분의 민원 서식이 여권용(3.5×4.5)로 통일되었으나, 일부는 종전 규격(3×4)로 규정 개 선 민원 서식의 사진규격을 3.5×4.5cm 크기로 통일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3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응시요건 완화	기 존 색각이상자(약도,중도색약) 중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약자에 대한 경찰관 채용 제한 개 선 중도색약(녹색,청색)자도 경찰관으로 채용하여, 공직 활성화 및 일자리 기회 부여 조치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4	거점형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기 존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늘봄학교 운영, (학교 안)늘봄학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가능하나 (학교 밖)늘봄센터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운영 불가 개 선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늘봄학교 운영하는 만큼 적극 행정을 통해 (학교 밖)늘봄센터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으로 포함시켜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조치사항 적극행정으로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개선
5	고속버스 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증선, (주말) 영동선 폐지	기 존 고속버스 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양재~오산'나들목, (주말) 영동선 '신갈~호법'나들목 개 선 고속버스 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양재~안성'나들목까지 39.7km증선, (주말) 영동선 폐지 ※ 평일 수도권에서 세종,충청권으로 출퇴근 수요가 많고, 주말 강원권 여행자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인하여 상습정체 발생 조치사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6	제1종 자동면허 시행	기 존 2종 보통면허에만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부여 개 선 1종 보통면허에도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부여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7	교통사고조사 매뉴얼 개정	기 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등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 후 녹색 점등에서 적색으로 바뀐 후 사고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 사고로 검찰 송치 개 선 판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등, 점멸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 후 녹색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후 사고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과실 사고로, 검찰 불송치(종합보험 가입 시) 조치사항 교통사고 조사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모바일 교통범칙금 시스템 도입	기 존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시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 후 범칙자에게 교부 개 선 범칙자의 동의를 받아 핸드폰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여 전자문서로 대체 조치사항 교통범칙금 시스템 개선
9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부담 완화	기 존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 2년 주기로 6시간 교육 의무 부여 개 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 3년 주기로 6시간 교육 의무 부여 조치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10	사격장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기 존 사격장 설치, 변경 허가시 법령상 적용되는 일률적 수수료 납부 규정 개 선 소상공인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사격장 설치 변경 허가 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조치사항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	경비업법상 허가 가능한 경비업종 추가	기 존 경비업법상 5종(시설·호송 등)의 경비업무에 대해서만 경비업 허가 가능 개 선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민간경비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경비업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을 추가 조치사항 경비업법 개정
12	교통안전교육강사·기능검정원 등 연령규정 정비	기 존 교통안전교육강사, 운전학원강사·기능검정원·학감의 자격 기준에 '연령'이 포함. 개 선 교통안전교육강사, 운전학원강사·기능검정원·학감의 자격 기준 중 '연령'을 삭제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13	운전학원 강사 배치기준 완화	기 존 1종과 2종 보통면허는 시험용 차량 제원 및 시험항목이 동일하고,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은 강사자격이 동일함에도 각각 강사인원을 설정 * 예) 운전학원에 도로주행용 제1·2종 차량이 각 10대, 총 20대에 강사 총 20명 배치 개 선 1종과 2종 보통면허,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강사 정원을 각각 통합 * 예) 개선 시 운전학원에 도로주행용 제1·2종 차량이 각 10대, 총 20대에 강사 총 10명 배치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14	이륜자동차 장내기능교육 강사 동승규정 완화	기 존 운전학원 장내기능교육 시 강사가 동승토록 규정하나 이륜차 구조상 동승 곤란 개 선 장내기능교육 동승규정을 이륜차에 한하여 강사당 교육생 5명 이하 밀접교육 방식으로 변경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5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가신분증으로 효력 인정	기 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용범위, 효력 근거가 불분명하여 사용자 혼선 가중 개 선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명확화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16	운전학원 학감 경력 요건에 학원에서의 교육·검정 등 경력 추가	기 존 운전학원 학감 경력 요건으로 '도로교통 관련 관리직 또는 학원 운영·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 개 선 운전학원 학감 경력 요건으로 '학원에서 교육·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도 인정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7	국가유공자 운전교육 지원대상 기준확대 (상이 1~7급)	기 존 도로교통공단이 국가유공자 자동차 운전교육을 지원하나 전체 상이등급 1~7등급 중 1~4급만 지원 * '23년 상이등급 1~7급 7,088명, 1~4급 900명(전체의 약 12%) 개 선 상이등급에 관계 없이 국가유공자 전부 지원 조치사항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정
18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기 존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법적 근거 미비 *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일명 pass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여 운전면허 취득 여부 등 면허 확인 및 성인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 개 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정식시행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19	교통안전시설 훼손복구 부담금 분납허용	기 존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공사 시 공사유발자에게 부담금 부과(분납 불가) * 경미 파손, 단순 보수 등 총액 20만 원 미만은 부담금 면제 개 선 부담금 분납 허용 조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3 고용노동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압류방지 통장 통합 추진	기 존 실업급여 등 5개(①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②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③산재보험 급여(희망지킴이), ④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⑤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제도에서 사업별 압류방지 전용통장 활용 개 선 수급자 편의를 위해 실업급여 등 5개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별 전용계좌를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 운영 조치사항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운영
2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	기 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 문진사항과 검사항목이 동일한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경우 불인정 개 선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시 특수건강진단 면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3	외국인력 직업훈련 강화	기 존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 부족 개 선 입국 전-입국 후-재직 단계별로 필요한 직무훈련 지원 조치사항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및 입국 후 E-9 외국인력 특화훈련 대상업종 확대
4	외국인력(E-9) 허용업종 확대	기 존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만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개 선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업·직종 확대 조치사항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 운영규정개선	기 존 최초 승인된 과정 수만큼만 운영 가능 개 선 승인된 정원 이내에서 연도 내 추가 회차 운영 가능 조치사항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모집 공고
6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 개선	기 존 '근로자 수'에 따라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하고,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산출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현장은 근로자가 동시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실제 이용인원 대비 '근로자 수'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 발생 개 선 주·야간 현장 등은 건설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 조치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7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사업 기준 완화	기 존 건설근로자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인 자는 6가지 사유*에 해당 시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피공제자 대상 무이자 대부 가능 *①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③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 ④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구입·전·월세 보증금 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⑥ 최근 5년 이내 회생개시 결정·신용회복위 채무조정 개 선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충족 시 무이자 생계비 대부 신청 가능(사유 무관) 조치사항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 시행
8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유예	기 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현장발급 시 수수료 발생 개 선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2,000원) 조치사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9	일부 비현실적인 특수건강진단검사규정의 현실화	기 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지표 검사의 경우, 작업종료 후 10~15분 이내에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및 대기시간 등 고려 시 제한시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수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실시 개 선 임상검사 및 진찰에서 그 검사결과가 참고치를 벗어나거나, 심혈관계 및 신경계 이상 징후 등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를 1차에서 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0	외국인가사관리사(E-9) 도입	기 존 외국인근로자 중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서만 가사 분야 취업 허용 개 선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도입 조치사항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실시
11	배달종사자안전모규정합리화	기 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를 세분하여 규정,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를 이륜차용과 자전거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 (이륜차용)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용)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안전보건규칙은 이동수단과 관계 없이 모든 배달종사자에게 이륜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륜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개 선 승차용 안전모 규정을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일치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근로자 청력보호를 위한 소음작업에 대한 기준 개선	기 존 산업현장 소음 노출로 생긴 난청으로 산재 인정 근로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이행은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사후적 조치로만 규정되어 예방적 조치로서 활용이 미흡 * 기존: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개 선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를 '소음 노출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으로 개정하고, 이행 대상을 소음작업 (85dB 등)으로 하향하여 청력 건강장해 예방 조치 강화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3	제조등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 시 항목 정비	기 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 시 기재사항과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재사항이 달라 민원인의 혼선 발생 개 선 제품명, 금지물질의 명칭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을 기재 (화학물질관리법과 통일)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4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	기 존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실시 시기 및 주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개 선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6~1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개선 * 석면, 야간작업 등 특수건강주기가 '12개월인' 유해인자와 소음, 분진 등 '24개월'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로 완화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15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 개선	기 존 현행 규정상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다만, 안전지침 준수 시 일부 사용 허용('19.3월, 지침 배포) – 현장의 이동식 사다리 사용과 지방관서 점검 시 혼란 개 선 사다리형 작업 발판 제작·보급 상황,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규정 개선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6	밀폐공간 작업유해가스 측정기준 조정	기 존 밀폐공간 작업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자격을 부여하는 안전보건 공단의 교육 횟수가 매우 적고 빨리 마감되어 필요한 인원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한계 발생 개 선 안전/보건관리자가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 후 강사가 되고, 교육에 필수적인 장비를 갖춰 특별교육 하는 경우, 측정 자격자로 인정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7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 제한횟수 폐지	기 존 국민내일배움카드(한도 300만 원)는 사유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한도추가 가능(한도 500만 원)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하여 한도가 400만 원이 되면 다른사유가 발생해도 최대한도까지 추가신청 불가 개 선 1회 추가 후 다른 추가지원 사유 발생 시 한도 내(500만 원)에서 추가지원 가능 조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18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서식 개선	기 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중 근로 형태 작성에 어려움 호소 개 선 근무형태에 대한 작성방법 및 예시 등을 기재하여 작성에 참고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9	근로자명부 서식 개선	기 존 사용자는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이력, 학력, 병역 등이 포함된 근로자명부 서식 활용 개 선 근로자 명부 서식 간소화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 조치사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2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리 전문가 자격요건 완화	기 존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리자는 일부 전문가*만 지정하도록 자격제한 * 발주자 소속 임직원 및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개 선 건설공사 종류별* 시공 및 안전관리 전문가도 안전보건대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확대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조치사항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1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	기 존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종사 근로자와 경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불포함 개 선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와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절차 개선 조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22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신청절차 간소화	기 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급 신청 시 '취업규칙 등 단축근로 관련 내부규정' 증빙자료 제출 필수 개 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단축근로계약서에 통상근로 복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내부규정 증빙자료 제출 불요 조치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23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명확화	기 존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지체 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개 선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를 '지체 없이'에서 '1개월 이내'로 합리화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4	안전밸브 검사 주기 조정	기 존 고압가스 압력용기에 부착된 안전밸브는 최대 8년까지 검사 주기 연장 가능('14년~) 하나, 압력용기에 부착된 안전밸브 검사 주기는 1년이어서 검사를 위해 매년 사업장 가동 중지 개 선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 주기 합리적 조정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5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관련조사 합리화	기 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 개 선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기업이 해당 작업에 대해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경우,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반복적 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수시조사 제외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6	건설공사안전 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기 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시 유해·위험 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작성 부담 개 선 발주자가 설계 전 시점에서 작성하기 곤란한 공사예산·기간 등 항목 삭제,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산안법 상 발주자의 주요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화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7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합리화	기 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등 시공 시 안전관리를 위한 다른 제도의 이행계획을 작성하나, – 단순히 다른 제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감소방안 마련과 관련이 낮고, 구체적인 시공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개 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업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대상에서 삭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8	안전검사기관 실무경력 인정 분야 확대	기 존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은 관련 실무경력 중 일부 제한 분야 경력*만 인정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 개 선 안전검사기관 인력기준에 산안법상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 실무경력도 포함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9	생활안정자금 신청 절차 간소화	기 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다양한 서류 제출 필요 개 선 ①제출서류 zero 시스템 구축, 비대면 융자 추진 ②융자항목 단순화→복잡한 증빙서류 제출 부담 완화 * '노부모요양비'를 '노부모부양비'로 변경, '임금감소생계비'를 '소액생계비'로 통합하여 요양비용, 임금감소 증빙 관련 자료 제출 생략 조치사항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정 및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생략
30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사전품목지정제 폐지	기 존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은 사전에 지정된 지원품목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사업장의 선택권 제약 및 수요 대응에 한계 개 선 사업장에서 안전·예방 기능이 인정된 지원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품목 지정제 폐지 조치사항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개정
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 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현장발급 시 수수료 발생 개 선 현장 발급 수수료 면제(2,000원) 조치사항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32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범위 확대	기 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4회 분할납부만 가능 개 선 분할납부를 4회 또는 6회 중 선택 가능 조치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등 개정
33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수수료 유예	기 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직접 신청 시 수수료* 발생(전자문서 신청 시 무료) * 신규허가: 3만 원, 변경허가: 2만 원, 갱신허가: 1만 원 개 선 온·오프라인 허가 모두 수수료 면제 조치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4	화염방지기능 통기밸브 설치의무 유예기간 확대	기 존 화염방지기능이 없는 통기밸브가 설치된 기존 저장탱크는 부칙에 따라 3년 이내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소방관련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기존 저장탱크(50만L 이상)는 정밀정기검사 등 탱크개방 시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를 유예 개 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같이 기존 저장탱크(50만L 이상)에 대해 정밀검사 등으로 탱크개방 시까지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의무 유예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35	군 간부 전역자 직업훈련 대상 확대	기 존 전역예정인 중·장기 복무(5년 이상) 군 간부는 직업훈련을 지원하나 5년 미만 단기복무 군 간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 선 5년 미만 단기복무 군 간부도 전역 전 직업훈련 지원 조치사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36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업에 대한 연계고용 감면 확대	기 존 건설업은 장애인 작업이 불리하고 장애인도 건설업 취업을 기피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곤란하나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개 선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한도* 확대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표준사업장 등) 물품·용역 구입 시(도급방식) 부담금 경감 조치사항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개정
37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시험 응시 요건 완화	기 존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시험 응시 시 '1년 이상 보험설계사 등' 경력 요구 개 선 응시자격에서 '1년 이상 보험설계사 등' 경력 삭제 조치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38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 완화	기 존 공인노무사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현장 연수교육을 받아야 직무개시 가능 개 선 연수교육기간을 6개월로 단축 조치사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
39	업종 전환 외국인력의 취업교육 개선	기 존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섬유산업 등 전문기능 업종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취업교육 필요 개 선 조선업종이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한 훈련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훈련 컨설팅 실시 조치사항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컨설팅 실시
40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준개선	기 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 시('24.1.27.) 중소영세기업들 대비 역량 부족 개 선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영세기업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및 수준 개선 조치사항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41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폐지	기 존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하려는 기관은 사전에 기본역량심사 통과 후 각 사업 별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수행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등 개 선 기본역량심사 폐지(각 사업요건 충족 시 사업수행) 조치사항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2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범위 탄력적용	기 존 사업장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에 근로자 참여 * 평가절차 : 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개 선 근로자 참여규모(인원, 대상 등) 결정 시 사업장 재량을 보장하여 평가실효성 확보 및 부작용 최소화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 근로자 참여는 보장 조치사항 지침해설 및 안내
43	직업훈련 교사·강사 교육시간 이중부담 완화	기 존 직업훈련 교·강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교육을 받아야하여 중복교육 소요 개 선 법령에 따른 별도교육 실적을 훈련 교·강사 기본교육시간으로 인정 조치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44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시행 계도기간 연장	기 존 주52시간제 도입 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했던 1주 8시간 추가근로제('21.7.~'22.12.) 종료 개 선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24.12.31.) 조치사항 계도기간 연장 실시
45	안전관리자 퇴직 시 인력충원 부담 완화	기 존 안전관리자 퇴직 시 퇴직일부터 30일 내 안전관리자 재선임 규정으로 중소현장 인력 충원 부담 개 선 교육이수한 실무경력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 허용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46	S마크 인증 시 예비심사 일부 면제	기 존 S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단계 절차(①예비심사→②서면심사→③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④제품심사)를 거쳐야 함 개 선 기 인증받은 제품과 유사한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7일 소요)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개정
47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검사 주기 도래 안내	기 존 안전검사 대상기계 소유주에게 안전검사 주기 도래 전 알림서비스가 없어 민원 발생 *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동차 안전검사와 비교하여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가 없는 것에 불만 발생 개 선 안전검사 주기 안내가 수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 면밀히 검토·개선 조치사항 위험기계 주기도래 안내시스템 개선
48	신규 사업주 차년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계획서 제출면제	기 존 여성 고용기준 미달 시 신규 사업장도 일률적으로 차년도 시행계획서 제출 개 선 신규 사업주의 경우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시 차년도 시행계획서 제출 면제 조치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개정
49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확대	기 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5년(7년)의 실무경력 필요 개 선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로서 건설안전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0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대	기 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개 선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5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기 존 ①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은 18~34세, ②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개 선 ①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15~34세로 확대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 ②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 조치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2	고용서비스 계정 통합서비스 제공	기 존 고용서비스 관련 다양한 전산망 운영 → 전산망별* 회원 가입 필요 *국민취업지원(취업이룸), 취업지원(워크넷),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장려금(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외국인고용(EPS) 개 선 고용서비스 계정 통합 →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 조치사항 전상망 연계 및 통합 서비스 개시
53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합리화	기 존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은 대부분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처리 -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함 -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감독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불합리 개 선 업무상 질병을 적용받은 마지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사업장 감독대상 선정 등의 합리적 방안 마련 조치사항 적용사업장 결정이유 등재 전산시스템 개발
54	사회적기업 취약계층(가정밖 청소년)범위확대	기 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범위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쉼터에 입·퇴소한 자로 규정 개 선 가정밖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 복지시설*(쉼터+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로 확대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조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
55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개선	기 존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 시 현 사업장과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재고용 가능 개 선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 현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도 재고용 가능 조치사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절차 완화	기 존 고용허가서 발급 전 모든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 * 농축산업·어업 7일, 그 외 직종 14일 개 선 제조업 내국인 의무 구인노력 기간 단축(14일→7일) 조치사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57	공인노무사 어학시험 인정기간 확대	기 존 공인노무사 1차 시험(6과목) 중 영어과목은 토익 등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성적 유효기간은 2년(공인어학시험 주관사의 성적인정기간과 동일) * '21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2→5년),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기한 연장 요구 증가 개 선 국가전문자격시험 과목으로 외국어가 포함되고 이를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시, 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
58	도급승인 심사서류 간소화	기 존 유해·위험 화학설비 설치·변경 등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항목과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도급승인 심사항목 중 일부가 중복되어 업무부담 과중 및 비효율 발생 * 도급승인 신청 시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개 선 도급승인 심사서류 중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공정안전보고서 서류로 갈음 * 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장치 및 설비사양,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 조치사항 도급금지·도급승인 운영지침 개정
59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 기준 일원화	기 존 신규화학물질 저우려 고분자(유해위험이 낮은 고분자 물질) 등록 면제 기준이 환경부 기준(화평법)과 상이 개 선 저우려 고분자 등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물질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부 등록면제확인제도와 일치 조치사항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4 공정거래위원회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환경을 위한 자율규제 마련	기 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또는 플랫폼-소비자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개 선 온라인플랫폼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율규제 도입·추진을 위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및 플랫폼, 중소기업,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도록 지원 조치사항 배달앱 및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
2	CVC 해외투자 범위 해석요건 완화	기 존 CVC가 한국인이 해외 창업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더라도 해외투자에 포함되어 해외투자 비율 규제가 적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벤처캐피탈로 법인이 대주주인 회사) 개 선 한국인이 해외 창업한 스타트업은 해외투자에서 제외되도록 지주회사 관련 해석지침 개정 조치사항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24년 중앙부처의 경쟁 제한적 법령 개선	기 존 기후테크, 친환경자동차 등 탄소중립 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 개 선 진입제한, 사업활동제약 등 소비자이익 침해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발굴개선 조치사항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2개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발표
4	24년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기 존 자치법규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상존 개 선 진입제한, 사업활동제약, 소비자이익침해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발굴개선 조치사항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2개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발표
5	다단계판매회사의 개별상품 판매가격 한도 완화	기 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2012년 이후 160만 원으로 제한 개 선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200만 원으로 완화하여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 조치사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CP)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 존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과징금 감경법적 혜택이 부재 개 선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를 감경하도록 법제화 조치사항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7	가맹필수 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필수 기재	기 존 가맹본부와 점주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된 필수품목에 대한 계약서 명시 규정 부재 개 선 가맹본부-점주 간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조치사항 가맹사업법 개정
8	구입 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 배포	기 존 가맹사업법 개정·시행('24.7.3.)에 따라 가맹 분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나 세부 작성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줄 가이드라인 부재 개 선 가맹본부-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인 만큼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 조치사항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 제정
9	가맹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절차 의무화	기 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가맹사업자와 협의를 거칠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음 개 선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조치사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10	납품업자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기 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자진시정 및 조사협력 등 요건을 충족하여도 과징금 감경이 50%만 가능 개 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감경폭을 70%까지 확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조치사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대형유통업체 주도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 적용 완화	기 존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의무화 개 선 정기세일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 참여가 절차적으로 보장된 경우 판촉행사 비용 50%이상 분담 규정 적용을 상시적으로 항구 완화 조치사항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
12	가맹사업법 집행의 일관성과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기 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세부 판단기준이 부재 개 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심사지침에서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제시 조치사항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13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판단기준 정비	기 존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필요 개 선 자연인 및 법인을 동일인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인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요건을 신설 조치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	하도급자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기 존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등 요건을 충족하여도 과징금 감경이 50%만 가능 개 선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폭을 70%까지 확대 조치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15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등 공시시한 기준 완화	기 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공시 기준이 일수 기준으로 되어 있어 공시기간이 7일, 10일처럼 짧을 경우에도 일수기준(달력기준)으로 되어 있어 해당 기간내 연휴,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공시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지연공시 등 행정제재 부담 개 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공시 중 공시기간이 7일, 10일처럼 짧을 경우 일수 기준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조치사항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16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기 존 공시지연일수가 짧은 경우 등 경미한 공시 위반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 개 선 공시지연일수가 3영업일 이하이거나 공시기한이 지난 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주의 촉구로 변경 조치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7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일회용품 필수품목 지정) 규제 완화	기 존 심사지침 상 '영업표지 등이 기재된 일회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법 위반(구입강제)사례로 예시 개 선 영업표지가 기재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이라면 필수품목 지정(구입강제)을 금지하되, 그렇지 않은 일회용품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기준 명확화 조치사항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8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면제	기 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작은 기업결합 유형인 다른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제외) 1/3미만 겸임행위가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기업행정비용 부담으로 작용 개 선 기업결합 유형 중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작은 기업결합 유형인 다른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제외) 1/3미만 겸임행위에 대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공정위가 보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기업행정부담도 완화 조치사항 공정거래법 개정
19	공시항목 간소화 및 공시위반 처분 경감	기 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사항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되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업 행정비용 부담으로 작용 개 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하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을 정정한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할 수 있는 법령 근거 마련 조치사항 공정거래법 개정
20	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 존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여 결정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설계에 한계 개 선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 부과 추진 조치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1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기 존 2022년 기준 기업결합 전체 신고건 1,027건 중 약 42%인 431건이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작은 기업결합 유형*임에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기업행정비용 부담으로 작용 * ㉠PEF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제외) 1/3미만 겸임,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개 선 기업결합 유형 중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작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하여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공정위가 보다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기업행정부담도 완화 * ㉠PEF 설립,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다른 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제외) 1/3미만 겸임,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조치사항 공정거래법 개정
22	중소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안전지대 확대	기 존 국민경제 규모, 소규모 혁신 기업의 등장 등 경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6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이 '07년에 설정된 40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음 개 선 공정거래법 제6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 원 미만에서 80억 원 미만 사업자로 2배 상향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 기업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하여 신규 시장 발굴·성장을 도모 조치사항 공정거래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3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 존 공정위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을 하고 있는데, 현행 인증 유효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개 선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그로 인한 효과도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에 대한 안정성 강화 및 부담 완화 조치사항 소비자기본법 개정
24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제도 실적인정기간 확대	기 존 조달청 및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3년으로 규정 개 선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조치사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5	동일인판단기준,확인·변경절차등마련	기 존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함에도 동일인 관련 기준, 절차가 미비 개 선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제도의 일관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 -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 -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 조치사항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연구개발특구 관련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 위임	기 존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개 선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특구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그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 *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사업 시행기간 단축 또는 1년 미만 연장 등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구역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 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제한되어 효율적 토지활용에 제약* * (예: 대덕특구) 840만 평 중 84%가 녹지구역 → 건폐율·용적률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연구원 분원 설립 및 기업이탈 다수 발생 개 선 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녹지지역(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용적률 상향(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기 존 특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공간 추가 확보 불가 개 선 건폐율 및 용적률 향상 ※ 30→40%, 150%→ 200%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4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제 개선	기 존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자격을 기술사 보유자에만 부여하여, 기술자 고령화 및 인력수급 애로 초래(특급기술자의 약 60%가 60세 이상) 개 선 기술사 未 보유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역량지수 제도 도입)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 개선 조치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5	유료방송 규제개선을 위한 IPTV법 개정	기 존 현행 규정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혁신 저해 개 선 IPTV의 PP 경영 제한 완화(IPTV법) 조치사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6	(2차 경제형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 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조치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7	(2차경제형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기 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 선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사항 전파법 개정
8	(2차 경제형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SoftwareProcess)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 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 SoftwareProcess)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조치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9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개선	기 존 SW제품의 규모, 평가환경 등에 따라 기간 상이 개 선 소요기간 명확화, 소요기간 단축, 이해도 제고 조치사항 인증소요기간 단축 등 내용 포함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해설서 제작 및 배포, 분기별 인증교육 실시
10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 권한 이양	기 존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 시(경미한 변경 포함)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 필요 개 선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로 위임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재인증 기간 단축	기 존 GS*인증을 취득한 SW를 업그레이드 후 재인증 시, 최초 인증과 동일한 기간 소요 * Good Software 개 선 업그레이드 후 재인증 시, 분석·설계 소요 기간 및 비용 감축 조치사항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간편인증제 도입	기 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은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나 영세·소기업에게 시간·재정·기술적 부담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개 선 영세·소기업들이 ISMS는 구축, 유지하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수수료, 취득기간 등 경량화 조치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완화	기 존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LTE-V2X 방식과 WAVE 방식 2가지로 규정 개 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통신방식이 LTE-V2X 단일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LTE-V2X 방식만 규정하고 WAVE 방식 기준 삭제 조치사항 지능형교통 시스템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완화 고시 개정
14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	기 존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 개 선 이용자의 단말이 5G, 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3사에 부여 조치사항 이동통신 3사 개선내용 반영 이용 약관 개정 및 시행
15	아날로그방식 생활무선국 사용기간 유예	기 존 주파수 이용 효율 제고 등을 위해 400㎒ 대역 아날로그 방식 생활무선국 사용 종료 ('23.12.31.) 개 선 기존 구매 기기에 대하여 사용기간 3년 유예 조치사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16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기 존 공공용 이음5G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나 역할상 큰 차이가 없는 '고정용·장착용 단말기'는 허가를 통해 개설 개 선 공공용 이음5G '고정용·장착용 단말기'도 신고를 통한 개설로 완화 조치사항 전파법 시행령 개정
17	간이무선국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완화	기 존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은 대역별 상·중·하 주파수를 시험, 간이무선국 무전기는 3개(422㎒, 423㎒, 444㎒) 대역 사용하여 총9번 시험 필요 개 선 3개 대역을 1개 대역으로 간주, 상·중·하 주파수시험(총3번) 조치사항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 개정
18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기 존 무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에게 전파법시행령에 따른 수수료 부과 *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적합 여부 확인 개 선 측정대상 다양화 및 시험방법 변경 등에 따른 비용 절감 요인을 반영, 평가항목 세분화 및 항목별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 조치사항 전파법 시행령 개정
19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기 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23년까지 면제 개 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4년까지 연장, '25년부터 감면비율 점진적 조정 조치사항 전파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0	재난피해로 주거시설 파손 시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기 존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유선통신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전설치 가능, 해지 신청 시에는 위약금 부과 개 선 재난 피해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치사항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1	5G 저가 요금제 출시 유도	기 존 5G 요금제는 최저 요금이 높고(4만 원대), 소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의 종류도 제한적 개 선 통신사 협의를 통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및 소량 구간 요금제 다양화 유도 조치사항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2	무선국 검사 절차 개선	기 존 무선국별로 정기검사 시기가 상이하여 해마다 동일 장소를 반복 방문해야 하는 등 시설자 불편과 행정 낭비 발생 개 선 동일 장소 설치 또는 동일 시설자 운용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 – 기대효과: 검사방문 횟수 감소로 시설자 부담 완화 및 검사기관 검사 효율성 제고 조치사항 전파법 시행령 개정
23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	기 존 메타버스 기술 활용한 융·복합 영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체계 부재 – 개별 산업별 지원체계는 존재하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불분명*하고, 통합 지원체계 부재로 연관 산업의 유기적 발전 한계 * 분야별로 분산된 법체계 구조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개 선 메타버스 기술·산업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정책 지원 근거(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및 네거티브 규제 지원 제도(자율규제, 임시기준 등) 마련 등 메타버스 분야 산업 진흥법제 마련 조치사항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24	메타버스 분야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이행	기 존 이용자 주도의 플랫폼 특성을 가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기존 포지티브 규제방식보다 자율규제* 방식이 신서비스의 적시 도입과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유리 * 자율규제는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스스로 행위를 규제하고 준수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 원칙'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미 개 선 신산업 분야 최초로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서비스 영역별 행위기준 등 규제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 조치사항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25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준 제도 도입	기 존 메타버스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적용·도입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활발히 일어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규율 공백 현상 초래 –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구체화된 사업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사업자의 신청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제적 법제 정비에 한계 개 선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 도입·운영 * 안정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의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험·검증 등의 필요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 기능 포함 조치사항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6	정부 R&D 제도 개선	기 존 세계 수준의 연구를 위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나 국내 정부 R&D는 해외 기관의 참여 불가 개 선 '정부 R&D 사업에 연구개발기관'에 자격을 갖춘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포함토록 개정 조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27	데이터기반 바이오 연구 활성화	기 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융합으로 기존 바이오 한계를 극복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현재 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개 선 바이오 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등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연구혁신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 조치사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6 관세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외환과태료 의견진술 기간 연장	기 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15일 부여 개 선 관세법에 따른 과태료 의견진술기간과 동일하게 의견진술기한을 20일로 변경 조치사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개정
2	농어업인의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인증서 확대	기 존 농축수산물은 국내에서 수확 어획되어 완전생산품임에도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가 어려워 농어민의 FTA 활용에 애로 발생 개 선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인정서류 확대, 신규 품목 확대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 조치사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3	외국환거래 검사절차 개선	기 존 세관장은 외국환거래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및 검사준비자료를 통하여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업체 방문검사) 가능 개 선 원활한 서면검사 유도(실지검사 축소로 검사 대상업체 부담완화) 및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대상자에게 관세청 보유자료를 제공하고, 자율점검표 항목을 검사 목적에 맞게 가감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개정
4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 존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등 관련한 기업불편 해소 필요 개 선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추진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소비신고 허용, 커피 사업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 사유로 관세영역의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 반출 가능 -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 조치사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관세납부 전용계좌 도입	기 존 관세 납부 및 해외 직구 반품 환급 시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조회 및 환급 가능 개 선 세자·정부의 은행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관세 계좌 도입 조치사항 관세청-금결원-은행 전산시스템 연계 등 관세계좌 납부방법 마련
6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심사방법 개선	기 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발급기관에 신청서 및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만 재출력이 가능 개 선 기업 및 세관 편의를 고려하여 재발급 신청에 대한 자동심사 제도 도입 조치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
7	경정청구 → 관세환급금 청구 절차 일원화	기 존 경정청구는 환급청구 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도 (1차)경정청구 → (2차)관세환급금 청구의 2단계 환급절차 진행 개 선 자동심사시 환급금 오지급 위험성이 없는 환급신청건(FTA사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및 확정가격신고 대상)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경정청구 승인 즉시 관세환급금 지급하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사항 과오납환급금 전자적 방법 심사 및 지급 시행
8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조사절차 개선	기 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동일한 사전통지 기간과 방문조사기간 운영 중, 조사방식은 방문 및 서면으로 수행 개 선 • 소기업 대상 사전통지기간 확대(15일전 → 20일전) 및 방문조사 기간 축소(20일 → 15일) 등 혜택 제공 • 성실기업 등에 대해 간이 방문조사(초기 방문+중기 서면 등 혼합 형태) 및 온라인 조사(화상인터뷰 등 비대면 조사) 등 신규 조사방식 도입 조치사항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및 관세조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9	국제무역선 입출항 승선 규제 완화	기 존 감시행정의 복잡한 규제사항이 물류 지체요인으로 작용 개 선 • (승선자 자율관리제)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선박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신고수리 후 작업승선자에 대한 승선신고 자율관리 가능 • (출항허가사항의 정정 기한 확대)선박 운항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항허가 후 24시간 경과 시에도 정정 허용 조치사항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10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허용	기 존 국내에 고품질 정유시설과 대규모 석유 저장, 블렌딩 시설이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복잡한 규제와 세금문제로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불가 개 선 해외로 직수출만 해오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외국 석유제품 등과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세금문제 개선 조치사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11	유통이력신고 기한 연장 한시 허용	기 존 에이치(H)형강, 플랜지(flange), 맨홀뚜껑(Manhole cover)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양도일부터 5일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함 개 선 • 플렌지(flange), 맨홀뚜껑(Manhole cover) 유통이력신고대상에서 제외 • 에이치(H)형강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허용 조치사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용도세율 적용 물품 사후관리 부담 완화	기 존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이행조건 확인 등을 위한 세관 신고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나, 용도외 사용 저위험 품목 등 일부를 사후관리 생략대상으로 지정하여 업체가 자율 관리토록 운영 중 개 선 사후관리 생략대상 확대, 추가 지정 조치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3	통신판매중개자 실태조사 한시 유예	기 존 국내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는 부정수입물품 서면 실태조사를 수시 시행 개 선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등 고려 우수관리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서면실태조사 유예 (유예기간 1년) * 유예 대상업체는 부정수입물품 서면실태조사 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 조치사항 통신판매중개업체 부정수입물품 실태조사 개선
14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유예	기 존 세율불균형물품* 수입 시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매년 지정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실시 *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개 선 제조·수리공장 현장조사 1년 유예 조치사항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5	사후면세점 내국세 환급 모바일 반출확인 도입	기 존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내국세 환급 시 공항 내 무인기기 또는 세관 직접 방문 후 해당물품 반출 확인 개 선 공항만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해 반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세관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도입
16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보세운송 지원방안 마련	기 존 물류환경 변화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국제무역선으로 내·외국물품에 대한 국내운송 수요가 있으나 제도 미비로 신속한 대응 한계 개 선 컨테이너 환적화물 및 수출차량 등 해운법상 허용 물품에 대해 국제무역선을 보세운송 수단으로 이용하는 근거 마련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17	자발적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확대	기 존 보정기간(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10%)의 일부를 감면해 주지만, 감면율이 낮고 구간이 세분화 되지 않음 개 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구간을 세분화 (2구간 → 3구간)하여서 성실신고 유인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1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세액 산정 기준 확대	기 존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환급금을 산출하는 기준 금액으로 수출금액 사용 *[애로] 제조자는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알려주지 않으면 간이정액환급 활용 곤란 개 선 수출금액 이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한 금액 사용 허용* *(기존) 수출액×환급율 → (개선) 수출액 또는 판매액(제조자→수출자)×환급율 조치사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9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심사 간소화	기 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심사 시, 단순 인쇄오류로 인한 훼손도 일반(서류)심사로 발급처리되어 불필요한 대기시간 발생 개 선 단순 인쇄 오류로 인한 훼손의 경우 자동심사로 변경하고 시스템 개선(기존 3일 이내 처리 → 1시간 이내 자동처리) 조치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대한 심사방법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기 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신청은 등기우편, 이메일 및 직접 방문만 가능 *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1년) 하는 제도 개 선 기업 편의제고를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21	용도세율 전용 수입물품의 확인 신청 관할지 세관 일원화	기 존 용도세율 적용 대상 수입물품의 전용확인 신청대상 기관이 수입신고 수리 전·후에 따라 이원화* 및 통관관리 시스템 미연계 * 신고수리 전: 통관 세관장 / 신고수리 후: 관할지 세관, 동일 통관자료 반복 제출 등 불편 초래 개 선 통관지세관에서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현황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 개선 및 전용물품 확인 신청을 수리전·후 모두 관할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22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기 존 전자상거래 수출이 지속 증가 중이나 기업 부담이 적은 간이수출신고* 기준이 약 10년간 고정되어 있는 등 통관 불편사항 존재 *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은 간소화(57개→27~40개), 혜택은 동일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 개 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FOB 200만 원 이하)을 물가·해외사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상향 조치사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3	중소기업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경감	기 존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억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차위반의 경우 30%를 경감하고 있음 개 선 중소기업의 경우 경감률을 50%로 상향 조치사항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개정
24	면세점 판매 냉장 보관식품 매장 직반입 허용	기 존 면세점 판매용 물품은 매장 보관창고에 반입 후 세관검사 등 절차를 거쳐야만 판매장으로 반출 가능 개 선 김치 등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은 재고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판매장으로 직반입 허용 조치사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5	관세감면 수입신고 서류 전자제출 확대	기 존 관세감면을 위한 수입신고 서류 제출 시 전자첨부 일부 허용(14개 중 5개) 개 선 감면심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 등 전자첨부 가능 분야 확대 조치사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26	중소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기 존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창출기업, 수출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개 선 경영위기 수출입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대상을 추가 발굴·확대하여 경영안정 지원 조치사항 2024년 관세청 세정지원대책 반영
27	중소수출입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기 존 경영위기에 처한 피해기업, 수출기업, 정책지원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 개 선 경영위기에 처한 피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 조치사항 2024년 관세청 세정지원대책 반영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8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적용요건 완화	기 존 간이정액환급 적용요건*에 못미쳐 혜택 못받는 기업 존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이며,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해당연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 개 선 간이정액환급 적용요건인 환급실적한도에서 원상태환급 제외하여, 원상태환급 과다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 못하는 기업 구제 조치사항 환급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29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업단지·특화단지를 보세공장과 연계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기 존 외국인투자금액, 수출금액, 외국물품 반입물량 등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지정받기 어려움 개 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기존 보세공장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단지·특화단지는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정 추진 조치사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30	국가첨단산업의 종합보세구역 제도 활용 확대	기 존 국가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제도 활용 확대 필요 개 선 국가첨단산업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등 일부 기준을 1/2로 완화 및 지정 변경 시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31	국가 핵심 산업의 보세건설장제도 활용지원	기 존 보세건설장의 혜택은 크나(최근 3년 부가세 면제금액 1조 원), 제한적인 특허대상 및 특허제한 사유로 인해 이용실적 저조 (현재 6개 운영 중) 개 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시설투자를 특허 대상에 포함하고, 특허 제한 사유를 완화하여 적용 조치사항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7 교육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교육환경평가서 변경사유 발생 시 재작성 기간 연장	기 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필요 * ① 선정한 학교 용지 위치 변경, ② 학교용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③ 학교용지와 인접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개 선 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기간 연장(30일→45일) 조치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연장	기 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 개 선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평가서 제출 시기 조정 조치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	기 존 수능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사진을 제출해야 하나, 검정고시 응시원서는 3개월 이내 촬영사진을 제출해야 하여 불합리 개 선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변경(3→6개월) 조치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4	중학교 배정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연령 제한 폐지	기 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중학교 배정시 우선 배정 가능 개 선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중학교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하도록 자녀 연령 제한 폐지 조치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5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	기 존 '24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활용 금지, 전형 기간을 대입 전형 기본사항으로 규정 개 선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및 전형 기간 자율화 조치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	기 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기간 발생 이자 면제 지원 개 선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실직·폐업·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에도 이자면제 지원 조치사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부과비율 및 한도 인하	기 존 학자금대출 의무 상환 고지서의 납부 기한 경과시 연체금으로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를 최초 부과하고, 이후 의무 상환액의 9% 범위 내 매월 1.2% 가산 부과 개 선 연체금 최초 부과 비율(3→2%) 및 가산금 부과율(1.2→0.5)을 인하하고, 총 연체금 부과 한도도 인하(최대 9→5%) 조치사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8	사이버대학 규제 완화	기 존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은 교육부 인가로 설치, 개정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미반영 개 선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기준 충족시 대학에서 자율 설치 가능, 사이버대학 박사과정 도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완화, 조교 확보기준 삭제 등 조치사항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9	대학 학자금 대출금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기 존 대학교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나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 개 선 대학교 졸업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10	국립대 통·폐합 시 조직개편 기준 유연화	기 존 국립대학 통·폐합 시 유사·중복 단과대학 및 학과·학부를 통·폐합하는 것이 원칙 개 선 타 학과 간 통·폐합, 융합체계로의 개편, 학과 체계 폐지 등도 가능토록 조직개편 기준 유연화 조치사항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 수행주체 확대	기 존 유치원 누리과정과 달리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근거 부재 개 선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3-5세에게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시도교육청 안내
12	정원 외 기간제교원 한시허용	기 존 각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정원 내에서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및 늘봄 전담인력을 각급 학교에 임용·배치 개 선 배치기준 내에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임용·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시도교육청 안내
13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수행주체 확대	기 존 어린이집 등 보육과 관련된 사무가 지자체 업무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보육 관련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 개 선 유보통합 기반 마련 목적의 다양한 시범 및 선도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직접 지원·수행 가능하도록 개선 * 유보통합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중으로 제·개정 완료 시까지 지원 조치사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14	자율형 공립고 공모 및 운영 내실화	기 존 자공고는 지자체와 협약 가능하며,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동일, 교장 공모제 필수 개 선 자공고의 협약 범위를 확대하고,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부여, 공모 기한 촉박 시 한시적 교장 공모 유예 등 조치사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15	댄스스포츠학원 상업지역 외 입지 허용 명확화	기 존 무도학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로서 상업지역에만 입지가 가능하여, 사업주는 주거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기를 지속 건의 * 국제표준무도(경기용 운동종목인 댄스스포츠 10종) 과정을 교습 개 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사업주가 타 등록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 또는 학원업(평생교육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 * 체육시설법과 학원법 단서규정은 타 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를 가로막는 것이 아님 조치사항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안내 공문 시행

8 국가보훈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직권 등록 참전유공자 유족 혜택 안내 개선	기 존 사망 후 직권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참전법상 개인정보 활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훈혜택 안내 불가 개 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유족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유족에게 직권 등록 및 수혜사항 안내 조치사항 참전유공자 등록사실 및 보훈혜택 안내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개선	기 존 국가보훈등록증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 제한 개 선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금융거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서 발급 등) 조치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등 개정
3	친환경차량 연료비지원 방법 개선	기 존 전기차 연료비 지원은 전기차 충전소 가맹점으로 등록된 충전소에서 복지카드를 통해 충전비를 결제한 경우에만 지급 개 선 전기차 충전소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위탁업체인 신한카드사에서 가맹점 확인이 불가능하여 연료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보철용차량 연료비지원 관련 시스템 개선
4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개선	기 존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 35세로 제한 • 취업 지원실시기관의 대상자 통보기한 10일로 제한 개 선 •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 39세로 완화 • 취업 지원실시기관의 대상자 통보기한 1달로 확대 조치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5	대부원리금 스마트폰 납부(고지) 시스템 도입	기 존 대부원리금은 종이 고지서를 제작, 우편 발송하면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개 선 채무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으로 자동 납부 고지 및 스마트폰 상환 시스템 도입 조치사항 온라인 납부고지시스템 개발 및 시행
6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특수진료과 확대	기 존 치과 등은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 곤란 개 선 치과 제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탁병원 추가지정 시 확대 조치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7	재가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한 지원 개선	기 존 도서벽지 지역 등 재가보훈실무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불가 개 선 민간요양기관 위탁을 통해 도서벽지 지역 등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조치사항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 개정
8	국가유공자 등 품위손상행위로인한 보상 정지기간 완화	기 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실형기간 동안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기간 동안 추가로 보상정지 개 선 보훈심사위원회 추가 정지 심의 시, 금고이상 실형기간동안 보훈급여금이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결 조치사항 등록관리예규 개정
9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개선	기 존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적 근거 미비 * 지자체 국가유공자 확인 시 명문화 규정 없어 누락자 발생 개 선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의 법적근거 관련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과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지침 제정 * 훈령 제정으로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조치사항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0	경찰·소방공무원 안장기준 완화	기 존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 개 선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안장대상 포함 조치사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1	신상변동신고 사항 중 주소변경 신고절차 간소화	기 존 국가유공자 등이 국내주소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신상변동 신고서를 제출 개 선 신상변동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해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아 확인이 가능한 국내주소의 변동신고는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	보훈대상자 주택지원 대상자 확대	기 존 주거약자법 상 상이 국가유공자에 한해 '주거약자 임대주택' 신청 가능 * (주거약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상이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경~고도) 개 선 국토교통부와 협업, '주거약자'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까지 포함·확대 조치사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	재가복지대상자 병원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기 존 재가복지대상자 병원방문 시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지원 개 선 재가복지대상자의 병원, 외출 시 재가보훈실무관이 동행할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 외부 차량을 이용하고 이에 따른 요금 지원 * 1회 20,000원, 연 3회 지원 조치사항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개정
14	국가관리묘역 관리 개선	기 존 국가관리묘역 지정 범위는 2기 이상의 합동묘역으로, 관리 대상은 합동묘역 내 기존 설치된 묘소로 한정 개 선 (지정범위) 지정범위 2기 이상의 합동묘역과 1기의 묘에 2위 이상이 안장된 경우도 지정 확대 (관리대상) 기존 설치된 묘소와 앞으로 설치될 묘소까지 확대 조치사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	국가유공자의 자립·복지증진을 위한 민간 기부 활성화	기 존 국가유공자의 자립,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부하였으나,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해 기부 유인 감소 개 선 기부 희망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 조치사항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
16	수원보훈복지타운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개선	기 존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자녀 제외) 중 생애 한번이라도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지 않은 경우' 입주 가능 개 선 입주자격 중 '연령 및 대상범위' 완화 조치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시설 입주지원업무 처리지침 개정
17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 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나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거(합가) 시 지원 불가 개 선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독거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조치사항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8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시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기 존 연체이자 상한제*는 기초생계수급자·차상위계층·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 한정하여 적용 * 연체이자의 최대한도를 대부원금의 20%로 한정 개 선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에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포함하여 확대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조치사항 대부업무 처리지침 개정
19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 연장	기 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유효기간 3년 개 선 인증 유효기간 3년에서 1회 한해 1년 추가 연장(총 4년 가능) 조치사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제도 개선	기 존 상이등급 판정시 종합판정을 위해 새로이 추가된 상이처를 포함하여 모든 상이처에 대해 신체검사 실시 개 선 기존 상이처가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상이정도에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해당 상이처 신체검사 생략 후 판정 조치사항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개정
21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개선	기 존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필요 시 수급자 본인이 직접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발급 * 연간 약 10,000여 건 발급 개 선 보훈급여금 수급자가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발급 조치사항 정부24 시스템 반영
22	제대군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추진	기 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과 달리 제대군인 온라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고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하여 불편 호소 개 선 정부24(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구축사업 연계
23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으로 개선	기 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신청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 개 선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
24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	기 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과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로 보상, 고엽제후유의증은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수당과 의료 등 지원 개 선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일부를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변경하여 보상과 예우 확대 조치사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5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 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상이등급 3~7급보훈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간호수당은 1~2급만 수급받으나, 상이국가유공자 전체를 제외 * 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5.5.5.) 개 선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9 국가유산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 개선	기 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보존조치 내용을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개별 확인 개 선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역·지구로 지정하여 대국민 토지이용규제정보 제공 근거 마련 조치사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	기 존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기술능력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개 선 등록요건 미달로 일정 횟수 이상(최근 5년간 4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조치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	지자체 문화유산 전문인력 배치 기반 마련	기 존 지자체 문화유산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 비전문가가 담당 개 선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 조치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4	수리종합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기 존 수리업체가 방문하여 민원사항 접수 (기초)지자체 거쳐 (청)담당자 접수 등록 개 선 수리업체가 온라인(On-line) 신청 및 공문 수발신 민원서비스 개선 조치사항 차세대 수리종합시스템 구축
5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세부기준 완화	기 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의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및 5천만 원 미만 소액주변정비 포함시 5개까지 허용 개 선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의 중복배치가 5개까지 가능한 예외적 허용기준을 1억 원 미만의 문화재 수리 포함시로 완화 조치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	매장유산 보존유적 관리체계 개선	기 존 사업시행 시 매장유산 발굴 이후 100% 현지보존 유적만 국비 지원 개 선 현지 또는 이전복원된 매장유산에 대하여도 보존조치비용 지원근거 마련 조치사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7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규제 대상 축소	기 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반출·수출 금지 원칙 개 선 1946년 이후 제작된 것은 별도 허가 없이 반출·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대상 축소·명확화 조치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8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연장으로 보상금 지급 확대	기 존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인 '발견한 날부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개 선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조치사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사유 신설	기 존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요건에 맞는 기술능력자를 유지해야 하며, 기술능력자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미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 개 선 기술능력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력이 미달되는 경우 처분 예외사유로 인정 조치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0	국가지정문화유산 등 지정 시 규제도면 정보 제공	기 존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해제 시 관보에 예고해야 하는 내용에 규제도면 미포함 개 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 해제 및 조정 예고하는 경우 문화유산 규제도면을 포함하도록 함 조치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1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대체시험의 유효기간 폐지	기 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제한 개 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폐지 조치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	고도 지정지구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	기 존 고도 지정지구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판단 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고도육성법」에서 적용이 되지 못하여 불편 발생 개 선 고도육성법 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건축법 시행령」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 조치사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3	국가유산영향진단제도 도입	기 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국가유산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의 이원화된 규제로 허가 등 지연 개 선 개발예정지역의 국가유산 지표조사 수행 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영향진단 결과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허가 의제 처리 조치사항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14	문화재 국외반출 규제 개선	기 존 원칙적으로는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국외반출만 가능 개 선 국외전시 외 교육, 연구 목적의 국외반출도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문화재보호법 개정

10 국민권익위원회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기준 현실화	기 존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음식물 가액이 물가상승 등 현실을 적기에 반영하지고 20여년 간 3만 원으로 유지 개 선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 국방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군소음 보상제도 개선	기 존 군소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민원 및 복잡한 보상금 산정 방식으로 인한 주민 불만 지속 제기 개 선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동생활권(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 및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 기준)을 경계로 설정하고, 보상금 감액 규정 정비(감액규정 간소화)하는 등 군소음 보상 대상지역 및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편익 제고 조치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군소음 보상제도 개선	기 존 군 소음 피해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대책지역 외 주민의 민원이 지속 개 선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동생활권(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 및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 기준)을 경계로 설정 * 공항소음방지법 보상: 도시지역은 주민주거용 시설물 경계, 비도시지역은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로 보상 여부 결정 조치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추진	기 존 장병 소통 수단 중 하나인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통해 군내·외 소통여건 증진, 자기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무여건 증대 필요 개 선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22.6.20.~12.31.)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범위 판단 및 시행, 병 휴대전화 사용 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 조치사항 훈련병, 군병원 입원환자 대상 휴대전화 사용 확대 허용 등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4	군무원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기 존 '23년부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교사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시험 인정기간(5년)이 폐지되었으나, 군무원·소방공무원 시험은 폐지되지 않고 적용 중 개 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를 위해 법령 개정(~'24년) 조치사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5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기 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현황: 8,240㎢ 개 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 지자체의 지역개발 등을 위해 민·관·군 상생을 도모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조치사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발표
6	소요결정 권한 위임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유연성 제고	기 존 군 무기체계 도입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효율성이 저하 개 선 ①일부 무기체계에 대해 각 군에 위임하여 소요 결정하도록 절차 개선 ②무기체계 시험평가 방식에 '조건부 적합'을 추가하여 유연성 제고 조치사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7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기 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 지자체의 지역개발 등을 위해 민·관·군 상생을 도모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필요 개 선 접경지역, 非접경지역, 항공작전기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작전에 필요한 필수지역만 유지하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 소요를 최소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군 협의 건에 대한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조치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8	국방연구개발 사업(R&D) 과정 중심 평가체계 마련	기 존 국방연구개발사업(R&D)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따라 책임 문제 발생 등 연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여 도전적 연구수행을 제한 개 선 도전적 국방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과제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정과 결과가 모두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9	AI체계의 데이터보안성 검증을 위한 기준정립	기 존 국방혁신4.0 추진으로 AI 체계 도입 소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AI 체계 구축 간 데이터 보안성 검증을 위한 보안 기준이 미정립되어, 국방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 곤란 개 선 국방 AI 체계 활용 관련 보안 원칙 연구 및 국방 AI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보안이 내재화된 국방 AI 체계 개발 생명주기 적용, AI 체계 평가 지표 및 방법 마련, AI 체계 설명 가능성 확보 방안, 국방 AI 보안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조치사항 국방 AI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
10	국방품질경영 체제(DQMS) 인증 법정 유효기간 연장	기 존 방산업체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취득·유지·갱신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개 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갱신심사 주기)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심사비용 절감 가능 조치사항 방위사업법 개정
11	군무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기 존 '22년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기존 5년)이 폐지되어 '23년 국가(지방)공무원 공채부터 적용 중이나 군무원 채용 시험에는 아직 미적용 개 선 군무원 채용 시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폐지 조치사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12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상시 참석위원 확대	기 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현 상시 참석위원은 국방, 외교, 경제 관련 부처 위주로 구성 개 선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제에 적시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상시 참석위원 확대 조치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	청년장병취·창업지원강화	기 존 중·장기복무 전역예정 간부 및 의무 복무병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단기복무(5년 미만) 전역예정 초급간부에게는 이를 미적용 *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3~12개월 전직지원기간 부여, 의무복무병은 2일 범위에서 휴가 가능 개 선 단기복무 전역예정 초급간부에 대한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하여 취·창업 준비여건 보장 조치사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4	초급간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기 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만 포함 개 선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를 단기복무 전역예정자까지 확대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개정
15	사회복무요원 연가사용 자율성 확대	기 존 사회복무요원은 복학, 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연가일수 조정 가능 개 선 입학, 취업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사회복무요원이 원하는 만큼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
16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준 완화	기 존 8급 이하 군무원과 달리 7급 이상 등* 군무원은 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으로 규정 * 7급 이상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개 선 모든 군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로 일원화 조치사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17	진급예정자의 진급제외 규정 개선	기 존 진급예정 군인은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별 입법적 불균형 문제가 내재되어 개선 필요 *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 ①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②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③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개 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개정 * (기소)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징계)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처분이 확정된 경우(전역)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된 경우 → 전역심사위 전역 의결된 경우 조치사항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18	군 전직 및 취업지원제도 개선	기 존 전직지원기간을 군 복무년수에 따라 장기복무자에는 10~12개월을 부여하는 반면, 중기복무자에는 1~3개월만 부여하고, 재임용된 단기복무자는 과거 군경력이 가산되지 않아 '현재 신분으로 5년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전직지원기간이 부여되지 않음. 또한 전직지원기간 중 기업의 국외현장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군 전직 지원 제도 개선 필요 개 선 중기복무자 및 재임용된 단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전직지원기간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국외현장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하여 사회적응 준비여건 보장 *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현행 1~3개월을 3~5개월로 복무기간별 2개월씩 확대하고, 재임용된 단기복무자의 경우 현재 신분의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과거 군경력을 가산하여 전직지원기간을 산정 조치사항 군 전직 및 취업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
19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기 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진료비 지급절차 중 자료 수신(공단 측이 민간병원 진료기록 통보)에 장시간 소요되어 진료비 지급 지연(평균 5개월 이상) 개 선 건강보험공단 측의 진료기록 수신절차 없이 병사가 나라사랑포털 모바일 앱에서 진료비를 직접청구하여 진료기록 확인 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등

12 국세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수출지원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에서의 K-SUUL 경쟁력 강화	기 존 스타트업, 혁신, 청년친화강소 등 혁신성장 관련 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개 선 기존 세정지원 대상 외에도 소부장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 조치사항 국세기본법 및 부가세법 등 주요세목 법령 적극해석
2	역동적 혁신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기 존 스타트업, 혁신, 청년친화강소 등 혁신성장 관련 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개 선 기존 세정지원 대상 외에도 소부장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 조치사항 국세기본법 및 부가세법 등 주요세목 법령 적극해석
3	이중과세해결 및 예방으로 수출활동 적극지원	기 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디지털세와 같은 新국제조세규범도입으로 납세자 체감 조세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 개 선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격적 과세위험이 높은 신흥국과의 네트워크 채널 다각화 조치사항 인도, 멕시코 등 현지 정부 간담회 및 진출기업 간담회 등 개최
4	권리보호요청 대리인 범위 확대	기 존 권리보호요청 대리인은 조세전문가만 가능 개 선 대리인 범위를 배우자 등 친·인척까지 확대 조치사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
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활성화	기 존 특정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 개 선 도움자료 제공 및 내부 가이드라인 구체화로 답변을 내실화하고, 신청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 언제든지 컨설팅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사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 규정 개정
6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 유통 완화	기 존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전업 규정과 제조자 직매장의 사업범위 제한에 따라 주류만 판매 가능하여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 취급 불가 개 선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종합주류도매업자가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3, 별지 28호, 38호 서식 개정
7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제외	기 존 주택의 소재지 및 종류 구분 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0.5%~5%의 중과세율 적용 개 선 아파트가 아닌 소형 저가주택과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일정기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공장등록사항 변경등록 안내 강화	기 존 회사명·대표자 등 공장등록사항 변경 시 지자체 공장등록대장 변경 등록의무가 부과되나, 중소기업의 인지 부족으로 국세청 변경등록만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개 선 국세청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시 지자체 공장등록대장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토록 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과태료) 예방 조치사항 홈택스 시스템 변경 및 의무사항 팝업공지 게시
9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기 존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서 열거한 국선대리인 지원 제외 대상으로 법인이 열거되어 있어 지원 대상이 영세 개인납세자로 한정되었음 개 선 국세기본법 개정(1.1.)으로 법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시행령에서 영세 법인납세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요건을 충족한 영세 법인납세자를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 조치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10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실시를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기 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부재 개 선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조치사항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지침 마련·시행
11	주류 첨가물 범위 확대	기 존 주류의 종류별로 원료와 첨가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사용량도 제한 개 선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류를 적기에 생산 할 수 있도록 주류에 사용 가능한 재료 범위를 확대 조치사항 주세법 시행령 개정

13 국토교통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기준 개선	기 존 화물차의 기준 중량 초과 사유가 '안전 확보를 위한 철판보강'인 경우에도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개 선 주행안전영향이 적은 차체·차대·적재함의 보강 등에 따른 기준중량 초과 시 검사 부적합 대상에서 제외 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공시 제외	기 존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변경 시 별도보고 의무가 있으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기적 공시의무 개 선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공시의무 제외 조치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폐합 및 간소화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기 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사업에 최대 14년까지 소요되어,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 장애 개 선 정비사업 절차 대폭 단축 및 규제특례 확대 등 ① 준공 30년 도과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 허용, ②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 구성 허용, ③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 및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 조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4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기 존 신차 등록 후 4년(최초 검사) + 이후 2년마다(정기 검사) 검사 의무 *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개 선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 + 서울 등 도심지역 검사소 10개 이상 확대 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지역(郡단위) 운행 허용	기 존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는 군 지역에서 면허 발급이 불가 개 선 군(郡)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조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6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변경 간소화	기 존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 절차에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 개 선 개선대책 변경 절차 항목 세분화 조치사항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
7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혁신	기 존 GB 해제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GB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등 개 선 1.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GB규제 완화 ①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가능총량과 별도로 GB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GB 해제 허용 2. GB 주민 생활 불편 해소 ① 전기차 충전소를 GB주민 편익·생업시설로 재분류하여 보전부담금 면제, ② GB내 농지에는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③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노후화시 1회 신축 허용 등 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 완화 ①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건축시 건폐율을 6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로 완화, ②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조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8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GB 해제 가능	기 존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개 선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조치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및 대출기준 개선	기 존 청약, 주택 대출 등에 관한 일부 기준이 혼인 시 더 불리하게 설정 개 선 혼인·출산가구에 유리하도록 청약 및 대출 기준 개선 ① 신생아·신혼부부 청약 기준 완화(특별공급 물량확대, 우선공급 비율 상향, 무주택 요건 완화, 출산시 추가 특별공급 기회 부여 등), ②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 원→2억 원) 조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0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	기 존 레벨4 자율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부합 제도가 없어 도입에 장애 개 선 제작자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등 조치사항 자율주행차법 개정
11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기 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 갱신 가능 개 선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2	국내조종사 해외훈련 시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완화	기 존 국내조종사 해외훈련 시 사용하는 해외전문교육기관의 모의비행장치에 대하여도, 국내 훈련장치와 동일하게 최초지정검사 및 정기검사(연 1회) 실시 개 선 해외소재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용자가 지정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보고 시 정기검사 주기 연장(3년) 조치사항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개정
13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기 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 갱신 가능 개 선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4	신생아 가구에 대한 최우선공급 신설	기 존 기존의 신생아 우선공급은 他계층의 입주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방식 개 선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 조치사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5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규제 완화	기 존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주택은 세대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으로 입주 제한 * 1인: ~35㎡(대부분 원룸), 4인 이상 : 45㎡~ 개 선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입주신청 가능한 공공임대 평형의 범위 확대 조치사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6	GB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및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노후화 시 1회 신축 허용	기 존 GB 내 농지에 간이화장실 설치 제한으로 생활 불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되어도 증축 또는 개축만 가능 개 선 GB내 농지에는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노후화 시 1회 신축 허용 등 조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7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 존 ①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건축시 건폐율이 40%로 제한 ② 생산관리지역은 휴게음식점 설치 금지 개 선 ①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건축시 건폐율을 6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72%로 완화 ②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조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 가능총량에서 제외	기 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 개 선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가능 총량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허용 조치사항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19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공장 건폐율 완화	기 존 입지 당시 기타관리지역이었던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증설 불가 * (화성시 조례)보전·생산관리지역 : 20% 이하계획관리지역 : 40% 이하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개 선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적용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 관리지역에 준공된 공장 건폐율 완화* * 20% → 40% 조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기준 완화	기 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개별학교 단위로 계약·운행 가능 개 선 다수의 학교가 공동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조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1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ATO) 지정기준 완화	기 존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ATO)의 자격을 항공기 3대 이상을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 개 선 항공기를 대체하여 증강·가상현실(AR,VR) 기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완화 * 증강·가상현실 장비 보유시 항공기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조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22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 시 비행승인 면제	기 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방역업무 목적에 한해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 개 선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면제 조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3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완화	기 존 화재시 소방관 진입 접근성을 위해 2층 이상 11층 이하 각 층에 진입창 설치 의무 개 선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건물에 대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 조치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4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 존 특구 내 녹지지역(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은 건폐율(30% 이하),용적률(150% 이하)이 적용되어 효율적 토지 활용이 제한적 * 판교: 건폐율 70%, 용적률 500% / 마곡: 건폐율 70%, 용적률 400% - 특구 내 입주한 연구기관, 기업 등의 신기술, 신산업 등을 위한공간 확장,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대덕특구 840만 평 중 84%가 녹지구역 → 공간부족으로 특구 이탈(이전 또는 분원설립 등) 개 선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확대(법적 상한의 150% → 200%) 조치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5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 시 안전기준 등 합리화	기 존 UAM 실증시 항공기 등록·형식 증명, 이착륙 장소 제한, 비행 제한 등 항공안전법 상 규제 준수 의무 개 선 UAM 실증시 ①항공기 등록·형식 증명 개선 ②항공안전보고 간소화 ③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완화* *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 후 규제특례 부여 조치사항 실증특례 심의를 통한 규제특례 마련
26	무인비행장치 개발 활성화를 위한 드론분류체계 개선	기 존 現 드론 분류체계는 4종*으로 구분되어 새로운 형태의 드론은 안전성 인증을 받기 곤란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개 선 향후 출현하는 새로운 형식의 비행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분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추가 조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7	하이브리드 고급택시 기준 완화	기 존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기량 2400cc 이상 또는 최대출력 160kW 이상인 자동차만 사용이 가능 개 선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재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조치사항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개정
28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확산을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기준 완화	기 존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령상 공원 내 설치가 불가능 개 선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에 따른 시설설치·관리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점용허가대상으로 허용 조치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9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기 존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완화되어 증축이 가능하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120m, 경기도 內 산단)으로 인해 증축 제약 개 선 용적률 완화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120→150m) 조치사항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30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개시시점 유예	기 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분상제 주택의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 개 선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수도권 분상제 주택 수분양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치사항 주택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1	관할 지자체 外 주민센터에서의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열람 허용	기 존 해당 주택 소재지 내 주민센터에서만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사실 열람 가능 개 선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택 확정일자 확인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3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부담 완화	기 존 위험물질 운전자는 「위험물질안전관리법」 上 보수교육과 「화물차법」 上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할 의무 개 선 온라인 교육 제공 및 「위험물질안전관리법」上 교육 이수자에 대한 「화물차법」上 보수교육 의무 면제 조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33	수소자동차에 대한 튜닝 허용	기 존 신기술 적용 튜닝기준에 수소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아 내연기관 튜닝 기준 적용 → 사실상 튜닝 불가 개 선 신기술 적용 튜닝기준 대상에 수소자동차를 포함하여 튜닝 가능토록 개선 조치사항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34	온수온돌 설치 시 층간·최하층 바닥 열저항기준 개선	기 존 온수온돌 설치 시 층간 바닥과 최하층 바닥에 대한 총열관류저항 기준을 각각 60%, 70% 이상으로 제한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최하층 바닥 70%→60%로 완화 적용('22.1)토록 하였으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과 상충되어 실질적으로 완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개 선 온수온돌 설치 시 층간·최하층 바닥의 열저항 적용 완화된 기준으로 통일(60%) 조치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35	자연환기설비에 대한 소음 기준 적용 면제	기 존 공동주택 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음기준 40dB 이하 충족 필요 개 선 공동주택 자연환기설비 설치 시 소음기준 삭제 조치사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36	목조바닥 공동주택 콘크리트 슬래브 규정 적용 제외	기 존 공동주택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210밀리미터 이상)적용 → 다른 바닥재료 사용 불가 개 선 층간바닥의 재료로 목재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 적용 예외 조치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7	조선산업특화단지로 용도 변경된 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로 폭 규제 완화	기 존 산업단지 근처 녹지에 위치한 개별 공장 전용 진입도로는 폭 8미터 이내로 제한 개 선 선박 블록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 8미터 이상의 공공용 도로 설치토록 개선 조치사항 폭 8미터 이상의 공공용 도로 설치 허용
38	건설신기술 지정 시 시공실적 제출기준 완화	기 존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시, 1차 심사 전 시공실적(2차 심사 기준에 해당) 제출의무 * 신기술 지정 절차: 기술개발 → 시험시공 → 지정 신청 → 1차심사 → 현장실사 → 2차심사 → 지정 개 선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이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심사 대상자 부담 경감 조치사항 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 통합 등을 위한 운영기준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9	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업무 겸영 시 정보차단벽 적용 기준 완화	기 존 자산관리회사가 리츠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영할 경우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적용 의무 *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로서 이해관계 상충 방지 목적 개 선 정보차단벽 적용대상을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중 신탁업으로 한정 조치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
40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면적 기준 완화	기 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컨테이너) 규모기준을 20제곱미터로 제한 개 선 20제곱미터 규격의 컨테이너 수급현황을 감안,시험실(컨테이너) 규모기준을 18제곱미터로 완화 조치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41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등록기준 완화	기 존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 기준에 따라 항공기 승객좌석수가 50석 이하로 제한 개 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의 항공기 좌석수 상한을 50석→80석으로 상향 조치사항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42	녹지·관리지역 대안학교 허용	기 존 녹지·관리지역에 유치원·초·중·고교는 설치가능하나, 대안학교*는 설치할 수 없어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미흡 * 지난 12년 동안 대안학교는 5배 증가('11년 9개 → '23년 51개) 개 선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 * 국토면적(10.6만㎢) 중 녹지지 11.8% (12,581㎢), 관리지역 25.7%(27,30㎢) 조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3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요건 완화	기 존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이 가능 개 선 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촉진지구 지정지 5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개선 - 유휴지,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 개선 조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44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 허용	기 존 바닥면적 500㎡ 미만 공장 및 유통업의 창고형 매장은 도심 근린생활시설로 입지가 허용되나 물류업의 주문배송시설은 불가 개 선 생활밀착시설인 주문배송시설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조치사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
45	건축설계 입찰참가자 선정 시 '과거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제' 폐지	기 존 건축설계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과 기술자격 및 업무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감점 처리 * 건축설계 발주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 결정 ** 최근 1년간 제한 및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당 0.2점 감점 개 선 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규정 삭제 조치사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6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 규정	기 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부담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갈등 소지 개 선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 추가 조치사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47	접경지역 공간정보 공개범위 제한 완화	기 존 접경지역 공간정보는 비밀 등급으로 분류·관리 개 선 '비공개 대상인 접경지역 전체' 중 '민간인 통제선 이남지역'은 공개토록 하여 비공개 지역 축소 ※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보안처리 방식 개선 병행 조치사항 관계기관(국방부, 국가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합의
48	자연녹지지역 지정 前 입지한 연구시설 건폐율 기준 완화	기 존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20%로 제한 개 선 ①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연구시설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시 건폐율 40% 적용 ② 적정한 기반시설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시 해당 용도지역의 1.5배까지 건폐율 완화 가능 조치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49	캠핑카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기 존 5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요건 제한 개 선 50대 이상의 캠핑카 보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캠핑카에 대한 대수 가중치를 부여* * 전기차의 경우 1.67, 수소차의 경우 2.0의 가중치 부여 中 조치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50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공장부지 면적 제한 완화	기 존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설치 시 1만㎡ 이상 부지확보 필요(국토계획법)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건축면적은 1천㎡ 이내(산업집적법),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이하(국토계획법)로 제한 개 선 1.5만㎡ 이상의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 상 부지면적 제한 예외 조치사항 지자체 유권해석으로 면적 제한 완화 조치
51	소규모 가스설비 시공기준 완화	기 존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상한이 규정*('97년)된 이후 20년 이상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고 변동이 없는 상황 *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1천만 원 미만)에 맞추어, 당초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개 선 최근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현행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1.5천만 원 미만)에 맞추어 금액상한을 상향(1천만 원→1.5천만 원 미만) * 건설공사비지수 변동: '14.12월 100 기준 → '24.1월 154.6(54.6% 상승) 조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52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면제	기 존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 분할납부 시, 연 6%의 분할 이자 납부 개 선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 분할납부 시, 분할이자 면제 조치사항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53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 수수료 감면	기 존 항공기 소유자, 제작자 등이 항공기등의 안전성 인증을 받는 경우 수수료* 납부 필요 * 형식증명 260만 원, 제작증명 130만 원, 정비조직인증 78만 원 등 개 선 안전성인증 수수료 50% 감면 조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4	지구단위구역의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 설치제한 완화	기 존 일반 상업용지 내 데크 등 전면공지 내 보행지장물 설치 제한* * 既설치 데크에 대한 벌금 부과 개 선 주민제안 제도를 활용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 도보와 연접한 필지에 대한 데크 설치 可 조치사항 지자체 유권해석으로 보행지장물 설치제한 완화 조치
55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기 존 개인사업자가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제출 시 자산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개 선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충족기준 판단 시 자산평가보고서 대신 재무상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56	자동차 수출 이행 신고기한 연장	기 존 수출을 위해 자동차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수출하지 못한 경우 신규등록 하거나 폐차 개 선 수출 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자동차등록령 개정
57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	기 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령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지급 정지 행정처분 대상 개 선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58	영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증차 제한완화	기 존 20대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20대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할 경우에만 증차 可 개 선 20대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의 자유로운 증차 허용 조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59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기 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제* *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과태료 최소 30만원 개 선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기 위한 과태료 부과규정 등 삭제 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60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기 존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생태면적률을 10% 이상으로 규정 개 선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새만금 국가 산단의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 *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20% 충족 필요 조치사항 새만금 산단 19차 개발계획 및 22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61	법인택시 임시택시운전자격 부여	기 존 법인택시 종사 희망자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법정 교육을 수료한 후 취업 및 운행 가능 개 선 택시 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수료를 취업 후 3개월까지 유예하는 '임시택시운전자격' 부여 조치사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62	역세권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	기 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0.35-0.85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공간을 확보토록 규제 개 선 인근 100미터 이내에 무상 공공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 대수 기준의 1/2 범위에서 확보한 것으로 간주 조치사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안내공문 시행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3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	기 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매입 시에, 추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 박탈* * 공시가격이 1억 원(수도권 1.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 선 소형주택을 산 임차인이 추후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 지위 인정* * 매매 신고한 가격이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 조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4	리츠 개발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완화	기 존 리츠의 개발사업에 따른 준공이 9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변경인가 필요 개 선 리츠의 개발사업에 따른 준공 지연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인가 의무 면제 조치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65	문화시설 내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허용	기 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 제한 개 선 한 공간의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 복수용도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인정 조치사항 복수용도 지정 제도 활용 협조공문 시행
66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요건 완화	기 존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이 가능 개 선 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개선* *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 가능 –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 개선 조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67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 허용	기 존 바닥면적 500㎡ 미만 공장 및 유통업의 창고형 매장은 도심 근린생활시설로 입지가 허용되나 물류업의 주문배송시설은 불가 개 선 생활밀착시설인 주문배송시설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바닥면적 '500㎡ 미만' 주문배송 시설도 기존 '근린생활시설' 범위에 포함 조치사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
68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대상 확대	기 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령상 공원 내 설치가 불가능 개 선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에 따른 시설설치·관리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점용허가대상으로 허용 조치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9	초소형전기차의 특수자동차 차종 분류 신설	기 존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승용과 화물로만 구분되며, 청소, 소방, 세탁 등 특수용도로는 활용이 불가 개 선 특수자동차 차종 분류에 초소형 기준을 신설하여 청소 등 용도로 활용되는 초소형 특수자동차 제작 허가 조치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3 금융위원회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소액후불결제업(BNPL) 소비자 보호	기 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 서비스 제공 중으로,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님 개 선 소액후불결제업이 전자금융법에 규정되어 제도화 됨에 따라 금소법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사항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개정
2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기 존 외부 여건 등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저신용층 대출비중 60% 등)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업체도 즉시 선정취소 대상 * 저신용층 신용공급 규모가 큰 대부업체를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여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 개 선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계획 및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장려 조치사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3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 존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일반적으로 NFT는 암호화 수집품을 의미하여 규제 대상은 아니나, 지급·투자·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상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음 개 선 NFT를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NFT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국제 논의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 반영 조치사항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4	외국인관광객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상향	기 존 무기명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1회 충전금액 최고한도 50만 원 제한 개 선 외국인관광객 대상 한도 상향 추진(2배 수준) 조치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5	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기 존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연회비 10%)이 온라인(연회비 100%) 대비 낮게 설정 개 선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상향 조정 * 구체적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조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6	신복위·새출발 기금 이용차주의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기 존 신복위·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진행시 채무조정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 및 금융권에 공유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나,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상환하는 경우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삭제 개 선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하는 경우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삭제 조치사항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7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개선	기 존 원화예대율 규제비율 100% 개 선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 규제비율 적용 : ('24년 중) 105%, ('25년·'26년 중) 110% (~'27년 말) 105%, (~'28년 말) 100%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제한 완화	기 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자에게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불가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 자금 모집,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자 개 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투자자 보호 의무有)로 등록한 제3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모집업무 위탁 허용 조치사항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9	팩토링 대상 중견기업 범위 마련	기 존 「신용보증기금법」은 신보의 팩토링 공급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 개 선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팩토링 공급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견기업의 범위를 마련 조치사항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10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기 존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전 신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 규정 및 업권법에 따라 각 신고·보고 개 선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 보고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권법에 따른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 신고·보고의무 면제 조치사항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11	산업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유예	기 존 은행·은행지주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 개 선 유예기간 2년 적용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2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기 존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외국 금융회사 未포함) →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 등에 제약 개 선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조치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 기상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운영 근거 마련	기 존 신기술.신산업 분야 발달에 대응하는 기상산업분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 개 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조치사항 기상산업진흥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	기상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명확화	기 존 기상사업자·기상정보지원기관이 자료제출 및 검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히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개 선 일정 기간(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안의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 조치사항 기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3	소상공인 기상측기 제작수입업자 행정처분 감경	기 존 기상측기 제작수입업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시 제작 또는 수입 중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 * 기상청장 변경승인 없이 기상측기의 중요한 사항 변경, 형식 승인한 내용의 표시 미부착 등 개 선 소상공인에 한해 경제상황 등 종합 고려하여 행정처분 감경 조치 조치사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4	기상사업자 및 기상면허 소지자 행정처분 감경	기 존 기상사업자 및 기상면허 소지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시 사업 또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 * 등록요건 미충족, 기상면허증 타인 대여 등 개 선 소상공인에 한해 경제상황 등 종합 고려하여 행정처분 감경 조치 조치사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5	우수 기상장비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기 존 기상 분야 연구개발 우수 기상장비의 상용화 지원 연계를 위한 제도 부재 개 선 우수 기상장비 등 혁신적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반 마련 조치사항 우수 기상장비 혁신제품 지원 관련 고시 제정
6	기상기후데이터 특성화대학원 참여 기준 완화	기 존 특성화대학원의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 등 참여율과 합산하므로 초과시 특성화대학원 지원 불가 ※ 참여 및 운영인력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 100% 초과 불가 개 선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목적은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등 참여율과 합산 기준 삭제 조치사항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상산업기술원) 개정
7	기상정보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 면제 및 감면 근거 마련	기 존 기상정보 제공 관련으로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정보의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현상 증명에 대해서만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제공 개 선 기상현상 증명과 같이 기상정보 제공에 대하여도 수수료 면제 및 감면 근거 마련 조치사항 기상법 시행규칙 개정
8	기상정보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 금액 인하	기 존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정보의 제공 시 신청 민원인에 수수료 부과 ※ 근거: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기상청고시) 개 선 기상정보 제공 전산처리 비용 감소 등을 반영한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인하 • 수수료 인하(1GB 기준): (기존) 103,000원 → (개선) 1,800원 조치사항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고시 개정

15 기획재정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선금 지급 확대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기 존 공공계약 시 최대 계약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선금지급이 가능 개 선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	수출입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기 존 국내 기업으로부터 상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은 수출입 거래시 대부분 달러를 활용하고 있어 이중환전(예: 루피아→달러→원) 등 거래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개 선 기업들이 무역거래 시 美달러를 매개하지 않고 자국통화 직거래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조치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3	입찰 및 계약 시 보증금 부담 완화	기 존 국가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증금 납부 의무 개 선 '24.6월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5%→2.5%) 및 계약보증금(10%→5%)을 50% 인하 조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4	계약대가 신속 지급	기 존 국가는 계약완료 시 14일 이내 검사를 마치고 검사완료 후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개 선 '24.6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사기간(14일→7일), 대가지급 기간(5일→3일)을 단축 조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기 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명확성 부족, 절차로 인한 조사기간 지연 등 개 선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구체화, 예비협의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재신청시 선정절차 간소화,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 제고 등 조치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6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기 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경우 국가와 달리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없음* * 현재 국가·지자체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개 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조치사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7	관계 공무원의 검사 거부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개 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하게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엽연초조합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개 선 엽연초조합법 제13조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로 전환 (※ 부정한 등기의 경우는 현행 유지) 조치사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
9	조합 등이 감독기관 등에 거짓 보고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 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
10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 선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11	맥주 허용원료 추가	기 존 맥주 제조시 원료로 빵을 첨가할 경우 맥주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원료가 포함되어 기타주류로 분류 → 맥주명칭 사용 불가, 기타주류 제조면허 취득을 요구 개 선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빵, 가쓰오부시, 굴을 추가하여 맥주제조 허용 조치사항 주세법 시행령 개정
12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60→100ml)	기 존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 면세한도 60ml 적용 중* * '79년부터 60ml 유지 (주류는 별도 면세한도 상향, 1ℓ·400달러 이하 1병 → 2ℓ·400달러 이하 2병) 개 선 향수 면세범위를 60ml에서 100ml로 확대 조치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13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반출제한 관련 조치 위반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관세법 제200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 처함 개 선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반출제한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4	명령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에 처함 개 선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15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에 처함 개 선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16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함 개 선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17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차량 등의 출입 통제 등 관련 조치 위반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관세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 처함 개 선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18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또는 진행 정지 관련 조치 위반 등의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에 처함 개 선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로 전환 조치사항 관세법 개정

16 농림축산식품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농촌체험·휴양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인 대상 특산물 판매 허용	기 존 농업진흥지역 내 특산물 판매는 금지하나, 도농교류법에 의해 농촌체험·휴양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농산물 판매 허용 개 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정시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방문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농수산물 등 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 조치사항 유권해석 및 지자체 행정안내
2	관리규정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 존 충남 당진의 19만m^2는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용도 이용제한 개 선 소관 지자체장이 관련 구역 해제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여 제출 조치사항 지자체 대상 농지법 이행 안내
3	산업적 생산활동 목적의 농지 취득 허용	기 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당해에는 농지 취득 불가 개 선 산업적 생산활동 목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후 농지 취득 허용 조치사항 유권해석 및 지자체 행정안내
4	수직농장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 추진	기 존 농지법령상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 개 선 농업진흥지역에 ICT와 결합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사 확산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8→16년) 조치사항 농지법 시행령 개정
5	농업 경영 증명 인정서류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2→1종)	기 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시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 * 농업 관련 지원 수령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 개 선 농업인의 농지 경작 및 농업경영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이중 1종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
6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 개편	기 존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공사감리 등 대가기준은 타 건설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 개 선 농어촌정비사업의 대가기준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개정 조치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7	수입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사유 확대	기 존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예외로 공매물품, 가공품, 무환 수입식물 등에만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할 수 있음 개 선 수출국 전쟁·재난 등 위난상황 발생 시에도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조치사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	기 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 부재로 사용기간 제한(최대 8년) 개 선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 추진 조치사항 농지법 등 개정
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 확대	기 존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기한·횟수·금액)는 관련 인허가 후 30일 이내에만 변경 가능 개 선 분할납부 도과 기한 전까지 변경신청을 허용 * 납기 임박 시 자금사정에 따라 납기 조건 변경 가능 조치사항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10	소기업 성장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 징수 개선	기 존 소기업이 공장 설립 등 목적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나 준공 후 5년 내에 매출 성장에 따라 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면 면제된 부담금을 소급부과 개 선 해당 기업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적용 제외 조치사항 농지업무 편람 개정
11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신규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기 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대상자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제한 개 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고,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경력제한 완화 조치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	영국산 가금류 가금제품 수입규제 완화	기 존 영국산 가금류·가금제품(가금육·식용란) 수입 금지 개 선 영국에 대한 HPAI 지역화(regionalization)* 인정을 통해 영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 추진 * 수입을 허용하는 단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확대(수출국 영토 중 AI 발생 지역은 수입을 금지하되, AI 청정지역에서는 재개하는 개념) 조치사항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요건 등 개정
13	특별관리대상 농약의 유통구조 개선	기 존 제조·수입업자가 특별관리대상 농약*을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 * 중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개 선 제조·수입업자가 독성의 정도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농약을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4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신청 자격 요건 완화	기 존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관련 학력을 취득 후 실무경력 요건을 갖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학력 취득 후 실무경력만 인정 * 대학 등에 재학하며 학업과 자격취득을 병행하거나 실무경력을 쌓고 추후에 대학에 진학한 경우 등 경력 불인정 개 선 학력 취득 전후 경력을 모두 인정 조치사항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개정
15	소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제도 개선	기 존 동일한 농장 내의 소라 하더라도 가축 소유자가 변경(가족간 명의변경 등) 되는 경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아야 함 개 선 동일한 농장에서 가축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소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에서 제외 조치사항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16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허용	기 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의 노후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중(융자금 대출 신청 시까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기존 주택을 처분(또는 철거)하지 않는 경우 선금·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신축하는 동안 거주의 어려움 등 발생 개 선 잔금 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선금·중도금 대출 지원토록 농촌주태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조치사항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17 농촌진흥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농기계 표준 마련	기 존 국산 트랙터와 작업기의 통신 인터페이스가 국제표준과 달라 수출이 제한적 개 선 트랙터와 작업기 간 통신 인터페이스를 국제표준 부합하도록 표준 마련 조치사항 한국산업표준 제정
2	인삼 해가림 자재 사용범위 확대	기 존 내재해형 인삼재배 시설의 해가림 지주대는 목재 또는 철재로 설치 가능 ※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내재해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태풍·폭설 피해시 복구비 지원이 가능 개 선 인삼재배시설 해가림 지주대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표준인삼경작방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연구장비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기 존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사용 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보조법인은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 개 선 연구장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 출연연, 회사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치사항 농촌진흥청 연구기반 공동 활용 규정 개정
4	국내 맞춤형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마련	기 존 반려동물 영양표준*이 없어 반려동물의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사료 개발 어려움 *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영양수준 개 선 반려동물의 사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맞춤형 반려동물 영양표준' 마련 조치사항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마련
5	농업용 로봇 표준 마련	기 존 비정형적인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로봇의 표준이 없어 안전기준 미비, 호환성 결여 등 현장 적용 활성화에 어려움 개 선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농업용 로봇의 안전기준 등 표준을 마련하여 농작업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조치사항 농업용 로봇 표준 제정
6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택과목 확대	기 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목 중 선택과목을 20개로 정하고 있음 개 선 치유농업과 관련있는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을 선택과목에 추가 조치사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7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기간 확대 및 이수요건 완화	기 존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142시간) 교육이 3~7월에 집중 개 선 영농경력 3년 이상 농업인은 농업관련 선택과목 교육시간 50% 면제, 교육 연중 확대실시 * (현행) 선택과목 18시간 이수 → (개선) 농업 관련 선택과목 교육시간 50% 면제 조치사항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8	농약판매 관리인 연간 의무 교육부담 완화	기 존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에 등록된 농약 판매관리인은 매년 교육을 6시간 이상 필수 의무 개 선 집합교육을 온리인교육으로 전환 조치사항 농약판매인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실시
9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기 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자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개 선 직무발명자 소속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없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가능 조치사항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0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요건 완화	기 존 가축인공수정사는 매년 7월 필기, 9월 실기를 치러 년 1회 선발하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천재지변,국가재난 등에만 익년도 필기를 면제 개 선 1차 시험 합격자가 당해 2차 시험 탈락 또는 미응시한 경우에도 익년도 1차 시험을 면제 조치사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시험 절차 완화	기 존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에 대한 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개 선 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및 시험기준·방법 삭제 조치사항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12	바이오차 비료공정 규격 설정	기 존 가축분 등을 연료로 활용하는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료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 선 바이오차의 비료공정규격을 설정하여 민간 활용 활성화에 기여 조치사항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13	농촌진흥청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정비	기 존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과정에서 수집·조사하는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규정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이 수집 목적에 국한됨 개 선 데이터 활용이 수집 목적뿐만 아니라 공유·개방으로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개정

18 문화체육관광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기 존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 개 선 인구감소지역에 총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규모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개정
2	카지노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기 존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 개 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또는 치유를 목적으로 교육·상담·통계관리를 위한 경우'까지로 확대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3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근거 등 마련	기 존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 개 선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근거 및 불응 시 대응근거 신설 조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4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 개편	기 존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하여 보증 공급, 콘텐츠의 제작(완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개 선 제작 단계 외 기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제작, 유통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성보증 제도 확대 개편 조치사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기 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허락을 통해 저작물 이용 가능 개 선 문서 회신 대기 기간을 최대 20일로 단축 조치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6	웹툰 웹소설 등 장편연재 저작물 등록 수수료 인하	기 존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추가 등록을 할 때마다 동일한 등록 수수료 발생 개 선 순차적 저작물은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 수수료 인하 (2~3만 원 → 1만 원) 조치사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7	문화지구 권장업종 범위 확대	기 존 문화지구 내 '권장업종'(세제혜택·융자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문화시설'과 '전통문화 관련 영업시설'로 한정(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등) 개 선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한 영업시설'도 권장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각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지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
8	사회적 약자 저작권 등록수수료 면제	기 존 경제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 할인 개 선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까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할인 조치사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
9	파크골프장, 풋살장 체육시설 지정	기 존 체육시설 이용 현황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 필요 개 선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종류에 파크골프장과 풋살장 추가 조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출국납부금 제도 개편	기 존 • 공항 이용 출국자 출국납부금 – 면제 대상: 만 2세 미만 – 부과금액: 10,000원 • 항만 이용 출국자 출국납부금 – 면제 대상: 만 6세 미만 – 부과금액: 1,000원 개 선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기준 연령 확대 • 공항 이용 출국자 출국납부금 – 면제 대상: 만 12세 미만 – 부과금액: 7,000원 • 항만 이용 출국자 출국납부금 – 면제 대상: 만 12세 미만 – 부과금액: 1,000원 조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
11	출판사 설립·변경 신고 시 온라인 신고 및 신고확인증 발급 도입	기 존 출판사 신고는 사업장 주소의 관할 지자체 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 불가 개 선 출판사 신고 시 온라인 신고 허용을 위한 정부24 시스템 개편 조치사항 정부24 시스템 개편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2	콘텐츠 기업 사업장 요건 완화	기 존 콘텐츠 기업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조건 중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 요구) 존재 개 선 독립된 연구공간이 없는 콘텐츠 기업도 전담부서 제도를 통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동일한 R&D 세액공제를 적용 * 향후 인정신청 공고 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유형(연구소 또는 부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요건 홍보 강화 조치사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실무처리지침 전파
13	한옥체험업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허용	기 존 한옥체험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한옥의 양식, 면적 제한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등록기준 만족 필요 * 한옥에서 숙박, 식사, 전통문화 체험 등을 관광객에 제공 개 선 전통문화 체험, 식사 체험 등 한가지 체험프로그램만 운영 시, 관광지원서비스업 요건을 충족하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 조치사항 업체 신청 시 즉시 조치
14	카지노 업종 신규게임 허용기준 완화	기 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이외 게임에 대한 영업 제한으로 신규 개발 게임 검증 및 도입에 한계 개 선 별표에 규정된 영업 종류가 아니더라도 변경허가를 통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5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의무 완화	기 존 여행업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유지 필요 개 선 휴업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이후 휴업기간에는 보증보험 해지·미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6	실외 승마장 울타리 설치 가능 소재 기준 확대	기 존 체육시설업 중 승마장업(실외 마장)의 울타리는 나무 소재의 울타리로 설치하도록 규정 개 선 실외 승마장의 울타리 소재에 대하여 나무와 유사 기능을 갖춘 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7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부담 완화	기 존 호텔업 신규 등록 시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 결정 신청 필요 개 선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한을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 가능토록 기간 완화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8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	기 존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최소 30실 이상으로 규정 개 선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기준 완화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9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	기 존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내 착공, 착공 후 5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개 선 사업계획 승인 후 4년 내 착공, 착공 후 7년 내 준공하지 못하면 승인취소 가능토록 기한 2년씩 연장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0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사서배치 기준 완화	기 존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해 사서 배치기준 만족 필요 * 1)사서 4명 2)도서관 당 인구수 2만 명 이상인 경우 초과 2만 명 당 사서 1명 추가, 3)도서관 면적 330m^2 이상인 경우 초과 330m^{2}당 사서 1명 추가 개 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을 두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조치사항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21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완화 및 국내여행업 최소자본금 규모 완화	기 존 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 자본금* 필요 * 종합여행업(5천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1천5백만 원 이상) 개 선 국내여행업에 한정하여 자본금 기준을 2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고, 여행업자본금 기준을 실질자본금에서 납입자본금으로 완화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2	여행업 기준 명확화	기 존 신규 창업 사업*이 현행 여행업에 해당하여 여행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 발생 * 실제 여행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단순하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개 선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관련 안내 공문을 송부하고, 지자체 또는 개인이 여행업 등록 필요여부를 개별 문의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 *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의 범위 관련 Q&A 포함 조치사항 여행업 등록 필요 여부 관련 지자체 안내공문 시행
23	게임제작업 등록에 필요한 사업장 요건 완화	기 존 게임제작업 등록 시 사업장 기재 필요 개 선 별도의 영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게임제작업 등록요건 완화 관련 지자체 안내공문 시행
24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 (게임산업법시행규칙)	기 존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면제규정 개 선 진술·영상정보처리기기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 요건 확대 조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5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기 존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면제 개 선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조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6	관광사업자 재창업 규제 완화	기 존 행위무능력(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나 파산을 이유로 관광사업자 등록,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이후 2년 이내에는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재창업 불가 개 선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 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 회복, 복권시 창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개정
27	관광사업자 휴업신고 간소화	기 존 관광사업자가 휴업 시, 휴업 기간과 무관하게 신고의무 부과 개 선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의무 부과,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 면제 조치사항 관광진흥법 개정
28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요건 완화	기 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해당 업종 2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도록 제한 개 선 해당 업을 영위할 별도로 구획된 고정적 공간이 있는 공유오피스 등을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독립한 사무소 요건 완화 조치사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실무처리지침 전파

19 방송통신위원회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완화	기 존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 MBC, 지역 민방)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TV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함 * 지역 MBC(20% 이상), 지역 민방(3.2% 이상) 개 선 지역 MBC 규제 비율(20%→14%), 지역 민방 규제 비율(3.2%→2.6%) 완화하여 지역방송 재량 강화 조치사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2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기 존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20% 이상 의무 편성 개 선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5%로 완화 조치사항 방송법 시행령 개정
3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	기 존 방송사 대표 및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시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 제출 필요 * 변경신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개 선 편성책임자는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면제 조치사항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변경 및 안내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기 존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직접 방문 모니터링 실시 개 선 현장 모니터링 대상에서 영세·소규모 중소상공인 모니터링 횟수·범위 등 축소 조치사항 영세 중소상공인 모니터링 실시 기준 마련
5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	기 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 필요 * 사업장(음식점, 미용실 등)에 예약이나 문의차 전화를 한 이용자에게 영업시간, 사업장위치, 메뉴 등 정보 발송 개 선 소상공인의 영업 지원을 위해 이용자가 사업장에 전화를 한 경우, 사전수신동의로 간주 조치사항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
6	개인정보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근거 마련	기 존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변환 불가능 * (Connecting Information)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 ※ 현재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통해 추진중(~'23.2) 개 선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조치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

20 법무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지역 소재 기업의 숙련기능 지원을 위한 개정	기 존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승급 요건의 어려움 호소 개 선 지자체 및 지역기업 인력난 고려, 지방 장기근무자에 대한 요건 완화 및 건설업 제도 개선 포함한 숙련기능인력 지침 개정 조치사항 숙련기능인력 지침 개정
2	외국인근로자 이탈 신고 시 고용허용 인원 비공제	기 존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 개 선 최근 1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소재불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상기 자격 외국인 고용 시 고용 허용인원에서 이탈자 수 비공제 조치사항 한시적 규제유예 안내공문 시행

21 보건복지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비정형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준마련	기 존 비정형 의료 영상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현장 활용 어려움 개 선 CT·MRI 등 비정형 영상 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조치사항 보건의료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찜질방 등 선량 자영업자 피해 구재	기 존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불법 출입 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자에게 일률적 행정처분* 부과 * (숙박업소 이성혼숙 허용)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폐쇄 (심야시간 찜질방 입장 출입)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개 선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위·변조 또는 도용 등)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 조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3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기 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99년 14종으로 변경 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 개 선 약물 투여, 심전도 측정 등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추진(14종⇒23종) 조치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4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및 출생통제 시행	기 존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거나, 출생 후 등록되지 않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생 개 선 산모와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임신보호출산제 및 출생통보제 시행 조치사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효기간 연장	기 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 개 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심사 시, 최근 3년 간 심사통과율은 96%로 대다수 시설이 재인증되며, 시설 업무부담 경감차원에서 유효기간 완화 필요 * 생산시설 인증 유효기간 일괄 3년 → 최초 3년, 이후 재지정 5년으로 변경 조치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
6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기 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급여의 이용범위 및 방식이 제한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이용에 한계 개 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조치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7	DTC 유전자검사 질병 유사범위 확대	기 존 DTC 유전자검사 웰니스* 중심 항목 허용 * 비타민C농도, 단맛민감도, 수면습관 등 개 선 질병 유사범위* 항목까지 확대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탈모, 비만 등 조치사항 DTC 유전자 검사항목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기 존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도입('22.7.)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비의료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건강 관련 검사 가능 *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이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유전자검사 개 선 • 소비자를 대상으로 검사 결과의 해석 및 올바른 활용 방법, 한계 등에 대해 안내* * 예) 체내 특정 영양소 농도 검사 결과는 실제 체내 영양소 농도가 아니라 유전변이 보유 여부에 따라 영양소 농도가 평균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의미 → 이에 근거한 과도한 영양보충제 섭취 주의 • DTC 유전자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결과 전달 시 유의사항*, 유전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유전자검사 결과 전달 시 유·무상의 상품 권유·제공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 필요 ** 유전정보·결과기록에 대한 보안 장치 마련, 연구목적으로 이용 시 별도 동의 구득 필요 등 조치사항 소비자 및 검사기관용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개선
9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요건의 완화	기 존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20개당 전문의 1명 이상,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10개당 간호사 1명 이상 개 선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에 연평균 1일 입원한 환자 수를 20으로 나눈 수 이상의 전문의,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에 연평균 1일 입원한 환자 수를 10으로 나눈 수 이상의 간호사 조치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0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기 존 보조공학사 업무 종사자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방식으로 보수교육 이수 필요 개 선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허용 조치사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1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허용	기 존 의지·보조기 기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방식으로 보수교육 이수 필요 개 선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허용 조치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2	사회복지법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 면제	기 존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증여·임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개 선 임대차 계약 갱신시*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과 동일한 조건 및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조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3	(민생규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 건강보험료 균등 분할납부 등 허용	기 존 체납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시 월별 고지 건강보험료 이상으로만 분할하도록 하여 이해가 어렵고 납부 회차 간 편차 발생 개 선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월별 고지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체납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조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4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기 존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매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부과 개 선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인하 * 24년~26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적용 조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5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기 존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활동지원사만이 수행* 가능 *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 가족 돌봄 허용 개 선 활동지원 인력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동거 가족이 직접 돌봄 시 급여 지급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조치사항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개정
16	경로당 화장실 내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의무 유예	기 존 노유자시설(경로당)의 화장실 내 영유아용거치대 의무 설치 개 선 노유자시설(경로당)의 화장실 내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의무 유예 조치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17	고령친화우수제품 유효기간 연장	기 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는 우수제품 품목만 열거하여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및 유효기간·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보완 필요 * 현재 보건산업진흥원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 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시 제정 근거 마련 • 고시 제정을 통해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및 유효기간·이의신청 등에 관한 입법 불비사항 보완 조치사항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
18	매장·화장신고 증명서 내용 개선	기 존 매장을 한 자는(매장 후 30일 이내) 또는 화장하려는 자는 신고, 민원인에게 내주는 매장·화장 신고 증명서에는 사망자 인적 사항과 신고자 인적 사항만 기재 개 선 분묘설치 연월일, 묘지의 정확한 지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신고증명서)하여 묘지의 추후 개장 신고나 각종 변경, 폐지 신고 시 편의 증진 및 분쟁 발생 시 민원인 불이익 최소화 조치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	(민생규제)고인 추모를 위한 사설 자연장지 표지 (표지석 등)의 면적 확대	기 존 사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 표지*의 면적을 200㎠ 이하로 제한 *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생몰연월 등을 기록한 표지 개 선 사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개별 표지의 면적을 250㎠ 이하로 완화 조치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	유전자 검사기관의 숙련도평가 절차 간소화	기 존 유전자검사기관은 숙련도 평가*(연1회) 를 받을 의무 * 서면평가, 현장평가, 외부정도관리평가로 구성 개 선 숙련도 평가항목 중 현장평가가 A등급*인 기관의 경우 차년도 현장평가 면제 * A·B·C 등급으로 구성 조치사항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개정
21	첫만남이용권 지원기준 개선	기 존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1년 개 선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2년으로 연장하여 바우처 이용자 편의성 개선 및 미사용 바우처 최소화 *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조치사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2	바이오헬스 데이터 관련 IRB* 가이드라인 마련	기 존 바이오헬스 데이터 연구에 특화된 IRB 가이드라인 부재*로, 기관별로 IRB 심의 기준·절차가 상이하게 운영 * 모든 연구에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IRB 관리안내(운영지침)'만 존재 개 선 바이오헬스 데이터 연구 관련 IRB 가이드라인 마련(~'24) – (가명처리 데이터 연구) 개별 IRB에 심의·동의 면제 강제할 수는 없으나 데이터 연구 관련 심의 기준 및 심의면제 사례 제시 – (다기관 연구) 공동 IRB 운영 시 IRB 선정 방식, 업무지원, 비용 분담, 연구 조사·감독 방법 및 관련 서식 등 안내 – (공용 IRB 이용) IRB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자나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용IRB 이용 안내 조치사항 바이오헬스데이터 이용 연구에 대한 기관IRB 가이드라인 마련
23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	기 존 도수 안경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 개 선 제도개선을 위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안전성 검토 및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한걸음 모델 합의('21.11.) 결과) 조치사항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4	의료마이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기 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제3자(민간기관)에게 개인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음 개 선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이 제3자(민간기관)에게 개인의료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추진 조치사항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시
25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규제 샌드박스	기 존 의료기사법 제12조에 따라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업소에서만 콘택트렌즈 구매 가능 개 선 소비자가 대면 구매 이력이 있는 안경업소로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증특례 추진 조치사항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시
26	(민생규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중개 서비스	기 존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가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금지 개 선 • 구매이력이 있는 안경업소-수요자 매칭 온라인 판매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24.3월~) *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실증특례 실시, 결과 분석 후 제도 개선 검토 • 과기부 ICT 제34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승인 조치사항 과기부 ICT 제34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승인
27	희망저축계좌 I 가입기준 완화	기 존 생계·의료수급 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초과 시 희망저축계좌 I 가입 제한 개 선 신청 가구의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더라도 희망저축계좌 I 지원 대상에 포함 조치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시스템 반영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8	재생의료 임상연구 외 재상의료 시술 허용 검토	기 존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20.8.)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접근 경로가 확대되었으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 허용* * (대상) 중대·희귀·난치질환자, (주체) 복지부 지정 실시기관, (절차) 심의위원회 심의(또는 식약처 승인) – 연구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도 후속 임상시험 진행이 어려운 첨단재생치료법은 환자 치료기회 상실 및 추가적 기술 검증 가능성 사장 문제 야기 개 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차별화*된 임상 경로인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 여부 및 구체 방안 검토 * (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 모집, 환자비용 청구 금지 (시술) 일반환자 대상, 환자비용 청구 가능 조치사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
29	장애인등록증 반환 규제 개선	기 존 장애인 사망시 유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나, 반환율 저조하고 과태료 부과 시 민원을 야기하므로 지자체 부담 가중 개 선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조치사항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30	장애인 생업 지원 대상 연령 기준 합리화	기 존 장애인 생업 지원 제도에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대상으로 20세 이상 장애인 규정 개 선 민법상 성인 기준(19세 이상)을 고려, 해당 제도 우선 대상 기준 개선(20세↑→19세↑) 조치사항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31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품목 제한 완화	기 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의 생산시설 설치 가능(바닥면적 합계 5,000㎡이하) 개 선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32	재산·자동차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	기 존 재산보험료 부과 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부과, 자동차보험료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만 부과 개 선 재산보험료 부과 시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 공제 후 부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 조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33	자활근로 가능지역 제한 개선	기 존 근로 능력이 있는 생활 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는 가구주 거주 지역에만 가능 개 선 해당 자활근로 시, 가구주 거주 지역이 아닌 희망 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개선 조치사항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개선
34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적용	기 존 상이국가유공자 등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적용 제외 개 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상이 3~7급 상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자격 부여 조치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5	사회보장신설·변경제도개선	기 존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제외되어 지자체 자율성 제한 개 선 24년부터 지자체의 자치권 및 예산편성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2억원 이하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협의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
36	(민생규제) 장애인 손·자녀 노인복지주택 동반입소 허용	기 존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부양하는 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 개 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는 노인복지주택 계속 입주 가능 조치사항 노인복지법 개정
37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기 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개 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받지 않음 * 다만, 연소득 1억 원·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있을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조치사항 의료급여지침 개정

22 산림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추진	기 존 여건변화로 지정목적을 상실하는 등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은 제한지역 존재 개 선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를 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 (33,433ha) 중 사유지 등(4,476ha)에 위치하며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3,580㏊ 해제 조치사항 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개정
2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목구조 허용	기 존 주택건설기준 상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콘크리트(210mm 이상)만 허용 개 선 나무(목)구조 가능(허용) * 층간소음 기준(49dB 이하) 시 조치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	산양삼 식품원료 가능부위 확대	기 존 식품원료목록 상 산양삼의 줄기 미포함 * 뿌리, 줄기(수경재배 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 개 선 식품원료목록 상 산양삼 '줄기' 허용 *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 조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요건 완화	기 존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령에 따라 신규교육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 개 선 신규교육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정기교육을 이수토록 변경함으로써 이전 교육일이 차기 교육 이수기한에 영향이 없도록 개선 조치사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5	목재생산업 행정제재 완화	기 존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 유통량을 적은 장부 미구비 시 영업정지 처분 개 선 경미한 위반사항 시 행정처분 대신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 및 유통량을 적은 장부 미구비 시 1천만원 이하 대체과징금 부과 조치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6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사용허가 허용	기 존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양봉산업이 제외되어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 관련 사업체 애로 * 공공용·산림공익시설,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 개 선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토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조치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7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기 존 여건변화로 지정목적을 상실하는 등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은 제한지역 다수 개 선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를 위해 산지전용 제한지역(33,433ha) 중 사유지 등(4,493ha)에 위치하며 지정 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3,580ha) 해제 조치사항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개정
8	국유림 사용허가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기 존 국유림의 사용허가가 가능한 용도 중 일부용도는 사용허가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 개 선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설치 가능한 시설물과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청년임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기 존 청년임업인은 산지소유 여부, 재정여건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귀산촌에 따른 임산업 신규진입에 한계 개 선 정책자금 대출 및 산림소득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청년임업인에게 가점 부여 조치사항 산림사업종합지금 집행지침 개정
10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혜택 2자녀로 확대	기 존 국립자연휴양림은 다자녀 가정을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으로 정의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 중 * 객실 : 평일 30%, 성수기·주말 10% 감면 / 야영장 : 평일 20%, 성수기·주말 10% 감면 / 입장료 : 면제 개 선 다자녀 가정을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변경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조치사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2종 나무병원 폐지에 따른 2종 나무병원 전환 신청절차 간소화	기 존 기존 나무병원이 다른 종류 나무병원을 등록하면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재무제표 등으로 갈음하나 2종 나무병원 제도가 폐지되면서('23.6.28.)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등록 하려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필수(대체서류 불가) 개 선 2종 나무병원을 폐업 후 1종으로 신규등록시에도 대체서류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비용 약 100만원 절감 조치사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12	산림사업체 행정조사 주기 완화	기 존 모든 산림사업체*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연2회 자료제출을 의무 * 산림사업법인 2,666개, 산림기술용역업: 1,453개, 국유림영림단: 140개 개 선 1년간 자료제출 조사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완화 조치사항 행정조사 운영계획 반영
13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기 존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시 편의시설*확보 요건 과다 * 강당·회의실, 도서실, 상담실, 방송시설, 보건시설 등 개 선 편의시설 확보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규제완화 조치사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제한 완화	기 존 산림소유자는 산림 벌채 시 신고(허가)해야하며 특정목적* 시에만 연간 10㎥ 이내 임의 벌채 허용 *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등,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 개 선 자가 소비 시 목적 관계없이 연간 10㎥ 임의벌채 허용 조치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5	국유림 대부료 등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기 존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기한(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기간동안 연체금 부과 개 선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120일 이내로 2배 연장 조치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시기 변경	기 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시 또는 허가에 대한 의제협의 시 부과 개 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협의 되는 경우 목적사업의 인허가 처분 시점에 부과 조치사항 내부 방침 문서 시달
1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탐광 시추 허용	기 존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광물탐사 시추시설 설치 불가 개 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시추('22') 경제성 평가에서 경제성 입증 시 구역 밖에서 굴진채광 조건 부 탐사시추 시설허용 조치사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18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외부교육 제한완화	기 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지정된 교육시설과 지역에서만 교육 가능 *숲해설가 33, 유아숲지도사 19, 숲길등산지도사 9 개 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출강, 외부교육 등 허용 조치사항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9	타분야 수입 있는 귀산촌인도 정책자금 대출 가능	기 존 임업 외 타산업 분야에서 근로 중인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장기·저리 정책자금 대출 불가 개 선 업종에 관계없이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도 장기·저리 정책자금 대출 가능 조치사항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23 산업통상자원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행개발 사업자의 경우 공장부지 처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석	기 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대행개발 사업자의 경우 공장부지 처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석 개 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여 그 대가로 받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5년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 해석 조치사항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2	업종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포함	기 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는 산업시설 구역에서 지정이 가능 개 선 복합구역*에서도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	마산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기 존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시설 등이 노후화('70년 지정)되었으나,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 건폐율 제한 및 고도화 추진에 한계** * 7개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 자유무역지역만이 산업단지에 미해당 ** 건폐율 제한(일반공업지역 70%(산단 80%), 스마트그린산단, 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단 지원사업 배제 개 선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치사항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고시
4	경자구역 동일 부지 내 외투기업과 관계회사(외투기업)간 시설의 통합·운영 허용	기 존 경제자유구역 부지매입계약 주체인 외투기업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지 제공이 불가 개 선 경자구역 동일 부지 내 외투기업과 관계회사(외투기업)간 시설의 통합·운영 허용 조치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5	개발이익 재투자 방식 개선	기 존 개발이익 재투자를 '준공인가일 전까지 완료(일시납)'하여야 함 개 선 개발이익 재투자를 '3년 범위에서 기한 연기 또는 5년의 범위에서 분할 재투자(분할납)'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부대시설의 범위 확대	기 존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설치 및 판매를 위한 전문 건설업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불가 개 선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설치 및 판매를 위한 전문 건설업 등록과 통신판매업을 허용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7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입주 지원	기 존 각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개별적으로 입주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입주 가능 개 선 모든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입주 허용 권고 및 촉진 규정 신설 조치사항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
8	공장증설 투자가 가능토록 연접기업 공장용지 임차 허용	기 존 '공장용지+공장'으로만 임대차 가능 개 선 공장증설과 부대시설을 위한 연접기업의 공장용지 임차 허용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9	로봇 전략산업 육성 위한 R&D 지원 강화	기 존 중국은 서비스로봇 강자로서 국가에서 R&D를 대폭 지원하고 있어 로봇기업들의 개발이 용이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 – R&D 비용 측면에서 국내는 중국 대비 세제혜택이나 비용공제가 적음 * (국내) 연구개발비 20~30%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중국) 법인세 10% 감면, R&D 비용 100% 공제 개 선 로봇에 대한 R&D 비용 지원 강화 조치사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신규 R&D 사업 신설 등 '24년 로봇산업 기술개발 사업 예산 증액
10	법령 해석을 통한 로봇규제혁신 사례집 제작	기 존 개별 로봇기업 및 수요처에서 로봇 활용 전 소관부처의 규제 대상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어 판매 및 활용 애로 발생 개 선 로봇 도입 BM 및 사례별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 혁신 사례집(가칭)"을 제작 및 배포 조치사항 첨단로봇 규제혁신 사례집 제작 및 배포
11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추진	기 존 로봇 인재에 대한 자격 검증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난이도의 로봇개발기사자격증* 외에 종목이 전무하여 응시 수요가 낮은 상황 *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 하드웨어개발기사 개 선 전통 제조 산업 현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까지 활용 영역을 포함하는 로봇산업기사 자격 신설 조치사항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 신설
12	단체 급식시설 내 푸드테크 서비스 로봇 시범 실증 추진	기 존 학교, 군대 등 단체 급식 시설 내 로봇 투입을 위한 실증 기반이 부족 개 선 대규모 급식 시설 내 푸드테크 로봇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거점 및 인프라 구축, 안전 점검 가이드 마련 등 추진('23~'24, 산업부) 조치사항 학교, 병원 등 대규모 급식시설에서 로봇 실증 착수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3	서비스 로봇 분야별 대규모 실증 거점 운영	기 존 현행 법상 기존 규제 존치 및 부재 등으로 인해 개별 로봇이 아닌 특정구역 內 다종의 로봇을 대규모로 적용하는데 애로 개 선 산업단지, 공항 등 내 대규모 실증 거점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실증 모델에 대한 대규모 실증 거점 운영 조치사항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 10개 수요 거점 운영
14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기 존 현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10월초부터 차년도 4월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사용 가능 개 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10월초부터 차년도 5월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사용 가능토록 개선 * (예시) 당초 10.11. ~ 차년도 4.30. →개선 10. 4. ~ 차년도 5.25. 조치사항 '24년 에너지바우처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 수립 시 동 사항 반영 및 지자체 송부
15	드론 액화수소 용기 실증특례 추진	기 존 드론 액화수소 용기 검사 기준 부재로 검사 및 사용 불가 개 선 규제특례 실증사업 절차에 따라 검사 및 실증 후 사용 조치사항 실증특례 심의(기업 신청 시)
16	암모니아 혼소 및 연료전지 개발 등 실증특례 추진	기 존 현행 수소 관련 법령 내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연료전지와 수소추출설비에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이 부재, 인허가·검사 등 절차 준수가 어려워 제품 제조에 애로 발생 개 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제품의 실증 진행 허용 조치사항 실증특례 심의(기업 신청 시)
17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적용	기 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 개 선 타분야 공사와의 간섭으로 인해 분리발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발주 예외 검토 후 허용 조치사항 유권해석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적용 허용(기업 신청 시)
18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구 입주요건 완화	기 존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대한 수출액 관련 요건* 존재 * 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기간 중 연속하여 1년 이상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일정비율 상회 필요 개 선 수출유망 창업기업*의 경우 입주 후 5년까지 수출비중, 산정기간 등 입주요건을 유예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 7년 이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조치사항 수출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유무역지구 입주요건 유예(기업 신청 시)
19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설비 보강일정 단축	기 존 새만금 산업단지 내 투자협약 지속 증가에도 변전소 설치 지연으로 인해 기업의 전력 공급설비 비용 중복 지출 또는 투자시기 조정 필요 우려 발생 개 선 투자협약체결 수요와 산단 건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전소 신설·보강 일정을 당초 계획 대비 단축하는 등 사업 추진일정 지연 방지 조치사항 변전소 2기 신설 일정 단축방안 마련
20	신제품(NEP) 인증연장 심사절차 간소화	기 존 NEP 인증 연장심사의 경우 최대 3번의 대면회의·실사 참석이 필요하여 중소기업 등에 부담 유발 개 선 1차 심사에서 기업이 서류심사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심사만 실시하는 방안 시범운영 조치사항 신제품(NEP) 인증 연장 비대면심사 방안 시범운영(기업 신청 시)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1	액화수소 용기 내조에 대한 제3자 검사 인정 허용	기 존 액화수소 용기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및 액화수소 실증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사용 개 선 액화수소 초저온 용기 내조의 경우 제3자 검사를 통해서도 적합하게 제작한 것으로 인정 조치사항 액화수소 용기 내조에 대한 제3자 검사 인정 허용(기업 신청 시)
22	폐기물재활용 원료재생업의 산단 입주 제한 완화	기 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 빈번 개 선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주변기업 조업 영향, 안전관리 우려 등을 판단하여 입주 여부 결정 조치사항 산업단지 관리기관 심의(기업 신청 시)
23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면적제한 미적용	기 존 공장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설치면적을 공장건축면적 이하로 규정 개 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량 자가사용 시 별도 면적 제한 미적용 조치사항 즉시 조치(기업 신청 시)
24	산업단지 부지의 현물출자시 처분제한 완화	기 존 산업단지 내 미활용부지에 대한 처분제한 개 선 입주기업체가 공동 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용지 처분 예외적으로 허용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5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실시 연장	기 존 납부기간(1개월) 내 전기요금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어 부담 가중 개 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동·하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실시 연장 조치사항 2024년 하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발표
26	소기업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분할납부 시 적용 이자율 완화	기 존 광해방지의무자의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시 현행 3.09%의 이자율을 적용 개 선 소기업에 한해 적용 이자율을 1.5%로 완화 조치사항 2024년 부담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
27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기 존 지자체장은 기업이 공장설립 승인 후 3년 이내 미착공시 공장설립 승인 취소 가능 개 선 기업이 공장설립 승인 취소 가능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청 시 각 지자체가 협조토록 안내공문 발송 조치사항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지자체 협조요청 공문 시행
28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	기 존 취약계층에 대한 2023년 전기요금 인상 유예 개 선 2024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 조치사항 전기요금약관 시행세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9	기업의 산단내 자산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재원 확보 지원	기 존 산단 산업용지를 공장에 설립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가수요를 차단하고자 실수요자 외 민간금융투자자의 산업용지 소유를 금지 개 선 비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유동화 허용* * 임차기간 보장, 우선 매수권 부여 등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은 보장하고,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여 산단내 재투자하는 등 투기수요는 차단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0	지방정부 등이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 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개 선 산단내 주차장·공원·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1	재생사업 토지용도 변경시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	기 존 기반시설 재투자로 환수+관리기본계획 반영시 추가 환수 개 선 재투자로 환수한 경우 추가 환수 면제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2	지역별 차별화된 산단 혁신정책 추진	기 존 착공후 2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산단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추진 – 산단이 지역경제의 중심이나 지방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계획 내용도 불명확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산단혁신이 곤란 개 선 • 지방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전략 등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단의 산업 고도화 및 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 * 지역산업 육성전략,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토지이용계획, 교통인프라 등 기반시설확충 방안, 근로자 생활·문화환경 개선사항 등 • 지방정부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산단 고도화 혁신사업 등을 선정·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및 우선사업 지원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3	지역 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추진	기 존 산단은 인근도시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의 일터임에도 공장밀집제조공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도시지역과 부조화 심화, 청년층은 산단 취업을 주저하고 지역주민도 산단을 기피공간으로 인식 개 선 지방정부와 민간(앵커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 수립 → 지역주민이 찾고 즐기는 테마공간으로 조성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4	관리기관이 산단 입주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기 존 관리기관의 산단 입주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 부재 * 국가산단 : 산업단지공단 / 일반산단·도시첨단·농공단지 등 : 시·군·구, 개별 관리공단 등 개 선 관리기관*이 산단 입주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준공후 10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5	업종이 다른 경우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으로 신속한 입주 결정	기 존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부재로 입주여부 불명확 개 선 관리기관이 신속히 확인하는 절차* 마련 * 기업의 입주신청 → 관리기관이 전문가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여부 확인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6	국가기술자격증 없는 엔지니어링 학·경력 기술자도 '특급'까지 승급	기 존 기술계 엔지니어링 학·경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산업기사 등)와 달리 고급기술자 이상 승급* 불가 * 기술자 등급 :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 개 선 학·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등급제도 개편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요건:특급기술자 1명 이상 보유 조치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37	현행 물류바우처 제도 개선	기 존 現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가기업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물류회사의 서비스 이용가능 개 선 사업참가 기업들이 원하는 물류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등록 주기 축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조치사항 제도 개선
38	[2차 경제형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에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기 존 방위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선 방위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 조치사항 방위사업법 개정
39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범정부 로봇 정책 지원	기 존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23)이 종료됨에 따른 로드맵 상 핵심 추진 분야에 맞는 일원화된 지원 정책 수립 필요 개 선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유망 분야 로봇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조치사항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공고
40	구조고도화사업 면적과 대상산단 확대	기 존 산단 전체면적의 10% → 30% 개 선 국가·일반산단만 → 농공단지와 도시첨단산단 추가 조치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41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개선	기 존 ① 현재 353개 인증대상품목 중 68개 품목은 인증실적이 없고, 88개 품목은 인증기준 부재 ②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개 선 ① 품목축소 등 인증대상 품목정비 ②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 조치사항 우수재활용 인증대상 품목 정비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24 새만금개발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새만금 산단내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기 존 공장 부지의 1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하나 공장 및 관련 시설 구축에 상당한 제약 개 선 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조치사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개정
2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자가소비용 신재생 발전 규제 철폐	기 존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불가 개 선 재생E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 발전규제 철폐 조치사항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25 소방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119지원 운영	기 존 소방안전분야 인허가시 관련 법령 및 관련부서에 따라 민원인이 별도로 접수하여 다단계 행정처리 (지역이 다를경우, 법령이 다를경우 부서마다 별도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개 선 민원창구를 단일화 하여 소방인허가 관련 법령 및 애로사항 을 지역,법령에 따른 별도 업무 처리가 아닌 일괄 처리하는 “원스탑119지원단”을 운영 조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2	실내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의 화재예방 설비 설치여부 명확화	기 존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에 탑재된 전지가 전기저장시설(ESS)에 해당 여부 불확실 개 선 이동식 전기차 충전로봇이 특정 소방대상물 “발전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화 조치사항 주요업무 처리지침 개정 및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반영
3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 단축	기 존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장기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민원 불편 개 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기간 단축(10일 → 7일) 조치사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	기 존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인증 신청 시 보완 횟수가 2번으로 한정되어 있어 인증에 대한 부담감 증가 개 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2회→5회) 조치사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5	소방공무원 채용 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기 존 '22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기존 5년)은 폐지되었으며, 2023년 국가공무원 공채부터 적용되고 있음 - 관계 법령 개정으로 2023년 지방공무원 및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한국사능력시험 인정 기간 폐지를 적용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유효기간 적용 중 개 선 소방 공무원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인증 유효기간 폐지 조치사항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6	소방용품 내용연수 및 정기검사 규정화	기 존 분말소화기 외 기타 소방용품들은 내용연수가 부재하여 노후화 등 성능건전성 확보 미비 개 선 분말소화기 외 소방용품들도 내용연수를 규정하거나 내용연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 명시(연기감지기, 소방호스 등 일부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정 중) 조치사항 소방계획서, 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매뉴얼 등 수정 배포
7	초고층건축물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부담 완화	기 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계획서, 비상대처계획을 작성·수립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유사한 형태인 다중이용시설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대한 의제 부재에 따라 중복 작성 등 불편호소 개 선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 * (현행) 소방계획서, 비상대처계획 + (추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조치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8	소화전함의 신규 스테인레스강 도입	기 존 기술기준에서 정한 재질 범위 내에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이 가능함 개 선 소화전함 재질에 신규 스테인레스강(STS290) 추가 적용 조치사항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9	초고층 건축물 등 사전재난영향평가 이의제기 절차 신설	기 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과 관련하여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로 심의, 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없는 일방적 통보로 추가의견 및 개선사항 미반영, 시·도지사와 시·도 재난대책본부장은 동일한 주체로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 지연 개 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및 절차 간소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허용토록 법령 개정예정 조치사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10	반도체·이차전지 산업특성을 반영한 위험물 공정의 특례신설	기 존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대해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함 개 선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물 공정의 허가 특례기준 신설 조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1	셀프용 주유설비 1회 연속 주유량 제한 완화	기 존 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은 200ℓ 및 4분임 개 선 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을 600ℓ 및 12분으로 함 조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2	위험물 안전관리법 상 배관 내압시험 기준 완화	기 존 위험물 취급배관의 기압시험 기준이 유사제도에 비해 높아 제조소 배관 설계 시 과도한 설계비용 발생 개 선 위험물 취급배관의 기압시험 기준을 유사제도 수준으로 완화 조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3	국가첨단산업 관련시설 소방공사 분리 도급 예외 인정	기 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 함 개 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된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 및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분리도급 예외로 규정 조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14	위험시설(주유소 등)에서의 흡연금지 기준 마련	기 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라이터 등 발화장치 사용 금지하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 개 선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됨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시 조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26 식품의약품안전처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웨어러블 재활기기가 함께 합니다	기 존 기술의 발전 및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 명확한 분류체계가 필요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신규 품목분류 설정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고시' 행정예고 (24년 2월) ** (신규품목)전동식 외골격 장치 신설된 품목은 기존 품목과 적용되는 심사 규격 및 특성 등으로 인해 기존 심사 규제의 적용의 한계가 존재 개 선 • '웨어러블 의료기기(전동식 외골격장치)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국내외 현황(연구개발, 기준규격 등) 조사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조치사항 웨어러블 로봇 의료기기(전동식 외골격 장치)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2	국내 유병률이 낮은 질병 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조건부 허가로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요	기 존 국내 유병률이 낮은 질병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에 필요한 검체 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품화가 불가함 개 선 검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 도입 조치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	한약(생약)제제의 최근 제조기술 인정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더 좋아져요	기 존 한약(생약)제제의 제조방법을 과거 탕약을 달이던 전통적인 전탕 방식만 인정 개 선 고전적 전탕 방식의 제조방법에서 벗어나 가압, 환류, 분리 등 현대화된 제조기술 인정 조치사항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4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급 부족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여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요	기 존 감기약 등 국민 다소비 의약품 수급부족에 신속한 공급관리에 주력,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개 선 과거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 데이터 분석 및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 도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시범 적용 조치사항 수급 위험도 예측모델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범적용
5	신기술 의약품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돼요	기 존 개인맞춤형 신생항원 등 신기술 적용 신약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경우 인허가 경험이 없고, 신기술 분야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초기 개발 단계 진입에 어려움 개 선 신기술 의약품의 개발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① 신기술 의약품의 R&D 코디, 제품 맞춤형 사전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상담 ② 신기술·신개념 의약품 평가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개인 맞춤형 신생항원 세포·유전자치료제 가이드라인 등 제정
6	국제 조화된 화장품 GMP 운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요	기 존 화장품제조업체는 국내 GMP와 유럽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ISO를 개별적으로 인증 개 선 국제표준으로 운영되는 ISO22716과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GMP 개선 및 국제 조화된 기준 운영 – 용어, 시설, 원자재 입고, 검체 보관 및 폐기 기준 등을 ISO 기준과 통일 조치사항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7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인정 확대	기 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된 것만 사용 가능 개 선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미생물 목록 제출 시 미생물 식품원료 인정 목록에 추가 조치사항 식품원료 인정 목록 추가
8	스마트팜 재배 인삼(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확대	기 존 건강기능식품 인삼(홍삼) 제조 시 원재료를 4년근 이상의 것으로 규정 * 스마트팜 재배를 통해 단기간 고농축 원료로 생산한 경우 인삼(홍삼) 원재료로 사용 불가 개 선 개별인정 신청에 따라 안전성·기능성이 인정되면 제조를 허용하고 고시에 추가 등재 실시 조치사항 건강기능식품 인정 고시 개정
9	의약품 회수 시 소비자 대상 제공 정보 확대	기 존 회수의무자(제약업체)가 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회수공표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반품절차 등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부족 * (공표내용) 제품명, 위해성 등급, 제조일자(유효기한),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 개 선 회수의무자의 회수계획 공표내용에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공 정보 확대 * (공표내용) 기존 공표내용 + 회수대상 제품 이미지,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 조치사항 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0	소비자 중심으로 회수 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 존 회수의무자(제약업체) 중심의 회수공표 * (공표내용) 제품명, 위해성 등급, 제조일자(유효기한),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 개 선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공 정보 확대 * (공표내용) 기존 공표내용 + 회수대상 제품 이미지,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 조치사항 의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11	당류 강조표시 규제 완화	기 존 당류를 강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의무가 신설*·적용 예정으로, 당류 강조제품 판매업체는 부담감 호소 * 감미료 함유: 강조표시 바로 옆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 총열량 표시: 강조표시 바로 옆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 개 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 마련 추진 조치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12	제조업, 식품판매업 등 병행하는 영업자에 대해 업종별 정기교육 이수 의무 완화	기 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가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병행하는 경우 정기교육 각각 이수 필요 개 선 제조업종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식품운반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 정기교육 면제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3	식품영업자 동일·유사업종 재창업 시 요구되는 신규교육 폐지	기 존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유사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서만 신규교육을 면제 * 정기교육 1년, 신규교육 2년 개 선 기존에 받은 교육의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만 받으면 신규교육을 받지 않도록 개선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4	식품위생 정기교육 갈음 지역 확대	기 존 유사업종 업소를 여러개 운영하는 영업자의 경우 '같은 시·군·구 기초자치범위 내'에서 정기교육 1회로 갈음 개 선 유사업종 간 정기교육 인정 범위를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확대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5	폐질환자용 식품의 유형 및 표준제조기준 신설	기 존 당뇨·신장·암·고혈압 등 환자의 건강한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해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 확대 필요 개 선 폐질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표준형으로 제조할 수 있는 환자용 식품 확대 조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6	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마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 존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인증·보증 표현은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인정 또는 실증을 바탕으로 허용 개 선 화장품 인증체계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및 표시·광고 실증제로 일원화 조치사항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7	소규모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전용차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기 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을 신고하는 영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차고를 갖추어야 함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개 선 소형차량(1.5톤 이하)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전용차고 확보 의무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톤 이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 가능한 사항을 준용 조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	소형 축산물 운반차량의 전용차고 확부 의무 면제	기 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을 신고하는 영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차고를 갖추어야 함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개 선 소형차량(1.5톤 이하)을 운영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전용차고 확보 의무 면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톤 이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 가능한 사항을 준용 조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의료기기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기 존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불가* *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필요 개 선 의료기기 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20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의무 대상 완화	기 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등급*에 따라 일정한 항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매월 보고 필요 * (1·2등급)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및 중고의료기기 등, (3·4등급) 모든 품목 공급내역 개 선 공급내역 보고대상을 제도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 * (1·2등급)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의료기관 공급 한정)(3·4등급)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21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변경지정 간소화	기 존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임상시험기관은 식약처에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변경지정을 신청 필요 개 선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후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 완화 * 임상시험기관장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임상시험기관 소재지 변경 등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22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교육기관 실습교육에 대한 위탁 허용	기 존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 의무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신고된 장소에 강의실·기기분석실 등을 갖추고 실습교육장비 구비 필요 개 선 주 교육장 외에 실습 교육장 위탁·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 위탁에 관한 규정 마련 조치사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3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식품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기 존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식품 제조업체는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유통 전문판매업 신고 불가* *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시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필요 개 선 식품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	무인 자동조리 기계 등을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이 수월해요	기 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푸드테크 시대에 맞춰 새로운 영업 형태가 등장하나 기존 영업범위에 맞지 않아 새로운 기준 필요 개 선 무인·조리까지 포함하여 자동판매기 영업 범위 확대, 시설기준 등 관리기준 정비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5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 시에만 제출하세요	기 존 영업 등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시 마다 제조방법설명서 제출 개 선 영업 등록 시 “제조방법설명서” 제출서류 제외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6	간판의 업종명 표시가 현실화 돼요	기 존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간판에 업종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표시 의무 개 선 간판에 해당 업종명 표시 의무 면제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7	기술 발달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기준 개선	기 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커피·음료류를 중심으로 관리기준**을 규정 –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100분의25로 산정하여 부과 * 단,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제외 ** 온도계 부착, 물탱크 뚜껑 설치, 음용수 온도(68℃) 준수 등 개 선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 범위 확대 등 관리체계 개선 – (영업의 정의 확대) 무인기계 등을 이용한 조리·판매 행위도 포함 * (현행) 완제품 자동 판매 → (개선) 기존 + 자동 조리행위 포함(라면, 피자 등) – (시설기준 개선) 자동조리 기능을 갖춘 시설까지 포함하여 현행화 * (현행) 커피자판기 중심 → (개선) 기존 + 무인 자동조리시설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8	공유주방 운영업자에 중복 부과되는 교육의무 완화	기 존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각각 식품위생교육* 이수 필요 * (공유주방 운영업자) 신규 8시간, 정규 3시간 (위생관리책임자) 신규 3시간, 보수 3시간 개 선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책임자 직무도 수행하는 경우 위생관리책임자에 부과되는 교육 면제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9	국제공동심사기관에서GMP 적합인증을받으면 국내 GMP 인증이 간소화돼요	기 존 MDSAP 심사를 받아도 KGMP 최초·추가심사 시 현장조사 실시하고 있어 중복심사(비용) 발생 개 선 미국, 일본 등이 지정한 국제공동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은 경우 국내 GMP 심사 시 제출자료 등으로 인정 조치사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개정
30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을 위해 GIFT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 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대내·외 인지도 상승으로 GIFT 지원 대상 확대 요구 증가 * 전세계적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증가 동향을 반영하여 전략적 신속 상용화 지원 및 신속심사 활성화 필요 개 선 • GIFT 지원 체계에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대상 확대 – 세포유전자치료제의약품과와 협업 수행 • GIFT 조기 진입 지원을 위한 GIFT 지정 신청 요건 완화 –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국내 신약의 GIFT 조기 지정 – GIFT 키움 협의체를 통한 규제 범위 논의 및 소통 강화 조치사항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신청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개정
31	식품용기구에 인쇄를 허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기 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있어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개 선 식품으로 인쇄잉크 등이 묻어나오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기구에 대한 인쇄 허용 방안 등 마련 및 기준 개정 조치사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32	디지털의료기기, 제품개발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 접근으로 사용이 쉬워집니다	기 존 소비자에게 사용이 생소한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성 향상을 위해 제품 설계·개발부터 사용적합성*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다양한 계층(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사용환경(가정환경, 대상연령 등) 및 디지털의료기기–하드웨어와의 호환성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적합성 평가가이드 부재 * 사용적합성(Usability) : 사용자중심의 의료기기 개발을 통하여 의료기기 오사용을 감소시키고 의료기기 사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요소 개 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시지각학습 기반의 소아대상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마련
33	신속하게 검사한 수입 축산물, 더 신선하게 만날 수 있어요	기 존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처리기간은 18일로 다른 식품에 비해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개 선 시험분석 장비 및 시험기법 고도화로 축산물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처리기한 단축 조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34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의무 개선	기 존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품별로 원료목록 보고 개 선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방법 합리적 개선 – 동일 내용물을 사용한 제품은 같은 그룹(제품군)으로 하여 동일한 원료의목록의 반복 작성을 없애는 등 일괄보고 가능 조치사항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5	K-푸드를 더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어요	기 존 전량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임에도 매건 수입신고 및 검사 실시 개 선 매년 수입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외화획득용 원료는 수입신고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통관 지원 조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36	허가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제품 허가업무를 혁신합니다	기 존 의약품 허가와 정책이 별도의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어 허가 현황 등에 기반한 정책 반영 등을 위하여 조직적 개선 필요하고, 민원 처리 완료 후에는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나, 의약품 허가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의 제기에 대한 공식적 조정 창구 부재 개 선 • 허가부서를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제품 3국으로 재배치 하여 허가정책 집행,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정책 개선 선순환시스템 구축, 허가와 정책 연계성 강화 • 허가부서의 조정 기능 신설, 의약품 허가 과정 중 자료 보완사항에 대하여 업체 요청에 의해 개최 가능한 조정협의체 시범 운영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개정
37	음식판매자동차 교체시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허용	기 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이나, 차량 변경 시에는 영업장 시설 변경으로 보아 폐업 후 재신고 필요 개 선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차량 변경시 폐업 후 재신고 없이 차량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개선 조치사항 광역지자체에 행정처리 안내공문 시행
38	혁신의료기기 심사 평가 정보공개로 지정율이 높아집니다	기 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미지정 결과 통보 시 기관별* 주요 사유만을 요약하여 제공 * 식약처·심평원·보의연·진흥원 개 선 각 기관별·항목별 평가 정보 구체적 제공 조치사항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결과 공개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
39	창업자의 금쪽같은 시간, 위생교육은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기 존 식품 영업자는 창업 전에 미리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개 선 찾아가는 위생교육 실시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업주들이 참석하는 편의점 본사 창업교육과 연계) 조치사항 찾아가는 위생교육 간담회 실시
40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적용대상 품목 확대	기 존 시범 운영 중인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적용대상 범위가 제한적 *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 개 선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확대(1년) * 일부 항암제 및 생산·수입업체가 소수인 품목 등을 포함, 약 2,806개 품목 추가 조치사항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 마련
41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으로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감이 해소돼요	기 존 생산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필요 개 선 생산실적 보고를 2월 말일까지 연장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2	시청각 장애인도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 존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강화 요구 개 선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기준, 방법 등 가이드라인 마련, 컨텐츠 개발 조치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43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현장실사 기준 합리화	기 존 수입 원료의약품 변경·등록(DMF)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평가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 현장실사를 등록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순차 처리 개 선 국내 신속 도입이 필요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원료의약품 등록 GMP 현장실사를 일정기간 내 우선실사 대상으로 처리 조치사항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개정
44	간장, 소스류 숙성 시 오크칩 사용 허용	기 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오크칩(바)' 등재(제2019-57호, '19.7.3.) - '발효식초'와 '주류'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제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 사용하도록 정함 * 오크칩 허용 품목 : 과실주('16.5~), 식초('18.2~), 주류('19.7~) 개 선 '간장'과 '소스' 제조 시 착향 목적으로 오크칩 사용기준 확대 조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45	냉동제품에 합포장되는 실온·냉장 소스제품 등의 용량기준 완화	기 존 냉동제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합포장하여 냉동할 수 있는 실온 소스는 포장단위 20g 이하의 제품만 허용 - 냉동제품 보조용 소스 포장단위 제한에 따라 다양한 제품 구성에 어려움 개 선 1회 섭취하는 양으로 포장된 식품이라면 포장단위 중량과 무관하게 냉동제품의 보조용으로 냉동유통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46	임상시험 동시 신청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시작이 빨라집니다	기 존 동일 성분 임상약은 품질자료 일괄변경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승인번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초의 임상시험계획서 1건 승인받은 후, 변경승인을 통해 계획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개 선 동일성분 임상약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최초 승인받은 임상약에 대해 다수의 계획서 동시 신청 허용 가능 조치사항 임상시험 계획 동시 신청 절차 마련
47	바이오의약품 GMP 서류 평가 대상 확대	기 존 바이오의약품제조소는 품목 최초·변경 허가 및 정기점검 시 GMP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근 실사일로부터 무균업소는 3년, 비무균업소는 5년 내 GMP 실사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 대신 서류평가로 갈음 개 선 GMP 실사이력 인정 범위를 작업장(건물)에서 제조소(공장단위)로 전환하여 실사 이력이 있는 동일 제조소 내 건물이 추가된 경우도 GMP 실사이력을 인정하여 서류평가로 갈음 조치사항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8	인공지능(AI)으로 한약 관능검사 정확성·효율성을 높여요	기 존 한약재 수입통관 시 관능검사 위원의 오감(五感)에 기반한 관능검사 개 선 한약재 2종에 대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보조기술 시범모델 구현 조치사항 한약(생약) 관능검사 보조기술 시범모델 운영
49	품질검사 지원으로 안전한 인체조직을 공급해요	기 존 대한적십자사의 인체조직 기증자 혈액검사(NAT) 지원 중단에 따라 국내 기증자에 대한 검사 지연으로 인체조직 수급에 어려움 발생 개 선 인체조직 기증자 혈액검사(NAT) 지원 사업 실시 조치사항 인체조직 기증자 혈액검사 지원사업 실시
50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자에 대한 처분면제요건 확대	기 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 시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 * 신분증 위·변조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되는 경우에만 처분 면제 개 선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등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조사 단계에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개정
51	환자·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 기준이 마련돼요	기 존 환자·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성능 등 개발 기준이 없어 의료기기 개발, 제품화가 어려움 개 선 사용자 특성, 사용공간, 음성인식·자율주행 기술 적용수준에 맞는 맞춤형 자율주행 성능평가 등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52	기존 포장재의 화장품 추출물 성분 표시기준 변경 이행 유예기간 연장	기 존 추출품 화장품 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23.11월)과 동시에 개정일부터 1년 동안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개 선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개정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유예기간 연장 조치사항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광고 지침 유예기간 연장 안내공문 시행
53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의료기기 품목이 확대돼요	기 존 인터넷으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외 제품은 종이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분실 우려 및 출고 후 최신 정보제공(주의사항 등)이 어려움 개 선 소비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품목 확대 및 식약처 의료기기 홈페이지를 이용한 첨부문서 인터넷 주소 제공 조치사항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54	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로 다양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 존 화장품의 포장에 명칭, 전성분, 영업자 연락처 및 사용기한 등 인쇄하여 제공 개 선 화장품 표시·기재 정보를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조치사항 화장품 분야 e-label 시범사업 운영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5	제외국 인정원료를 허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가격경쟁력이 올라가요	기 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은 규정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음 개 선 국제조화를 위해 제외국 등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사전 확대 조치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개정
56	이제 마리나선박(요트,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	기 존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 부재 개 선 마리나선박도 영업신고 가능토록 인허가 신고규정 마련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57	덩어리치즈를 소량으로 살 수 있어요	기 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잘라서 판매·구매할 수 없음 개 선 덩어리 치즈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판매하거나, 작은 큐브 형태로 포장된 벌크 제품을 소포장하여 판매 가능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58	싱가포르로 국내 의약품 진출이 수월해져요	기 존 한-싱가포르 간 의약품 GMP 양해각서('19.11)를 기반으로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개 선 한-싱가포르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협상 및 체결 조치사항 한-싱가포르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 체결
59	수입 의약품의 검체 보관의무 완화	기 존 수입 의약품의 경우 약화사고 시 원인분석을 위해 수입업자에 일정량의 검체* 보관의무를 부여 * 완제품 제조단위로 2회 시험분량(단, 무균 시험 및 발열성 물질 시험은 1회 분량) 개 선 희귀의약품 등 소량 수입 고가 의약품의 보관의무 부담완화를 통해 환자에게 충분한 공급 촉진 조치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개정
60	세포배양식품 기준 마련으로 안전하게 제품화 할 수 있어요	기 존 기준·규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등은 식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화를 위한 세부인정 기준 필요 개 선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원료(성분)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원료 목록화 및 제품화 인정기준 제공 조치사항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
61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기 존 의료기기 판매업 등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와 동시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신고 필요 개 선 사업자등록 말소 시 별도의 폐업 신고없이 직권 말소 처리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개정
62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완화	기 존 퇴행성 질환 진단 솔루션 등 디지털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 허가 처리 기간 단축 필요 개 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임상심사시험위원회(IRB)의 심사만 거치고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3	위생용품 영문증명서 발급으로 수출이 원활해 졌어요	기 존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 발급제도 부재로 영업자가 공문(식약처)을 직접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수출국 제출 개 선 위생용품 수출지원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 영문 증명서 양식 마련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64	자사제품 제조용 용도변경 신청자 범위 확대	기 존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판매용) 신청가능한 영업자는 제조·가공업자로만 한정 개 선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모든 영업자(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용도변경 신청 허용 조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65	위생용품 부적합 재검사 이의신청 범위 확대	기 존 영업자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하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불가 개 선 민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66	진단소프트웨어 임상시험의임상시험기관 외 수행 허용	기 존 모든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지정받은 임상시험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하여, 후향적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서만 실시하여야 함 * 연구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험자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의료영상 등)를 조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임상시험 - 임상시험기관에 별도 장소 마련, 서버설치, 데이터분석 등으로 추가비용 및 시간 소요 개 선 진단보조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의무기록 데이터를 사용하는 후향적 임상시험의 경우 데이터 평가 등 일부과정을 임상시험기관 외*에서도 수행 가능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연구소 등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개정
67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재평가를 유예하여 수급이 원활해져요	기 존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등에서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나, 검체수급이 어려워 재평가를 위한 임상적 성능시험이 불가한 경우 등 발생 개 선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시 까지 재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평가 제외 요건 등 마련 조치사항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68	국제 추세에 맞추어 실험동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 존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 의약품 심사 시 전통적으로 요구해 온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시험 인정 확대 개 선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용한 자료 제출 규정 명문화 조치사항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등 개정
69	의료기기 영업허가·신고 시 등록기준지 작성항목 삭제	기 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일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기 수입업·판매업 신고시 불필요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토록 해 기업 불편·부담 초래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중이거나 집행면제 미확정 등 개 선 의료기기 수입업·판매업 신고 서식에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 조치사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70	캠핑장등 야외에서도 자동판매기로 삼겹살을 살 수 있어요	기 존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건물* 내 에서만 설치 가능 개 선 옥외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허용 조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1	일시적으로 영업장 면적 확장은 변경신고 없이도 가능해요	기 존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 마다 영업신고기관에 변경 신고 의무 개 선 행사장 운영 등으로 일시적(단기적) 영업장 면적 변경 시에는 행사 계획서 제출로 변경 신고 갈음 조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2	모든 달걀의 선별포장확인서 사본제공이 사라져요	기 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 공급 시마다 모든 공급처에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개 선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확대되어,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 사본 제공 의무 삭제 조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3	자사제조용 건강기능식품 원료 용도변경 허용	기 존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수입한 자사제조용 원료의 사용중단 등 사유 발생 시 용도변경(→판매용)* 가능하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자사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판매용) 미허용 * 용도변경 허용사유 : 폐업·파산·(원료) 사용중단 등 사유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타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개 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수입한 자사제조용 원료도 타 제조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용도변경) 허용 조치사항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74	건강기능식품 제조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도입	기 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연1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시평가 등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개 선 불시평가 유지는 불가피하나, 전년도 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 마련 조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75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도입	기 존 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금지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건강상담자, 위생관리자를 두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소분·조합 허용('20.7.~) 개 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위한 영업 신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률 근거 마련 조치사항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76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공급자의 변경사항 보고제 전환	기 존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개 선 소재지·운영자 등 중요사항은 변경등록, 경미한 변경은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매년 1회 보고) 조치사항 실험동물법 개정
77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	기 존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는 위생용품 제조 불가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개 선 새로운 재질의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조치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78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지정기관 외 참여 허용	기 존 임상적 성능시험은 지정 기관에서만 실시 의무가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등 특수상황 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에 양성환자가 배정되어 검체 확보에 어려움 초래 개 선 감염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임상적 성능시험 지정기관 외 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 허용 조치사항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개정
79	작업장 내 식품 비노출구역의 위생모/마스크 착용기준 완화	기 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토록 규정 개 선 제조시설 및 공정 특성상 식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종사자를 통한 이물 등의 혼입·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 의무 예외 조치사항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반영 및 배포
80	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	기 존 허가사항 변경 시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를 유예기간(1~3개월) 내에 변경 필요 - 실시간 안전성 정보 제공이 어려우며, 첨부문서 인쇄·관리비용 등 발생 개 선 허가사항 변경 시 e-label로 실시간 변경 - 실시간 안전성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별도 비용없음 조치사항 약사법 개정 및 위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27 여성가족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유사자격자 과정 신설	기 존 돌봄·복지와 관련된 유사자격증*을 가진 경우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만 가능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한 높은 진입 장벽 존재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개 선 신규자 과정 이외에 유사자격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교육내용 중복 등 불필요한 교육시간을 완화하는 '유사자격자 과정 신설(40시간)' 등 불합리한 과정 개선 조치사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기 존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업무'로 한정 개 선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 조치사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기 및 최소이용 시간 축소	기 존 아이돌봄서비스는 2시간 이상인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필요 개 선 서비스 최소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완화하고,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토록 허용 조치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지침 개정
4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목욕장업 제외	기 존 목욕장업이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지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개 선 목욕장업을 청소년수련지구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 조치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
5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기 존 현행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성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 개 선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성폭력 외 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 조치사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	지역 양성평등 환경조성 사업 행정업무 간소화	기 존 지역 양성평등 환경조성 사업 추진 시, 지역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각각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개 선 지역 양성평등 환경조성 사업의 성과지표 일원화* * 지역 센터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하여 지역 센터에 제공 조치사항 사업 운영 지침 개정
7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설치면적 기준 완화	기 존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설치신고 시 연면적 최소 99㎡ 이상(사무실, 전화상담실 2실 등) 확보 필요 개 선 연면적 79㎡ 이상, 전화상담실 1실로 기준 완화 조치사항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한부모가족 지원 실거주지 신청	기 존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개 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 불편 해소 조치사항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
9	면접교섭서비스 확대	기 존 '23년 가족센터 대상으로 공모하여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 운영 개 선 취약위기가족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가족센터(220개)에서 면접교섭서비스 운영 조치사항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
1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기 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개 선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누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조치사항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
1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 존 청소년(한)부모 90% 지원 대상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적용 개 선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90% 지원 대상 확대하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적용 조치사항 아이돌봄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
12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대상 및 기간 확대	기 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최대 36개월 간 자립지원수당(월40만원) 지급 개 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외에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도 자립지원수당 지급 가능, 지원기간도 36개월 → 60개월로 확대 조치사항 청소년사업 운영지침 개정

28 원자력안전위원회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핵주기시설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절차 완화	기 존 핵연료주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시 오기, 누락 등의 경미한 사항을 허가로 처리 개 선 오기, 누락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로 변경 조치사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	원전 상시검사 체계 구축	기 존 원전 정기검사 시기가 정비기간 등에 한정되어 원전 안전성 확인 및 업무 효율성 저하 개 선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 가능토록 하여 원전 상시검사 체계 구축 조치사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3	방사선안전관리 전담인력 업무대행 병행 허용	기 존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 업무를 각각 분리하도록 규정하여 유연한 인력 활용 제한 개 선 전담인력의 업무대행 병행(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을 허용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활용 가능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조치사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9 조달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획일적·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	기 존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 효과 발생 개 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및 감경 규정을 정비하고, 제재기준을 세분·명료화 ① (면책대상) 현행대리인 관계만에 한정 → 개선천재지변 등 합리적 사유 명시 ② (감경범위) 현행 1/2까지 감경 → 개선 잔여기간에 대해 1/2감경 추가 허용 ③ (제재기간) 현행 지나치게 포괄적 설정→ 개선 금액별 세분·명료화 조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성장지원	기 존 조달청은 기술력은 있으나 홍보나 마케팅 등 어려움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운영 중 - ①낮은 수의계약* 한도(2천만 원), ②벤처나라 등록 대기(격월 심사), ③짧은 지정기간(3+2년)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는 한계 개 선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및 성장지원 ① (판로지원) 수의계약 한도 현행2천만원 → 개선5천만원으로 상향 ② (진입지원) 벤처나라 심사 주기 현행격월 → 개선매월 심사로 개선 ③ (지정연장) 벤처나라 지정기간 현행 5년 → 개선 6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	혁신제품 계약방식 다양화로 첨단기술 성장 지원	기 존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혁신제품 수의계약 방식을 '구매'로 제한, 사용 기반의 구독방식(Subscription) 미도입 개 선 혁신제품 수의계약 요건을 '임차' 등을 포함한 구매가 가능토록 개정 특히, 의료기기 등의 경우 구독방식 도입은 후속 구매·수출에 기여 전망 조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자격 요건 완화	기 존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지격을 조달청 검사 등 품목으로 한정 개 선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시 신청자격 완화 -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 조치사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대체 제출대상 확대	기 존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제12조2항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실적이 없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지급각서 대체 불가 개 선 실적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급각서제출 대상 확대 - ① 원칙적으로 지급각서 제출을 허용하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입찰보증금 납부 요구 ② 가격등락이 심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규정 삭제 조치사항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
6	범주형 규격제 도입으로 과도한 기업제재 방지	기 존 우수제품 지정규격에 대해서는 계약이 가능하여 수요기관 현장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납품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對 기업 제재 빈번 개 선 규격에 범위를 부여하는 범주형(범위형) 규격제를 일부 물품에 시범 도입 조치사항 범위형 규격제 시범도입 추진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7	에어컨세척서비스 입찰참가 자격 완화	기 존 '에어컨세척서비스' 공고 시 비 전문업체로 인한 장비파손을 막기 위해 참가자격요건을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개 선 자격요건 완화 추진 조치사항 업계 의견 수용 후 정정공고
8	디지털서비스 물품등록 절차 개선으로 계약 기간 단축	기 존 조달청에서 디지털서비스 계약은 과기정통부 주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통보한 이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체결까지 지연상황 발생 * 조달청 계약은 계약대상별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전제되어야 가능 개 선 해당기업이 디지털서비스 선정완료 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확인서로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를 대체 조치사항 심사대상확인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급)로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 대체
9	LED 조명장치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기 존 LED 조명의 주요 부품인 LED PKG 등은 6개월 ~ 1년 사이에 상향된 부품이 출시되고 있어 규격 추가 절차가 빈번하게 발생 개 선 LED PKG 등 주요 부품 중 규격 상향이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된 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고효율 시험성적서)를 통해 성능 확인되면 규격 변경 승인 조치사항 LED 조명장치 규격 방안 마련
1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검토서식 표준화	기 존 공사와 달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물가변동 검토에 대한 표준화 서식이 부재하여 처리기간 장기 소요 개 선 물가변동 사전검토 서식을 표준화하여 처리기간 단축 조치사항 표준화서식 마련 및 배포
11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확대하여 공사원가 산정 자동화기반 마련	기 존 조달청은 공사원가 검토업무의 효율성 강화 및 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11만 여개*의 표준공사코드를 생성·제공 • 그간 표준공사코드 정비 부족 및 단가가 누락된 표준공사코드 공개 등으로 인해 수요기관의 표준공사코드 사용률은 34%로 극히 저조한 상황 개 선 수요기관의 표준공사코드 활용률 향상을 위해 표준품셈 등 산출기준에 따라 단가가 포함된 표준일위대가를 새롭게 마련 • 공사비 산정 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품셈과(국도·하천·항만)공사유형별 설계기준에 따른 공종별 표준일위대가 작성·제공 조치사항 공사유형별 표준일위대가 마련 및 공고
12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체결을 위한 '적격성 평가' 시 나라장터(업체로그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업체의 계약진행 현황 조회 가능하며,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이용 가능 개 선 전 분야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입찰, 계약, 등록 등 진행사항을 알림톡, e-mail,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 알림서비스 반영예정 조치사항 나라장터 홈페이지 반영 등 시스템 구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3	소방차량을 연중 상시구매 가능하도록 계약절차 개선	기 존 매년 규격이 변경되는 소방차량(소방펌프차 등 4종)의 경우, 1년 단위로 MAS계약을 체결하나, 현행 계약절차상 3월에 계약체결 및 쇼핑몰 등록 → 1~2월에는 수요기관이 쇼핑몰을 통해 소방차량을 구매할 수 없어 신속집행에 어려움 호소 개 선 소방차량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상시 구매가 가능토록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청 제안 규격 공지 및 적격업체 선정 통보 시점을 조정, 수요기관이 쇼핑몰을 통해 1월부터 바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사항 소방자동차 다수공급자계약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14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요건 합리화로 수출기업 지원	기 존 시범구매 횟수는 제품별 1회로 제한되어, 유망한 혁신제품이 국내 시범구매 이력이 있으면 해외실증 시범구매 참여 불가 개 선 현행 시범구매 횟수 제한에서 해외실증 시범구매는 예외로 하여 국내 시범구매 이력이 있어도 참여토록 허용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개정 및 혁신시제품 공고 반영
15	혁신제품 시범구매 평가의견 피드백 확대	기 존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혁신시제품 평가심의회를 거쳐 성공·보완·실패 등 판정 → 실패 판정 시 평가위원 의견을 해당 기업에 피드백하나 성공판정 시에는 별도 피드백 절차는 없음 개 선 시범구매 후 혁신시제품 평가심의회 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위원 의견 피드백, 성공판정시에도 규격 상향 등 제품 기술개발 등에 도움이 되는 평가위원 의견은 별도 피드백 실시 조치사항 제3차 평가심의회부터 성공제품에 대해서도 평가위원 의견 피드백 실시
16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한시적 확대	기 존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중소기업이 개발하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 분야로 지원 확대에 한계 개 선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운 미래 첨단기술, 전략산업 분야*로 한정하여 2년 한시 중견기업 참여 허용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17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활성화	기 존 Iot정보기기 등 첨단 분야의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벤처나라' 플랫폼에 진입하여 성장기반 확보 필요 개 선 부처에서 운영 중인 우수·창업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벤처나라' 플랫폼 등록시 우대하여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중기부의 예비·초기·도약 창업묶음(패키지) 우수기업, 과기부의 IoT 정보보호 우수기업은 벤처나라 등록시 가점 부여 조치사항 과기부 등 MOU 체결 및 가점 부여
18	군수품 원자재 검사체계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	기 존 군수품 원자재 검사는 현재 계약업체 창고에서 수행 → 업체는 창고 공간 부족, 촉박한 납품기한, 검사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일부 원자재 검사에 대한 애로사항 호소 개 선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 체계 개선 → ① 현재 계약업체 창고에서 수행 중인 원자재 검사를 담당공무원과 계약업체의 협의된 장소에서 검사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 개선 및 업무매뉴얼 개정 ② 품질보증계획서상의 하도급업체, 중간제품 가공공장에서 특정한 원자재를 검사하여 원자재 이동, 보관 등에 대한 업체 부담 완화 조치사항 국방상용물자 업무 매뉴얼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9	현장설치도 MAS 제품, 지나친 면허요건 완화	기 존 MAS는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로 계약이 가능하고 현장설치도 제품은 '공사업 면허' 보유를 필수자격요건으로 명시 → 조달기업이 해당 품명에 대한 '공사업 면허 취득 및 보유'를 위해 연 1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님 개 선 동일 품명 내에서도 현장설치도 외 납품장소하차도 계약(공사업 면허 불필요)도 가능토록 하고, 이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 * 품명 특성 및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현장설치도 제품과 납품장소하차도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치사항 현장설치도 제품 면허요건 완화방안 마련 및공고
20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기 존 다양한 중소, 벤처, 혁신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분절적 공급자 중심 위주로 제공 중 → 혁신적 조달기업 육성사업과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모사고 시너지도 제약 개 선 공공조달-부처간 협업으로 혁신적 기업의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범부처 협업 패키지 지원 *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개척 * 각 부처 발굴 우수 벤처,혁신기업 조달시장 진입 촉진 *One-stop 협업 지원체계 마련 조치사항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발표 및 시행
2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중복조사 부담 경감	기 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기간 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개 선 조사개시 전 일정 기간 자진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와 성실한 자진신고 건에 대해 감경을 고려하도록 조치하는 근거 마련 조치사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2	선금지급 한도 확대에 따른 시스템 구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기 존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에 따라 선금지급 한도가 확대(80%-100%) 되었으나, 전산시스템 구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미흡 개 선 신속한 선금지급 한도 확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후관리방안 안내 조치사항 선금 지급 한도 확대 관련 규정 등 개정
23	설계분야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실적평가 개선	기 존 설계용역 참여시 사업의 주된 전문분야(건축 또는 토목)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분야(기계, 소방, 통신 등) 참여기술인도 해당사업의 유사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만을 배치토록 하여 중소업체에 부담 개 선 사업의 주공종분야 외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 인정범위 확대 조치사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24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	기 존 규격입찰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는 수요기관이 하고 있으나, - 이의제기를 조달청에 제출(공문)하고, 조달청은 이를 다시 수요기관에 전달함에 따라 구매 지연 등 수요기관 사업 차질 초래 개 선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즉시 답변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5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방식 개선	기 존 외자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 시간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있음 개 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식을 기존 직접 방문에서 팩스 또는 메일 제출까지 허용함으로써 업체 직접 방문 불편 등 비효율 해소 조치사항 공고문에 개정사항 반영
26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제출서류 간소화	기 존 기술형 입찰 시 심의를 위한 제출서류(턴키: 15종, 기술제안: 12종)가 많아 입찰 참여 업체의 준비 부담 심각 개 선 부속 및 증빙자료에 속하는 서류(10종*)는 전자파일 제출로 대체 * 구조계산서, 공사비절감, 성능향상방안, 공사관리 방안, 각종계획서 등 조치사항 표준입찰안내서 개정
27	참여기술인 직무경력 평가기준 개선	기 존 등급에 관계 없이 공사 규모별로 정한 경력 연수로 평가 개 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를 요구 등급별 직무기간으로 개선 조치사항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28	참여요건 확대로 화초류 임대 서비스 성장 지원	기 존 화초류에 대해 직접생산을 요구한 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 선 직접생산(공장등록증+농지원부)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증을 가진 업체에게도 입찰참가를 허용 조치사항 정정공고 시행
29	품질점검결과 조치예고 의견제출기한 완화	기 존 품질점검결과 제재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청취 통지서를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 개 선 의견제출 기한을 당초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으로 완화 조치사항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규정 개정
30	획일적 CCTV 구성품 직접생산 관련 규격관리 개선	기 존 현재 CCTV 제조업체 중 함체가 부착되지 않은 금속기둥을 직접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규격서 구성품에 함체 포함 불허 → 수요기관은 함체를 별도 구매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해당 제품 구매에 소극적 개 선 규격서 상 구성품에 '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변경 조치사항 규격 관리방안 개정 및 관련업계 안내
31	군수품 원·부자재 검사 범위 재설정으로 기업 부담 경감	기 존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수행 시 완제품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자재에 대해서도 직접검사하여 업체 부담 가중 개 선 검사 수행 범위를 명확화하고, 중요도가 낮은 부자재에 대한 업체 자체 검사절차 수행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조치사항 군수품 원부자재 검사현장 샘플링 가이드라인 마련
3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명시적 기준 마련	기 존 종합심사(평가) 관련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를 통하여 직접방문제출, 우편제출로만 제출받아 심사하는 서류 존재* * 문화재 수리 실적확인서, 배치기술자 경력확인서 등 개 선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평가) 관련 입찰공고문의 심사서류 제출방법을 수정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3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따른 재점검 기간 완화	기 존 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할 경우 재점검은 경고일 또는 거래정지 시작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음 개 선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2항의 재점검 기간 연장 허용 조치사항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개정
34	안전관리물자 지정방법 개선으로 업체부담 경감	기 존 안전관리물자의 지정 기준이 품명 단위로 되어 있어 세부품명 중 안전위협 정도가 낮은 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불합리 개 선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안전 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 현행품명 → 개선세부품명 기준으로 안전관리물자 지정 세분화 조치사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35	소재·부품에 대한 조달시장 기반 성장발판 제공	기 존 수입대체,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부·장 산업을 육성 중이나 완제품 중심의 공공수요 특성 상 소·부·장 기업은 조달시장 진출에 한계 개 선 소·부·장 기업이 완제품 제조기업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참여를 허용 * 산자부 지정 소부장 으뜸기업 대상(43개) - 또한, 소부장 기업이 산자부 공인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경우 혁신제품의 특허 보유 요건을 면제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36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판매중지 제도 개선	기 존 MAS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위반, 자격상실, 판매중단 등의 사유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거래정지 조치 시행 중 * 판매중지 조치의 침익적 처분 성격으로 인한 법률적합성 원칙 위배가능성 및 이중제재로 인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개 선 유해물질검출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업체에게 유리한 판매중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되, 우선 업체에게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판매중지 조치는 삭제 추진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개정
37	국민체감(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활성화로 공공서비스 개선	기 존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관련 ①혁신제품 신청자격인 특허 취득에 과다한 시간 소요 ②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있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비중 저조 등의 문제 개 선 공공현안·혁신수요를 해결하는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은 진입요건·절차 간소화 및 시범구매 신속 지원 ① 수요기관, 국민제안 공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긴급한 수요인 경우 특허요건 면제 ② 지정된 제품은 별도 공고 없이 수요기관과 수시 매칭하여 시범구매 사업 신속 지원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
38	신속한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물품 대가 보장	기 존 단가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자재(품목)별 물가등락률 산출 등 물가 변동 입증자료 확보에 과도한 시간·비용 소요 개 선 ①가격변동 입증자료 다양화 ②가격조사 대표단체 인정범위 확대 ③대표품목 가격조사 결과 일괄적용 등 유연·신속한 단가조정 방안 마련 조치사항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단가조정지침 마련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9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대상 MAS 2단계 경쟁 예외 허용	기 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구매금액이 MAS규정상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해서 이미 설계에 반영한 관급자재를 구매할 수 없음 개 선 2단계경쟁 예외 대상에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심의회에서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제품'으로 선정된 경우를 추가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40	신속집행을 위한 MAS 계약연장 사전안내 강화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계약종료 시점에 조달기업이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을 선택하여 계약 유지 가능한데, 계약연장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여 요청 시 계약담당자가 확인 후 즉시 연장계약이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적격성평가에서 가격협상까지 모든 계약절차를 거쳐 상당기간 소요 개 선 계약연장 시점을 놓치는 기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연장 안내를 강화*하고, MAS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약연장업무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우선·신속처리 협조 조치사항 계약종료안내횟수 증가 시스템 개발
41	제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복수 등록	기 존 주요부품 원산지 표기는 단일국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IT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가로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개 선 일부 품명*에 한해 여러 국가를 복수원산지로 설정 허용 * 다양한 국가에서 주요부품 등이 생산되고 공급국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품명 조치사항 컴퓨터, 노트북 등 21개 품명 원산지 복수등록 허용지침 마련
42	MAS 원산지위반 중점물품 자재수불부 제출 폐지	기 존 '15년부터 'MAS 원산지 위반 중점물품 관리방안' 시행 중이나 제도 시행 이후 위반 사례 없어 불필요한 절차 부담으로 잔존 개 선 관련 지침을 폐지하고, 원산지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대한상의에서 발급하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제출토록 규정 개정 조치사항 다수공급자계약(MAS) 원산지 위반 중점물품 관리방안 폐지
43	첨단융복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요건 완화	기 존 로봇·미래자동차 등 공통 규격이 없으나 상용화·공통 사용 용도·제품 간 대체성 등 MAS 취지에 적합한 신산업 분야 제품이 다수 존재 개 선 산업 분야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 공통 상용규격이 부재하더라도 개별업체가 제시한 규격을 기반으로 MAS 허용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44	사회적 약자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장벽 완화	기 존 MAS에 신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중 적격성 평가 통과 이후, 일정한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품목에서 배제되어 진입이 제한 개 선 가격협상품목 배제 시 납품실적 적용예외 대상에 사회적 약자기업을 포함하여 창업 3년 이내 기업과 동일하게 완화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45	우수제품 기술분쟁 발생 시 지정보류 제도 개선	기 존 우수제품 지정심사 도중 적용기술 관련 법률분쟁 발생 시,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2차 심사상정 보류 *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적용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1차심사(기술심의회)와 그 이후 조달품목 타당성·계약관리 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2차심사로 구성됨 개 선 지정보류 기간을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시까지로 하고, 필요 시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2차심사 상정 보류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6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중지'신설로 선량한 기업 피해 방지	기 존 천재지변에 따른 생산시설 파손, 예고 없는 인증 의무화 등 업체 귀책 없는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정지되지 않음 개 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지정기간 중지' 제도 마련(최대 6개월)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47	우수제품 지정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계약절차 간소화	기 존 우수제품이 지정되더라도 계약과 판매까지 장기간 소요 * 우수제품 지정 이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 가능 개 선 ❶ (유예기간 연장) 현행최대 120일 → 개선최대 180일(60일 추가) ❷ (계약절차 간소화) 일괄적 재계약 →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선택 허용*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48	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NET·NEP에 특허공보 제출 삭제	기 존 지정신청 시 NEP, NET인증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NEP, NET와 특허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특허원부 불필요 개 선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시 NEP, NET에 대한 특허등록증, 등록원부, 등록공보 사본 제출 삭제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49	우수제품 지정기업 협업체 참여기업수 확대	기 존 우수제품은 지정기업의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생산시설이 없는 기술기업(추진기업)과 제조기업(참여기업)의 협업을 1:1 협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납품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 개 선 협업체 구성 시 참여기업 수를 최대 2개로 확대(현행 1개→개선 2개)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50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을 지자체 R&D 사업까지 확대	기 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은 지정기간 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개 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중 기술닥터 사업 성공 시에도 지정기간 연장 1년 허용 조치사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51	상용SW 규격 추가 절차 신설	기 존 기술변화에 따라 규격추가 필요한 상용SW의 경우 규격추가 절차가 없음 개 선 규격추가 절차 신설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52	중소 SW개발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기 존 '21.12월 상용SW 3자단가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질 인증(GS·CC) SW로 한정하고, 그 외는 MAS로 전환 개 선 제3자단가(수의, 중소제조)와 MAS(경쟁, 외산·중견·대기업SW) 분리, 상용SW 특성을 고려하여 저가 출혈경쟁 방지를 위한 제안가격하한율 도입, 기술경쟁을 위한 기능성·사용성 평가 신설 조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정
53	기술용역 대상 협상에 대한 계약 기준 마련	기 존 기술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평가기준 부재로 조달요청을 반려하거나, 평가 가능한 분야가 있는 부서(정보기술, 서비스 등)로 조달요청 안내 개 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기술용역 분야를 추가하고 국토부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기준 마련 조치사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4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낙찰자 지정 전 참여기술인 교체 허용	기 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 참여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참여기술인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업 대응 곤란 개 선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교체 허용 조치사항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55	낙찰자 결정 전 일부 구성원 결격 시 재심사 방법 개선	기 존 기술용역 종심제에서 낙찰자 결정 전 대표사 외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 제외 후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토록 규정(지분율 조정 불허) 개 선 잔존구성원의 지분율·분담내용 조정 및 구성원 추가 허용 조치사항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56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한 합성수지제창 세부규격 삭제	기 존 합성수지제창은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 체결 시 세부규격 '가로×세로×두께'를 정하여 ㎡단위로 계약을 체결창의 경우 납품 시 계약된 납품요구 규격이 아닌 실제 현장의 실측규격에 따라 설치가 필요하므로, 납품과정에서 규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 또한 종합쇼핑몰에 수요기관의 필요에 정확히 맞는 세부규격이 없어 MAS가 아닌 총액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 개 선 규격변경이 빈번해 실효성이 낮은 기존 세부규격(가로×세로×두께) 삭제하고, 구매단위를 ㎡(크기단위)에서 ㎏(무게단위)으로 변경 조치사항 합성수지제창 개선사항 반영 신규 공고
57	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벽천장용흡음재 구매방법 개선	기 존 벽천장용 흡음재는 사용 용도(실내장식용, 마감재용)에 따라 건축법령 상 요구되는 화재대비 성능기준이 상이함에도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구분 없이 계약 개 선 기존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구매하던 벽천장용흡음재를 흡음용마감재, 흡음용장식재, 금속천장재 3개 세부품명으로 분리 구매 추진 조치사항 기존공고 개정 및 신규 공고
58	군수품 규격 완화 및 장병 선택권 강화	기 존 낮은 품질수준의 제품으로 장병들의 불만은 높이지고 있으나 국방규격서의 제원으로는 시중 판매업체 입찰참여 제한되어 장병들 선호제품 선택 불가 개 선 장병 개인선호도 높은 군수품에 대한 국방규격 제원을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시중제품을 장병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MAS계약(2단계경쟁 예외) 추진 조치사항 군수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59	야외운동기구외 21종 MAS 진입시 제출서류 완화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시 시험성적서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KC)를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음으나,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발급 시 시험기관에서 시험결과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 시험성적서 제출은 업체에 이중부담 개 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시 시험성적서 제출은 폐지하고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만 제출토록 정정공고 추진 조치사항 정정공고 시행
60	공공주택 계약 수주 쿼터제 폐지	기 존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서 일부 건설사의 수주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수주 쿼터제 도입하여 운용 개 선 공공주택 계약업무 조달청 이관에 따라 조달청 심사 기준을 제정하면서 종심제 수주 쿼터제 폐지하여 우수업체 참여 확대 및 입찰 경쟁성 강화 조치사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1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완화	기 존 공공주택 종심제 입찰 시 요구하는 현장대리인의 경력 심사 기준은 조달업체의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 개 선 현장대리인 기타직위 경력 기준 완화(기존 20년→개선 12년) 조치사항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62	공공주택계약 심의과정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 확대	기 존 설계·감리 분야만 심의(평가) 과정을 입찰업체 대기실 TV로 실시간 중계하고, 공사 분야는 비공개로 진행 대형 발주기관 중심으로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과정 공개방식(중계 방식, 관람대상 등) 개선 개 선 공사를 포함한 전(全) 분야의 공공주택계약 심의과정 및 맞춤형 사업의 기술형입찰·설계공모 심의 과정을 'YouTube'로 실시간 중계하고, 관람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 조치사항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 시행
63	일괄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 확대	기 존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한하여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재공고 후 유찰 시 수의계약 세부 절차·방법을 마련하여 수의계약 업무 처리 개 선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 확대 조치사항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개정
64	기술형입찰 공사 입찰자료 사전공개	기 존 기술형 입찰공사는 입찰공고 후에 '입찰방법, 공사범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세부 자료 확인이 가능하여 입찰참가 여부 검토 기간 부족 개 선 기술형입찰 공사관련 자료를 입찰 공고 전에 사전공개하여 입찰참여를 돕고, 참여 희망 업체의 의견 제시 기회 제공 조치사항 기술형입찰에 대한 입찰 주요정보를 정식 공고 전 나라장터에 게시
65	기술형 입찰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입찰 안내서 제공	기 존 기술형 입찰안내서에 독소조항으로 해석되는 발주기관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입찰자가 부담하게 될 추가 공사비 발생 개 선 건설사 입찰담당자 의견을 반영하여 독소조항을 제거한 표준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 조치사항 기술형입찰 표준입찰안내서 도입
66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실증기간 단축	기 존 신속한 해결책 발굴이 필수인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요건·절차 등이 과다하고, 지정 이후 시범구매까지 장기간이 소요 ❶ (지정요건·절차) ①특허 취득 요구, ②공모 횟수 제한(연 4회), ③2단계 평가* * (先) 공공성 평가(공공적합 등에 중점) → (後) 혁신성 평가(기성품과 차별성 등에 중점) ❷ (시범구매 절차) 계약까지 5단계 절차(4~6개월 소요)를 거쳐 실증 지연 개 선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❶진입요건 완화 및 ❷시범구매 기간 단축 * 개선 : ①기본계획서 제출 → ②수요매칭(수요조사 공고, 시범 사용신청서 제출 생략) → ③시범구매 계약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개정
67	혁신제품 단가계약 요건 완화	기 존 그간의 혁신제품 구매는 총액계약 위주로 이루어져 제품 구매 시마다 별도의 계약절차 필요 → 기관·기업의 불편 호소 개 선 혁신제품 단가계약 모집요건을 완화하고, 계약기간도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부여하여 혜택 확대 조치사항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8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의 혁신제품 진입 완화	기 존 지역사회, 개도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기업 제품*은 혁신제품 제도 취지에 부합하나 별도의 연계 체계 부재 개 선 ❶지역 공공문제 해결 R&D 결과물과 ❷개도국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코이카 CTS 제품은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완화"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
69	기술혁신성 우수기업 대상 혁신제품 평가 완화	기 존 산업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등 공공시장 혜택이 없어 시장진입에 애로 개 선 부처에서 기술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은 "혁신제품 진입 요건 완화 또는 혁신성 평가 일부 면제"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
70	공공성 평가 旣 통과업체에 대한 차기 공공성 평가 면제	기 존 공공성 심사 통과업체만 혁신성 심사에 참여하는 2단계 평가 체계 도입후, 직전 공모시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다음 공공성 평가에서 불합격하는 사례 발생 개 선 종전 공공성 평가 통과업체는 다음 차수 공공성 평가를 면제하여 혁신성 평가에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개정
71	혁신제품 시범구매 범부처 정책 연계 강화	기 존 매칭 회차별로 단발성 수요-공급 연결에 치중,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략화하는 체계 미흡 개 선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별 중점 추진 정책을 지원토록 부처 수요를 반영하여 시범구매 재원 배분 조치사항 2024년 신식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발표
72	스카우터 민간위원풀 확대	기 존 현행 혁신제품 스카우터는 100명 수준으로 정부 정책연계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전문가 부족 개 선 신성장·바이오 등 정책연계 및 국민체감형 혁신제품 발굴 등을 위해 스카우터를 150명까지 확대(현행 105명 → 개선 150명까지) 조치사항 스카우터 점진적 확대(120명 → 158명)
73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노트북) 불필요한 표준규격 폐지	기 존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노트북)의 성능, 안전성, 신뢰성 등 확보를 위해 '92년도부터 표준규격*을 정해 운영 중 *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폐지(행정자치부 고시, '18.1.1. 시행) 개 선 現 노트북 MAS 계약에 부적합한 표준규격(불필요한 시험항목 및 인증자료 등) 폐지 조치사항 노트북컴퓨터, 태블릿컴퓨터 등 정정공고
74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환 기관 대상 시스템 이용 수수료 면제	기 존 현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플랫폼(나라장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28개) 난립하는 한편, 나라장터는 입찰·수의시담 등 기능 사용 기관들에게 건별 1~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의 부담 존재 개 선 이용전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대상 시스템 이용수수료 면제를 통해 통합작업을 원활히 마무리 조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75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기 존 교육이수 실적 및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를 심사신청 시 제출하게 되어있어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 발생 개 선 교육이수 실적 및 신인도 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선택 제출서류로 지정, 선택제출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조치사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개정
76	보증수수료 완화로 조달기업 경영부담 경감(조달기업 공제조합 신설)	기 존 업종별 공제조합 가입(면허 필요)이 어려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대부분(83%, 1만여 기업)이 S社의 높은 보증수수료에 노출 * '23년 기준 S社 MAS등 업체 평균 수수료율 : 0.52% / 전체 업종 평균 : 0.20% 개 선 자발적 출자금을 통한 보증사업 운영으로 저렴한 보증수수료 책정, 조달기업의 보증사고율 저하*를 통한 건전한 조달시장 구축 조치사항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77	LH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계약업무 이관	기 존 입찰 심사기준이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개 선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 조치사항 업무 이관 관련 규정 제정
78	대통령실 협업 우리동네 혁신제품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공모	기 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중인 '혁신제품 제도' 중 수요자제안형(기관·국민 제안과제)을 통해 발굴하는 혁신제품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 개 선 우리 동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우리동네 혁신제품' 발굴(대통령실 국민제안 플랫폼 활용) 및 보급 추진 조치사항 우리동네 혁신제품 공모 및 인큐베이팅 실시
79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방안	기 존 '13년 구축된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련 제도의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갑을관계로 인해 자재·장비대금 직불 이용률이 극히 낮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 개 선 기 구현된 하도급지킴이 대금 직불 발주-원도급-하도급 기능 이용률 제고를 위한 현장지도·인센티브·의무사용 선순환 방안 모색(국토부, 조달청 협업) 및 관리방안 제고, 권역별 사용자 교육 추진 조치사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및 권역별 사용자 교육 실시
80	MAS 중간점검 주기 완화	기 존 매1년마다 1회(통상계약기간 3년, 총 2회 실시)의 MAS 중간점검 실시중 → 업체는 중간점검 이외에도 계약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인허가·인증 등 변경사항을 통보해야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정지 처분을 부여받고 있어 중간점검은 이중의 서류부담을 초래 개 선 매1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점검을 1년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계약기간(3년기준)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점검 실시, 서류부담 완화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81	기술형 입찰 관급자재 제안범위 확대	기 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은 국가계약법에서 낙찰자 선정 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 하도록 규정 - 예정가격은 관급금액을 미 포함하여, 입찰자의 관급금액 변경을 제한 개 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이면서, '입찰금액+관급금액 합계액이 예정가격+관급금액 합계액이하'인 자 중에서 낙찰자 선정 조치사항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2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 판매 재개 허용	기 존 다수공급자계약은 쇼핑몰등록 후에도 경쟁구조 유지가 원칙 ❶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의 공급자가 있어야 쇼핑몰 등록이 가능 ❷ 쇼핑몰 등록 후 3개사이상 공급자자에서 1개사만 남은 경우 귀책유무에 관계없이 3개사이상 등록시까지 판매중지 개 선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신속한 판매개시 회복 조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83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계약 판매중지사유 개선	기 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계약에서①타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②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중인 경우 판매중지 조치 개 선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과 무관한 위반행위, 미확정 위반행위는 판매중지 조치 유예 조치사항 한시적 규제유예 안내공문 시행
84	조달청 인지세 부과기준 개선	기 존 2011.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인지세 부과 중 개 선 인지세법 및 민법 등에서 정한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제정 조치사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제정
85	소재·부품에 대한 조달시장 기반 성장발판 제공	기 존 수입대체,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부장 산업을 육성 중이나 완제품 중심의 공공수요 특성 상 소부장 기업은 조달시장 진출에 한계 개 선 소부장 기업이 완제품 제조기업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참여를 허용하고, 소부장 기업이 산자부 공인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경우 혁신제품의 특허 보유 요건을 면제하여 혁신조달시장 진입 촉진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86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추진	기 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기술개선으로 규격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정과 동일한 절차(기업신청→조달청 검토→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만 가능 개 선 허용절차 간소화(2단계, 기업신청→조달청 검사) 및 수시 심사로 전환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87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기 존 혁신제품은 기업규모 구분 없이 제품 혁신성·공공성을 평가·지정함에도 시범구매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 개 선 우주항공, High5+ 첨단산업* 등 중소기업 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한정하여 중견기업 참여 확대 * 2024년 경제정책 방향(1.4 기재부 발표)에서 집중 육성 분야로 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미래 등 조치사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88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및 보증율 인하	기 존 비축물자 외상판매 시 이자율은 소기업 2%~대기업 5.4%로 차등적용, 대여물자는 지급보증서 종류별로 120~130% 적용 개 선 외상판매 이자율은 기업별 0.3p%, 대여물자 보증율은 현 120%에서 110%로 인하 조치사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인하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9	나라장터 이용 시 지문입찰 의무폐지	기 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는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여 지문을 의무등록 개 선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시까지 지문입찰 의무폐지 * '24년 하반기 시스템 개편 시 지문인증을 간편인증으로 전환예정 조치사항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 및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 고시 제정 등
90	종합심사 대상공사 PQ심사 중복절차 개선	기 존 종합심사 대상공사(추정가 300억 이상 공사 등) 실시업체가 받아야 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심사는 평가항목이 일부중복되어 불필요한 시간·비용부담 발생 * PQ 수행기간 약 17일 의무소요 개 선 종합심사 대상공사는 PQ를 생략하여 계약기간 단축 조치사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91	벤처창업기업 혁신제품 지정요건 유예	기 존 혁신제품은 상용화 전이거나 거래실적이 극히 적은 경우 등*에만 선정하여 중소기업 초기개발·판매 제품은 혁신제품 선정 곤란 *제품단가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근 1년 이내 발생 매출 개 선 조달청 전용 플랫폼(벤처나라) 등록 제품은 최근 매출 요건을 1년 → 2년으로 확대 허용 조치사항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서 변경
92	조달청검사 대상품명의 이화학시험 생략기준 개선	기 존 조달청검사 대상품명의 이화학시험 생략기준은 '07년 제정된 것으로 현재 검사 현실에 맞지 않아 효과가 미비 개 선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생략 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실제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검사 소요일수를 개선하기 위한 생략기준 마련 조치사항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개정
93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기 존 비축물자 전매행위는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확보 없이는 전매 사실 확인이 곤란 개 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공 받아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조치사항 조달사업법 개정
94	조달통계 대상 확대	기 존 현재 공공조달통계는 계약에 관한 통계로 한정하여 생성, 공개 중 - 사용자는 입찰, 대금지급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 규모 전체의 정확한 파악 및 조달통계의 활용에 한계 개 선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통계 대상을 계약 →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공공조달 전분야로 확대하여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하고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 조치사항 조달사업법 개정
95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제출 의무 폐지	기 존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 - 신규 계약체결 및 중간점검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 제출 의무 개 선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 폐지 -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 조치사항 석재블록외 1종 다수공급자계약 정정공고

30 중소벤처기업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기 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통과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개 선 직접생산확인 현장조사와 동등한 법정인증 획득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 생략 조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2	중소기업간 경쟁 신제품 지정요건 완화	기 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요건에 신제품 특례조항 운영 • (추천기관) 중기중앙회, • (추천조건) 5개 기업 이상 & 구매실적 5억원 이상 개 선 신제품 특례조항의 기준 완화 • (기관확대) 중기중앙회→ 혁신단체 추가 • (조건완화) 5개 기업 이상 & 구매실적 5억원 이상 → 5개 기업 이상 & 구매실적 1억원 이상 조치사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3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 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에 일부 업종 (노래방·동물병원 등) 사용제약 개 선 노래방, 동물병원 등 일부 생활형 밀착 업종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조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4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 존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개 선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 조치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기 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개 선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6	노란우산공제 공제항목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확충	기 존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 개 선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자연재난, 질병부상 등 공제항목 8개로 대폭 확대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조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7	(규제뽀개기)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 허용	기 존 자율주행 이동체의 안전성에 필요한 보행자 안면인식 및 AI 학습 불가 개 선 자율주행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조치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집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8	(규제뽀개기)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보관기간 준수의무 완화	기 존 전기차 폐배터리는 경제성이 높음에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시 보관량 및 보관기간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 적용 개 선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및 재활용 기준 마련 조치사항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9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영업활동 규제 완화	기 존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개 선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허용 조치사항 직접생산 기준 개정
10	제조업의 공장등록(창업) 승인 시 절차적 부담 완화	기 존 제조업 창업기업의 공장설립계획 승인 절차의 복잡성으로 신청기업에 부담 개 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통해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 개선사항 도출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협의회 구성:지방중기청장(위원장), 지자체 업무담당,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 등 조치사항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민원처리협의회 개최
11	수출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유예	기 존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유예 및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에 3%P 이차보전 지원(~'24년) 개 선 현행 규제유예 지속 및 이차보전 지원 '25년까지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 조치사항 '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반영 및 공고
12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자율화	기 존 전통시장 外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을 지자체가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기부 장관 협의 필요 * 2천㎡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필요 개 선 지자체 협의 요청 시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조치사항 지자체 안내공문 시행
13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대행협의 신청요건 완화	기 존 현행 상생협력법의 납품대금조정협의는 협동조합 등이 수탁기업을 대행하여 협의할 경우 신청요건*이 필요하여,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따른 시간·비용 등 소요 * 납품대금에서 그 재료비가 10% 이상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등 개 선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수탁기업의 부담 경감 및 대행협의 활성화 추진 조치사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4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기 존 실증기간 제한, 장시간의 특구계획 변경절차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제도 활용 애로 개 선 특구 실증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고(2+2년 → 4+2년), 사업자 추가 등 계획변경 절차를 간소화 조치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
15	창업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포괄적 정의	기 존 창업 및 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열거하여 중소기업 참여제한 개 선 포괄적(사업을 수행하는 자) 방식으로 수정하여 중소기업 등으로 주체 확대 조치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16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기 존 중소→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3년 개 선 중소→중견 진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조치사항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7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지도·감독권한의 지방이양	기 존 중기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시 중앙부처 허가 및 신고수리 필요 개 선 중기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제외, 시·도지사에 설립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 이양 * 중기부장관이 정하는 재정지원, 업무위탁 받은 법인 등 예외규정 조치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18	중소기업지원사업 실적 산정 시 이차보전 대출금 반영 개선	기 존 대출금 이자 차액만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산정시 대출금 전액이 지원실적으로 집계되어 융자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개 선 지원실적 산정시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전액이 아닌, 실제 지원금액(이자 차액)만 집계되도록 개선 조치사항 '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반영 및 공고
19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및 신규 지정	기 존 혁신산업 실증을 위해 실증특례 기간을 기존 4년(2년+2년)까지만 허용하여, 과학적인 통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발생 개 선 혁신산업 실증을 위해 실증특례 기간을 최대 6년(4년+2년)으로 확대하여 신규 특구 지정 조치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

31 질병관리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역학조사관 수료요건 기준 완화	기 존 모든 역학조사관 전문과정 참여자에 대해 일률적인 수료요건을 적용하여 역학조사관 배출에 한계 개 선 민간경력에 대한 수료요건 인정 규정 신설로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과정 수료자를 조기 배출하여 의사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신속한 현업 진출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 조치사항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2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 지원대상확대	기 존 20대 고혈압·당뇨병 관리체계 부재 개 선 교육·상담 대상에 20대 추가 확대하여 관리체계 구축·강화 조치사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 개정
3	코호트 연구자원 활용 확대	기 존 코호트 연구자원의 종류, 규모 등 목록 정보만 제공 개 선 수집자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만성질환별 발생률, 건강행태의 변화 등 다양한 분석결과 제시로 연구 활성화 추진 조치사항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 보고서 발간 및 배포
4	의료기관별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요건 완화	기 존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시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개 선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은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확대 및 민간 연구 활성화	기 존 코로나19 데이터는 건보공단의 건강정보와 연계되어 빅데이터 구축하여 개방 중('22.4월~) 개 선 코로나19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확대 구축 및 민간 연구 활성화 추진 조치사항 코로나19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연계
6	역학조사서 열람·작성 권한 확대	기 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편시, 의료관련감염병 역학조사서 열람·작성 권한이 지자체에만 부여되어 유행 인지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역학조사 자료입력 누락 또는 적시 입력 어려움 발생 개 선 보건소 저장 단계 이후 모든 진행상태에서 의료기관이 CRE 역학조사서/ CPE 신고서 조회·열람 및 작성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역학조사서 추가보고, 수정사항 발생 시 적시 입력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 가능 * 질병청, 시도, 보건소 반려 절차 삭제로 추가보고, 신고 소요기간 단축 조치사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편
7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 존 감염병별, 대응 단계별, 시스템 분절, 정보의 비표준화로 인한 정보의 축적 및 분석·활용 한계 개 선 감염병 대응 全과정 시스템 통합 및 수집 정보의 표준화 등을 통해 감염병 적시·효율적 대응 강화 조치사항 검역법 개정
8	엠폭스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진료 편의 증대	기 존 (의사)환자 의무격리 및 격리병상 검사·치료(제2급감염병) 개 선 (의사)환자 의무격리 해제 및 외래 기반 검사·치료(제3급감염병) 조치사항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등 개정
9	실거주지 기반 결핵환자 관리	기 존 내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리보건소에서만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음(복약관리, 취약성평가,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개 선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환자관리가 어려울 경우, 실제 거주지의 보건소에서 관리 가능토록 이관 절차 마련(주소지 보건소와 실거주지 보건소 협의 하에 환자관리 소관 이관 공문 조치) 조치사항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
10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기 존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개 선 코로나19 방역 상황,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조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 개정
11	고위험병원체 불활성화 관련 보고 의무 완화	기 존 불활성화된 고위험병원체 이용 과정에서 생육이 가능함이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 보고 개 선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에서 고위험병원체의 안전성·위험성 등에 대해 자체 논의·판단하여 처리하고 질병청장 보고의무는 삭제 *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조치사항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32 특허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AI 기술을 활용한 심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기 존 심사·심판 인력 부족으로 주요국 특허청 대비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이 많아,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에 한계 개 선 AI를 활용한 심사시스템 실증연구 및 심판 시스템 고도화 조치사항 심사·심판 시스템 고도화 용역 추진
2	상표 출원인·권리자의 편의 제고(부분거절제도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제도 정비)	기 존 旣 시행된 규제 개선 제도인 '상표 부분거절제도'가 이의신청 절차에는 반영되지 않아 혼란 야기 우려 * (상표 부분거절제도)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등록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외 다른 상품에 대하서는 상표등록 허용 ** (이의신청)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중심사제도 개 선 이의신청 및 심사 절차 전반에 '상표부분 거절제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旣 시행된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조치사항 상표심사기준 개정
3	국유특허 제도 개선	기 존 통상실시로 제한된 국유특허 처분 원칙과 특허청에 집중된 처분·관리 업무 관장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저조 개 선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처분·관리 업무 일부를 발명기관에 이양하는 등 국유특허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개정 조치사항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4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부담 완화	기 존 업체 직무발명 인증제 유효기간은 2년이고 연장할 수 없어 기업 재인증 부담 발생 개 선 직무발명인증제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 인증부담 완화 조치사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
5	이차전지 기술 분야 전문임기제 심사관 확보	기 존 '23년 시급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를 채용 개 선 국가첨단산업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의 우수기술을 신속히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분야도 민간 퇴직인력을 활용한 전문임기제 채용 추진 조치사항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심사관 신규 채용
6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통한 경제안보 확립	기 존 특허정보(국내외 주요 연구자, 글로벌 선도·경쟁기업 현황 등)를 기술 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미흡 개 선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여 국가 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시행 조치사항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7	지식재산공제 제도 개선	기 존 지식재산공제 대출범위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선정시 필요한 기업부담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창업기업 등도 매월 최소 30만원 이상 부금 납입 필요 개 선 대출범위를 확대하고, 소액공제 제도 도입 조치사항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	직무발명 제도 개선	기 존 직무발명 보상절차별 세부기준 미비 및 직무발명 제도 보완 필요 개 선 직무발명 절차별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한 직무발명 제도의 전반적 개선 조치사항 발명진흥법 개정 및 직무발명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9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 해소	기 존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및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 중이나 현지지원체계는 부족 개 선 해외진출 기업 지원체계 개편 및 지재권 전문가 확충, 지재권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조치사항 해외 지재권 지원체계 개편 및 지재권 전문가 신규 채용·현지 배치
10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요건 완화	기 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안시설·장비 요건 과다 개 선 제한구역 및 고가 보안장비(침입차단·탐지시스템) 구비 요건 삭제 조치사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1	녹색기술 관련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제한 완화	기 존 녹색기술 관련 출원우선 심사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근거한 지원 기업 등으로 한정 개 선 녹색기술 특허분류(KPC)가 부여된 출원이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우선심사대상 녹식기술 특허분류 기준 개정안 홈페이지 게시
12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심사·심판 지원	기 존 타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를 처리하는 우선심사 대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로 제한 개 선 반도체 외에 이차 전지기술의 신속·정확한 심사·심판을 위한 우선심사제도 개편 조치사항 우선심사제도 개편
13	고객지향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한 제도 정비	기 존 ① 심판 당사자가 심결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개인 별 심결문을 받게 되는 기간에 편차가 존재하는 등의 불편함 발생 ② 지재권 심판 결과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부재 개 선 심판참고인제도 도입·시행 및 고객의 심판정보(심결 예정일) 제공 및 신속한 심결문의 송달 추진 조치사항 특허법 시행규칙 등 개정
14	상표조사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기 존 상표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 전담인력, 전용사무실 등 구비요건 과다 개 선 미공개 출원서 보관 캐비닛 구비, 미공개 출원서 DRM SW(디지털권한관리 프로그램) 설치 조건 삭제 조치사항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5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사업 관련 기업부담완화	기 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사업 중 지원기업이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 몰취 개 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 수행일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 후 기업부담금 반환 조치사항 IP-R&D 사업 운영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6	국제상표등록 출원제도 개선(국제상표등록 출원의 분할제도 도입)	기 존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 지정상품별로 출원을 분할하여 별개의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분할 불인정 → 심사 결과 일부 지정상품에만 등록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의 삭제 보정이 불가피 개 선 상표법 및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제도 신규 도입 조치사항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17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기 존 독립·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특허수수료를 면제하나 보훈대상자, 보훈지원대상자는 면제하지 않아 형평성 저해 개 선 보훈대상자, 보훈지원대상자도 면제대상에 포함 조치사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31 해양경찰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해상용 드론 단계적 도입	기 존 함정, VTS레이더 감시범위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상용 드론 개발 및 도입 필요 개 선 해상용 드론 도입 및 무인체계 기반 마련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 확대 조치사항 드론 48식 단계적 도입(~28년)
2	자율운항선박 대상 선제적 관제절차 마련	기 존 자율운항선박과 VTS간 정보교환 방법 및 상황·유형별 자율운항선박 관제절차 미비 개 선 자율운항선박과 VTS간 정보교환 방법 및 상황·유형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따른 평가 기준 등 마련 조치사항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개정
3	민간 구조참여 보상확대	기 존 해양구조·구난 등에 민간세력 동원 시 위험성과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구조에 참여했음에도 보상, 대우 미흡 개 선 민간의 구조·구난 등 참여에 따른 조업중단, 유류소모, 장비손상 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지원으로 국민 참여 확대(처우 개선) 조치사항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
4	서해 5도어장 여의도 58배 확장	기 존 서해 5도 어장 신설·확장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됨 개 선 연평도 남쪽 어장은 25㎢ 늘리고 대청도 남쪽에 144㎢의 어장을 신설하여 서해5도 어장은 총 2024㎢가 됨(169㎢확장) 조치사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5	민간구조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조참여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기 존 해상인명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고도화라는 국정과제 이행 등 민간구조 활성화 정책 추진 개 선 해양재난구대원의 위촉, 해촉, 조직 및 임무를 규정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조치사항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화상조사 제도 도입	기 존 거동 불편 등 출석조사가 불편하거나 보복 우려 등으로 참고인 등이 출석 기피하는 경우 사건 경중에 따라 전화조사 또는 수사관의 직접 방문을 통한 출장조사 시행 중 개 선 공간적 제약 없이 인터넷과 간단한 장비만으로 화상조사가 가능한 차세대 KICS 내 화상조사 기능 구현 및 활용 조치사항 원격화상제도 관련 내부 지침 마련 및 화상조사 제도 실시
7	VTS 관제구역 표기방법 개선	기 존 VTS센터의 관제구역이 GPS좌표로만 표기되어 유관기관 및 이용자의 혼선 발생 개 선 관제구역 GPS 좌표와 함께 관제구역도(그림)를 표기하도록 고시 개정 조치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
8	함정 경정비 위탁사업 추진	기 존 함정 승조원이 직접 정비 시행 개 선 민간 전문업체 위탁 정비 실시 조치사항 계약에 의한 민간전문업체 위탁 정비 실시
9	자율운항선박 항해시스템 평가기준 마련	기 존 자율항해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준 미비 개 선 자율항해시스템이 VTS 정보를 신속·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조치사항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제정
10	선박펀드 노후함정 대체건조	기 존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위해서는 단기간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나 국가재정 여건상 건조비용을 집중 투입하기에는 한계 발생 개 선 선박펀드를 활용하여 함정건조를 추진하여 단기간 큰 자금이 필요한 건조비용을 분산하여 재정부담 완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 조치사항 선박펀드 활용 함정건조 10척 발주
11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개선	기 존 서해 특정해역 법령근거 없이 조업보호본부 의결로 야간 조업금지 시행 중 * 유사한 동해 특정해역은 야간조업 허용 개 선 서해 특정해역 야간 조업금지 상당성 검토하여 야간 조업금지의 법령 근거 마련 또는 야간조업 허용 조치사항 조업보호협의회 지침 의결
12	저도·북방어장 조업규제 개선	기 존 저도·북방어장 조업질서 문란 시 조기 폐장, 개장제한(입어척수 및 기상상태 기준)을 조업협의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근거 미흡 개 선 위반사항, 제재기준 명확히 하고 조기폐장, 개장제한 등에 대한 법령근거 마련 조치사항 조업보호협의회 지침 의결
13	수상레저기구 보험만료 안내서비스 제공	기 존 수상 레저 기구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만료 전 종이 통지서 송달 개 선 보험 가입 만료 30일 전 민간 앱(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시행 조치사항 민간앱(카카오 등)을 통해 의무보험 사전 안내 제공
1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디지털 공증발급허용	기 존 조종면허 취득자 중 해외에서 면허자격 증명을 위해선 면허증 영문번역 및 공증 필요 개 선 교부 아포스티유 시스템과 수상레저종합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면허증 증명서의 해외활용 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조치사항 실시간으로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증된 면허 증명서 조회 및 출력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5	어업인 등 수난구호 참여자조업 손실경감	기 존 해양사고 시 해양경찰의 요청에 의해 수산구호에 참여한 어업인 등에 대한 지자체별 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이 다름 개 선 수난구호참여자 지원 ①표준조례 마련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수당을 ②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약 8%인상) 조치사항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개정
16	소외도서 신규항로 개설하여 교통취약계층의 복지향상	기 존 선장에는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등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소외도서 지역에 신속하게 신규항로를 개설함에 있어 한계 발생 개 선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필요한 소외도서 지역에 신규항로 개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 적용 예외 인정 조치사항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개정
17	AI조난신호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기 존 해상 조난신호를 무선통신망으로 24시간 청취하고 있으나, 소수의 한정된 인력이 '청각'으로 듣기에 조난신고 인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높음 개 선 청각에 의존하여 청취하던 구조신호("물에 빠졌어요!" 등)를 AI가 인지하여 구조기관에 자동전파하는 '구조신호 자동 식별 시스템' 개발 조치사항 특허등록 및 우선출원권 확보
18	'낚시인구 1,000만 시대'낚시어선 출항신고 간소화	기 존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낚시 예능프로그램의 인기로 낚시인구 추산, 1,000만 시대에 돌입, 동반하여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개 선 낚시어선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웹페이지를 이용한 「출입항 신고시스템」을 개설하고 URL·QR코드 방식 도입 조치사항 출입항 신고시스템 운영
19	불법조업담보금 부과기준 개선으로 어업인 보호	기 존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황폐화로 어민 생계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 따라 명확한 단속근거를 위한 입어절차 마련 필요 개 선 구체적 단속유형, 담보금 기준 정립 등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 개선 조치사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개정
20	대체연료유 발굴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어업소득 증대부여	기 존 멸치어선의 기존연료유(경유)는 경비 증가에 따른 ①어민소득 감소와 ②대기오염 증가로 대체 연료유 필요성 대두 개 선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제5조제1항 어업용 면세유류 종류에 부생연료유 추가 조치사항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개정
21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현황 및 대표자 변경 신고기한 연장	기 존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 현황 및 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개 선 변경신고 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 조치사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	만도리어장 출어선 특별교육 대상 제외	기 존 만도리어장 출어선 대상으로 법령 근거 없이 특정해역 출어선에 준해 특별교육 시행중 개 선 만도리어장 출어선은 특별교육 대상에서 제외 조치사항 조업보호협의회 의결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3	저도어장 출어 시 대면 점호방식을 통신방식으로변경	기 존 저도어장 출어 시 대면 입어 점호* 실시 * 유사한 북방어장·특정해역에서는 통신 점호 실시중 개 선 통신 입어 점호로 변경 조치사항 조업보호협의회 의결
24	친환경 수상레저기구 검사기준 마련	기 존 전기·수소연료 등 친환경 추진체계를 갖춘 신종 수상레저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사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수용 한계 개 선 친환경 레저기구를 위한 검사 및 설비기준을 고시로 별도 마련하여 관련 신산업 활성화 조치사항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

32 해양수산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전대절차 개선	기 존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은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리기관 두곳의 허가·승인을 받아야함 개 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 조치사항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공사에 대한 인증절차 미비로, 수의계약 등 공공조달 특례 적용 곤란
2	해양수산 신기술 활용 제품·공사 지원 확대	기 존 해양수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공사에 대한 인증절차 미비로, 수의계약 등 공공조달 특례 적용 곤란 개 선 해양수산 신기술 활용 관련 제품·공사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실적인정 및 수의계약 허용 조치사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
3	서해5도 어장확대	기 존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 열악 개 선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 조치사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4	LNG 연료탱크 내 흡입구 설계기준 마련	기 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선박설계에도 제약 개 선 친환경선박 연료탱크 설계 국제기준 마련 조치사항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설박 선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IMO) 등재
5	생산관리지역 내 어촌체험휴양마을 식품접객업 허용	기 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식품접객업 불가 개 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식품접객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 조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한 최소 승무경력기간 단축	기 존 해기사 면허 승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하위면허 소지 후 선박 승무 경력 필요 * 자격 등급에 따라 승무 가능한 선박의 규모와 직위 제한 개 선 기사면허 승급(1급~6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단축 * 국제협약 및 타국가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승급기간 단축 조치사항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7	비관리청 유지준설사업 시행허가 처리기간 단축	기 존 비관리청(민간)에서 시행하는 항로·정박지 유지준설 사업 허가처리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개 선 신속한 통항 수심확보를 위하여 허가처리기간을 14일로 단축 조치사항 법령 적극해석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 공문 시행
8	수산관계법령위반자 서류압류규정 삭제	기 존 어선 서류 비치가 의무사항이나, 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처분에는 무방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개선 필요 개 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의 서류를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문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행정업무 간소화 및 불필요한 지출 방지 조치사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9	내항여객선 고속기관 개방 검사주기 개선	기 존 선령 20년 이하는 5년 또는 운전 9천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개방검사 실시, 선령 20년 초과 여개선은 매년 정기검사에 따른 전부 개방검사 실시 개 선 선령 20년 이하 여객선의 검사주기 중 운전시간 연장 (9천시간→제조사 권고시간), 선령 20년 초과의 경우 제조자 권고시간의 50% 또는 3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연장 조치사항 고속기관 등의 정비 확인을 위한 지침 등 개정
10	해역이용협의서 보완요구 제한	기 존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 등에 따라, 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 요청 시 횟수의 제한없이 협의서 보완요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및 신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 발생 개 선 사업자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에 대한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도록 제도 개선(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제4항) 조치사항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11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재신청 절차 간소화	기 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심사*는 2·3차 평가 탈락에 따른 재평가시, 1차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 (1차)서류·대면심사 → (2차)현장확인심사 →(3차)종합심사 개 선 신기술 인증 관련 서류의 변경이 없는 경우 1차 평가(서류·대면심사) 절차 생략 조치사항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12	기능 중복을 고려한 어선 항해장비 비치의무 완화	기 존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은 자기컴퍼스 의무비치가 요구되나, 기능이 중복되는 첨단 항법장비들도 이미 탑재되어 있음 개 선 AIS(선박자동식별장치)가 설치된 대상 어선에 한해 자기컴퍼스 비치의무 완화 조치사항 어선설비기준 개정
13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 자격 완화	기 존 어촌계가 소유한 양식업권 행사를 위해서는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도록 규정 개 선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면 행사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조치사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4	양식장 HACCP 적용대상 확대	기 존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양식업체 중에서 HACCP 시설로 등록 가능 개 선 육상수조식·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 및 가두리양식업, 축제식 양식업으로 면허 받은 업체도 HACCP 시설로 등록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육상양식장 → (개선)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 및 수산종자 생산 양식장 추가 적용 조치사항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
15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소득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 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소득사업 시행 시 지원대상에서 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지원 및 전문적인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은 배제하고 체험·관광객의 숙식 제공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비로 한정 개 선 해당 배제 및 제한 규정 삭제 조치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 개정
16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기 존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미비 개 선 '제2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치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수립
17	디지털 선박 항해장비 사용 시 기능중복되는 자가컴퍼스 비치의무 면제	기 존 배의 길이 24m 이상의 중대형급 어선은 항행안전을 위한 자기컴퍼스 의무 비치 개 선 첨단 디지털 선박항해장비 사용 시 기능이 중복되는 자가컴퍼스 비치의무 면제 조치사항 어선설비기준 개정
18	신유형 어선에 대한 기존 건조검사 기준 적용 제외	기 존 어선 건조시 어선법상 선체·기관·설비의 기준에 따른 건조검사가 필요하나 신유형 어선에 적용 불가 개 선 '새로운 형식의 어선 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 조치사항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
19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기 존 선박의 항만시설 이용 시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개 선 국제카페리선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 및 기간 등 결정 조치사항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20	수산생물생산시설 수출검역 수수료 경감	기 존 수산생물 수출시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수출검역 실시 → 양식어업자가 수수료 납부 * 정밀검사료 세균·곰팡이성 질병 15,000원,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개 선 수출검역(정밀검사)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밀검사로 갈음하여 수수료 비용 부담 경감 조치사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	총 허용 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기 존 어선척수, 어업 방법 제한 등 투입(Input) 규제와 산출량(Output) 규제 중첩 적용 개 선 TAC 어종 80% 이상인 감시감독체계* 수용 업종에 대한 기존 어업규제 일부 완화 적용 * TAC 준수, 위치발신장치 설치·작동, 전자어획보고 이행, 지정위판장 위판 여부 등 조치사항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계획 공고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 확대	기 존 해양생태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는 2억원 이하인 경우 2회, 2억원 초과시 3회 이하로 제한 개 선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3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수질기준 위반 시 면허정지기간 완화	기 존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처분 개 선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 조치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입주 가능한 기업 기준 완화	기 존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자격은 총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제조·유턴기업에 한하여 부여 개 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자격을 총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조치사항 항만법 시행령 개정
25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자본금 요건 완화	기 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확보 필요 개 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자본금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 조치사항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
26	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담 완화	기 존 지가 증가율(20~1,000%)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증가율 13~27.5% 적용하여 부과 개 선 지가 증가율(20~1,000%)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증가율을 완화하여 적용 (11.5~18.75%) 조치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7	울산 교통안전특정해역 일부 구간 규제 완화	기 존 대형 해양사고 우려가 있는 5개 해역(인천·여수·부산·울산·포항)에 대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88) 개 선 울산 해역 中 거대선·위험물운반선이 통항하지 않는 해안가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제외 조치사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28	가자미류 어업활동 규제 완화	기 존 가자미류 4종의 금지체장*을 기존 15cm에서 20cm로 강화 적용('24.1~) * 개체수 보호를 위해 잡을 수 있는 크기 제한 개 선 가자미류 4종의 금지체장을 17cm로 유예하고, 계도기간 운영(24.6.1.~24.12.31.) 조치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9	중소화주 컨테이너 보관을 위한 항만터미널 외장치장 활용 확대	기 존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장치장 혼잡도 증가로 컨테이너 보관이 어려워 중소화주 부담 증가 개 선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인근 공용장치장 활용 확대 (3.4천TEU → 4.2천TEU) 조치사항 항만공사 운영사 협의 및 사업자 선정 공고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0	어업경영자금 재대출 제한 완화	기 존 어업경영자금 대출액 3억원 초과인 자가 재대출 시 기존 대출액의 5% 상환 필요 개 선 어업경영자금 재대출 시 기존 대출액 5% 상환 대상을 기존 대출액 5억원 초과인 자로 완화 조치사항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 개정
31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제한기간 완화	기 존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지원사업 선정 후 10년 미경과 시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개 선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지원사업 또는 고도화 사업 선정 후 3년 경과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 조치사항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시행지침 개정
32	수산식품 수출기업 유망상품 개발 지원 기준 완화	기 존 수산식품 개발지원 대상을 최근 3년간 수산식품 평균 수출실적 1만 불 이상인 업체로 제한 개 선 수산식품 개발지원 대상을 내수기업을 포함하여 수출실적 10만 불 미만인 업체까지 확대 조치사항 '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33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공백기간 소급정산 허용	기 존 모집공고·선정평가 등 으로 수출기업 지원사업 경비 지원 시 공백기간(1~2월) 발생 개 선 경비지원 공백기간에 대한 소급정산을 허용 조치사항 '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반영
34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 시 숙련도 평가 중복 개선	기 존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 인증시 선택분야와 기본분야 숙련도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함 개 선 선택분야 숙련도 평가를 통과한 경우, 당해연도 기본분야 숙련도 평가 적합 판정 조치사항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35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자격 기준 완화	기 존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의 후견인 선정조건 중 국가기술자격증 종목을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로 제한 개 선 후견인 선정 조건에 어로기술사 추가 조치사항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지침 개정
36	서해5도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관리채취선 허용	기 존 마을 어장 내 자원관리채취선 사용 불가* * 나잠·맨손·잠수기어선 임차로만 포획·채취 가능 개 선 서해5도 마을어장*에서 자원관리채취선 사용을 허용하는 시험어업 추진 조치사항 유권해석으로 서해5도 마을어업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 승인
37	배합사료 직불제 지급 기준 완화	기 존 배합사료 직불금 지급 기준을 '치어기~출하기 內 최소품질기준 충족 배합사료 100% 사용'으로 제한 개 선 저수온 특보* 발령시 특보 해제 전까지 관할 양식장에 생사료 일시 허용** * 사료효율이 저하되는 저수온기에 생사료 예외적 사용허용 ** 생사료 사용에 필요한 기기의 철거·봉인 예외적 허용 조치사항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8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부담 완화	기 존 수산질병관리사는 회당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연1회 이상 받아야 할 의무 개 선 온라인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 확대 조치사항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계획에 반영
39	경력단절 해기사의 재승선 시 구비요건 완화	기 존 경력단절 해기사가 재승선하는 경우에도 신규 선원과 동일한 교육 이수 필요(최소 6개월 소요) 개 선 재취업 해기사 대상 집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개월 이내로 필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사항 재취업 해기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40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희망봉 우회 시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기 존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증서(유효기간 5년)를 선박에 비치 의무 개 선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홍해 해역 항행 대신 희망봉 우회시, 증서 유효기간 연장(3개월 이내) 조치사항 홍해 우회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등 증서 유효기한 유예방안 마련
41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희망봉 우회 시 선박검사 유예	기 존 선박검사 유효기한(여객선 1년, 화물선 등 5년) 만료 이후 운항 금지 개 선 홍해 통항 중단으로 희망봉 우회 통항을 결정한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3개월 이내) 조치사항 홍해 우회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등 증서 유효기한 유예방안 마련
42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희망봉 우회 시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기 존 선박소유자에 대한 국제선박보안증서를(유효기간 5년)를 선박에 비치 의무 개 선 홍해 통항 중단으로 희망봉 우회 통항을 결정한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3개월 이내) 조치사항 홍해 우회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등 증서 유효기한 유예방안 마련
4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기 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신청 단체의 최소단위를 '연안어선 20척, 근해어선 10척'으로 설정 개 선 TAC 참여 시 '연안 10척, 근해 5척' 으로 단체 구성 최소단위 완화 조치사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개정
44	무인선박 시범·실증 자율운항 시 현행 안전·구조기준 등 적용 제외	기 존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은 선박 구조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곤란 개 선 무인선박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내에서 실증운행시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기준 적용 예외 조치사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5	무인선박 자율운항 시 현행 인력기준 적용 제외	기 존 선박직원법에 따른 승무기준(최소 승무원 수 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무인선박에 적용 곤란 개 선 무인선박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내에서 실증운행시 최소 승무정원 기준에 대한 특례 부여 조치사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46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시 조업일수 제한 완화	기 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을 위해 최소 조업일수 60일 이상 충족 필요 개 선 TAC 어종을 주로 어획할 경우 조업일수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완화 조치사항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7	친환경선박 시험운항 시 관련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적용 완화	기 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중 방충재 설치 기준은 선박둘레(선박길이)의 50% 이상 설치로 선종에 구분없이 일률적 적용 개 선 「규제특례법」(중기부 소관)에 개별법 적용을 면제·완화하여 시험운항 선박이 별도허가 등을 받지 않도록 시험·실증 특례 신설 조치사항 지역특구법 개정
48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바지) 형태 인정범위 확대	기 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인 바지(barge)는 사각형태의 일반형 바지만 인정되어, 조류가 강한 해역이나 하구둑에서는 바지가 전복되는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큼 개 선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인 바지의 형태를 복원성이 큰 선박형태도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조업 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33 행정안전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온천공 보호구역 내 1일 양수량 기준 개선	기 존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원 보호지구 내에서는 공공용, 농업용, 1일 양수량 30톤 이내 등을 제외하고 지하수 개발금지 개 선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원 보호지구이라 하더라도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는 지하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양수량 기준 확대 조치사항 온천법 시행령 개정
2	붕괴위험지역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 공개	기 존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아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열람 가능 개 선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고시해야 하는 항목에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추가하여 지자체 방문 없이 확인 가능토록 개선 조치사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3	규제책임관제 신설 등을 통한 덩어리규제 해결	기 존 덩어리규제 등 '테마규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나, 개선 과정에서 법령 개정 등이 결부되어 지자체 단독 해결의 어려움 존재 개 선 지자체별 주요 테마규제 발굴 및 (가칭)규제책임관*을 선정하여 덩어리규제 등 개선 주도 *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지정, 광역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및 현장점검·부처협의 등 주도적 규제혁신 역할 수행 조치사항 규제책임관제도 신설
4	언제·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기 존 인감 종류와 무관히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도가 국민에게 규제로 작용 개 선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	보양온천의 지정 취소기준 완화	기 존 보양온천 사업자가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현재 보양온천은 설악 워터피아(속초) 등 8개소 개 선 사업착수 기한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6	공동 설계 승강기의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기 존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모델별로 3단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 시험 개 선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조합 등에서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으면 조합원이 받아야 하는 설계심사 면제 조치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7	교통수단 옥외광고 표시부위 확대	기 존 교통수단을 활용한 광고물은 차량의 옆면, 뒷면에 면적 1/2 내 설치 개 선 차량의 앞면, 윗면까지 광고 표시부위 확대 조치사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8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 교부 허용	기 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 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개정으로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가능 조치사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개편
9	옥외광고 관련 인허가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산업 활성화	기 존 자동차·철도 관련 옥외광고 표시 부위에 대한 제한 및 대학 내 자사 광고 외 상업광고 금지 규제 존재 개 선 자동차·철도의 옥외광고 표시 부위 확대(창문 제외 전체 면적 등), 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내 상업 광고 허용 조치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	취약계층 지원제도 정비를 통한 범국민적 온기나눔 분위기 조성	기 존 기부·자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들의 분절적 운영으로 정책 효과성 저하, 기부금품 모집 등에 대하여 법령상 규제로 모집단체의 자율성 제약 개 선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구성·운영으로 각각 추진되던 기부·자선단체 간 연계 강화 기부금품법령 개정을 통하여 기부금품 범위·모집방법 확대 조치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및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 구성·운영
11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이용으로 공공·민간의 칸막이 제거	기 존 모바일 신분증 앱 활용 시 별도 설치에 따른 국민 불편 야기, 이용률 저조 개 선 민간 앱(삼성페이 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조치사항 시스템 연동 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서비스 시범 개시
12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관련 규제 완화	기 존 고향사랑 기부 관련 모금방법 제한 규제 존재, 연간 기부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규정 개 선 모금 방법으로 기존에 금지되던 제한사항 허용(전자적 전송매체,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연간 기부상한액 확대(2,000만원) 조치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3	지방공사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 완화	기 존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 개 선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출자한도 상향 조치사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14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 면제	기 존 '24.6.8.부로 현행 주소정보제공 수수료 면제 종료 개 선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 면제(~2026.12.31.) 조치사항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부칙 일부 개정
15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위탁규제 완화	기 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위탁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위탁근거 미비로 제도적 허점 발생 개 선 현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LX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법제화 조치사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16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	기 존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개 선 감액비율을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 조치사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개정
17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 등록요건 완화	기 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는 최소 6인 이상 기술인력*이 상근해야 등록 가능 * 공학2, 경영1, 정보통신1, 컨설팅2 개 선 기술인력요건을 4인 이상(분야별 1인)으로 완화하고 상근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영, 정보통신 분야는 비상근 인력 확보 시 등록가능토록 조건 완화 조치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	지방계약에 적용되는 선금 지급 한도 확대	기 존 지자체 공사·제조·용역계약 시 80%까지 선금 지급 가능 개 선 선금지급액을 100%까지 확대 조치사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무 유예	기 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공동주택용지 등 민간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이상 의무 개 선 행복도시 민간공동주택 ZEB 인증 의무 적용 1년 유예 조치사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기준 개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교량 건설사업 특화 관련 설계기준 완화	기 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교량 건설사업의 특화를 위해 재질·거더 및 난간 등에 구체적 지침 제시 개 선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사항 제시하는 등 기준 완화 조치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교량특화를 위한 설계지침 개정

35 환경부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음식점 허용	기 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음식점 불가 개 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교육원, 군사시설(용도폐지 된 경우) 등 공공건축물은 조건 충족*시 음식점 허용 * 일반·휴게음식점 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환경청장 협의를 거쳐 허용 조치사항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가능시설 종류 확대	기 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도로, 철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교육원 등의 입지만 허용 개 선 청소년수련원, 전기설비, 모노레일 등 입지 허용 조치사항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3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경행위를 위한 벌채 허용	기 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원림 조성목적 외 벌채 금지 개 선 농경행위를 위한 토지(전·답) 내 벌채 허용 조치사항 수도법 시행령 개정
4	팔당호, 대청호 주변 환경정비구역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	기 존 방류수 수질에 따라 총 호수의 5~20% 범위내 100m2 이하의 음식점 허용 개 선 방류수 수질 법정기준 50% 이내 지역은 음식점 면적을 150m2로 완화 조치사항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5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과 중복 구역 해제	기 존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하수처리구역도 수변구역 해제 불가 개 선 수계법상 해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개선 의견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부하량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14.7월 이전 편입), 도시지역 등 중첩 시 조치사항 한강수계 등 수변구역 변경 개정
6	LPG 차량의 저공해차 범위 제외 유예	기 존 저공해차 범위에서 LPG 차량 제외를 검토중 개 선 저공해차 범위에서 LPG 차량 제외 유예 검토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에 LPG 차량 포함
7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 수산물 확대	기 존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 5㎥/일 이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 개 선 조개류, 갑각류 등과 유사한 수산물 단순 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8	폐수를 위탁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이중보고 의무 면제	기 존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장과 재이용하는 사업장도 매년 처리실적을 지자체에 보고 개 선 위탁처리 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 의무 면제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9	투명페트병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대상 확대	기 존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에 한하여 인정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원료 기준 합리화 필요 개 선 별도배출 + 혼합배출, 무인회수기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인정 – (혼합배출) 환경부 및 식약처 재생원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설 및 운영기준 적용 시 허용 – (무인회수기) 별도 배출·수집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 조치사항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고시 개정
10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검사제도 개선	기 존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비산배출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로 각각 구분지어 실시 개 선 대상사업장의 검사일정을 사전 검토하여 같은해에 환경청의 정기검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정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 부담 완화 조치사항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과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의 합동점검 실시
11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보조금 지원	기 존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장시간 충전함에 따라 생계활동에 제한 개 선 전기이륜차 배터리만 교환하여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보급하여 배달용 전기이륜차 충전시간 문제를 해소 조치사항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예산 반영 및 보조금 지침 확정
1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시 직함 기재 허용	기 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시 신청서상 대표자 표기 방식이 성명이며, 정기적으로 대표자가 바뀔 경우 수시로 변경신고서 제출 개 선 허가(신고) 서식에 '대표자 기재란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 기재'하도록 통일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기준일 명확화	기 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사유 변동*시,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보험 갱신이 필요하나 기산일 해석 혼란 개 선 보험 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해 명확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조치사항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개정
1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기준 완화	기 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물질(먼지, NOX, SOX)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폐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의무 * 대기오염이 심각한 권역·지역을 지정,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관리 개 선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추진 조치사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5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실적 보고 개선	기 존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는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포함하여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해야 하나, 발주자 사정으로 30일 기간을 초과하여 이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발급한 사례가 다수 발생 *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개 선 계약 종료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 시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우선 제출하고, 추후에 첨부서류(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화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16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배출량 차감 인정시설 추가	기 존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CO2를 포집·이동하여 다른 제품의 원료 등 8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만큼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개 선 CO2를 포집·이동하여 사용량 확인(MRV)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해저 등 격리시설에 저장(CCS)하는 경우 배출량 차감 인정 조치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17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완화	기 존 두 개 이상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인력, 장비조건 각각 충족 필수 * ①상수도관망 세척 ②상수도관망 누수관리 ③상수도관망시설 점검·정비 개 선 기술인력 일부(두 개의 대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1인, 세 업종을 모두 하고자 할 경우 최대 2명) 중복 허용, 장비 모두 중복 허용 조치사항 수도법 시행령 개정
18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기 존 다량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개 선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허용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	화학물질 중 국외 평가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 간소화	기 존 등록신청자료 중 일부 생략이 가능한 국외 평가물질에 대해 생략사유서 제출 개 선 국외 평가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사유서 대신 출처만 제공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	재활용환경성평가 유형 중 매체접촉형 소요기간 단축	기 존 매체접촉형의 경우 재활용계획 수립에 따른 모델링 결과 제출 필요, 심사 단계에서 보완 결정 시 모델링 재수행에 장기간(최대 1년 이상) 소요 개 선 모델링 결과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의·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요 기간 단축 조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21	지하수 분야 관련 수수료 부과 유예	기 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지하수 관련업 등록 시 수수료* 부과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3만 원, 지하수 관련업 등록: 5만 원 개 선 2년 간 수수료 부과 면제 조치사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22	자연재난(가뭄 등) 시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	기 존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 의무 有 *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청사 등),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 개 선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물 절약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 가능토록 제도개선 – 지자체의 장이 당초 의무기한 만료전 수질검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를 실시하여 기준 충족 시 2개월 범위 내 유예 가능 조치사항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3	고체 납(인고트) 화학물질 영업허가·운반 규제 완화	기 존 고체 상태의 유독물질 '납' 운반 시 규제로 부담 증대* 개 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운반 시 일반차량 사용(단, 운반계획서 유지) 조치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2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 완화	기 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취득 시, 학력(이공계 분야 학과 졸업), 실무경력 조건(3년 이상)필요 개 선 학력 없이도 충분한 실무경력(고졸, 5년 이상)을 갖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인정 조치사항 수도법 시행령 개정
25	통합환경관리인의 퇴직 시 선임기간 연장	기 존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 시 선임기간(現 30일 이내) 연장 필요 개 선 통합환경관리인이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불가한 경우 선임연장 승인을 받아 선임기간 연장 조치사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26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부담 완화	기 존 동일법인 간 재활용 대상 폐기물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제출서류 구비할 수 없어 순환자원 인정 및 재인정 신청 불가 개 선 개별업체에서 순환자원 인정 신청 시 관련 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한 인정 검토 조치사항 기업 신청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정 검토
27	산업단지에 면적 일부 포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 완화	기 존 사업장의 일부만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면적만 특례지역 * 기준 적용 * 배출허용기준 : 부유물질량mg/L (나지역) 80이하, (특례)30이하, 총유기탄소량mg/L (나지역) 50 이하 (특례) 25 이하 개 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외 구분에 따른 폐수배출구 별도 마련, 명확한 공정 구분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현장조사 후 변경 허가 검토 조치사항 기업 신청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허가 검토
28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건의	기 존 「수도법」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입목, 재배 및 벌채 행위는 제한됨 - 지목에 따라 영농행위를 영위할 수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입목, 재배 및 벌채 시 허가를 받고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주민 불편 발생 개 선 우리부는 농지에서 입목·벌채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상수원에 미칠 영향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조치사항 수도법 시행령 개정
29	기존 거점수거센터 입찰제도 개선	기 존 최고가 낙찰·지불 형식의 입찰방식으로 낙찰 과열 및 비용 부담 증가 개 선 반납 대상 배터리의 입찰방식을 변경(입찰가격 상한제)하여 낙찰 과열 방지 및 낙찰자 비용 부담 완화 조치사항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30	공익목적 배터리 무상·저가 지원	기 존 폐배터리를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중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연구, 실증 등의 분야에서 폐배터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 선 정부 R&D 과제 수행 등 연구목적 활용시 ❶낮은 비용(매각 기초가격)으로 판매, ❷무상지원(시장성 低), ❸대여방식 등 도입 및 교재 개발, 농어촌·양로원 전기공급시설 설치 등에 무상제공 또는 우선매각 조치사항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1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기 존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이 되는 매출액 기준(120억 미만)이 지나치게 엄격, 감면 구간도 2개로 단순 개 선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이 되는 기업 기준을 확대(1000억 미만)하고, 매출액 기준 세분화(6개) 조치사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32	제재조·재사용 사용후 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기 존 재제조·재사용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의 경우 폐기물 규제* 적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입지규제 등 개 선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제재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 조치사항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33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지원	기 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폐배터리 급증으로 연관 사업 육성 필요 개 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 근거마련 조치사항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34	해외 폐배터리 신속수입허가 처리 절차 마련	기 존 국가별 폐배터리 분류(폐기물/제품) 기준 확인에 따라 수입절차 장기간 소요 개 선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취급하는 국가로부터 수입 시 기존 사례 활용 신속 처리 조치사항 수입폐기물 신속허가 가이드라인 배포
35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기 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생계형 화물차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영상 부담 개 선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생계형 화물자동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기본부과금액을 50%* 인하('24.7월 이후) * (개정 전) 15,190원 ⇒ (개정 후) 7,600원 조치사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3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온라인 확인검사 제도 도입을 통한 차주 비용부담 완화 및 검사 편의 개선	기 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자동차환경협회(수도권) 또는 지자체장(비수도권)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폐차 前 차량 상태(정상가동 여부)를 현장 확인검사 중이나, 차주 비용부담이 지역별(공업사)로 편차가 크고, 도서·산간지역 차주의 경우 원거리 현장 검사장까지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 존재 개 선 온라인*을 통한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을 도입하여 ①현장 대비 온라인 확인검사 수수료 절감, ②현장 방문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 차주의 검사 편의 개선 조치사항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확인 시스템 구축
37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기 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처리업 등 가축분뇨 관련영업을 하려면 기술인력 조건 등 허가기준* 충족 *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 2명 이상, 처리업은 수질환경, 화학분석, 기계관련 각 분야별 1명씩 기술인력 3명 이상 개 선 수집·운반업(1인) 및 처리업(2인)으로 완화 조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38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기 존 가축분뇨업은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이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 여부로 규정되어 타법(통상 1년) 대비 과도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개 선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을 1년으로 조정 조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9	가축분뇨처리업 대행계약 기술인력 기준 합리화	기 존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와 대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그대로 고용 개 선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업체(가축분뇨시설 관리업)와 대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완화 조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0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 생산·판매 제한 완화	기 존 가축분뇨법 상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정화 등 방식만 규정하고 바이오차*에 대한 기준 부재 *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고온과 무산소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고체탄화 물질 개 선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 생산·판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 조치사항 기업 신청 시 실증특례 허가 검토
41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기 존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훼손된 하천 및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생태계부담금 감면 비대상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으로 고시해야 인정가능 개 선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전까지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정하여 부담금 전액 감면 조치사항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
42	국외 화학물질 수입업자 부담 완화	기 존 국외 제조·공급자가 화학물질정보를 누락·허위 제공하더라도 책임소재·처벌은 국내 수입자에게 한정 개 선 국외 제조·공급자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 전 화학물질의 확인 및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신설 조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43	폐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기 존 평판형 폐LED 조명은 재활용 회수율이 저조하여 EPR 대상의 효과가 작고 업체의 부담 가중 개 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평판형 폐LED조명 EPR대상에 제외 ※ 시범사업('22.9~11)추진, 업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조정안 도출 조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44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	기 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내용을 관리대장에 날짜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 부담 개 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내용의 작성기한을 매월 말일 기한으로 작성토록 개선 * 月 단위 관리로 작성시 업체부담 감소 (2시간/日→ 4시간/月 소요)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5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추가	기 존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은 R-2-2*, R-4-2** 등 *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 **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개 선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에 R-4-7* 추가 *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6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로의 재활용 기준 추가	기 존 폐식용유는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로 재활용 개 선 폐식용유를 석유 대체 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7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요건 마련	기 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대상시설에 열분해시설이 포함되었으나 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시설·장비 요건 규정 부재 개 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에 열분해시설을 추가하여 기존 소각시설 검사기관이 열분해시설을 검사할 경우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중복으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8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자의 임시보관장 설치 추가	기 존 양식용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수집·운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후 수집·운반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 가능 개 선 어업·양식업용 품목을 배출하는 양식용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상에 추가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4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판단기준 완화	기 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이 '전년도 1년간' 으로 불명확 개 선 지정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 대상여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0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재활용 유형 신설	기 존 CCUS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포집물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산업·건설 소재 등으로 재활용 곤란 *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을 확대하거나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면제할 필요 개 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3]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포집물의 재활용 허용유형 범위 확대 * ① 금속성 제품 제조 ② 시멘트, 요업제품, 골재 등 건설소재 ③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 유형 추가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51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	기 존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도 등록 필요 개 선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조치사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52	환경책임보험 요율 기준 개선	기 존 보험료 무사고 할인율*이 낮고 일률적 * 최근 3년 내 무사고 시 4% 할인 개 선 우량시설 최대 할인율 상향 및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 차등 적용 검토(실태조사 결과 반영) 조치사항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안) 마련
5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서류제출 방법 개선	기 존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비산배출 설치·운영 시 서류*로만 제출하도록 규정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연간점검보고서 등 개 선 전산제출 가능하도록 변경 조치사항 비산배출시설 관련 행정서류 전산(온라인) 제출 안내 공문 시행
54	노후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개편·확대	기 존 배터리식 3.5톤 이하 전기굴착기 보급만 지원 개 선 보급지원 대상 확대 및 무공해건설현장, 전동화개조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① 보급 지원사업 대상 확대(배터리식 굴착기→케이블식 굴착기·지게차 / 전기→수소 / 3.5톤 이하→20톤 이상) ② 무공해건설현장 시범 구축 ③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추진 조치사항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55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범위 기준 확대	기 존 현 사업대상은 저수면적 2백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인 댐 개 선 환경부 소관 댐 전 지역(9개 소규모 용수댐 포함)에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조치사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6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하천 점용료 감면	기 존 중소·민간사업자 하천 점용료 전면 징수 개 선 하천 점용료 감면(25%) 조치사항 하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 공문 시행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57	노후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 지원 기준 완화	기 존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배터리식 전기 굴착기 한정 개 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케이블식, 수소지게차 등) 조치사항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58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 존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천재지변, 사업 손실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징수 유예 개 선 9개월* 이내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최장 9개월 이내 준용 조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9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간 유예	기 존 '22.5.3.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한 5종사업장은 '24.6.30.까지, 법 시행 전 기존 4·5종 사업장은 '25.6.30.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간 유예 개 선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적기 부착될 수 있도록 관리 中, 규제준수 의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등을 통해 구제 조치사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실시
60	환경영향평가 등 설명회·공청회 절차 간소화	기 존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설명회·공청회 생략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략 여부 결정 개 선 설명회·공청회 생략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규정 삭제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61	전동식 지게차 지원근거 확보	기 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건설기계 종류에 전동식 지게차는 제외 개 선 수소전기지게차 등 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 종류에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62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합격증명서 영문병기 추진	기 존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합격증명서 국문인증서 발급 개 선 기존 검사합격증에 영문 병기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63	종합병원 신·증축 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완화	기 존 종합병원 신·증축 시 단위면적당 오수발생량 40L 적용 개 선 단위면적당 오수발생량 20L 완화 조치사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개정
64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	기 존 건축물의 기계실의 경우 통행 및 상주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오수발생량 산정 개 선 건축물의 부속시설 중 기계실은 관리인 외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적이며, 상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님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을 위한 면적에서 기계실을 제외하여 국민 부담 경감 효과 기대 조치사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65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 개선	기 존 기존화학물질 대상으로 중소기업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개 선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포함하여 확대 추진 조치사항 중소기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실시
66	시멘트 원료대체용 석탄재 수입금지 조치 완화	기 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석탄재 수입 금지('23.5월 시행) 개 선 ①석탄재 발생·매립정보를 시멘트사와 공유, ②운송비용 절감 방안, 석탄재 공급에 따른 ③인센티브 발굴 노력 등 국내 잉여 석탄재 활용 활성화 조치사항 시멘트 업계 현장소통을 통해 석탄재 발생량 정보 공유, 처리지원금 확대 등 시멘트 원료대체용 석탄재 확보방안 마련
67	일체형 폐가전제품 수입제한 완화	기 존 일체형 가전제품은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수입불가' 품목으로 관리 中 개 선 국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소형가전제품부터 허용 조치사항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문 발송
68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배출 시설 입지제한 완화	기 존 일부산업시설용지는 旣 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입주 제한 개 선 토지이용계획 대안에 대해 변경협의 요청 시 전문기관 검토 거쳐 계획 적정성 검토 조치사항 변경협의 요청 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전문기관 검토 의뢰
69	수질개선 담보된 개발계획의 오염총량 할당제한 완화	기 존 수질오염총량제 다음 단계 개발사업 경우, 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만 할당 개 선 다음 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유량 대폭 증가 및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경우 지역개발부하량의 60% 할당제한 미적용 조치사항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
70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용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제한 완화	기 존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용 어린이통학버스는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중고차포함)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 불가 개 선 교육시설(법인 등) 명의의 경유차는 시설의 장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어도 소유자(교육시설 명의)가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 조치사항 유권해석 공문 발송
71	유해화학물질 취급 호스 관리 부담 경감	기 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호스'는 사용 제한되는 경우, 경과기간 내(~'23.12.31.) 고정 배관으로 교체 개 선 중소사업장의 경우 노후 유해화학물질 호스 교체 부담 경감 지원책 마련 조치사항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및 실시
7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	기 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의 매장내 사용금지 개 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전, 식품접객업(카페, 음식점 등) 및 집단급식소에서1회용 종이컵 허용하되, 다회용기 사용 지원 강화 등으로 1회용품 줄이기 노력 지속 조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73	설명회·공청회 생략 절차 간소화	기 존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개 선 설명회·공청회 생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제외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7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 근거 마련	기 존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 시 1개 사업장 면적이 전체의 75% 이상 또는 배출오염부하량이 총 유입부하량의 80%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 선 제외 대상 사업 중, 2개 이상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 1개 사업장 면적이…(중략)…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개정 추진 조치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24년도 집행관리 및 '25년도 예산편성 지침 개정완료
75	조선소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도료 사용률 기준 한시적 유예	기 존 옥내·야외도장 : '19년까지 방지시설을 30%이상 설치했을 경우 친환경도료 사용률을 '20년 2%, '21년 10%, '22년 30%, '23년 45%, '24년 이후 60% 이상 달성해야 함 개 선 옥내·야외도장 : '19년까지 방지시설을 30%이상 설치했을 경우 친환경도료 사용률을 '24년 30%, '25년 45%, '26년 이후 60% 이상 달성하도록 2년 유예 조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76	수질오염총량제 다음단계 개발부하량 할당 조건 개선	기 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다음단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범위 내 선할당 가능 개 선 유량, 수질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가능(60%범위 완화) 조치사항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
77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기 존 휘발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고정체적, 가변체적) 중 고정체적 산출식만 인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소화된 측정방법(가변체적)이 인정되지 않아 혼란유발 개 선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국제기준에 맞춰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 방법도 포함 조치사항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78	수소차, 전기차 충전요금 확인 편의성 개선	기 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요금의 날짜별 조회 기능 부재 개 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요금의 날짜별 조회 기능(전국평균가격) 신설 조치사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고도화
79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시험 절차·조건의 일원화	기 존 환경부 고시*와 환경·산업·국토부 공동고시**에서 각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고시**는 국외 표준규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환경부 고시*는 이보다 보수적으로 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및 별표4 개 선 환경부 고시*도 공동고시**와 같이 국외 표준 규정(SAE J1634/SAEJ1711)에 맞도록 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및 별표4 조치사항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0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 마련	기 존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침 개편 필요 개 선 배터리 자원순환성 및 에너지밀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마련 조치사항 전기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보도자료 배포
81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일원화	기 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화관법 자체 점검(매주)과 연안법 일상점검(매일)을 중복 실시 개 선 연안법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한 경우 화관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조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82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완화	기 존 반도체산업은 화학물질 사용빈도가 높아 화평법·화관법 규제를 EU수준으로 완화필요 개 선 '21.5월부터 화학안전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며 올해 말까지 화평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예정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기 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정기검사 대상이나, 검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애로 개 선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은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84	배출권 가격 변동성 가이드라인 및 정산일정 조정	기 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크고 배출권 정산, 이월 및 차입에 주어진 기간이 촉박하여 대응 곤란 개 선 시장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이월·제출 시기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조치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85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기 존 급·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시설기준 등 화관법상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계 부담 개 선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으로 구별 지정하고, 유해성·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 형태·수준 등 차별화 * 급성독성은 화학사고 관리, 만성독성은 인체노출저감 및 생태독성은 환경배출관리에 집중 조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86	화관법·폐관법 중복적용 해소	기 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며,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관리 대상으로 중복 규제 적용 개 선 제도 간 중복 해소 및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화관법」 및 「폐관법」 개정* * (검토방향) ①「화관법」 관리대상에서 제외, ②「폐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보완, ③ 화학사고 대응 등 「화관법」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 적용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번 호	과제명	개선 내용
87	유해성 정보의 생산·전달·활용 체계 개편	기 존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엄격하나, 생산정보의 종류와 활용은 제한적 개 선 '화학안전정책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마련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8	도시정비사업 등 조례평가 이행	기 존 현 제도는 소규모 평가와 지자체 조례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소규모 평가를 실시 개 선 지역별 다양한 특성·여건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 중복 시 조례평가 이행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89	긴급 재난대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기 존 재난안전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는 평가 등이 제외되나, 한정된 사업범위, 관련 행정절차 등으로 대응에 한계 개 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평가 제외 조치사항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90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	기 존 배출량 확정 이후 차입/이월 신청기한(10일), 정산(30일) 기한이 촉박하여 짧은 기간으로 인한 거래 집중으로 배출권 가격 등락폭 심화 개 선 시장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이월·제출 시기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조치사항 배출권거래법 개정
91	배출권위탁매매허용	기 존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저해 개 선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배출권거래법 개정
92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제외	기 존 보관·저장시설 등 취급시설이 없는 알선판매업의 경우에도 영업허가 대상에 포함 개 선 보관·저장시설 등 취급시설 없이 알선 판매사업장에 대하여 영업허가 면제 조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9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절차 효율화 검토 건의	기 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개 선 검사기관이 관할 환경관서의 장에게 검사결과를 제출 조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94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기 존 자동차 제작자는 판매하는 차량에 부여된 평균온실가스·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달성해야 하나 자동차 제작자의 평균온실가스에너지소비효율 달성 실적(초과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애로 개 선 자동차 제작자에 평균온실가스에너지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조치사항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1. 본 위원회 개최일지

| 천해선 사무관 | Tel. 044-200-2414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55회 (1.12.)	국조실	2023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의결	1	0	0	0	1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	보고					
제556회 (1.26.)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제도 검토	보고					
	국조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의결	1	0	0	0	1
제557회 (2.23.)	국조실	2024년 규제정비계획	의결	1	0	0	0	1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운영현황 보고	보고					
제558회 (3.15.)	국조실	규제영향분석 운영 고도화 방안	보고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23년 운영성과 및 24년 주요 추진계획	보고					
제559회 (3.29.)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과제 추진현황	보고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계획안	의결	1	0	0	0	1
제560회 (4.12.)	국조실	규제품질관리 제고 방안	의결	1	0	0	0	1
제561회 (4.26.)	중기부	중소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	보고					
제562회 (5.10.)	금융위	혁신금융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보고					
	과기부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보고					
제563회 (6.14.)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보고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제564회 (6.28.)	산업부	인증규제 정비방안 이행점검 및 실효성검토 체계 개선방안	보고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보고					
제565회 (7.12.)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2024년 상반기 주요 규제개선 성과	보고					
	과기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보고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보고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보고					
제566회 (8.9.)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의결	1	0	0	0	1
	국조실	법정의무교육 사후규제영향분석	보고					
	국조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사후규제영향분석	보고					
제567회 (8.23.)	국조실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안	의결	1	0	0	0	1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및 계획	보고					
제568회 (9.6.)	국조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규제혁신 추진계획	보고					
	국조실	국제 수준에 맞춘 규제 불편 해소방안	보고					
제569회 (9.27.)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주요업무	보고					
	공정위	경쟁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계획	보고					
	중기부	중기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계획	보고					
제570회 (1.24.)	국조실	'24년 재검토기한도래 규제 심사안	의결	1	0	0	0	1
	국조실	제2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					
제571회 (11.8.)	국조실	기업·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보고					
	국조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절차 개선방안	보고					
제572회 (11.22.)	국조실	제2차 황당규제 대국민 공모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공정위	2024년 경쟁제한 규제개선 추진 결과	보고					
제573회 (12.6.)	국조실	제2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안	의결	1	0	0	0	1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의결	1	0	0	0	1
제574회 (12.20.)	국조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보고					
	국조실	'25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의결	1	0	0	0	1
계	**안건수: 42 (의결안건 11건, 보고안건 31건)**		–	**11**	**0**	**0**	**0**	**11**

2. 경제분과위원회 개최일지

| 송경준 사무관 | Tel. 044-200-2398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44회 (1.17.)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545회 (1.19.)	산업부	LNG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 개선안	의결		1			1
제546회 (2.7.)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제547회 (3.15.)	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548회 (3.29.)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549회 (4.12.)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1		1
제550회 (4.24.)	해수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551회 (4.26.)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의결			1		1
제552회 (5.2.)	특허청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3		3
제553회 (5.10.)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554회 (5.10.)	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제555회 (5.16.)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556회 (5.23.)	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557회 (6.5.)	해수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제558회 (6.19.)	중기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59회 (6.26.)	특허청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560회 (7.4.)	금융위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의결	1				1
제561회 (7.12.)	방통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3		5
제562회 (7.24.)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제563회 (8.23.)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1		5
제564회 (9.11.)	금융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3		3
제565회 (10.11.)	공정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2		2
제566회 (10.11.)	국조실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층검토	심의	–				
제567회 (10.25.)	국토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안	의결			1		1
제568회 (11.8.)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의결		1			1
제569회 (11.15.)	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1		1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의결			1		1
제570회 (11.22.)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산업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의결			1		1
제571회 (12.30.)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제572회 (12.27.)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계	**안건수: 37 (의결안건 36건, 심의안건 1건)**			**11**	**5**	**35**	**3**	**54**

※ 경제2분과위원회 개최일지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544회 (1.16.)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545회 (1.25.)	개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			1		1
	농식품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의결			1		1
제546회 (1.26.)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제547회 (2.8.)	국토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1
제548회 (3.8.)	농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549회 (3.15.)	국토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1
제550회 (4.12.)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3
계	**안건수: 9 (의결안건 9건)**			**2**		**13**		**15**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 **김수현** 사무관 | Tel. 044-200-2443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583 (1.4.)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84 (1.12.)	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결			1		
585 (2.15.)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586 (2.22.)	재외동포청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587 (3.2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588 (3.28.)	소방청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589 (4.11.)	소방청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590 (4.17.)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91 (5.10.)	소방청	소방용수격흡수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의결				1	
592 (5.16.)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592 (5.16.)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93 (6.13.)	소방청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594 (6.14.)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의결	1		1		
595 (6.1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95 (6.19.)	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96 (6.28.)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97 (7.3.)	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결	1				
597 (7.3.)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98 (7.10.)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598 (7.10.)	소방청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598 (7.10.)	행정 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599 (7.24.)	소방청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599 (7.24.)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2		
600 (8.9.)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600 (8.9.)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600 (8.9.)	소방청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개정안	의결		1			
601 (8.9.)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602 (8.23.)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정안	의결			1		
602 (8.23.)	보건 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603 (9.6.)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의결	계속 심사				
604 (9.10.)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605 (9.27.)	소방청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의결			1		
606 (9.27.)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의결			1		
607 (10.11.)	국조실	24년 재검토기한도래 심층검토 규제 검토 결과	심의					
608 (10.18.)	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608 (10.18.)	질병 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회차	소관 부처	안건명	안건구분	의결안건 심의 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608 (10.18.)	보건복지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결		1			
609 (10.24.)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610 (10.25.)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611 (12.13.)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612 (12.2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계	**안건수: 41 (의결안건 40건, 심의안건 1건)**		**-**	**7**	**5**	**31**	**4**	**47**

3 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및 언론보도

1.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전문위원 명단

1 자문단(37명)

('24.12.31.기준)

분과	성명	주요경력	
총괄·경제	한이헌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제15대 국회의원
	조원동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정무경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 조달청장
	이정원	• 국조실 국무2차장	• 국조실 규제실장
	임상준	• 환경부 1차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김인중	• 농식품부 차관	
	이원재	• 국토부 1차관	
ICT·과기·방통	진대제	•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	• 정보통신부 장관
	정병선	• 국립중앙과학관장	• 과기정통부 제1차관
	장석영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기주	•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 방통위 상임위원
	정종기	•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 방통위 사무처장
금융·공정거래	신제윤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영선	• 공정위 사무처장	• 공정위 부위원장
	이상제	• 금융위 상임위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금감원 수석부원장
산업·에너지·환경	최중경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지식경제부 장관
	나승식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정섭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환경부 차관
	지희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BH 해양수산비서관
중소기업·국토	김종갑	• 특허청장	• 산업자원부 제1차관
	김순철	• 중소기업청 차장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이준원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농식품부 차관
	김명운	•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 대전지방국토청 청장
교육·문화	서남수	• 교육부 장관	• EBS 이사장
	김응권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나종민	• 문체부 정책기획관	• 문체부 1차관
	김정배	•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 문체부 2차관
보건·의료	박병원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재정경제부 1차관
	이영찬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	• 복지부 차관
	노홍인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기윤	•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	• 식약처 차장
	손문기	•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	• 식약처 처장
사회·안전	류충렬	•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	• 경제조정실장
	신영철	•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임무송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 서울지노위원장
	김현기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2 전문위원

• 경제·사회 분과별 116명 (전직공무원 등 89명, 경제단체·연구기관 27명)

('24.12.31.기준)

분야	성명	분야	성명
신산업·에너지 (11명)	전대천	산업혁신·소상공인 (7명)	김대임
	나성운		이성호
	이연재		김세용
	박순덕		이동기
	이순종		김윤관
	이창원		김광훈
	최영만		이지원
	이명진	주택·교통·토지 (9명)	조영호
	문기웅		정태식
	신동현		양현모
	형 준		박성구
ICT·방통 (17명)	노영규		최재항
	전동찬		배인성
	정경택		이민경
	박종용		신혜경
	김명룡		안근원
	박이석	금융·공정거래 (11명)	배영수
	안태욱		강환덕
	염기수		최인수
	이장수		표순민
	박준선		서창현
	장병덕		이기현
	나윤수		한광석
	김희정		이창기
	조성민		조병도
	김윤정		정선인
	김귀영		이명규
	김진식		

분야	성명	분야	성명
행정·지역 (13명)	송재기	환경·해양 (11명)	장영준
	안세경		김영선
	구본충		이봉길
	기준현		박정천
	황 덕		김상운
	홍금표		임광수
	박노익		조규석
	백병갑		김준곤
	민희선		김성인
	이호모		신철오
	이재풍		이정석
	노경달		
	이형우	사회·안전 (12명)	김동섭
교육·문화 (10명)	권진수		이창순
	정해철		이상현
	정임균		함정규
	안상근		이중화
	구영창		오장석
	양승택		정근영
	최태경		임병호
	박병환		김환권
	정규열		강성공
	오훈성		한석희
보건·의료 (9명)	설정곤		현지훈
	박경배	현장협력 (6명)	임 철
	정명철		홍성일
	김 택		최경영
	윤승욱		이광호
	장지표		김경용
	김전수		정순현
	김대중		
	이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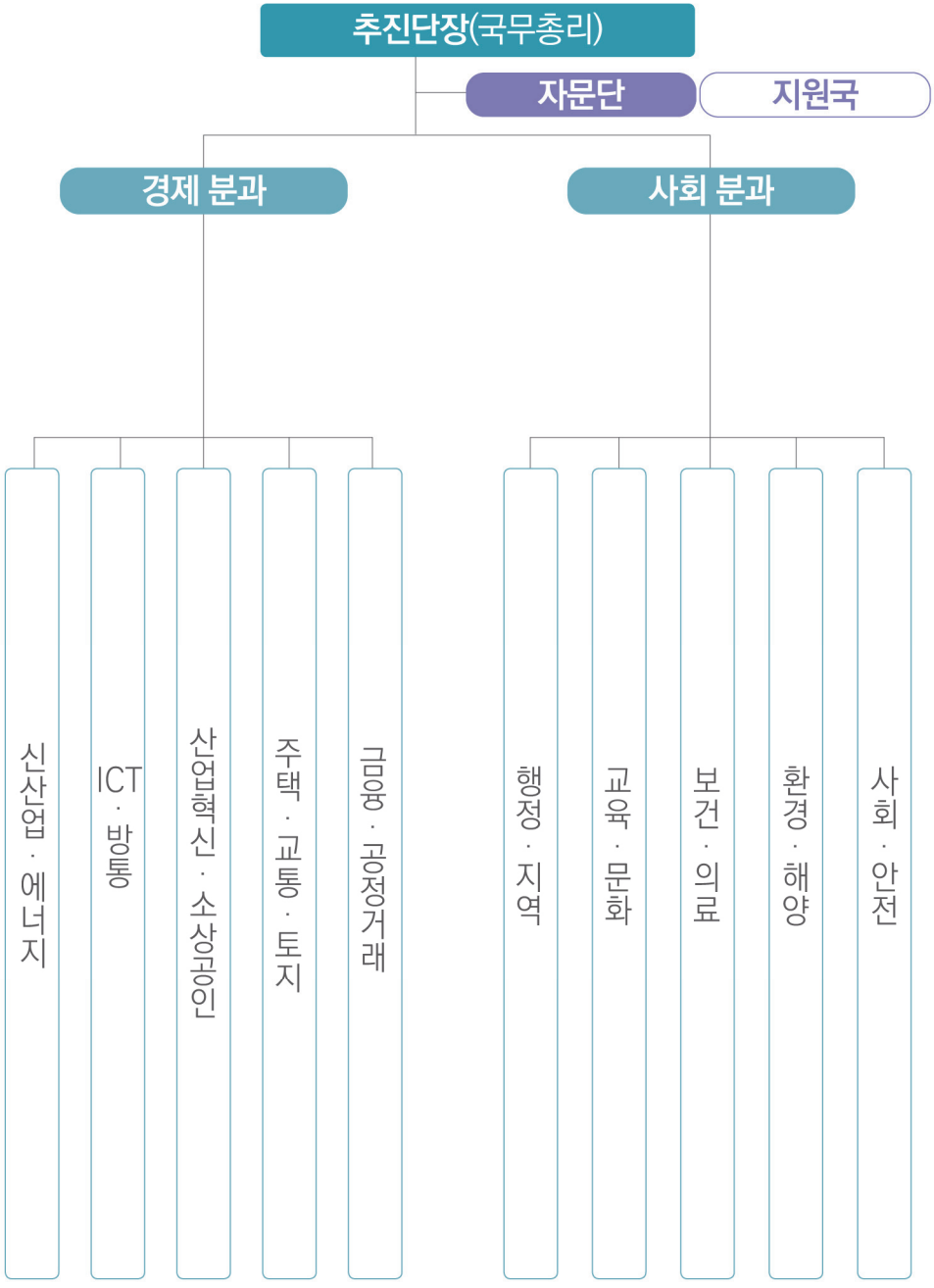
추진단장(국무총리)
자문단
지원국
경제 분과
사회 분과
신산업 · 에너지
ICT · 방통
산업혁신 · 소상공인
주택 · 교통 · 토지
금융 · 공정거래
행정 · 지역
교육 · 문화
보건 · 의료
환경 · 해양
사회 · 안전

2. 언론 속에 비친 규제혁신 사례(13개 과제)

1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개선('24.2.1.)

- 총 19건 보도(방송 2건, 인터넷 14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KBS	700억 이상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한다
	CHANNEL A	'전산망 먹통' 공공SW 지적에...11년 만에 대기업에 빗장 푼다
인터넷	연합뉴스	한총리 "24시간 감시로 행정시스템 장애 막는 촘촘한 예방체계"
	뉴스1	한총리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가동...장애 예방"
	연합뉴스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조선일보	'행정전산망 먹통' 재발없게...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허용
	경향신문	행정 전산망 장애 땐 컨트롤타워 두고 '재난'으로 관리
	경향신문	"지나치게 포괄적 대책... 구체적 예산·법령 선행돼야"
	서울신문	대기업도 '대형 공공 SW사업' 참여
	세계일보	'정보시스템 통폐합... 행정망 먹통 막는다
	국민일보	행정망 마비 막기 위해 중요시스템 이중화 장치 도입한다
	매일경제	700억이상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로 안정성 강화
	한국경제	공공SW 사업, 대기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서울경제	'700억 이상' 공공 SW사업 대기업 허용
	아주경제	'행정망 먹통' 대응 컨트롤타워 생겼다... 정부,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
	파이낸셜뉴시스	대기업 공공SW 참여 문턱 '700억 이상'으로 낮춘다
	머니투데이	'먹통'막아라... 공공SW 대기업 참여 'ON'
	머니투데이	'행정망 먹통' 시스템 이중화로 예방
	이데일리	'공공정보화 사업 대기업 진출 허용' 정부, 행정망 먹통사건 재발 막는다
	전자신문	"공공 정보화사업 700억원 이상 대기업 참여 확대"
	전자신문	예방·신속 복구·체질 개선 초점 업계 "세부과제 이행력이 관건"
	전자신문	대기업 문턱 낮추고 적정 대가 구체안 마련
	디지털타임스	공공 IT시스템에 '먹통 차단' 도입
	한겨레	'행정망 먹통' 방지 빌미로... 정부, 대기업에 공공정보화사업 허용
	국민일보	행정망 마비 막기 위해 중요 시스템 이중화 장치 도입한다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24.10.29.)

- 총 12건 보도(방송 1건, 신문·인터넷 11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연합뉴스 TV	정부, 평생교육시설 지원근거 마련…"교육효과 제고 기대"
신문	내일신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 강화
	대구신문	정부,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 포함
	천지일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확대…"교육환경 개선 기대".
인터넷	뉴시스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주고 취득·재산세 면제
	뉴스1	"교육공백 해소" 학평도 교부금 대상 포함…지방세 면제
	뉴스1	한 총리 "만학도도 무상급식 기대"…고학평도 교부금 대상 포함…지방세 면제
	아시아투데이	정부, "평생교육시설" 취득·재산세 면제 등 개정안 의결
	이데일리	만학도 등 위한 평생교육시설에 정부 재정지원 '확대'
	뉴스핌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정지원 강화… 교부금 교부대상…
	데일리안	한 총리, 만학도들에게 한 약속 지켰다…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으로 포함한다

3 인증규제 재검토 ('24.2.27.)

- 총 61건 보도(방송 13건, 지면 11건, 인터넷 37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13)	BBS TV	한덕수 총리 "현행 기업의 인증제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KBS	쓸모없고 과도하고…불편 인증 180개 손본다
	KBS	한 총리 "257개 인증제 재검토…산림재난 대응 보강"
	KBS	정부, 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개선 … "1,527억 절감"
	MBC	정부, 189개 인증제도 개선 추진…정부 인증에 민간 기관 진입도 허용
	MBC	한덕수 총리 "인증제도 전체 대대적 정비…기업 부담 1,500억 경감 기대"
	OBS	한 총리 "인증제도 제로베이스 재검토…대대적 정비"
	SBS	정부 "기업 인증 제도 원점 재검토…24개 폐지"
	SBS	한 총리 "인증 제도 전체 제로베이스서 재검토해 대대적 정비"
	YTN	정부, 불편 국가인증 189개 개선…"기업 부담 감소"
	YTN	"조미김, 마른김 인증 따로"…불편 인증 180개 손본다
	연합뉴스TV	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 검토·정비"
	한국경제TV	기업 발목 잡는 인증규제 '대수술'…연 1,500억 비용 경감
지면 (11)	강원도민일보	한 총리 "257개 정부인증제 통폐합…연 1500억 기업부담 경감"
	경향신문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내일신문	'중기 부담' 인증 규제 수술
	내일신문	2010년 이후 늘어난 인증규제 100개
	매일일보	한 총리 "민생법안 국회 통과 지연…국민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日보다 18배 많은 법정 인증제도 축소
	아시아경제	정부 '日의 18배' 법정인증제도 확 줄인다
	이데일리	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
	전자신문	국내 257개 인증, 중기 부담 가중…"국제인증 중복 등 24개 폐지"
	중도일보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불편한 인증 정비
	헤럴드경제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연 1527억 기업부담 경감"
인터넷 (37)	금융소비자뉴스	한 총리 "257개 정부인증제 통폐합…연 1500억 기업부담 경감"
	뉴스1	정부,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연 1500억원 기업 부담 경감
	뉴스1	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연 1500억원 부담 경감"
	뉴스웍스	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재정비…기업부담 연 1500억 경감"
	뉴스핌	[규제OUT] 중소기업 옥죄는 법정 인증 24개 폐지…연간 1527억 부담 경감

구분	언론사명	제목
인터넷 (37)	뉴스핌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해'
	뉴스핌	한덕수 총리 "257개 법정 인증 대대적 정비…실효성 낮은 인증 통·폐합"
	뉴시스	기업 인증 규제 개선방안 발표
	더팩트	정부, 인증제도 개선 통해 1527억원 기업 부담 경감
	브릿지경제	정부, 실효성 낮고 중복된 인증 폐지·통합…연 1530억 기업 부담 경감
	서울경제	257개 인증 대개편…기업 부담 1500억 줄인다
	서울경제	중소기업 울리던 257개 인증 싹 고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 총리 "257개 기업 인증제도 원점서 재검토"
	아주경제	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에너지경제	한덕수 총리 "257개 인증제도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대대적 정비…연 1500억 경감"
	연합뉴스	257개 인증규제 원점 재정비…연 1천527억원 기업 부담 완화
	연합뉴스	불필요한 인증규제 189개 개선 발표
	연합뉴스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불필요한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연합뉴스	한총리 "인증제도 전체 제로베이서 재검토해 대대적 정비"
	이데일리	기업 부담주는 인증제 대수술…257개 중 115개 '폐지·제외'
	이데일리	한총리 "현행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기업 부담 1500억 경감"
	이투데이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이투데이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전국매일신문	'실효성 없는' 기업 인증규제 원점 재정비…연간 1527억 절감
	조선비즈	한총리"257개 기업 인증제도 원점서 재검토"
	조선비즈	화장품 제조 수출 기업의 국내 인증 절차 폐지된다
	조세일보	"국제인증 받고 국내인증까지?" 정부, 불필요한 인증 없앤다
	중소기업신문	정부, 기업 부담 경감위해 257개 인증규제 손질
	컨슈머타임즈	한덕수 총리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연 1500억원 기업부담↓"
	쿠키뉴스	한덕수 총리 "257개 기업 인증제도 원점서 재검토"
	투데이신문	인증제도 중복 등 대대적 정비…기업 부담 1500억원 경감
	파이낸셜투데이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1500억원 투입
	파이낸스투데이	한총리"인증제도 전체 제로베이스서 재검토해 대대적 정비"
	파이낸셜뉴스	"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연 1527억 기업 부담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한 총리 "257개 인증제도 대대적 정비…연 1500억 경감"
	한국경제	257개 인증규제 원점 재정비…연 1527억원 기업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	정부, 중기 부담 인증 폐지 등 연간 약 1527억원 부담 경감

4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24.2.28.)

- 총 51건 보도(방송 2건, 신문·인터넷 49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KBS	축구장 4개크기 보전산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쉽도록 추진
	연합뉴스TV	규제혁신추진단, 산지이용관련 규제개선
신문	한국경제	정부, 산지이용 규제완화... 우이령길, 평일 예약 없이 이용
	서울경제	임업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영남일보	정부 "소규모 보전산지 지정해제 시도지사에 위임"
	대전일보	'규제푸는 정부' 3만㎡미만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도 시도지사에 위임
	중도일보	'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지역 활용도 높인다
인터넷	연합뉴스	'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지역활용도 넓힌다.
	뉴스1	'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임업분야 외국인 고용허용
	스포츠경향	'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뉴스웨어등	국무조정실, '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5 전자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24.4.18.)

- 총 14건 보도(방송1건, 신문 7건, 인터넷 6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연합뉴스	"성인 독서율 2028년에 50%로"...문체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계획
신문	서울경제	문체부, 非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독서율 하락추세 엄중 인식"
	서울경제	공공대출보상제도 추진한다
	아주경제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 권도 안 봐...2028년까지 50% 목표
	아주경제	문체부, 중소 출판사 성장도약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비독자를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다
	인쇄산업신문	독서율 50% 전환과 독서량 7.5권 상향 실현
	환경스포츠신문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
인터넷	뉴스매거진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뉴스핌	문체부, '생활속 책 친화 기반'만든다...제4차 독서진흥기본계획 발표
	뉴시스	유인촌 "독서율 하락, 엄중히 인식"...4차 독서진흥계획 발표
	라이브뉴스	[문화체육관광부]비독자를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다
	코리아일보	2028년까지 성인 독서율 50% ↑...습관 기르기·환경 개선 등 지원
	출판교육문화뉴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6 게임산업 활성화('24.5.1.)

- 총 16건 보도(방송 2건, 신문·인터넷 14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KBS	정부, 게임산업육성계획 내놔---"30조원 산업으로 성장 키운다"
	MBC	정부 K-게임 키운다 '콘솔 분야 집중 육성'
신문	국민일보	콘솔 집중 지원-규제 혁신...5개년 게임산업진흥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정부, 게임산업 각종 규제완화...콘솔 게임도 육성
	헤럴드경제	K-게임 재도약 위해 균형 육성...30조원 산업으로 키운다
	서울경제	PC·모바일에 콘솔까지...K-게임, 3개의 심장으로 뛴다
	중소기업신문	제작비 세액공제 빠지 게임 진흥책 콘솔·인디 게임 산업 육성에 집중해
인터넷	연합뉴스	PC·모바일 편중 게임산업, 콘솔·인디게임 키워 되살린다
	뉴시스	정부, 콘솔게임 키운다...2028년 게임수출 17조원 목표
	뉴스	"플스·닌텐도서 즐기는 한국형 게임"...정부, 콘솔 집중 지원한다
	이투데이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아이뉴스	정부,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공개...콘솔·인디게임 지원
	뉴스핌	문체부, 콘솔 집중 지원·규제혁신 통해 K-게임 '레벨업' 나선다
	이데일리	정부, K-게임 매출 30조 키운다... 게임시간 선택제 자율전환·보호센터 신설
	아이티조선	문체부, 콘솔·인디 지원 강화... "균형성장 이룬다"
	조선비즈	정부,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 공개...콘솔·인디게임 육성

7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 은퇴자 지원 규제개선, 규제혁신('24.5.10.)

- 총 58건 보도(방송 3건, 신문 4건, 인터넷 51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YTN	정부, 지방소멸 대비 도시 은퇴자 지방이주 규제 개선
	KTV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미리 신청, 지방 이주 규제개선
	연합뉴스	은퇴 예정 도시 직장인, 귀농자금 미리 신청해도 된다.
신문	동아일보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 은퇴전 귀농자금 신청 허용
	서울경제	실버타운 9년만에 재허용, 귀농희망 도시은퇴자 돕는다.
	중도일보	'은퇴자의 지방 이주' 활성화 정부 '규제 완화' 통할까
	제주교통복지신문	국무조정실,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인터넷	데일리안	도시은퇴자 '귀농 자금' 미리 신청 가능, 농어촌 이주 활성화 규제개선 발표
	뉴스팟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 지방 이주 활성화
	뉴스핌	[규제OUT] 정부,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한국글로벌뉴스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8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기술산업육성 거점으로 발전('24.5.15.)

- 총 48건 보도(방송 3건, 신문 19건, 인터넷 26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연합뉴스	R&D 특구 내 연구·교육시설 더 넓고 높게 짓는다
	대전MBC	'건폐율·용적률 상향'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CCTV뉴스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신문	매일경제	R&D 특구 내 연구시설 더 넓고 높게
	헤럴드경제	건폐율·용적율 대폭 높였다…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아시아경제	대덕 연구특구, 용적률 상향…연구 환경 개선 기대
	전자신문	특구 연구·사업화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 상향…허용건축물도 추가
	대한전문건설신문	R&D 특구 내 연구·교육시설 더 넓고 높게 짓는다
	세계일보	R&D 특구내 건물 더 높고 넓게 짓는다

구분	언론사명	제목
	서울경제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글로벌 혁신거점 재탄생
	아시아경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대전 대덕특구 개발 탄력 기대
	충남일보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시행령 공포
	충청투데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 대덕특구 숙원 풀어
	중도일보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중도일보	[사설] 숨통 트이게 된 '대덕특구 부지 활용'
	금강일보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대전일보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 건폐율·용적율 숨통 트인다
	신아일보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충청매일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충청일보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청신호… 글로벌 혁신 거점 도약 초석 마련
	충청타임즈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한국일보	국가과학기술 요람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
	동아일보	대덕특구 녹지공간에 연구동 더 짓는다
인터넷	뉴시스	정부, 대덕단지 등 연구개발특구에 데이터센터 건설 허용
	조선비즈	연구개발특구, 용적률 150→200%로 상향
	뉴스1	연구개발특구 대지 활용도 높인다…용적률 200%로 상향
	지디넷코리아	8월부터 특구 개발 면적 변경할 때 10% 미만은 심의·의결 대상서 제외
	머니투데이	연구개발특구 내 층고 제한 완화…테니스장, 전기차 충전소도 입주 가능
	뉴데일리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사업시설 용적률 150→200% 상향
	이뉴스투데이	연구개발특구 내 각종 규제·제한 한방에 풀린다
	데일리안	용적률 150%→200%로 상향…'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대한경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효율적 공간 활용
	프라임경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건폐율·용적률 상향
	IT조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건폐율·용적률 상향
	헬로디디	연구개발특구 공간부족' 숨통 트인다··· 과기부, 건폐율·용적율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브릿지경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

구분	언론사명	제목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연구개발특구 내 시설 건폐율 완화…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
	뉴시스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이데일리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탄력…글로벌 혁신거점 성장 기대
	데일리한국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아
	위키트리	대덕특구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개발 탄력
	굿모닝충청	대전시 대덕특구 개발 탄력 전망
	프레시안	R&D특구 건폐율·용적율 상향…'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재창조 날개
	뉴데일리	대덕특구 건폐율 30%→40%·용적률 150%→ 200% '상향'
	디트뉴스24	대전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 가능, 재창조 기대감
	뉴스핌	대전 대덕특구 용적·건폐율 상향된다…"글로벌 혁신거점"
	불교공뉴스	대전시, 대덕특구 미래 담을 고밀도 개발 탄력 받는다
	대전시티저널	대덕 특구 글로벌 혁신 거점 도약 기반 마련
	브레이크뉴스	대전시,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고밀도 개발 가능해져…

9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24.6.19.)

- 총 20건 보도(방송 5건, 신문 11건, 인터넷 4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KBS	저출산위 '인구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종합 대책 발표
	MBC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관건은 결국 협치?
	SBS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3대 분야 총력 대응
	연합뉴스	연소득 2.5억까지…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저출생 컨트롤타워 만든다…육아휴직 늘리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신문	조선일보	일도 가정도 챙긴다… 아빠 출산휴가 최대 한달까지 늘리기로
	중앙일보	저출생대책 60개로 집중…이민정책·등록금면제 파격은 없어
		"육휴 급여 인상 인상적" vs "안 와닿아"…2030 본 저출생 대책
	동아일보	전문가들 "저출산 대책, 中企에 인센티브 더줘야"
	한겨레	저출생 대책, 에어컨과 보일러를 같이 틀었다
		[사설]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구분	언론사명	제목
	경향신문	육아휴직 급여 인상, '2주 육휴' 추진···지원 늘지만 노동환경 바뀔까
	한국경제	출산 땐 '특공 청약' 한번 더…육아휴직 급여 年 510만원 늘어나
	매일경제	"3살때까지 맞벌이 육아 걱정 덜하려나"…육휴기간 1년반으로 늘린다는데
	서울경제	육아휴직 급여 年 510만원 증액…재원 마련·국회 동의 과제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5세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무료로…운영시간도 확대
인터넷	데일리안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반전 저출생]
	뉴스1	영유아 돌봄 최대 12시간까지 확대…자녀세액공제 최대 40만원
	뉴시스	육아휴직 분할사용 최대 3회로 늘리고 '2주 육아휴직' 도입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목표…육아휴직 급여 더 올리고 싶어"

10 신산업 투자확대를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 ('24.6.20.)

– 바이오가스 관련 총 37건 보도(방송 3건, 신문 7건, 인터넷 27건/'24.6.20)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연합뉴스	음식물쓰레기, 분뇨로 바이오가스 생산해 탄소 연 100만t 줄인다
	한국경제TV	바이오가스 생산 2050년까지 확대...이용 촉진도
	머니투데이방송	환경부, 친환경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
신문	내일신문	바이오가스 직거래 가능...수소생산 생태계 조성
		바이오가스 수요처 다변화 추진한다
	문화일보	환경부, 바이오가스 육성...온실가스 연 100만t 감축
	아시아경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5억 Nm3 생산...연간 온실가스 100만톤↓
	아주경제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 50%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헤럴드경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연간 2300억원 화석연료 대체, 연간 100만톤 온실가스 감축"
	파이낸셜뉴스	2026년까지 가축분뇨 등으로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
인터넷	브릿지경제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연 탄소 100만톤 감소, 2200억원 경제효과"
	이투데이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조선비즈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 만들어 2300억 LNG 대체

- 플라스틱열분해유 관련 총 16건 보도(방송1건, 신문2건, 인터넷 13건/'24.7.2)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연합뉴스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된다
신문	서울경제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 폐기물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규정 신설
	헤럴드경제	폐기물 재활용한 화학물질, 등록면제 된다
인터넷	뉴시스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산업활성화 기대
	뉴스1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규정 신설...업계 "비용부담 완화 기대"
	아시아투데이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제조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마련

11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4.8.13.)

- 총 10건 보도(신문 2건, 인터넷 8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신문	서울경제	요트·보트 규제 풀어 해양레저관광 육성
	연합뉴스	해양레저 관광 규제혁신 추진... 요트·선박 수출역량 키운다.
인터넷	뉴스1	규제 혁신해 해양레저관광산업 키운다... 마리나항만 개발 간소화
	부산일보	마리나 개발 절차 간화... 계류시설 대거 확충
	이데일리	외국산 요트 도입 시 검사 '서류'만으로 가능...마리나 개발절차도 빠르게
	노컷뉴스	요트 제작에 국제표준 자재기준 인정... 조종면허시험 이론교육은 온라인 대체
	브릿지경제	해양레저관광 분야, 규제혁신으로 역량 키운다... 선박 제작 규제 개선 등 추진
	에너지데일리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신성장 산업화
	아시아투데이	영화속 멋진 요트, 국내서도 싸고 빠르게 만든다
	현대해양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12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24.12.5.)

- 총 14건 보도(방송 2건, 신문 7건, 인터넷 5건)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KTV	무기체계 수출 간소화
	연합뉴스	무기부품 수출 허가 간소화 추진… 기술이전 심사 신속하게
신문	뉴스투데이	방사청, 무기체계 수출 간 식별한 5개 규제개선 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방사청, K-방산 수출허가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규제개선안 마련
	디지털타임스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에서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 발표
	이코리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에서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 발표
	중부신문	방사청,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방산수출 걸림돌 제거
	국방일보	무기 부품 수출허가 간소화…K방산 경쟁력 높인다
	정책뉴스	무기부속품 수출 허가 간소화 등 방산수출 규제개선 추진
인터넷	SBS Biz	방사청, 무기부품 수출허가 간소화 추진
	뉴스로드	방사청, 방산수출 규제개선안 발표… K방산 지속성장 지원
	굿모닝충청	K-방산, 수출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도약
	뉴스1	K-방산 수출허가 간소화하고 심사기간 단축한다.
	일간NTN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13 공유숙박 규제개선('24.12.26.)

- 총 30건 보도(방송 3건, 신문 4건, 인터넷 23건 / 제9차 관광전략회의 내용 보도)

구분	언론사명	제목
방송	KNN	크루즈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KTV	한국의 일상을 관광자원으로…방한 관광객 늘린다
	SBS Biz	[기업이슈] 조선업, 미국에 이어 인도로부터 러브콜…조선주 강세
신문	서울경제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관광 활성화 불 지핀다
	파이낸셜뉴스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검토…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행
	한국경제	"내수 살리자"…정부, 유커 무비자 한시 허용
	헤럴드경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검토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그린포스트 코리아	기업들, 꽁꽁 언 소비 심리 녹이려 안간힘...경제단체, 정부도나서
	노컷뉴스	한덕수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
	뉴스버스	[오늘의 경제뉴스] 10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모든 시·도서 늘어
	뉴스1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4년째 제자리…추진력 아쉽다[기자의눈]
	뉴스핌	관광예산 70% 내년 상반기 집행…500억 융자·K ETA 면제 연장
	뉴시스	"한국 여행, 이상 무" 정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디스커버리 뉴스	한 권한대행,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 알리는 것 가장 시급"… '예산 70%(0.94조원) 상반기 집행'
	데일리굿뉴스	한덕수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는 것 알려야...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적극 검토"
	브릿지경제	한 권한대행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검토"
	서울경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
	시사포커스	한덕수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는 것 알려야...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적극 검토"
	싱글리스트	韓대행 "中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조속히 시행"
	아주경제	K-ETA 면제 연장·中 단체 무비자 도입추진...방한외래객 1850만·여행지출 40조원 달성 주력
	여행신문	중국인 단체에 무비자 허용?…입국 절차.교통 개선하고 여행활성화 도모
	영남일보	부산↔포항↔울릉도' 잇는 크루즈 관광 국책 사업 추진한다
	연합뉴스	내년 방한관광객 늘린다…中 단체관광객 무비자시범시행 검토
	이데일리	"숙박쿠폰 100만장 풀고, K-ETA 면제 1년 연장"
	티티엘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관광시장 활력 위해 관광 예산 70%(0.94조원) 상반기 집행할 것"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한국경제	"한국에 놀러오세요"…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한시 허용
	한겨레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검토…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추진"
	헤드라인제주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제주관광, 기회일까 위기일까

3. 규제혁신추진단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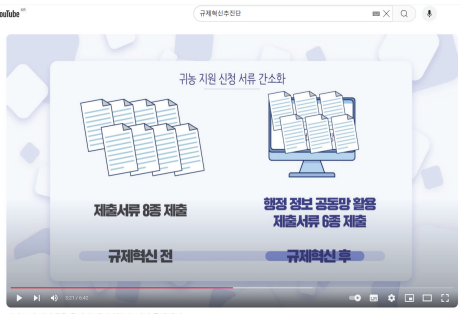





'24년도 규제혁신추진단 발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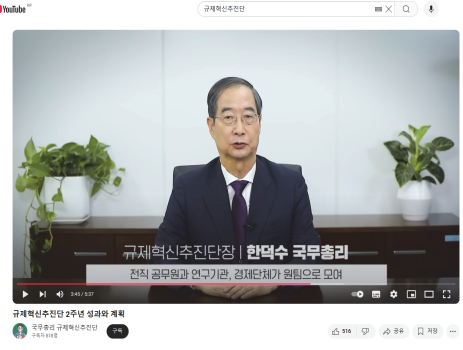





규제혁신추진단 2주년 홍보 동영상



규제혁신추진단 쇼츠 동영상



규제혁신추진단 지자체 간담회('24.12.8.)



규제혁신추진단 워크숍('24.12.8.)

※ 전체 홍보자료는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참고(www.foryou.better.go.kr)

4 규제개혁 관련 법령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 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가 규제 특례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규제 특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3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규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규제 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 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① 법 제1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라 한다)의 부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의8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요청한 날부터 위원회가 의견 제출 또는 권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4(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규제 특례와 관련된 규제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규제 특례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다만,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신청을 받은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규제 특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 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 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 향후 정비 계획
5.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이 없더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 경우에는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규제의 면제일 또는 완화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규제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른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 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 7. 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4. 4. 15.] [국무조정실훈령 제204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2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동포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질병관리청,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

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5. 삭제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자문기구를 둔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4. 지방규제혁신위원회

② 자문기구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지방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자문기구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 제·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③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7. 20.] [국무총리훈령 제819호, 2022. 7.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
   나. 규제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국무총리가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된 사람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다.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
   라. 그 밖에 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조 요청) ①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전문적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급) 이 훈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 단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에 따라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3.] [국무총리훈령 제821호, 2022. 8. 3.,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경력 및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심의회 회의에의 참석 요청
   나.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요청
2.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속한 단체나 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에서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안건인 경우

② 위원은 심의 안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는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시행 2022. 8. 3.] [국무조정실훈령 제172호, 2022. 8. 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명칭은 '규제심판부'로 한다.

제3조(분야 및 분과) ① 규제심판부는 규정 제2조의 규제개선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와 행정·사회의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총괄분과를 둔다.

② 경제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금융·공정거래
2. 주택·교통·입지
3. 소상공인·중기벤처
4. 산업혁신·에너지
5. ICT·과기·방통

③ 행정·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행정·지역
2. 교육·문화
3. 보건·의료
4. 해양·환경
5. 고용·안전

제4조(조직) 규제심판부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수행한다.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

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회 회의의 운영)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
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
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

③ 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일반국민 의견수렴)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가 '개선 필요'인 경우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 그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1항에 따라 해당규제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불수용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11.] [국무총리훈령 제789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유예 등에 관한 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작업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Annual Report 2024

기획·편집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 / Tel. 044-200-2431
집 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신우철 사무관, 박도연 사무관, 강주연 사무관, 윤현정 사무관, 전예진 사무관, 이현정 사무관, 정재영 사무관, 고금희 사무관, 조남식 주무관, 고명수 사무관, 신부섭 사무관, 이아람 사무관, 양희경 사무관, 김혜원 사무관, 유연석 사무관, 박승훈 사무관, 박소정 사무관, 천해선 사무관, 윤초희 사무관, 권태영 사무관, 안중진 주무관, 송경준 사무관, 최은지 사무관, 최인협 전문위원, 이문희 사무관, 문지영 사무관, 장인식 사무관, 성연주 사무관, 김인구 사무관, 노수빈 사무관, 양국현 사무관, 김수현 사무관, 조대웅 사무관, 김성봉 사무관, 정인희 사무관, 강진호 사무관, 안준열 사무관
발 행 일	2025년 3월 31일
발 행 처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편집·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 Tel. 02-2672-1535

※ 본 백서의 내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